

제438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임시회)

제 5 호

(임시회의록)

국회사무처

일시 2026년8월31일(월)

장소 제2회의장

의사일정

- 2025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19079)
-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19080)
 - 부별심사: 비경제부처

상정된 안건

- 2025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19079) 1
-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19080) 1
 - 부별심사: 비경제부처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이광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5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19079)

2.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19080)

- 부별심사: 비경제부처

○위원장 이광재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비경제부처에 대한 부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시간에 대해 말씀드리면 주질의는 답변을 포함해서 10분, 보충질의는 답변을 포함해서 5분입니다.

국무위원 등 정부 관계자분께서는 위원들이 질의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간단하게 일목요연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서면질의 접수는 비경제부처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경제부처에 대한 서면질의는 접수가 제한됨을 알려 드립니다. 오늘 회의 산회 시까지 서면질의 접수를 마감하오니 마감 시한을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다음에 국무위원 여러분!

과거에는 우리가 GDP라는 것이 하나의 국력의 통계였다면 이제는 총국력이라는 GDP 더하기 소프트파워를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중의 가장 으뜸은 교육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해밀턴 보고서를 쓰면, 그 보고서에 의하면 예산을 1달러를 투입할 때 어디가 가장 승수효과가 높은가라는 부분에서 교육, 그중에서도 어린아이라는 그런 보고서가 제출된 적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문화·체육·관광, 문화국가를 모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산은 어느 정도일까요?

넷플릭스의 약 8~10%가 한국어 드라마입니다. 여기에는 과연 어느 정도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지. 내수 진작을 이야기합니다만 외국인 관광이 9.2%를 기여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관광은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그리고 모든 지혜와 모든 정치의 총결산이 외교라고 합니다.

오늘 비경제분야에서 위원님들의 멋진 질문과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소신 있고 정확하게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멋진 질의와 답변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유상범 위원** 위원장님, 그 전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재** 예, 유상범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유상범 위원**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벌써 세 번째 자료제출 요구를 위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및 국가안보실, 경호처, 경찰청 등 청와대 복귀 예비비 집행내역 제출을 제가 벌써 세 번째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청와대 복귀 예비비 집행내역이 전혀 제출이 되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심사할 자료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대통령비서실에 배정된 예비비 161억 가운데 140억 원, 87%의 지출액이 결산자료에 아예 없습니다. 예비비 의결은 취임 엿새 만에 예비비의 결을 했습니다. 집행내역은 아직까지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 제55조 2항에서 예비비 지출을 차기국회의 승인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예비비는 국회가 미리 그 지출내역을 심의하지 못하는 유일한 돈입니다. 그래서 헌법에서 사후 승인을 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지출내역도 모르는 감감이 예비비 지출 승인을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위원장께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경찰청 등 세 기관에서 청와대 복귀 예비비 집행내역을 반드시 제출하도록 우리 위원회 의결로 요구해 주시고 제출시한을 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 2일부터 결산심사에 들어갑니다. 우리 지출액을 모른 채로 승인하는 것은 승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멋대로 하라는 거랑 똑같지 않겠습니까? 국민이 낸 돈이 어디로 갔는지도 모른 채 국회가 승인할 수 없습니다. 적어도 내일까지 지출내역을 제출하도록 위원회 의결로 정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재** 자료제출과 관련해서 위원장으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국회 자료제출 요구는 국회법 128조에 따라서 위원회 의결로 필요합니다마

는 위원님들이 자료제출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 지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태호 간사님하고 한번 상의를 해 주시고 유상범 간사님하고도 상의를 한번 해 주시고 비밀이 있다면 그에 적합한 조치를 해서 납득이 가능한 선에서의 자료제출 부분이 가능한지 해 주시겠습니까?

그 부분, 나중에 정태호 간사님하고 유상범 간사님하고 상의하고 보고를 드리고 보안과 비밀이 필요한 부분은 그에 상응하게, 그러나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지요?

○**대통령비서실경청통합수석비서관 전성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광재** 그래서 군사·외교·대북관계·군사기밀 사항이 아니라면, 그래서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면 국회 운영 차원에서 정확히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대전 중구의 박용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 위원** 반갑습니다.

대전 중구 박용갑 위원입니다.

먼저 경찰청장직무대행님 나와 계시나요?

그리고 행안부장관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린이 안전은 지키고, 국민 편의는 높이고’, 보도자료를 내셨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박용갑 위원** 저는 1월 20일 날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어린이 체류시간을 고려해서 평일 야간이나 또 새벽, 뿐만 아니라 주말, 공휴일, 방학기간에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거든요.

저는 지난 4월 14일 날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어린이보호구역 탄력 운영의 필요성을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뒤이어서 4월 15일 날 이재명 대통령께서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어린이보호구역을 시간대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023년 8월 30일 경찰청이 발표한 시범운영 결과를 보면 서울의 모 초등학교 두 곳의 심야시간 제한속도를 30km에서 50km로 완화했을 때 평균 통행속도는 7.8%가 높아졌고 제한속도 준수율은 오히려 43.5%에서 92.8%로 2배 넘게 잘 지켜졌습니다. 운전자가 납득할 수 있게 운영하는 것이 오히려 더 규칙을 잘 지킨다는 그런 증거겠지요.

그리고 올해 8월 28일 날 경찰청이 공식 발표한 자료에 보면 올해 4월 국민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76.4%가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에 찬성했습니다. 매우 찬성은 40%가 넘습니다. 그래서 경찰청도 탄력 운영 확대를 하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그렇습니다.

○**박용갑 위원** 운영시간도 지역 교통여건에 따라서 밤 10시부터 다음 날 7시까지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그렇습니다.

○**박용갑 위원** 저는 이번 경찰청 발표자료를 보니까 오히려 좀 더 적극적으로 해도 되

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운영시간을 기존 9시에서, 그러니까 변경 전 9시에서 7시까지로 돼 있던데 그렇게 해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그 부분은 더 운영을 해 가면서 효과분석을 통해서……

○박용갑 위원 변경 전에는 사실 9시부터 7시까지 이렇게 돼 있었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박용갑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도 크게 사고율이 많이 없고 그러니까 한번 그것도 적극적으로 더 검토해도 되지 않겠나……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저희가 시간을 조정한 것은 연구용역 결과 등을 토대로 해서 조정을 했는데 또 계속적으로 사정변경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연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갑 위원 그리고 전국에 어린이보호구역이 1만 5856곳이 있는데 2026년 4월 기준 시간제로 운영하는 곳을 보면 84곳, 약 0.5%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렇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박용갑 위원 그 새로운 기준일이 마련이 돼 있는데 시간제 운영 여건을 갖춘 곳은 약 3분의 1, 6000곳 정도 된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6000곳 정도 되는 거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시간제 운영을 하려면 속도제한표지라든지……

○박용갑 위원 그렇지요. 기준이 보니까 한 다섯 가지 있더라고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그렇습니다.

○박용갑 위원 다섯 가지 있는데 그런 기준이 충족이 되면 충분히 할 수 있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기준은 그렇습니다.

○박용갑 위원 그래서 보니까 올해 말까지 약 160곳 정도를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발표를 하셨는데 너무 소극적인 것 아닌가. 조건이 갖춰진 곳이라면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완화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박용갑 위원 올해 8월 28일 경찰청이 발표한 통계자료를 보면 최근 5년 동안, 보면 밤 12시에서 새벽 6시까지인데 사망사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렇지요? 물론 12시부터 새벽 6시까지 누가 다니겠습니까, 아이들이. 그렇지요?

그런데 또 1년 이상 시간제 속도제한을 운영한 39곳을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줄었고 사망자 건도 많이 감소가 됐어요. 그렇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그렇습니다.

○박용갑 위원 그러면 이제는 여건이 갖춰진 곳부터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갑 위원 한 가지 또 예산 문제인데요. 예산 문제인데, 그 기준을 보면 보행 공간과…… 보·차도 구분이 없는 데, 차량 공간이 구분이 없는 데 또는 방호 울타리가 쳐져 있는 데, 횡단보도에 신호기가 설치돼 있는 곳 또는 무인과속단속장비를 갖춘 곳 또는 3년 이상 두 번 이내 사고 발생 건수가 일어나지 않았던 곳, 이런 곳을 해서 기준을 정하

셨는데요. 그동안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지방정부에서 예산이 없어서 사실 더 적극적으로 하지 못했다는 그런 말씀, 자료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일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용갑 위원** 지방정부에 돈이 없는데 이것을 확대한다고 그래서…… 지금도 돈이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그동안에 지방정부에서 이런 기준 설치를 할 수 있는 예산이 없어서 사실 적극적으로 하지 못했는데, 지금 확대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지방정부에 돈이 있겠습니까?

이런 것은, 행안부장관님 여기 나와 계시는데 이제는 사실 경찰청에서 예산 확보하는데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관님,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지방정부가 돈이 없으면 계속해서 확대하고 싶어도 확대를 못 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런 것은 별도로 사실 경찰청에서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서 예산을 따로 확보해서 지방정부에 이런 부담을 주지 않고 이런 것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지방정부에서도 지방정부의 재정 운용을 어디에 우선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또 경찰에서 탄력적으로 운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기 때문에 지방정부에서도 재정, 예산 운용을 이렇게 좀 달리 봐서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있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그런 부분들, 지방정부의 재정 부분이 너무 열악해서 그렇다면 다른 관계부처와 예산 협의 부분도 경찰청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용갑 위원** 이것이 스쿨존 30km, 어린이보호구역 이런 정책에서 이제는 정책을 좀 확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은 지방정부에만 맡기지 말고 사실 예산 부처와 협의해서, 이걸 경찰청에서 예산 확보를 해서, 장관님도 여기 나와 계시니까 예산 확보를 해서 이걸 적극적으로 좀 하시는 게 옳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장소별 분석을 통해서 우선 급한 곳은 시급하게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갑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발의를 했는데요, 1월 20일 날, 바로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것도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경찰청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용갑 위원** 그리고 행안부장관님, 앞에 한 말씀드리겠는데 대전 중수청이 대전세무서를 신축을 해서 오는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그렇습니다.

○**박용갑 위원** 그래서 올해 예산을……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임시로는 세종에 마련을 합니다만 신축이 되면 이전할 계획입니다.

○**박용갑 위원** 그런데 거기에 지금 농산물품질관리원이 들어가 있고요. 또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이제는 옮겨야 되는 그런 현상이 지금 있거든요. 그래서 이왕 하는 김에 거기 장소가 넓고 하니까 통합청사를 지어서 그 세 기관이 함께 입주하면 국가적으로도 낭비가 덜 되고 또 더 효율적이고 원도심의 지역 활성화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되겠다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위원님 말씀 주시는 데 대해서는 잘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중수청의 기관 성격상 단독 건물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어서 단독 건물로 신축하는 것을 이미 재정경제부에 사용승인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신 의견이 함께 추진이 가능한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갑 위원** 지금 통합청사가 이미 지어져 있는 데가 있는데 건물은 따로따로입니다, 그 공간이 한 울타리 안에 있는데.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알겠습니다.

○**박용갑 위원** 그렇기 때문에 가능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광재** 박용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국민의힘의 조배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배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조배숙 위원입니다.

먼저 법원행정처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청와대가 사전 협의가 없었다, 그리고 관행 위반을 이유로 해서 손봉기 대법관후보자 제청에 대해서 반대하고 반려했으며 재제청 요구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조배숙 위원** 그런데 사전 협의 관행이라는 게, 이게 지금 헌법 명문에 있나요? 없지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조배숙 위원** 그런데 이게 사법권의 독립을 훼손할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

○**조배숙 위원** 이런 관행이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것 위헌 아닌가요? 이런 관행 존중돼야 됩니까?

손봉기 대법관후보 무슨 문제 있나요? 무슨 문제 있습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아니요. 훌륭한 법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조배숙 위원** 그런데 왜 재제청 요구하는 거지요?

대통령이 대법원장이 헌법상의 권한에 의해서 제청을 했는데 마음대로 반대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석한다면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대통령에게 후보자를 건의하는 정도의 건의권으로 추락하게 됩니다. 그게 맞다고 보세요?

그러면 대통령 마음에 드는 사람 나올 때까지 계속 이렇게 거부하고 그렇다고 하면 대법관을 제청하는 이 실질적 권한, 대법관을 결정하는 실질적인 권한은 대통령에게 속하게 됩니다. 그렇지요? 이거 헌법 제104조 위반 아닌가요?

PT를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걸 분명히

저는 삼권분립, 사법권 독립 부정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청와대의 반려 사유를 봤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절차적 완결성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 결국 사전 협의 안 했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절차에다가 사전 협의를 넣어야만 완결됐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절차적 완결성입니까? 이건 헌법에도 없는 초헌법적 절차의 창설 아닌가요?

임명권을 인정했는데 이 임명권이 그 전 단계의 헌법기관이 행사하는 독자적인 인사권을 무력화하는 것 그건 정치적인 거부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법관이 행정부 고위공무원입니까? 아니지요?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실현하는 그런 참모입니까? 아니지요?

대통령, 때로는 정부가 당사자인 사건까지도 제3자의 입장에서 재판하는 최고법원의 법관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당연히 정치적인 독립성을 인정해 줘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다른 사람 제청하라 이렇게 된다면 저는 사법부 독립은 뿌리부터 흔들린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한 명의 대법관 거부하는 것으로 이렇게 시작하지만 내일은 대통령이 원하는 성향의 대법관이 나올 때까지 제청 거부하는 관행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 임기 동안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하게 되는데 결국 내 입맛에 맞게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보세요. 현행 5년 단임제하에서도 앞으로 26명 중 22명을 지금 임명하게 돼 있습니다.

전성환 수석님!

○대통령비서실경청통합수석비서관 전성환 예.

○조배숙 위원 청와대를 대표해서 나오셨으니까요.

입법·행정·사법권 이 삼권이 어떻습니까? 대등합니까, 차등이 있습니까?

○대통령비서실경청통합수석비서관 전성환 헌법에 따라서 서로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배숙 위원 아니, 역할이 있는데 어떤 게 우위에 있습니까?

○대통령비서실경청통합수석비서관 전성환 대법관 임명 절차는……

○조배숙 위원 아니, 잠깐만요. 우선 그것 묻는 거예요.

지난번에 홍익표 수석이 이 자리에 출석해서 어떤 위원이 ‘삼권 중 어떤 게 우월하냐’ 하니까 ‘모두 대등하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대통령비서실경청통합수석비서관 전성환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배숙 위원 그런데 28일 날 강유정 대변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대법원장의 대법관후보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답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대통령비서실경청통합수석비서관 전성환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배숙 위원 그러면 굉장히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예요. 삼권분립을, 그리고 사법부의 독립을 부정하는 겁니다.

보세요, 헌법이라는 것은 뭐니까? 국민주권주의지요. 그러면 국민의 의사가 표현된 헌법입니다. 거기서 삼권이 분명하게 독립돼 있고 대등한데 어떻게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을 뒷받침하는 거라고 봅니까? 뒷받침한다는 것은 종속적인 것 아닌가요?

○**대통령비서실경청통합수석비서관 전성환** 어쨌든 헌법의 내용에 보면……

○**조배숙 위원** 아니요, 저는 그것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왜 또 이런 생각을 하나 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재명 대통령은 ‘선출직의 권한에 민주적 정당성이 있다’ 이랬어요, 선출직이니까. 그런데 대법원은, 사법부는 선출직이 아니다, 그러니까 선출직이 우위에 있다 이런 뉘앙스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이것 굉장히, 대단히 잘못된 인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헌법관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 분명히 아까도 얘기했지만 국민주권주의에서 그리고 헌법은 국민의 의사가 표현된 것입니다. 그래서 헌법에 보면 사법부도 당당한 삼권분립의 주체로서 대등하게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야 서로 견제와 균형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대통령비서실경청통합수석비서관 전성환** 제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조배숙 위원** 아니, 제 얘기 끝까지 들어 보세요.

그런데 어떻게 사법부보다 우월하지요? 선출직이니까 더 우월하다? 그것 좀 위험한 인식 아닌가요?

○**대통령비서실경청통합수석비서관 전성환** 이 건에 관해서는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을 기속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배숙 위원** 기속하지 않는다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뒷받침한다는 이게 말이 되나요? 저는 굉장히 그것 위험한 생각이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지금 자꾸 선출직, 선출직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헌법재판소는 선출직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출직인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사법부는 선출직 아닙니다. 하지만 선출된 국회의원에 대해서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자격상실형을 내려서 자격을 박탈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사법부를 선출직으로 하면 공정한 재판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선출직이다 아니다로 우열을 가리는 것은 저는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고 대통령은 헌법 위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강유정 대변인이 재제청 요구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추천위의 추천 내용을 존중해서 최대한 신속히 재제청해 줄 것을 요청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튼 같은 입장이시겠지요?

○**대통령비서실경청통합수석비서관 전성환** 예, 법원행정처장의 지난번 법사위 발언 내용에 보면 추천된 사람들에게 추천을 보류하고 새로 추천을 하겠다고 하는 부당한……

○**조배숙 위원** 부당한?

○**대통령비서실경청통합수석비서관 전성환** 예, 사실 저희가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항도 발견되었기 때문에……

○**조배숙 위원** 그게 절차가 부당하다고 생각하세요?

○**대통령비서실경청통합수석비서관 전성환** 추천권도 인정돼야 되고……

○**조배숙 위원** 오히려 저는 강유정 대변인의 얘기가 굉장히 위험적인 생각이다 생각을 합니다.

왜냐? 보세요. 헌법상 대법관 제청권은 오직 대법원장에게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특정 후보군 네 명 중에 한 명 했는데 지금 안 하겠다고 반려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 명이 남잖아요. 그런데 그 세 명을 지정하면서 추천위원 추천 내용을 존중해서 최소한…… 그러니까 그 얘기는 그 세 명 중에서 한 명을 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은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침해하는 겁니다,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은.

○**대통령비서실경청통합수석비서관 전성환** 법률에 의해서 추천……

○**조배숙 위원** 그리고 두 번째 보세요.

법원조직법 제41조의2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추천위원회는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할 때마다 구성하고 추천을 마치면 해산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제청이 이루어진 순간에 추천위 그리고 추천 명단은 법적으로 소명을 다해서 소멸한 겁니다. 굉장히 이것 위험적인 발상인데요. 탄핵 사유 아닌가요?

○**대통령비서실경청통합수석비서관 전성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조배숙 위원** 법원행정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해 보세요, 처장님 법률 전문가시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제가 답변드리기에는 좀 적절하지 않은 사항 같습니다.

○**조배숙 위원** 왜 적절하지 않습니까?

보세요. 저는 이번 사태를 단순히 청와대 대법원 사이의 인사 갈등으로 축소해서 해석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대통령의 사전승인권 아래 두느냐 아니면 헌법이 설계한 사법부 독립과 권력분립을 지켜 내느냐 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헌법에 없는 대통령의 대법관 제청 거부권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관행으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한 번 권력분립의 독이 무너지면 다시 세우기 어렵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광재** 조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북 군산·김제·부안울의 박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朴芝源 위원** 오늘 국무조정실에서 나와 계신가요?

○**국무조정실장 임기근** 예, 국무조정실장 있습니다.

○**朴芝源 위원** 죄송합니다. 어디 계시지요? 거기군요.

오늘 부처 간 칸막이 문제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여쭙습니다.

두 가지 사안 말씀드릴 텐데요. 하나는 결혼 페널티 문제고 하나는 새만금 국유지 지적 정리 문제입니다.

두 가지 사안이 별로 관계가 없어 보이겠지만 결혼 페널티 문제도 사실은 신혼부부에게 있어서는 부처별 정책이 다 칸막이별로 막혀 있다 보니까 부처별 정책을 합치다 보면

결혼하면 손해 본다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되는 문제고 새만금 국유지 지적 정리 문제도 국유지가 여기저기 소관 부처가 흩어져 있어서 국가 사업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부분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얼마 전에 대통령께서 이미 회의에서 직접 언급을 하셔서 자세히 알고 계실 텐데 청년들 사이에서 혼인신고를 하면 손해를 본다는 이른바 결혼 패널티라는 말 많이 돌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국무조정실장 임기근 예, 알고 있습니다.

○朴芝源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저희가 자료도, 인터넷에 많이 떠도는 내용들입니다. 이렇게 사례를 보더라도 결혼한 지 3년 됐는데 아이도 태어날 것 같고 그런데 청약 때문에 혼인신고를 늦추는 게 좋겠다 이런 질의응답들이 오가고요. 인터넷상으로는 아예 채테크 노하우가 떠돕니다. 그래서 혼인신고를 안 하면 이런 엄청난 혜택들이 있다 이런 내용들이 공유가 되고 있는 현상이고요.

실제 통계에서도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동안에 결혼 이후에도 1년 넘게, 혼인신고를 1년 이상 지나서 하는 비율이 자꾸 늘어서 지금 다섯 쌍 중에 한 쌍이 1년이 지나서야 혼인신고를 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왜 그런지 별도 조사를 해 보니까 상당수 응답자들이 미혼 상태일 때 혼인집 마련이 훨씬 유리하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혼인신고를 하면 소득, 재산, 주택 수 이런 것들이 부부 단위로 합산이 되는데 대출은 대출, 청약이면 청약, 세제, 복지, 각자 부처별로는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 부부 합산을 하지만 이 정책들을 모두 모아 놓고 보면 결혼하면 손해라는 결과가 도출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대통령께서 이 결혼 패널티 문제를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과제로 끌어올리셨다는데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제도상 불이익을 살펴보고 대통령께서 지시를 하셔서 관계부처 검토를 거쳐서 22개의 과제가 우선 제안됐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국무조정실장 임기근 예.

○朴芝源 위원 제가 그 22개 과제들을 보니까 그 과제도 마찬가지로 국토부 소관도 있고 재정부, 행안부, 복지부 등 여러 부처가 얹혀 있어서 어느 한 부 처에만 맡겨서는 해결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실장님, 총리실에서는 22개 과제에 대해서 대책 마련이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국무조정실장 임기근 지금 방금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결혼 패널티 문제를 속도감 있게 해결하는 데 범정부적으로 중점을 두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6월 달에 10건의 과제를 이미 해결을 했고요. 그리고 저기 방금 쪽 리스트업해 주신 22개의 과제에 대해서도 속도감 있게 부처 간 협의를 진행하면서 4건에 대해서는 해결하기로 저희가 8·13 부동산 대책에 포함해서 이미 발표한 바 있고요. 그 나머지 과제들에 대해서 관계부처 간에 지금 협의를 이어 가고 있습니다.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朴芝源 위원 감사합니다.

총리실에서 계속 범정부적인 과제로 직접 관리를 해서 부처에게 맡겨 놓지만 마시고 계속 컨트롤타워 해 주시라는 말씀 드리고요.

대통령께서 당시 그 22개 외에도 좀 불합리한 것 있으면 계속 추가적으로 제안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 제안을 하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창업농 정책자금 사례인데요 청창농이라고 줄여서 부릅니다. 청년농에게는 여러 가지 정책자금이 지원되는데 그중에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이 최대 대출한도가 5억 원이에요. 그런데 결혼 전에 각각 부부가 되기 전 독립적인 청년농들이 5억씩 자금을 지원 받아서 쓰고 있다가 결혼, 혼인신고를 하면 부부를 한 세대로 간주해서 한 세대당 최대 5억이 되기 때문에 대출받을 수 있는 총량이 갑자기 10억에서 5억으로 줄어들어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년농들도 각자 독립적으로 경영체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혼인신고를 꺼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혹시 이 내용 들어 보셨습니까?

○국무조정실장 임기근 아니요. 저희가 지금 그 내용까지는 직접적으로 얘기를 못 들었지만 방금 말씀 주신 내용은 최근에 저희가 완화된 내용 중의 하나가 주거하고 관련된 게 있습니다. 주거하고 관련된 디딤돌 대출, 버팀목 대출 그리고 보금자리 대출이 있는데요. 이러한 사항과 유사한 성격의 사안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朴芝源 위원 디딤돌 대출도 그렇고 지금 주로 수도권에 워낙 주거난이 심각하다 보니까 청년들의 목소리가 주로 수도권에 집중돼서 정부에 전달되는 것 같은데 비수도권 지역에 있는 농업 관련된 내용 그리고 복지나 창업 정책금융 관련된 내용들도 총리실에서 좀 더 챙겨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농업 관련된 사례를 제가 들어 드렸고, 유사하게 이런 숨어 있는 결혼 페널티가 없는지 다시 한번 범정부적으로 각 부처를 통해서 점검해 주시겠습니까?

○국무조정실장 임기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사항 포함해서 이 방송을 보고 계신 국민들이 계시면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제안의 말씀을 주십시오 당부 말씀도 같이 올립니다.

○朴芝源 위원 감사합니다.

재경부차관님 계십니까?

○재정경제부제2차관 허장 재경부차관입니다.

○朴芝源 위원 제가 방금 총리실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들이 보기에는 정부는 하나여야 하지요. 부처별로 국민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재정경제부제2차관 허장 예, 그렇습니다.

○朴芝源 위원 그래서 지금 새만금 농생명용지도 부처 간 지적 정리 문제 때문에 칸막이 문제가 좀 있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농생명용지가 대부분 다 매립사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1960년대에 지적이 등록됐던 과거 하천부지 같은 것이 있는데 그 하천부지들을 보면 기존 국유지가 워낙 여러 부처로 나뉘어져 있어서 그 소유·관리 관계가 정리돼야지 지적이 정리가 되거든요.

제가 하천부지 자료를 가져왔는데 보시면 지목이 하천으로 등록된 지적이 한 600필지가 넘는데요. 그중에 농식품부 소관은 20%도 안 됩니다. 다 옛날, 건교부·재무부 이런 타 부처 소관 부지가 80%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의 농생명용지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장부상으로 여러 부처로 나뉘어져 있다 보니까 국유재산 정리작업 때문에 준공이 늦어지고 지적 등록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농어촌공사가 사업시행자인데 매립·준공 신청을 하려면 지적 정리가 먼저 되어야 되거든

요.

이게 지금 저희가 서류 장부상 얘기만 드리는 게 아니고 실제로 사업이 지연된 사례도 있습니다. 김제 심포항 일대에 저희가 추진 중인 것이 국립해양도시과학관 예정부지가 있는데요. 거기도 지금 하천부지가 포함이 돼 있고 똑같이 농식품부뿐만 아니고 재경부·환경부·국토부 소관 기존 하천부지들이 전부 포함돼 있어서 나라가 돈을 써 가지고 땅을 매워 놓고 정작 내부 장부 정리가 안 돼서 그 땅에 개발을 못 하는 이런 우스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 점에 관해서 미리 제도개선 논의가 있었습니다. 안도걸 의원께서 발의하신 국유재산법 개정안을 보면 일반회계 일반재산도 무상관리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있고요. 예전에 용산공원 조성법 특별법을 보면 특별법에서 국유재산에 대한 별도의 관리전환 특례도 두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새만금사업법에 그런 특례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행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즉시 해결이 돼야 되고 부처 간 협의를 빨리 해 주실 것은 빨리해 주시고 아니면 특례입법을 하셔야 될 것은 입법을 해야 되고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는 농어촌공사가 부처마다 다 쫓아다니면서 협의를 일일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재경부가 국유재산 총괄청이기 때문에 좀 칸막이를 거둬 주시라고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지금 총괄해서 재경부에서 새만금 농생명용지 611필지 전수점검하고 현행법으로 즉시 처리될 것, 부처 간 협의될 것, 법 개정 필요한 것 이렇게 나누어서 일괄 정리한 로드맵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데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재정경제부제2차관 허장 예, 위원님 말씀처럼 부처 간의 토지가 이곳저곳 분산되어 있으면 굉장히 힘들다는 말에는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더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이거는 제도적으로 정비가 되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 안도걸 의원의 국유재산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법안 논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국유재산의 효율적 활용,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까지 포함해서 함께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朴芝源 위원 감사합니다. 국유재산법 개정도 힘을 실어 주시고 그게 새만금 농생명용지에 해당이 되는지를 검토해 주셔서 안 된다라고 하면 별도 특례 입법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정경제부제2차관 허장 예, 잘 알겠습니다.

○朴芝源 위원 그러면 오늘 두 가지가 결국은 저는 같은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결혼 폐널티도 부처별로 제도가 잘 맞물리지 않아서 국민들이 손해를 보는 것이고 새만금 문제도 부처별로 국유재산이 정리가 안 돼서 국가사업이 늦어지는 문제라서요. 국민에는 국토부 국민이 있는 게 아니고 농식품부 국민이 있는 게 아니고 재경부 국민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에게 보일 때 정부가 하나라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정부가 한 몸처럼 움직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광재 박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을 정확하게 맞춰 주셨습니다.

다음은 전남 광주 북구갑의 정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준호 위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 정준호 위원입니다.

최휘영 장관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조성사업은 크게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운영, 문화적 도시환경 조성, 예술 진흥 및 문화관광산업 육성, 문화 교류도시 역량 강화 등 4대 역점 추진과제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PPT를 보면요, 문체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말까지 총사업비 5조 2912억 가운데 절반 정도 안 되는 2조 8288억이 투입돼 전체 투입률은 53.4%, 앞으로 투입해야 될 재원이 2조 4624억 원에 달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4대 역점 추진과제 가운데 국가가 직접 시행하고 국비를 100% 투입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운영에는 1조 8893억 가운데 1조 8368억 원이 투입돼 사업비 투입률이 97% 정도로 사실상 완료 상태입니다. 반면에 지방비 매칭으로 진행이 되는 문화적 도시환경 조성 등 나머지 3대 역점 과제에서는 계획액이 3조 4000억 가운데 9920억 원만 투입이 돼서 투입률이 30%가 좀 안 되는 데 그치고 있습니다.

아문당 건립·운영에는 충분한 사업기간이 이렇게 주어진 반면에 상대적으로 늦게 본격화된 나머지 3대 역점 과제를 현행 사업기간에 모두 완료하기는 현실적으로 시간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장관님, 이런 내용은 다 파악 잘하고 계신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정준호 위원 그래서 지금 지역에서도 얘기가 나오는 게 아특별상 사업기간을 2031년 종료에서 2036년까지 연장하는 게 필요하다, 단순히 지연된 사업에 시간을 더 주거나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기 위해서가 아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사업기간을 이렇게 연장을 하더라도 기존 조성 종합계획의 총사업비와 투자 소요는 변하지 않는 만큼 새로운 재정 부담을 만드는 것도 아닌 셈입니다. 나머지 3대 역점 과제의 실집행률이 30%가 안 되고 있는데 현행 사업기간만으로는 실집행을 완수하기 어렵다는 건 당연히 장관님도 동의하실 것 같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예, 그렇습니다.

○정준호 위원 그래서 개정안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본회의를 통과해서 2036년까지 사업기간이 연장이 되면 문체부에서도 안정적인 재정 투입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준호 위원 3대 역점 과제와 관련해 가지고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아시아문화전당은 국가가 직접 시행하고 국비 100%로 추진했지만 광주시가 시행하는 나머지 3대 역점 과제는 국비·지방비 5 대 5 매칭이 현재 적용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PPT를 보시면요, 나머지 3대 역점 과제의 재원별 투입실적을 보면 국비는 계획액이 1조 3800억 정도가 되는데 4425억이 투입돼서 32%, 지방비는 계획액 7896억 원 가운데

2998억 원이 투입돼서 38%의 집행률에 그치고 있습니다. 민간 투자도 20% 정도의 투입률이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광주시의 현실적인 재정여건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당연히 따라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PPT를 보시면, 실제로 광주시의 재정자주도는 60%가 안 되고요, 전국 평균이 한 70% 정도 되는데 9% 정도가 낮고 17개 시도 가운데서 지금 최하위에 있습니다. 재정자립도를 보면 광주는 38.2%, 전국 평균인 42.4%보다도 4.2%p 정도가 이미 낮은 상태입니다.

제가 보기에요 이런 수치만 놓고 보면 재정자주도, 재정자립도를 고려할 때 현행 5 대 5 매칭 구조로 과연 광주시에서 나머지 3대 역점 과제를 정상적으로 완료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다음 PPT를 보면요, 관련 법령을 저희가 살펴봤더니 아특법 제48조 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는 보조금법 시행령상 국고보조 대상 사업에 대해서 기준 보조율보다 20% 높은 보조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비와 지방비가 5 대 5로 매칭되고 있는 사업 중에서 동 시행령 38조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은 국비와 지방비가 7 대 3까지도 매칭이 가능한 법적 근거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장관님, 이는 저희가 추가 재원을 새롭게 마련해 보자라는 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이미 계획된 총사업비의 범위에서 국가와 지방비의 부담 구조를 한번 검토를 해서 실행률과 사업 완수에 대한 기대를 한번 높여보자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실행가능성을 높여 보자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견 한번 말씀을 주시고 나머지 3대 역점 과제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연차별 재정투입 계획을 마련해 줄 생각이 있는지 간단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위원님 말씀대로 광주통합특별시의 재정자주도가 매우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재정 상황을 고려할 때는 앞으로도 계속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국고보조금을 인상해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 만큼 재정 당국과 긴밀하게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준호 위원 장관님, 다른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스카이드일리 잘 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예, 알고 있습니다.

○정준호 위원 PPT를 잠깐 보면요, 5·18기념재단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2023년부터 2024년까지 2년 동안 여러 가지 5·18 허위·왜곡 관련된 보도를 쏟아냈고 이미 여러 차례 공론화가 된 바 있습니다. 급기야 2025년 2월 15일 날에는 광주 금남로 한복판, 5·18 민주화항쟁의 상징적인 공간인 그 금남로 한복판에서 북한군 개입설로 도배된 40쪽 짜리 호외판을 배포하면서 사회적 논란이 크게 확산이 됐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이 기간 동안에 집행된 정부 광고가 278건, 5억 1968원에 달했습니다. 2025년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저희가 집행 내용을 한번 살펴보니깐요, 총 54건, 1억 388만 원의 정부 광고가 추가로 집행된 것이 확인이 됩니다.

허위·왜곡 보도매체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 관리점검 이런 부분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됐는지 장관님, 저희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겠지요? 이런 부분들에 관련돼서 정부 광고가 계속 추가적으로 집행되는 데 대해서는 문제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장관님도

동의하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예, 그렇습니다.

○정준호 위원 윤호중 행안부장관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4월 22일 잘 아시는 전한길 강사가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스카이데일리의 방금 이러한 기사를 직접 언급하면서 5·18은 DJ 세력과 북한이 주도한 내란이다라는 취지의 허위 주장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지긋지긋하다는 말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해당 보도를 했던 스카이데일리는 정작 북한군 개입설이 허위라고 인정을 했는데 과거 생산된 왜곡 기사를 다시 근거로 활용을 하면서 재생산을 하고 있는 거지요.

뿐만 아닙니다. 국회도서관에서 5·18을 폄훼하는 행사가 최근 다시 열리기도 했고 국민의 알권리, 투명성을 내세워 가지고 유공자 명단 공개를 요구하는 등 5·18을 둘러싼 혐오 주장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대법원은 2020년 10월에 관련된 유공자 명단 공개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을 명확히 한 적이 있습니다.

장관님, 많은 관련된 특별법이라든지 대응 수단이 지금 언급이 되고 있는 게 사실인데 과거 왜곡 정보가 다시 인용되고 확산되고 있는 이 흐름을 막아 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기존 제도가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지를 점검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장관님, 간단히 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역사에 대한 왜곡을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의 소중한 역사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그 합의점이 분명하게 도출이 되어 있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한 왜곡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적인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준호 위원 감사합니다.

최휘영 장관님께 다시 한번 여쭙보겠습니다.

예술인 자녀 돌봄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이 사업이 도입이 되고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는 사실은 잘 알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예, 그렇습니다.

○정준호 위원 제가 내용을 보니까 PPT를 보면 대학로에 한 곳이 있고 망원동에 한 곳, 이렇게 서울 두 곳이 있는데 요일별 이용 현황을 보니까 평일보다 주말에 이용 관련 된 건수가 대폭 증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주말에 공연·전시·행사 등의 활동이 집중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게 보입니다.

다음 PPT를 보면요 지역별 현황, 그런데 서울에 두 곳이 있는데 서울에는 예술인 비중이 36%, 지방에 과반이 훨씬 넘는 64%가 지역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역에 이런 관련된 돌봄 지원사업이 확대될 필요가 있고 올해 6월 광주문화재단이 관련된 공모에 선정이 되면서 광주 지역 최초로 이런 부분들이 운영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이런 관련된 게 광주를 시작으로 해서 주요 권역별 거점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확충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이는데 이거에 대한 계획이나 장관님의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 예술인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작할 때는 지자체의 어떤 자발적인 운영 의지와 지속가능성 때문에 지

방비가 부담을 하도록 이렇게 설계가 돼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지방의 부담이 큰 만큼 지방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재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스카이드일리 관련해서는 작년 3월 이후부터의 집행된 광고는 다 지방정부에서 진행한 광고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특히 허위·조작 보도를 일삼는 매체에 대한 정부 광고를 제한하기 위한 어떤 법적 보완 장치를 지금 준비 중이고 국회에서 심의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위원님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광재 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대구 수성구의 이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인선 위원 최교진 장관님, 짧은 질문 하고 가겠습니다.

지역의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서 국립의대 신설이 잘 진행되고 있겠지요?

○교육부장관 최교진 예.

○이인선 위원 후보지로 오늘 아침에 보니까 광주·전남의 순천대가 결정이 됐고요. 경북은 일찌감치 경북대로 각각 선정해서 제출해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대 신설 목적은 의료 소외 지역에 대해서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일환으로 시작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교육부장관 최교진 예, 그렇습니다.

○이인선 위원 그러면 경북 역시 대표적인 의료 취약 지구이고 순천대도 역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두 곳이 신설되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드리고요. 의료 소외 지역에서 필요한 만큼 지원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한 가지는 35년 전에 경북대 의대 정원에서 대구 가톨릭의대에 정원 30명 정도를 분할해 줬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인원 조정을 하면서 양 지역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교육부장관 최교진 예, 심사위 과정을 거치기는 하겠지만 말씀하신 걸 최대한 관심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이인선 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차정인 국교위원장님 어디 계시지요?

○국가교육위원장 차정인 예, 여기 있습니다.

○이인선 위원 지난번 8월 5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대통령께서 객관식 수능이 아이들을 망친다, 망가뜨린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전남광주 독자적인 대입제도는 또 어떠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위원장님께서서는 국교위에서 즉시 수능에서·논술형 도입과 절대평가 공론화에 착수를 하게 됐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도 독자 대입전형을 만들겠다는 공동선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이 보면 뭐라고 할까, 대통령 한마디에 대입제도가 바뀌고 대입제도의 단일 체제가 쪼개지고 있다는 게 과연 공론화인지 하달인지 이런 의문을 많이 갖고 있고요.

그때 제가 질문을 드릴 때 위원장님께서서는, ‘서·논술형이 가능하겠냐?’ 이렇게 물었을 때 위원장님께서서는 ‘AI로 하면 가능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기억하시지요?

○국가교육위원장 차정인 예, 그런 취지의 말씀도 하였……

(이광재 위원장, 정태호 간사와 사회교대)

○이인선 위원 PPT를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번 2018년에 문재인 정부에서도 서·논술형 도입 방안을 추진하다가 접었고 2023년 도에도 채점 공정성을 확보할 수 없다며 내신에만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꺼낸 이유가 뭔지 보니까 AI에 대해서 신뢰를 가지면서 시작하게 됐는데 여기 보면 결국은, 연구보고나 언론 기사를 통해서 본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백지인데도 AI가 85점을 줬고요. 같은 답이라도 채점할 때마다 A등급, C등급이 나뉘지고요. 그리고 제시문에 어휘를 골라서 자꾸 넣으니까 점수가 높아지는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AI를 맹신할 수 없으니까 AI로 채점한 다음에 교사가 다시 보완을 한다면 55만 명을 다 할 수는 없을 테고 일부 선별해서 검토를 한다면 놓친 오류는 어떻게, 학생의 대입 성적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보완할 생각이신지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국가교육위원장 차정인 먼저 서·논술형 평가 등에 대해서는 업무보고 전에 작년 12월부터 한 7개월 정도 준비해 왔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다음에 수능 서·논술형 문항 도입에 대해서는 그리고 AI 채점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는 사실을, 일단 현재 상태를 말씀드리고요.

지금 현재……

○이인선 위원 신중하게 검토해 주셔야 됩니다. AI를 맹신할 수가 없잖아요. 거짓말도 잘합니다, 아직까지는 AI가요.

○국가교육위원장 차정인 절대로 맹신할 수 없고……

○이인선 위원 예, 그렇게 명심해 주시고요.

조금 후에, 나중에 아마 위원장님께서 답변시간을 줄 것 같습니다만,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차정인 위원장님이 너무 막 나가는 것 아니냐, 이재명 대통령과 연수 동기라서 그런가 이런 언론이 나왔어요. 연수 동기는 맞습니까?

○국가교육위원장 차정인 예, 연수원 동기는 맞습니다만은 근무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인선 위원 맞습니까. 아무튼 언론에서 지금 과도하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언론에서도 그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국교위가 사회적인 합의기구인데도 불구하고 특위에서 논란된 안이 오면 자꾸 의결기구처럼 운영을 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대통령 한마디에 군사작전 퍼듯이, 이런 얘기들이 자꾸 나오고 오히려 국교위가 교육위 위에 있는 것처럼 보인단니까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답변해 주시고요.

○국가교육위원장 차정인 예.

○이인선 위원 그다음에 최교진 장관님, 지난 5일 전에 청와대 업무보고를 할 때 대통령께서 전남광주 독자 대입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고요. 그때 장관님께서 ‘특정 지역만 별도로 대입제도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니 대통령께서는 ‘너무 깊게 고민하지 마시라’ 이렇게 일단락 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2주 만에 전남광주에서는 이 대통령이 말한 서·논술형, 절대평가 이야기를 꺼내면

서 대입전형 특례를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아이들이 두 가지 입시를 준비해야 되고 대학은 또 두 가지 잣대로 기준을 가져야 되고 그러다 보면 지역 갈등이 있게 됩니다.

PPT를 한번 볼까요. PPT를 보면, 어쨌든 지난번 노무현 정부 때는 트라이앵글, 죽음의 트라이앵글 그래서 내신·논술·수능이었는데 이번에는 광주전남 독자전형까지 가면 지옥의 쿼드랭글이라고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벌써 학원가에서는 논술 강화 움직임에다가 초등학생 대상으로 독해력, 독서, 글쓰기 심지어는 손글씨 교정까지 지금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떠들썩하게 되면 창의성을 키우자는 정책이 오히려 더 거꾸로 가지 않는냐는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파만파로 퍼지는 이 입시에 대해서 장관님께서서는 빨리 가는 것보다는 분명히 점검해서 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백년대계, 교육교부금이 제대로 우리 교육부장관님 손으로 진행되도록 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진행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나중에—재정경제부차관님 나오셨습니다—말씀해 주시고요.

그런데 한 가지는 지난 28일 날 사립대학총장협의회에서 한 안을 보셨지요?

○**교육부장관** **최교진** 예.

○**이인선 위원** 거기 보면 설문조사를 했는데 고3 대상으로 응답자의 64%가 ‘국립대·사립대 구분 없이 전액 국가장학금을 지원해라’ 이렇게 답변이 나와 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지방 국립대를 살리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등록금을 전액 준다는 것을 가정해서 조사를 하니깐 ‘그러면 지방 국립대를 가겠다’ 4.3% 올라가는 대신에 ‘지역 사립대를 지원하겠다’는 2.2% 하락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더군다나 신입생 모집이 어려운 상황에 사립대학 입장에서는 정말 청천벽력 같은 이런 결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 강행할 입장인지가 궁금하고요.

수도권 쏠림을 막기 위해서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역 대학, 지방대학의 국립대학부터 하겠다는 건데 그 의미는 좋습니다. 국립대학부터 하는 것은 좋은데 늘 이렇게 너무 상향식으로 내려오면 사립대학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없으니까 그것을 잘 살펴보고요.

PPT를 한번 보시면, 교육부가 지난 금요일에 1인당 교육비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그 통계를 보면, 여기 통계표에 잘 나오는데요. 국공립대·사립대, 수도권·비수도권, 평장히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교육비 격차가 이렇게 난다는 게 염려가 되고요.

그다음 PPT를 보겠습니다.

그다음 PPT를 보면 비수도권에 있는 국공립대학의 지원금이 국가 전체 재정지원 금액의 약 42%, 2130억인 반면에 비수도권 사립대학의 지원금은 약 20%, 1150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가가 지방 사립대에 대한 지원을 너무 외면하는 것이 아닌가…… 지방 국립대를 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지방 사립대 문제도 반드시 지켜보고, 우리 지방 사립대가 뭘 잘하고 있고 또 뭐가 문제인지를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해 줘야 될 문제고요.

그러면 지방 사립대 특성화 지원에 지방 국립대 수준에 해당되는 만큼 다 주자는 게 아니고요. 지방 사립대도 특성화에 맞춰서 재정지원 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방 사립대에 대한 당근책을 줘야 장학금 개편하면서 지

역인재에 머무르게 되는데, 이번에 미래대응기금 있잖아요?

○**교육부장관 최고진** 예.

○**이인선 위원** 미래대응기금에 3280억을 편성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결국은 밥상에 앉아서 밥그릇으로 식사를 하는데 지방 국립대에는 고봉밥을 주고 사립대에는 밑바닥이 다 보이는 밥그릇을 주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반드시 균형감각을 가지고 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하시지요.

○**교육부장관 최고진**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즉 염려해 주신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교육부도 같은 고민을 가지고 있고 살펴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먼저 국립대와 사립대가, 특히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거라서 지역의 국립대와 사립대가 고르게 지원받아야 하고 고르게 발전해야 된다고 하는 데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래서 사립대학 지원 예산을 좀 더 확충하기 위해서 예산 당국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는 말씀이고요.

국립대뿐만 아니라 사립대에 특성화 지원이나 연구 인프라 구축, 지역인재장학금 확대, 지난번에 발표한 대학생 첫 경력 프로젝트 같은 사립대학이 각각 가지고 있는 강점 분야를 특성화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처음에 전남 쪽의 독자적인 대학 입시, 사실상 우리 대한민국 체제에서 대학 입시를 지역별로 따로 나누는 것은 아직 특별히 검토하고 있지 않고요. 다만 전남에서 서·논술형 도입을 하겠다고 한 것은 이미 지난 지방선거에서 당선되신 분의 당시 공약이었고요. 그것을 대학 입시와 연관 짓는 게 아니라 고등학교 내신과 교육 과정에서 서·논술형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하는 것을 발표했는데 이게 대입과 직접 연관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인선 위원** 장관님이 분명히 기준을 잡아 주셔야지 사교육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교육부장관 최고진** 예.

○**이인선 위원** 기준 잡아 주시고요.

차관님, 교육인재기금 미래대응기금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장관님한테도…… 교육인재기금에 대해서는 적어도 장관님이 그 내용을 판단하고 쓸 수 있도록 배려를 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고 계시지요? 하실 거지요?

○**재정경제부제2차관 허장** 예, 제가 잘 살펴보겠습니다.

○**이인선 위원** 교육교부금에서 떼 가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주셔야 됩니다.

○**재정경제부제2차관 허장** 예, 알겠습니다.

○**국가교육위원장 차정인** 위원님, 제가 좀 보충답변 드릴 게 있습니다.

AI를 활용한 채점은 지금 서울교육청, 경기·대구교육청 등이 이미 학교 시험에 도입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교사가 평가를 설계하고 채점하는 주체이고요, AI는 어디까지나 교사의 채점을 보조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교육청들은 그것을 확대하

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듯이 수능에 도입하게 되는 경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되는 경우에도 어디까지나 전문채점관 등을 중심으로 인간 채점이 중심이고요, AI는 어디까지나 보조수단으로 사용한다는 기조는 그대로 유지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매우 큰 변화기 때문에 교사나 학생, 행정 당국 등의 준비 기간이 상당히 많이 필요해서 만약에 도입된다 하더라도 상당한 횃수 동안 준비를 해서, 그리고 국가교육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제도 변화와 전문가들 중심으로 마련한 제도를 국민 공론에 부치고 국민 공론 과정에서 수정·보완을 요구하는 것을 다시 가져와서 또 수정·보완·개선하고 하는 과정들을 주고받고를 계속하면서 완성도를 높여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과정에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렇게 충분히 준비하도록 하겠고.

국가교육위원회는 지금 국민들이 걱정하듯이 그렇게 걱정할 정도가 아니고요. 위원들께서 의제에 충실한 논의를 상호 신뢰하면서 활발하게 하고 있다고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선 위원 교육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기 때문에 말장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해 주시고요. 교육청은 AI를 도입했다 하더라도 입시에 대입하는 것은 좀 더 천천히 해 주시면 좋겠고.

결국은 교육에 워낙 인구가, 학부모 내지는 학생이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지금까지 정권교체의 대부분이 교육 문제였습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교육위원장 차정인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태호 이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부천병의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위원님 질의 있겠습니다.

○이건태 위원 법원행정처장님께 좀 여쭙보겠습니다.

앞선 질의가 있어서 관련해서 좀 여쭙보겠는데요. 대법원장께서 대법관 제청을 대통령께 하면 대통령은 그것을 기계적·수동적으로 받아들여서 국회에 임명동의 요청을 해야 됩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 줄 압니다마는 제 개인적으로는 각자의 권한이 존중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태 위원 그러니까 대통령이 대법원장이 제청한 사람이 책임자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반대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국회에 임명동의를 요청하고 국회가 만약에 동의안을 통과시켰을 때 대통령이 국회의 임명동의 이후에 그것을 거절하면, 거부를 하면 헌법 질서와 체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불필요한 갈등과 불필요한 소모적인 정쟁을 막기 위해서 대통령이 대법원장에게, 제청 단계에서 대법원장의 제청과 대통령의 임명권이 모두 일치하는 책임자를 찾아서 국회의 동의를 요청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대답을 해 보세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그러한 문제가 있어서 그동안의 관행은 실질적으로 끝내 끝까지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해 왔습니다.

○**이건태 위원**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민이 직접투표에 의해서 대통령을 선출했으면 그 대통령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여전히 조희대 대법원장의 마음속에는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불필요한 행정부와 사법부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모든 원인은 조희대 대법원장 때문이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법원 전체를 생각하는 것보다는 본인의 정치적 소신을 앞세우고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법원행정처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건태 위원** 조희대 대법원장이 헌정질서에 대한 도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지 않을 수가 없는데 12월 3일 윤석열 내란수괴가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때 그 직후에 대법원은 대법원장 중심으로 법원행정처장과 핵심 간부들이 참여한 회의가 있었지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은 추후에 잠깐 들렀다고 들었습니다.

○**이건태 위원** 그래서 추후에 잠깐 들렀다는 그 시기에 어떤 논의를 했습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제가 그 자리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알지 못합니다.

○**이건태 위원** 법원행정처장은 그 중요한 대목에 대해서 업무 파악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특별한 얘기가 있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건태 위원** 비상계엄이 선포가 되면 법원의 사건이, 재판권이 그냥 당연한 효력으로서 군사법원으로 이관됩니다. 뿐만 아니라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가 제한되고 또 영장제도가 제한됩니다.

다시 말해서 비상계엄의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대상 기관이 법원입니다. 그러면 비상계엄이 선포됐을 때 대법원장은 법원행정사무의 총괄자로서 이 비상계엄을 수용할지 아니면 저항할지, 진압할지를 즉시 결정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답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건태 위원** 그런데 그 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대법원장이 이 비상계엄은 잘못된 것이다, 위헌·불법인 것이라라고 선언하고 재판권 이행을 나는 수용할 수 없다, 영장제도 정지에 대해서 수용할 수 없다라고 국민 앞에 선언하지 않고 침묵했다면 이건 침묵으로써 내란에 동조한 것 아니냐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그 당시에 많은 국가기관이 침묵했습니다. 그렇다고 그게 내란에 동조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건태 위원** 그러나 대법원장은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해당 기관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내야 된다 이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제가 답변드리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건태 위원** 이런 논의가 왜 계속 증폭되느냐? 조희대 대법원장이 계속해서 헌정질서 확립에, 원활한 헌정질서 유지에 협조를 하지 않고 계속 도발하기 때문입니다.

경찰청장 나오셨어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이건태 위원 권창영 특검이 내란 사건을 단기적으로 정리하기가 너무 어렵다, 정부에서 특별수사본부를 만들어서 계속 수사해 달라라고 요청했습니다. 경찰청장의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아직까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검토를 안 했는데 관계 기관과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건태 위원 지난번에 총리께서는 이 질의를 했을 때 특검이 그렇게 말씀을 했으면 검토할 의사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같이 들으셨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태 위원 방금 법원행정처장께 내가 질의한 이 대목, 특별수사본부가 만들어지면 이 대목을 살펴볼 의사가 있습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특별수사본부가 된다면 전반적으로 다 살펴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태 위원 행안부장관님께 여쭙보겠습니다.

보완수사권의 실효성 강화가 지금 당장의 현안인데요. 보완수사 요구를 했는데 경찰수사관이 이걸 불응하거나 해태할 경우에 감찰 및 징계를 강력하게 해야 된다는 요청이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건태 위원 이걸 의지 표명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건태 위원 꼭 좀 부탁드립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이건태 위원 그다음에 어떤 외부 감찰과 징계로도 이것을 완벽하게 막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경찰수사관 본인이 정답을 찾도록 노력하게 만드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 하면 경찰이 내린 수사 결론을 1심 판결 결과 또는 공소청의 최종 불기소처분 결과하고 한 5년 치를 대조해서 정량평가를 해서 하위 1%는 승진인사에서 배제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렇게 하면 담당 수사관이 스스로 정답을 찾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 이게 가장 적극적이고 포지티브한 방법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인사평가제도에도 반영이 돼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건태 위원 중수청이 장관님 산하에 만들어지는데요. 중수청도 공소청이 경찰관의 비위하고 직무범죄를 발견해서 통보했을 경우에 적극적으로 경찰의 비위와 범죄도 수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태 위원 이 부분을 전담할, 경찰 비위·범죄를 전담할 중수청 내 팀을 만들 의향

이 있으신가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공공수사과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건태 위원** 그다음에 시민 통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이 수사를 전적으로 책임지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그래서 시민들로 구성된 또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수사 심의회를 만들어서 경찰 수사를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가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경찰법에는 수사심의위원회가 법제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고요. 중수청은 이미 법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태 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이건태 위원** 그다음에 독립적인 감찰기구 또 각 경찰서에 인권감독관을 뒀야 된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가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건태 위원** 법무부차관…… 기조실장 나오셨나요?

○**법무부기획조정실장 차범준** 기조실장입니다.

○**이건태 위원** 이번 형소법 개정안 197조의2 3항에 이런 말이 있어요. ‘검사가 1항에 따라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경우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의 사건번호를 유지하는 등 보완수사의 이행여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이것은 사건이 경찰로 내려가더라도 사건번호는 동일하고 주임검사도 동일하다는 말씀이지요?

○**법무부기획조정실장 차범준** 예, 그렇습니다.

○**이건태 위원** 그러니까 주임검사가 사건번호가 바뀌더라도, 내려갔다 올라왔다고 하더라도 주임검사는 1명으로 고정돼 있어야만이 사건 통제가 가능하다 이겁니다.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법무부기획조정실장 차범준**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건태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잠깐 한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건태 위원** 예.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입니다.

당시 12월 3일에 있었던 것에 대해서 다시 보고받기를 당시 계엄은 위헌이어서 계엄사의 일체의 요구도 응하지 말라는 합의가 있었다고 들었고 그래서 이를 통해서 당시 내란 특검에서 철저히 조사한 끝에 모든 것이 다 무혐의로 결정되었다고 보고받았습니다.

○**이건태 위원** 그러면 대법원장이 또 대법원장의 지시를 받은 법원행정처장이 일체의 계엄사무에 협조하지 말라라고 하는 방침을 일선 법원에 하달했습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당시 일선 법원까지 요구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아마 대법원 행정처에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요구에 응하지 말라고 하였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응하지도 않았습니니다.

○이건태 위원 그게 내부 회의록이나 증거로서 남아 있습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아마 그런 회의록은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건태 위원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사실인지를 특검에서 조사를 했습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했다고 들었습니다.

○이건태 위원 법원행정처장이거나 그때 회의에 참석했던 사람들 불러서 조사를 했습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아마 서면조사였지 않을까 싶은데 특검에서 조사를 해서 최종적으로 무혐의 판정을 하였습니다.

○이건태 위원 그러면 특검이 이 사실관계를 국민들한테 보고를 했습니까? 알렸습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제가 담당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습니다만 당시 특검보께서 그 당시의 보도 내용이 오보라고까지 말씀하셨다고 보고받았습니다.

○이건태 위원 그러면 그 당시 그런 결정을 했으면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은 국민들한테 이 계엄은 불법·위헌 계엄이기 때문에 우리 법원은 일체 계엄법에 따른 재판권 이양 업무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왜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그런 선언까지 왜 안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건태 위원 그렇게 판단했으면 인권의 최후 보루라는 대법원이 국민들한테 이 계엄은 위헌·위법이다, 그래서 법원은 협조하지 않는다고 선언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계엄에 대한 최종 위헌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합니다만 헌법재판소도 그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건태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태호 이건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동작을 국민의힘 나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경원 위원 수고들 많으십니다.

선관위 사무총장님, 물어보겠습니다. 사무총장대행이 나오셨나요?

용혜인 지명은 저는 준연동형비례제 야합이 낳은 헌정사의 참사라고 봅니다.

준연동형비례제 지난 20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군소정당을 앞장 세워서 통과시켰습니다. 대의민주주의를 더 고양하겠다고 했지만 이중대, 의석수 늘리기, 불법적 정치거래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21대도 더불어민주당, 22대에도 더불어민주당이라는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용혜인 후보도 거기에 이름을 올려서 민주당 표로 당선이 된 다음에는 뭐 합니까? 위장 제명쇼를 합니다.

이 준연동형비례제 이렇게 왜곡된 것, 제대로 준연동형비례제의 원래의 취지대로 운영된다고 보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직무대리 강동완 선거관리 제도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어서……

○나경원 위원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선관위가 제대로 일을 안

한다는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보십시오.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느냐, 위장 제명쇼 해 가지고 다시 기본소득당으로 들어가 가지고 1년에 11억씩 돈을 받아 갑니다. 지금도 왜 비례대표의원직 사퇴 안 한다고 합니까? 일반적으로 국무위원으로 지명이 되면 다 비례대표의원직을 사퇴하는데 11억 못 받을까 봐 지금 사퇴 안 하는 것 아닙니까? 이건 명백한 국고 손실입니다.

선거제도 국회에서 정해 준 대로 한다? 선관위가 잘못된 선거제도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제도개선을 요청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선관위가 해야 될 일 맞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직무대리 강동완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검토하겠습니다.

○나경원 위원 검토 적극적으로 하십시오. 준연동형비례제가 한마디로 국고 손실의 문제뿐만 아니라 대의민주주의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보도자료에 따르면 11억씩 받아 가고 있어요, 11억씩. 용혜인 의원 왜 사퇴 안 합니까? 11억 지키려는 것입니다.

전성환 경청통합수석, 어제 제가 기자회견 한 것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3인방 사퇴 하라는 것 보셨습니까, 안 보셨습니까?

○대통령비서실경청통합수석비서관 전성환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나경원 위원 아니, 언론기사가 19건 이상 나왔는데 그것조차 확인하지 않으면 경청통합비서관 뭐 하러 합니까?

제가 어제 기자회견 한 내용은 이겁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으로 고점 대비해서 개미투자자, 일반 국민들이 50조 원 넘는 손실을 봤다 이것이 팩트이고 그리고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이 레버리지 ETF를 발행함으로써 실질적으로 2분기에 9000억 정도 이득을 봤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하나만은 아닙니다.

그런데 김용범 실장과 그리고 이찬진 금감원장의 아들이 둘 다 미래에셋에 근무한다는 거예요. 김용범 실장은 이것을 주도하신 분이고 이찬진 금감원장의 경우에는 금융위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발행할 때 의결에 참여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느냐,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참석할 수 없는, 한마디로 제척 대상입니다. 여기에 보면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 여기에 해당하지요, 미래에셋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비서관, 대답하십시오. 내용을 모르십니까?

○대통령비서실경청통합수석비서관 전성환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경원 위원 여기에 속합니다. 그리고 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발행했을 때 미래에셋이 발행할, 이 상품을 도입했을 때 미래에셋이 발행할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의결에는 참석하지 않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두 번이나 참석했습니다.

청와대 돌아가셔서요 정말 아들들이 재직하는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이해관계 충돌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시고. 그래도 야당 위원이 어제 기자회견까지 한 것도 파악하지 않는 청와대, 야당 위원 이야기는 안 듣나 보지요? 그러니까 불통 청와대라고 하는 겁니다.

가서 검토하시고 저희 의원실에 답변 주십시오.

○대통령비서실경청통합수석비서관 전성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나경원 위원** 법원행정처장님, 대법관을 임명할 때는 대법원장의 제청 그리고 국회의 동의, 대통령의 임명 이 세 가지 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저는 이 제청권이라는 것이 추천권보다도 더 중한 권한이다. 한마디로 대법원장이 대법원을 조직할 권한을 의미하고, 다만 이것을 국회의 동의와 대통령의 임명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하는 것이 삼권분립의 정신이라고 봅니다.

재제청이라는 권한이 법에 있습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법령에는 규정돼 있지 않습니다.

○**나경원 위원** 저는 헌법 104조의 문언대로 해석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국회의 시간이다, 청와대가 할 수 있는 것은 인사청문회법에 따라서 국회에 인사청문회 요구를 해야 되는데 인사청문회안을 송부하지 않는 것에 대한 설명을 해야지 재제청을 할 권한은 어떤 법에도 규정되어 있지 않고 따라서 오히려 지금 국회의장이 인사청문회안이 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동의 절차를 하지 않는다고 말을 하는 것이 맞다.

왜냐하면 역대로 어떤 대통령도 재제청 권한은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이 정부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노무현 대통령도 최종영 대법원장의 의견을 존중해서 제청권 행사한 것에 대해서 결국은 그다음 프로세스를 진행했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기승전 김민기 부장을 다시 올려라 이거예요. 그런데 법원조직법을 한번 봅시다. 여기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2항 조항을 보면 ‘추천위원회는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할 때마다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러난 퇴임한 대법관후보자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후보자 제청할 때마다 후보자추천위원회가 구성되니 이미 손봉기 후보자 제청으로 모든 후보자, 지난번 후보자추천위원회의 추천 절차는 다 종료된 것이고 그 후보자추천위원회의 추천리스트는 이미 종료된 것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령에 관하여 충분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나경원 위원** 지금 대법원에서 이 부분을 저는 세심하게 검토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오늘 법원조직법을 읽어 보니까 후보자를 제청할 때마다 만들게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손봉기 후보자 제청으로 이미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법원행정처장께 요구합니다.

새롭게 후보자추천위원회를 구성하십시오.

저는 민주당이 이렇게 기승전 김민기 부장을 고집하는 것은…… 당대표도 대통령이 마음대로 지명하더니 대법관도 본인 마음대로 지명하겠다, 이것 삼권분립이 아니라 삼권통일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법무부 기조실장 나오셨지요?

어디 계신가요?

○**법무부기획조정실장 차범준** 예, 여기 있습니다.

○**나경원 위원** 어제 김승원 장관후보자가 장관 임명이 되고 나서 이런 말을 페이스북에 얘기했습니다. ‘실체적 진실은 더욱 신속히 밝히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며 범죄피해자의 권리는 더욱 두텁게 보호하겠다’.

저는 보완수사권이 폐지된 지금 검찰이 할 수 있는 것은…… 실체적 진실, 더욱 신속히 밝힐 수 있습니까? 국민의 안전, 지킬 수 있습니까? 범죄피해자 권리, 더욱 두텁게 보

호할 수 있습니까? 무엇을 할 수 있지요? 법무부 산하의 검찰청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것 허황된 얘기입니다, 허황된 얘기.

저는 김승원 장관후보자가 그동안 민주당의 공소취소의원모임을 하면서 한 활동 및 발언을 쫓 봤어요. 봤더니 이런 얘기를 했더군요.

한번 보십시오.

올해 2월부터 공취모 대표로 열심히 활동을 하셨는데 3월 6일 TBS 봉지옥의 봉인해제 인터뷰에 나가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법무부장관이 지휘를 해서 공소취소를 해야 된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법무부장관의 구체적 지휘권에 해당된다고 보십니까?

○**법무부기획조정실장 차범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사실이라 답변드리기 좀 그렇습니다.

○**나경원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게 이게 물러난 정성호 법무부장관하고 정반대 얘기에요. 정성호 장관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 ‘공소취소, 검찰이 판단할 문제이다’. 한마디로 법무부장관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대상이 아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결국 김승원 장관후보자는 공소 취소하려고 임명된 장관이고 앞으로 저희가 똑똑히 그 과정을 지켜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대리 정태호** 나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고양병 더불어민주당 이기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기현 위원** 조현 외교부장관님께 좀 묻겠습니다.

지금 네팔 큰 홍수피해로 인해서 많은 네팔 국민들이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저는 네팔 국민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먼저 전합니다. 아울러서 저희 국민 9명도 현재 연락이 두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사귀환을 바라고 정말 좋은 소식이 있기를 바랍니다.

장관님께서서는 당일 상황이 발생하고 나서 재외국민대책본부 회의 주재하셨고 또 정부 합동신속대응팀 현지에 급파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외교부장관 조현** 예, 그렇습니다.

○**이기현 위원** 지금 구조활동이 지지부진하고 있는데 세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현지 상황을 저희는 영상으로만 보고 있습니다만 현지 상황이 굉장히 어려워 보입니다. 실제로 도로도 그리고 교량도 끊겨 있어서 헬기 정도로 이동이 가능한데 헬기도 대형 헬기, 소형 헬기는 좀 접근이 어려운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신속대응팀이 외교부 주관하에 가 있는데, 지금 9명의 실종자들 수색도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만 이분들도 지금 2차 홍수피해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의 안전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께서 특별히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장관 조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현 위원 또한 네팔에는 이렇게 9명이 실종된 저희 국민 외에도 많은 관광객과 현지 거주하는 저희 재외국민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안전한 일상생활이 보장될 수 있고 또 한국에 오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바로 오실 수 있도록 영사조력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외교부가 각별히 신경 써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외교부장관 조현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기현 위원 또 하나는 9명의 실종자 가족들이 굉장히 지금 고통 속에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외교부가 파악하고 있는 모든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 주시고 관련된 지원도 아끼지 않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그렇게 해 주시겠지요?

○외교부장관 조현 예, 그렇습니다.

현지에 계신 가족분들은 물론이고 서울에 계신 가족분들도 저희들이, 국장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난 토요일 아침에 가서 면담을 했습니다.

○이기현 위원 장관님 부탁드립니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님 나와 계시지요?

25년 법원행정처 의뢰로 합리적인 법원 신설·통폐합 기준 연구보고서가 발간이 됐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이기현 위원 고양시에 고양지원이 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인데 관할 인구의 규모, 관할 면적, 연간 본안사건의 수 그리고 사건 처리기간 이 네 가지 지표에서 지방법원 승격 기준을 충족했다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연구진도 고양지원을 승격 고려 대상으로 봤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이기현 위원 고양시하고 파주시 인구가 지금 160만입니다. 그리고 지금 국토부에서 아파트 많이 공급해 주셔서 저는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만 창릉 3기 신도시 플러스 파주의 개발계획이 완료가 되면 5년 안에 인구수가 약 200만에 육박합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의 본원 직할 인구도 107만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2배 규모가 5년 후에 달성이 됩니다.

창원·청주·전주·제주·춘천지방법원의 관할 인구보다도 고양지원이 훨씬 더 많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이기현 위원 저는 이 2심 재판도…… 고양에서, 파주에서 의정부가 굉장히 멍니다. 아시다시피 북한산성을 넘어서 의정부까지 가야 되는데 굉장히, 대중교통체계도 없기 때문에 대부분 다 자차를 이용해서 가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고양·파주 주민들이 의정부지방법원의 본원까지 이동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정부지원의 관할 인구보다도 훨씬 더 많고 사건 수나 여러 가지 규모에 있어서 저는 지방법원 승격 기준을 충분히 충족했다고 봅니다. 법원조직도 현실적 사법 수요에 맞게 조정돼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장님, 이것과 관련해서 김영환 의원께서 법원설치법 개정안도 이미 내놓은 상태입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알고 있습니다.

○이기현 위원 지금 검토만 할 단계는 떠났다고 생각합니다. 고양지원의 승격, 구체적으로 추진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의견 있으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노경필 예, 위원님 말씀처럼 고양지방법원 설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향후 입법 과정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현 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최취영 문체부장관님께 묻겠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 지방미술관 설치 타당성 용역이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예, 맞습니다.

○이기현 위원 제가 경기북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경기 서북부에 제대로 된 문화시설이 없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파주에 국립민속박물관 파주관 수장고로 존재합니다. 이것이 다입니다. 맞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예, 맞습니다.

○이기현 위원 여기는 고양, 파주…… 제가 김포까지 포함시키겠습니다. 한 문화권이고 경기 서북부가 하나의 생활권이기 때문에 이 인구가 현재 207만이고 금방 말씀드렸지만 창릉 3기 신도시, 한강신도시 그리고 파주의 개발이 끝나고 나면 약 300만으로 추산이 됩니다. 저는 이런 인구증가도 이 용역 선정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장관님, 제 말씀 동의하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예,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기현 위원 저는 문화 향유권은 지역에 따라서 차별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경기북부는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여러 가지 제약을 받아 왔습니다. 군사보호구역, 그린벨트 그리고 수정법에 의한 제한들을 받아 왔는데, 실제로 GRDP로 따지면 전국 평균보다 훨씬 못하고 하나를 떼어 놓고 보면 대구가 지금 17개 시도에서 꼴찌인데 경기북부가 더 아래에 있습니다.

장관님, 저는 이런 부분이 문화 향유권에 있어서도 정말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기북부 주민들이 이 문화 향유권마저도 뺏겨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립현대미술관, 국가가 건립을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동의하시지요? 관련해서 특히 운영비도 지금 이것을 지자체에 일정 부분을 책임지게 하는 것, 저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과 운영 관련해서 문체부가 책임지고 역할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연말에 그 용역 결과가 나오면 후보지 선정과 말씀하신 대로 국고 부담률에 대해서 충분히 협의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감안해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현 위원 올 연말에 후보지 선정이 끝난다고 들었습니다. 전국적으로 문화 향유권 관련해서 많은 국민들이 수도권, 특히 서울이 누리고 있는 혜택을 분산해서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이번에 국립현대미술관 분관 용역이 착실히 진행되고 원칙대로 진행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면 올 4월에 BTS 월드투어의 첫 스타트 공연이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약 이틀 간 있었습니다. 오신 관객 수가 13만 2000명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예, 알고 있습니다.

○이기현 위원 그리고 이 13만 2000명 중에 무려 70%가 외국인입니다. 그 상황도 알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예.

○이기현 위원 맞습니다.

지금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이런 대규모의 공연들이 계속 열리는 것은 서울의 종합운동장이 리모델링에 들어가 있고 상암에 있는 축구경기장이 잔디밭 보호 문제 때문에, 축구 국가대표선수들이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공연장으로 제공되는 데 일정한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에서 4만 석의 안정적인 체육관일 뿐인 고양종합운동장에 지금 이런 대규모 공연들이 몰려서 열리고 있습니다.

이 4만 석의 고양종합운동장이 당분간, 한 5년 동안은 이렇게 공연 수들을 감당해야 되는 상황에 아시다시피 K-컬처밸리에 지금 2만 석의 아레나가 지어지고 있고 그 이전에 프리 아레나, 야외 아레나가 3만 석이 또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 두 공간이 겹어서 10분 거리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킬로 수는 1km 조금 넘는 공간 간 거리인데, 이렇게 공연들이 집중되고 대통령께서 공약하신 5만 석 규모의 아레나가 지어지는 데 8년이라는 현실적인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면 이렇게 민간에서 이미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그리고 이미 4만 석의 안정적인 공연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고양종합운동장, K-컬처밸리에 대한 문체부의 지원이 저는 절실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 번 장관님께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 이 문제는 이렇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하나만 덧붙이면 저는 이렇게 많은 외국인들이 오셔서 고양에 머무르고 K-컬처밸리 그다음에 고양종합운동장에 수만 명이 와서 공연을 딱 2시간, 3시간 보고 다시 전철을 갈아타고 서울로, 숙소가 있는 다른 기타 도시로 이동하는데 굉장히 그분들이 와 주신 공에 비해서 대단히 저는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제안하는 것은 K-컬처 복합체험시설 같은 것들이 있으면 대단히 좋겠다. 이것은 MICE산업의 상징적인—저희가 잘 아는—킨텍스가 또 바로 옆 공간입니다.

킨텍스에 오신 분들 그리고 고양종합운동장에 공연을 보러 오신 외국인들 그리고 이제 곧 만들어질 3만 석, 2만 석의 K-컬처 아레나에 오신 분들이 바로 그 인근에서 팝도 체험하고, 실제 자기들이 체험도 할 수 있고 또 기타 문화행사들을 체험할 수 있는 K-컬처 복합체험시설 건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K-컬처 성과가 관광객 유입이랑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위원님 질의 취지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감안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현 위원 꼭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태호 이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산 북구갑 무소속 한동훈 위원님 질의 있습니다.

(정태호 간사, 이광재 위원장과 사회교대)

○한동훈 위원 권익위원장님 나와 계십니까? 권익위원장님!

○국민권익위원장 정일연 예, 그렇습니다.

○한동훈 위원 위원장님, 오늘이 청탁금지법 10주년 되는 날이지요?

○국민권익위원장 정일연 예, 그렇습니다.

○한동훈 위원 권익위가 기념할 만한 날 같은데 앞으로도 공직자의 청탁은 엄정하게 대응해 주실 것이지요? 기대합니다.

○국민권익위원장 정일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동훈 위원 청와대에서 나오셨나요, 누가?

○대통령비서실경청통합수석비서관 전성환 경청통합수석 나와 있습니다.

○한동훈 위원 공직자 인사검증 시에 저희가 방금 말한 공직자의 부정청탁은 중요한 검증 요소인 건 맞지요?

○대통령비서실경청통합수석비서관 전성환 예, 그렇습니다.

○한동훈 위원 공직 이용해서 부정한 청탁 한 사람들 공직에 발 붙이지 못하게 해야 되는 것도 당연히 맞는 것이고요, 여야 관계없이. 그렇지요?

○대통령비서실경청통합수석비서관 전성환 예, 그렇습니다.

○한동훈 위원 법무부차관 오셨나요?

○법무부기획조정실장 차범준 기획조정실장……

○한동훈 위원 차범준 검사님 반갑습니다.

법무부 공직자나 검사가 공직을 이용해서 어떤 신약 개발에 청탁을 했다면, 그 사실이 팩트로 드러났다면 당연히 징계해야 되겠지요? 만약에 그렇다면요. 그렇지요?

○법무부기획조정실장 차범준 예.

○한동훈 위원 김승원 법무부장관후보자가 국회의원으로서 주식회사 제넨셀이라는 회사, 코로나 신약 치료제 허가해 달라고 주점 등 운영하던 오랜 지인인 양 모 씨 통해서 청탁받아서 김강립 식약처장에게 청탁한 사실에 대해서 검찰 서부지점이 2024년 12월까지 수사한 사실이 있지요?

○법무부기획조정실장 차범준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는데……

○한동훈 위원 파악해 주십시오. 제가 아는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 아닌 부분은 교정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그렇게 수사를 했습니다. 그 상황은 결국은 문자메시지 등으로 실제로 그런 청탁이 오고 간 사실이 분명히 확인됐던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확인된 것은 김승원 의원은 판사 시절부터 그 양 모 씨를 잘 알았고 변호사 시절에도 그 양 모 씨의 주점 체불 사건을, 임금 체불 사건을 변호한 적도 있었고 그런 친분 관계들이 확인됐고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 어떻게, 어떤 내용의 청탁이 있었는지도 문자메시지 등으로 그리고 카톡 메시지 등으로 객관적으로 확인된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건 어떻게 처리됐는지 확인해 주시겠어요?

○법무부기획조정실장 차범준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동훈 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수사가 계속되다, 관련자들은 상당 부분 다 기소가 됐고요. 그런데 김승원 의원에 대해서는 2024년 12월 3일 계엄이 있고 탄핵이 있는 직후에 검찰이 슬며시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검사시니까 물어봅니다. 기소유예 처분은 무혐의 처분입니까?

○법무부기획조정실장 차범준 아닙니다.

○**한동훈 위원** 기소유예 처분은 혐의 내용은 인정되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기소 안한다 이런 내용이지요?

○**법무부기획조정실장 차범준** 예, 그렇습니다.

○**한동훈 위원** 그렇다면 지금 법무부의 장관으로 오겠다는 그분은 이런 청탁 사실이 검찰에 의해서 적어도 판단된 분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분 법무부장관으로 모셔도 되겠어요?

○**법무부기획조정실장 차범준** 그것은……

○**한동훈 위원** 사실관계를 파악해 보십시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저는 확인된 내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수사 과정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계엄 이후, 탄핵 이후 그러니까 어차피 대세가 바뀐 이후에 슬며시 무혐의 처분이 아니라 김승원 의원에 대해서 기소유예 처분된 것으로 저는 확인한 바 있습니다. 확인해 주십시오.

안규백 장관님!

○**국방부장관 안규백** 예, 안규백입니다.

○**한동훈 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특별히 어떤 사감을 갖고 여쭙보는 질문이 아니고 일반론으로 말해서 군무 이탈했던 사람이 국방부장관이나 국방부 공직자 맡는 것 문제가 있다고도 국민들께서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거기에는 동의하시지요? 본인이 그랬다고 제가 단정 짓고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국방부장관 안규백** 예.

○**한동훈 위원** 좋습니다.

이렇게 물어봅니다. 군무 이탈했던 사실 진짜 없습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없습니다.

○**한동훈 위원** 단언컨대 없으시지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없습니다.

○**한동훈 위원** 그러면 군이나 공기관에 의해서 군무 이탈로 오해 받았던 사실은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없습니다.

○**한동훈 위원** 그것도 전혀 없는 겁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예.

○**한동훈 위원** 영창 제도는 1896년에 사실상 육군정벌령으로부터 만들어졌더라고요. 그래서 백몇십 년간 유지되다가 2020년에 폐지됐지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동훈 위원** 그것 폐지될 때, 그 이후에 군기교육대라는 새로운 명칭으로 바뀌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연도에 영창 갔던 숫자를 보니까 전체 우리 군 인원의 1% 정도만 영창에 갔더라고요. 제 파악은 맞을 겁니다, 아마 수치는. 그러면 결국은 대단히 극소수의 문제 있는 사람들만 영창에 갔던 것인데요.

다시 한번 이렇게 여쭙습니다. 어떤 이유로든 간에, 어떤 사유로든 간에 안규백 장관님이 영창에 갔다 오신 적 있으세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그것은 지금 수사기관에서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제한됩니다.

○한동훈 위원 말씀드리기가 제한된다?

장관님, 아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지요. 군무 이탈한 사실 있냐, 군무 이탈 오해 받은 사실 있냐 이렇게 여쭙봤지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답하지 않고 단언컨대 아니라고 하셨어요. 영창 갔다 왔냐에 대한 답은 그게 아닙니다. 단언컨대 아니다가 아니라 그것은 수사기관이 수사 중이니까 답변이 제한된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 그리고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사실상 영창 갔다 온 것까지는 사실이다라고 보여지는데, 아닙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그것은 곧 밝혀질 걸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위원 장관님, 남의 일 아니지요. 지금 어차피, 그리고 장관 끝나시지요. 저는 장관님에게 사감 있어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왜냐하면 이것은 이재명 정권이 어느 정도로 인사검증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에 대한 문제고 또 하나는 인사검증에서 걸러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지금 이렇게까지 시끄러워졌었는데 분명히 저는 확인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정권이 군과 그리고 국가기관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에 대한 문제 제기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쭙습니다. 영창에 갔다 오셨습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그것은 곧 밝혀질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위원 다시 한번 여쭙습니다. 그러면 군무 이탈은 하셨습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그것도 곧 밝혀질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장관직을……

○한동훈 위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아까는 전혀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두 답변에……

○국방부장관 안규백 제가 장관직을 물러난 뒤에……

○한동훈 위원 장관님, 이렇게 여쭙습니다. 두 답변에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제가 장관직을 물러난 뒤 곧 밝혀질 걸로 그렇게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본인 국방위에서 경험이 많으신 선배 의원이십니다. 그러면 새로 강신철 후보자가 임명됐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알려지지 않은 군무 이탈 경력이나 아니면 전 인원의 1%도 안 가는 영창 갔다 온 경력이 있으면 국방부장관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 사안이 아닙니다.

○한동훈 위원 그것은 국민들 모두 이해하실 만한 사안이고 제가 답을 들으려고 한 얘기는 아닙니다.

다시 한번 여쭙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무슨 이상한 기록이 있다는 사실까지 인정해 놓은 상황에서 그것 장관 임명하기 전에 확인해 봐야 됩니까, 안 해 봐야 됩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그것도 제가 드릴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위원 장관님, 오늘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대단히 지금 참담한 심정이라는 것 말씀드립니다.

청와대에서 나오신 분 말씀 주시지요.

이렇게 여쭙습니다. 인사검증 과정 내지는, 인사검증이라서 말씀 못 하시면 좋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 이렇게까지 시끄러워졌는데 안규백 장관이 영창 갔다 왔다는 사실 확인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대통령비서실경청통합수석비서관 전성환** 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한동훈 위원** 아니, 본인이 확인할 수 없다는 문제가 아니라 청와대가 확인했어요, 안 했어요?

○**대통령비서실경청통합수석비서관 전성환** 그 내용을 잘 모릅니다.

○**한동훈 위원** 다시 한번 여쭙습니다. 저는 분명히 오늘 답변 태도를 보면 영창에 갔다 오신 것은 맞을 것 같아요.

장관님, 불합리한 일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영창에 갔다 온 것이 충분히 수긍할 만한 사유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것은 말씀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이쪽에 이미 공이 넘어간 거고.

그런데 청와대에 다시 한번 여쭙습니다. 청와대는 그것 파악 진짜 안 했어요? 물어본 사실도 없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가부를 묻지 않을게요.

○**대통령비서실경청통합수석비서관 전성환** 제가 알지 못하는 사항입니다.

○**한동훈 위원** 그러면 안규백 장관에게 그것 소명하라는 요구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통령비서실경청통합수석비서관 전성환**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은 잘 파악하지 못하고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한동훈 위원** 알겠습니다. 청와대 나오면 다시 한번 여쭙습니다.

기재부장관이 인천공항에서 어제인가 회군했잖아요, G20 참석하려다가. 그렇지요? 당초 G20에 기재부장관이 참여할 만한 공익이 있었던 건 맞지요? 국익이 있어서 가려고 했던 거지요? 그러니까 세금 들여서 비즈니스 칸 타고 가려고 했던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왜 회군한 겁니까?

제가 보기에 인사 때문인 같은데 기재부장관이 회군하기 전에 청와대에 ‘나 회군한다’라고 상의했습니까, 아니면 혼자서 그냥 팩 돌아서 회군한 겁니까?

○**대통령비서실경청통합수석비서관 전성환** 그 내용도 제가 알지 못합니다.

○**한동훈 위원** 그러면 왜 나와 계신 건지 모르겠어요.

자, 이렇게 물어봅니다. 경질되더라도, 여기 다 계시지만 경질되더라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게 공직자의 자세인 건 맞습니까? 청와대에서 나오신 분, 다시 여쭙습니다. 그것도 답 못 합니까?

○**대통령비서실경청통합수석비서관 전성환** 그 부분 최선을 끝까지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위원** 그런데 이 자세는 뭐지요? 지금 그냥 평시도 아니고 미국과의 엄청난 외교적인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여기서 인사 난다고 갑자기 공항에서 회군한다? 이것 말이 되는 처사입니까?

한 가지만 여쭙습니다.

검찰총장·경찰청장 장기 대행 체제예요. 저는 여기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생각해요. 검찰총장은 심우정 나간 다음에 노만석, 구자현, 지금은 박규형이라고 기획조정…… 기조부장입니다. 검사장일 뿐이거든요. 대행도 아니에요. 차장도 없어요. 대행의 대행 체제입니

다. 경찰청장은 이호영·유재성 1년 8개월째입니다.

검찰총장, 경찰청장, 법무부장관 모두 공적인 적이 대한민국 역사 이래 한 번이라도 있었어요? 없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권력기관은 대행 체제일 때 손아귀에 넣기가 제일 좋아요. 대행들은 다 대행 꼬리표를 떼기 위해서 정권에 잘 보이고 싶은 동기가 있습니다. 그 체제가 아무리 맛있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종더라도 이것 1년 8개월은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대통령비서실경청통합수석비서관 전성환** 인사 부분은 별도로 고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훈 위원** 별도로 고민만 하시고 알려 주시지는 않을 거예요? 이번 인사까지 제가 본 거예요. 이번 인사에서도 검찰총장, 경찰청장 임명 안 했지요. 그러면 끝까지 그냥 대행 체제로, 대행이라는 목걸이 잡고 가려는 거예요?

○**대통령비서실경청통합수석비서관 전성환** 조만간에 답변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훈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광재** 한동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북 증평·진천·음성의 임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참고로 임이자 위원까지 오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호선 위원** 국무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충북 증평·진천·음성 임호선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한동훈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저의 경험에 비추어서 대행 체제가 권력기관, 굳이 그렇다면 장악하는 데 그렇게 유용한 수단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들으면서 조금 의아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님.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임호선 위원** 지역사랑, 결산이잖아요. 결산 서류 보면서 지역사랑상품권 작년 예산서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PPT 한 장 띄워 줘 보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작년에 9996억, 추경 3996억 포함해서 집행이 됐는데 실집행률을 보니까 대구, 대전은 100%가 집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광주 47%, 절반도 집행을 못 했어요. 시도별로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불용액이 2055억입니다. 물론 늦게 편성이 됐기 때문에 집행기간이 짧았다 이런 것 다 좋은데 이걸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국비 지원율을 차등 적용했는데 이게 지방비 부담 때문에 그렇다면 차제에 지방비 부담률도 차등 적용을 고민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게 의지만의 문제입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우선 지난해에……

○**임호선 위원** 짧게 답변 주시겠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지방정부의 부담률을 차등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저희 부에서는 건의를 했습니다만 기획예산처가 수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임호선 위원 논의를 좀 해 주십시오. 말씀 끊어서 죄송합니다.

국가보훈부장관님,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장관님이 말으신 이후에 정말 보훈단체에서도 그렇고 많은 호응이 있었다는 말씀 먼저 드리면서, 작년 6월에 보훈부에서 독립유공자 공적 재평가 포상 기준 관련한 공청회 하셨지 않습니까?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 예, 했습니다.

○임호선 위원 그 이후에 재평가 방안이 제시가 됐고 우선 검토 대상 열두 분, 우리 지역의 이상설 선생님 포함된 것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 예, 알고 있습니다.

○임호선 위원 헤이그 정사이심에도 불구하고 아직 2등급에 머물러 계시고요. 그렇지요? 이분 생애 전체를 돌아보면 이분만 한 분이 안 계신 것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겁니다.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 예.

○임호선 위원 그 이후 심사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결과가 언제 나오는지 혹시 답변 주실 수 있을까요?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 전문가 회의 두 번을 거쳤고요. 공청회도 한 번 했습니다. 현재 계획은 내년 8·15를 전후해서 재심사를 하든 추가 심사를 하든 해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호선 위원 그러면 내년 광복절 때는……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 대상은 현재 22명입니다. 이제까지 신청을 한 분들에 대해서 22명 우선 심사를 하고 그 뒤에는 다시 절차에 따라서 추가 받아서 심사할 예정입니다.

○임호선 위원 꼭 좀, 저희 지역 현안이 아니라 전국에서 이와 관련된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청도 많으시고. 장관님, 꼭 좀 살펴 주시고요.

제가 지난주에 저희 지역의 보훈회관 다녀왔어요. 진천 보훈회관 준공식도 있었고, 이 달에. 저희 증평 지역의 보훈회관에 가서 거기 회장님들을 뵈는데 근본적인 문제가 생감이 나더라고요. 국가를 위한 희생과 가치가 전국 어디서나 같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훈의 기준이 희생과 공헌도지 주소와 재정자립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 예.

○임호선 위원 그런데 시군별로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예컨대 제가 그냥 워낙 많아서, 전몰군경유족, 참전유공자 미망인, 왜 우리 증평에 산다고 13만 원을 받아야 되고 충주에 산다고 20만 원을 받아야 되는가? 근본적인 회의가 드는 거지요. 그렇지요? 우리가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하면서 이분들이 국가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시고 그 유족들, 미망인분들 정말 힘들게 사시는데 왜 이럴까, 우리나라가 이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 50 대 50이라도 가져가는 게…… 더 잘사는 동네에 살기 때문에 더 많은 혜택을 보는 것은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정부 들어서 참전명예수당 4만 원인가 인상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 예.

○임호선 위원 참 잘하셨다는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더 많은 인상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인상 이전에 작년에 지자체 참전수당 관련해 가지고 가이드라인, 이행사항 다 점검하신 것 알고 있습니다. 저는 참전수당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상을 얼마를 해 달라 이것을 요구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분들의 희생과 가치를 지자체의 관심도에 따라, 재정자립도에 따라, 시장·군수·의회의 의지에 따라 이렇게 맡겨 둘 문제는 아니라고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드립니다.

장관님, 어떻게 보십니까?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중앙정부에서 주는 수당은 전국이 동일합니다. 그런데 지방정부는 일선 시군·시도마다 차이가 실제로 많이 납니다.

○임호선 위원 예, 그렇습니다.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 실제로 많이 납니다. 많이 주는 데는 월 60만 원을 주고요 적게 주는 데는 월 한 20만 원, 18만 원 이렇게 줍니다. 차이가 워낙 많이 나기 때문에……

○임호선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특수임무유공자의 경우를 제가 더 예를 들면요 아예 안 주는 데가 있고요. 많게는 20만 원씩 주는 데가 있습니다. 저희 충북 시군 11개 것 제가 파악했거든요. 그렇습니다. 많게 주고 적게 주고 문제가 아니라 아예 주거나 안 주거나까지 있어요.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장관님.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 이 점에는 각 일선 시군·시도에 보훈부가 공문을 시달, 직접 다닙니다. 다니면서 조금……

○임호선 위원 대한민국에서……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 서로가 형평을 맞추어서……

○임호선 위원 장관님, 무슨 말씀인지 잘 아실 거잖습니까. 대한민국이 이런 나라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 알겠습니다.

○임호선 위원 국가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 희생, 목숨까지 내놓으신 분들 참전수당, 6·25……

어제 ‘오디세이’ 봤어요. 제가 후기를 올렸더니 70년도에 월남전 참전할 때 태풍을 만났답니다. 그 말씀을 거기 댓글로 달아 주셨어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가슴이 미어지는 거예요. 그분들을 이렇게 방치해서는 안 될 문제 아닌가.

꼭 좀 살펴 주십시오.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 예, 하신 말씀 유념해서 일선 시군·시도와 최대한 협의를 해서 서로 공평하게, 공정하게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임호선 위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님 나와 계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예.

○임호선 위원 어디 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위원님, 여기 있습니다.

○임호선 위원 장관님, 애 많이 쓰시지요?

PPT 하나 띄워 주세요.

저는 장관님께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 혜택을 많이 봤어

요. 저희 딸내미가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공부를 6년인가 몇 년 해 가지고 싸게 대학을 마쳤기 때문에 늘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이 통계를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란 게요 공연 건수를 살펴보니 수도권에 63.1%예요. 충북, 제주도…… 세종 다음에 꼴찌예요. 제주도만큼도 안 됩니다. 왜 그럴까? 아, 공연장이 없기 때문에, 아니면 콘텐츠가? 뭐지? 우리 충북 산다고 이렇게 문화 혜택에서 소외돼서야 되겠는가.

그래서 충북도에서도, 자료를 죽 찾아봤어요. 도에서도 안 하려고 했던 게 아닙니다. 유인촌 전 장관님이 24년 10월 16일 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방의 아트센터와 같은 대규모 공연시설……’ 국비 못 넣잖아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예.

○임호선 위원 행안부장관님이 특교 5억, 10억 이렇게 주면 거기서 조금 해서 7억도 보태기도 하고 뭐 조명 깨졌다고 그러면 2억도 보태기도 하고 이렇게 쓰고 있어요. 저희 지역 문제입니다.

그런데 유인촌 장관님이 아세요. 그러니까 ‘지방의 아트센터와 같은 대규모 공연시설은 국립으로 건립하고 법인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24년도 10월 우리 충북도의 요청에 대해서 답변하신 말씀이세요.

하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

○임호선 위원 답변 요구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아니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지요?

국가대표선수촌 저희 지역에 있어요. 가 봤습니다.

트레이닝룸 가 보셨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예, 가 봤습니다.

○임호선 위원 어떻게 느끼셨어요? 저희 지역에 있는 고급 호텔은커녕 동네 헬스장도 그렇게 안 갖춰 놓습니다. 국가대표선수촌입니다. 저는 그분들 운동하다가 헬기 잘못 들다가 옆 사람한테 맞을까 봐 걱정되더라고요.

트레이닝센터 다시 지어 주실 용의 있으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예, 계속 부족한 부분들은 보완하고 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임호선 위원 덤벨·바벨 덩어리 몇 개 사다 놓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혼잡도 보십시오. 옆에서 운동하는데 치여 가지고 국가대표 선수들이 운동 제대로 되겠습니까?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예.

○임호선 위원 또 가서 보니까 포토 존도 없어요. 얼마나……

이 자리에 계신 장관님들 국가대표선수촌 한번 애정을 가지고 방문해 주십시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중계방송만 보시지 마시고.

좀 달라지는 대한민국의 위상이 저는 이런 데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광재 임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호선 위원님 질의를 들을 때마다 발로 뛰는 국회의원이라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오늘 오전의 마지막 질의입니다.

존경하는 임이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이자 위원 청와대에서 나오신 분들 많이 계시지요?

○대통령비서실경청통합수석비서관 전성환 예, 나와 있습니다.

○임이자 위원 그냥 듣고만 계세요.

저는 언론매체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개각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경제부총리께서 미국에 협상하러 가는 과정 속에서 공항까지 가셨는데 거기서 다시 들어왔다가 또다시 가는 그런 촌극을 보고 같이 1년 가까이 일하신 장관에게, 아니 경제부총리에게 저렇게 모욕적으로 할 수가 있는가, 사전에 얘기라도 귀뜸을 해 주든지 아니면 갔다 올 때까지 기다리든지, 어떻게 일을 그렇게 하십니까? 국민주권이기 이전에 공직자들에게도 예의를 갖춰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냥 대통령께 전해만 주세요.

법무부차관님, 안 나오셨나요?

○법무부기획조정실장 차범준 예.

○임이자 위원 그러면 차범준 기초실장이신가요?

○법무부기획조정실장 차범준 예, 그렇습니다.

○임이자 위원 지금 E-8, 그러니까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요?

○법무부기획조정실장 차범준 예, 알고 있습니다.

○임이자 위원 합법적 고용이 가능하도록 설계를 해 봤는데 이 제도를 도입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지요?

○법무부기획조정실장 차범준 일손이 부족한 농어촌에 적절한 시기에 외국인근로자를.....

○임이자 위원 농촌에 일손이 왜 부족하다고 생각하시지요?

○법무부기획조정실장 차범준 지방에 청년층 인구가 감소한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임이자 위원 그렇지요? 고령화돼 가고 점점 갈수록 일손이 부족해서 여기에 대한 대응책으로 우리가 외국인노동자를 계절 한정해서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를 설계해 봤습니다.

최장 몇 개월까지 고용이 가능하지요?

○법무부기획조정실장 차범준 종전 8개월인데 조금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이자 위원 8개월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일반형이 있고 공공형이 있지 않습니까? 일반형과 공공형의 차이가 뭐니까?

○법무부기획조정실장 차범준 그 부분까지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임이자 위원 자세히 모르십니까?

○법무부기획조정실장 차범준 예.

○임이자 위원 아무래도 출입국관리본부에서 하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공공형 같은 경우에는 농식품부의 지원을 통해 가지고 농협이 직접적으로 고용해서 일손이 있는 농가에 인력을 보내 주는 그런 제도인데요. 이 제도로 인해 가지고, 설계는 사실은 농촌의 일손 부족을 위해서 외국인노동자를 계절적으로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해 놓은 건데 이 부분이 지금 농민들이 난리가 났지요? 알고 계십니까?

○법무부기획조정실장 차범준 예, 어느 정도 들었습니다.

○임이자 위원 완전 농민들을 범죄자로 다 만들고 있다고 지금 난리가 났는데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법무부기획조정실장 차범준 제도가 어느 정도 경직성이 있어서 그런 것 아닌가 싶습니다.

○임이자 위원 제도가 어느 면에서 경직성이 있다고 생각하시지요?

○법무부기획조정실장 차범준 지금 문제 되는 것은 허가가 된 고용주에게 소속된 외국인근로자가 다른 농가로 옮겨서 근무하는 데 지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이자 위원 문제가 심각하지요?

일단은 PPT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좀 전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계절근로자 배정도 늘어나고 있고 운영 규모도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커지고 있는 내용들은 대부분 보면 농어촌 지역에서 가장 많이 규모가 커지고 있는데 전남·경북·충남·강원·전북 이렇게 농어촌이 굉장히 규모가 커지고 있고.

방금 전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왜 농민들을 범법자로 만들고 있느냐, 이것은 출입국관리법 제21조(근무처의 변경·추가) 부분입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법무부기획조정실장 차범준 예, 그렇습니다.

○임이자 위원 이 부분이 상당히, 보시게 되면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위법했을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고요. 또 ‘누구든지 근무처의 변경허가·추가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거나 고용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고 여기에 대해서 위법했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것은 알선한 업자지요—그리고 고용하신 분들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 더 나아가서 업은 아니나 알선한 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다 보니까 농민들이, 고용한 자가 농민들에 해당되는데 이 부분을 잘 모르고 사용했다가 전부 다 지금 범법자가 돼 있습니다.

다음, 지금 계절근로자 E-9 체류자격 외국인의 21조 1항 위반한 현황을 보게 되면 2년 만에 14.3배가 돼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실장님?

○법무부기획조정실장 차범준 예, 알고 있습니다.

○임이자 위원 보고받아서 잘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미리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서 허가를 받는 데는 며칠 걸리는지 아십니까, 적어도?

○**법무부기획조정실장 차범준**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임이자 위원** 한 5.6일 정도 걸립니다.

저기 뒤에 계시는 국가보훈처장관이신 권오을 장관님 시골 출신이라서 너무 잘 알겠지 만 농가가 비 오면 바로 일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수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시기를 기다려 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사전에 법무부장관한테 신고하고 승인받고 이러려고 하면…… 경북 상주가 제 고향이고 제 지역구인데요, 콧감 짝고 그랬을 때는 진짜 누워 계시지만 않으면 할머니들 을 다 모셔 와서 콧감을 짝아야 될 그런 시기이기도 하고 비 왔을 때 또 바로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 부분 관련돼 가지고 상당히 급하니까, 일손을 빌려야 되니까 사 람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아요. 그래서 쓰고 나면 아까 보여 줬다시피 그런 벌금형 이 떨어지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농민들이 지금 아우성입니다.

다음 한번 보시지요.

농민을 범법자 만드는 현행 제도, 외국인 고용 유연화해야 된다. 일할 사람이 없어서 외국인을 썼는데 범칙금 폭탄 132명, 이게 우리 상주 얘기입니다. 제 지역구입니다. 같은 선주 배도 옮겨 타면 불법이다. A사를 통해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한 농민들도 함께 대구 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조사 대상에 오르고 있다. 이래서 농민들이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이제 더 이상 이렇게 두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실장님? 이것 제도를 다시 설계해야 되지 않겠어요?

○**법무부기획조정실장 차범준** 그래서 법무부에서는 고용주의 계절근로자 고용 및 근무 처 변경 요건을 합리적으로 완화하는, 현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도록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임이자 위원** 이 부분이 굉장히 불합리한 건 맞지요, 실장님?

○**법무부기획조정실장 차범준** 예. 처음에 제도가 설립될 때 외국인력 관리 측면에서 규 정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임이자 위원** 뒤에 있는 국가보훈처 권오을 장관님께서 고개를 더 끄덕끄덕 하십니다. 이걸 고쳐야 된다는 거 맞지요?

그래서 본 의원이 지금 출입국관리법 제21조를 개정하는 안을 발의해 놓았습니다. 기 존 근무처와 동일한 읍·면·동, 같은 동네 그다음에 또 같은 동, 같은 면, 더 나아가서 법 무부령으로 정하는 인접지역 내는 좀 완화시켜 줘야 된다. 그리고 고용기간을 1회당 법 무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초과하지 않을 때 그다음에 기존 근무처 사용자의 서면동의가 있을 것 이런 부분들을 했을 때는 처벌받지 아니하고 변경허가·추가허가를 하도록 하고 또 사전에 고용했다 하더라도 사후에, 한 15일 이내에 이 부분을 신고하면 이런 부분은 면제해 줘야 된다고 제가 법안을 발의해 났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무부기획조정실장 차범준**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서 적 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이자 위원**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법무부기획조정실장 차범준** 예.

○**임이자 위원** 농민들을 위해서 마련한 이 제도가 오히려 농민들을 옥죄고 농민들을

범법자 만드는 부분들은 반드시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쪽 더불어민주당에 정태호 간사님께서도 계시는데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위원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출입국관리법 제21조 개정안에 대해서는 좀 더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법무부에서는 이 부분이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에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법무부기획조정실장 차범준**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임이자 위원** 고맙습니다.

농민을 위한 제도가 농민을 옥죄고 범죄자를 만드는 그런 법으로 전략해서는 안 되니까 반드시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기획조정실장 차범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이자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재** 임이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국무조정실에서 나와 있지요?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김영수** 예,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이광재** 지금 임이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문제는 이건 모두의 공통적인 지적사항 같아요. 그래서 결국 미국이라는 나라가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이민자를 통해서 오늘을 만들었는데 적어도 한국이 개방형 통상국가를 지향한다면 뭔가 근본적인 제도변화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회의를 해 보면, 외교부가 보는 큰 틀의 구상과 산자부와 농림부와 경제부처가 합동회의를 해 가지고 미래지향적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외국의 인재를 함께해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 건가를 정해 놓고 그다음에 법무부가 이걸 따라가야지 법무부가 중심이 돼서 하니까 이게 전혀 변하는 게 없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에서 관계부처와 외교부와 큰 틀에서 우리가 어떤 나라를 향해 나아갈지 그 부분에 대한 기본계획을 세워서 제도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김영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재** 오찬을 위해 정회했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광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기 전에 지난 회의에서 확정하지 못한 결산소위 위원 명단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소속 위원은 각 교섭단체 추천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은 정태호 간사님, 허성무 위원님, 김성희 위원님, 박지원 위원님, 국민의힘은 유상범 간사님, 배준영 위원님, 이종욱 위원님, 이상 7명으로 구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소위원장은 지난 회의에서 의결한 대로 유상범 간사님께서 맡아 주시겠습니다.

소위원회 심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소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수고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각 부처에서도 소위원회 심사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유상범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이광재** 예, 말씀하십시오.

○**유상범 위원** 제가 알기로는 예결심사 이 과정은 벌써 한 3주 전에 이미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증인 출석도 사전에 통지를 받아서 합의가 다 끝난 사안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회의가 시작되기 한 시간쯤 전에 지금까지 통보되었던 김용범 정책실장이 나오기로 했던 것을 갑자기 예산 관련된 긴급회의라고 하면서 청와대에서 일정이 있어서 나올 수 없다, 그래서 양해를 구해 달라는 요청이 왔습니다.

예산은 말이지요, 기획예산처에서 한참 전에 시트를 마감할 정도로 예산과 관련된 부분은 이미 다 끝났고 곧 정부의 예산안이 제출됩니다. 이 시점에 청와대에서 예산 관련 긴급회의를 할 사안이 뭐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이런 상황이라면 적어도 사전에 위원장께 양해가 있거나 뭔가를 해야지 이런 식으로 소위 말해서 예결위장에 나오기 싫다는 명분으로 긴급회의라는 이유를 대는 것……

이것 위원장께서도 용납하시고 정태호 간사도 용납해 주신 것 같은데 이것은 말이지요 행정부, 청와대에서 국회의 예산심의 과정 자체를 철저히 무시한 겁니다. 이걸 이런 식으로 쉽게 용납을 해 주시는 모습을 보이면, 앞으로 어떤 경우든 각 부처에서 긴급한 현안이 있다고 하면 다 들어 주실 겁니까? 청와대이기 때문에 들어주신 겁니까? 이것 너무 오만하지 않습니까?

제가 예결심사를 시작할 때부터 특활비에 대한 자료제출이 안 돼 있다, 예비비에 대한 자료제출이 안 돼 있으니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를 해 달라는 요청을 제가 세 차례에 걸쳐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 귀에 경 읽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완전히 야당 간사의 요구를 우리가 소위 말하는 속칭 개무시하고 있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 이 상황에서, 정책실장이 특별한 명분도 없고 객관적인 일정도 없는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긴급회의라는 명분으로 빠지기 시작한다면 우리 국회와 청와대가 한 일정의 약속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이런 식의 무슨 긴급회의니 뭐니 이런 공식적인 부분이 아닌 걸 가지고 한다면 위원장이나 여당 간사도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셔야 되고.

다시 한번 요구드립니다. 저는 도저히 동의할 수 없으니 지금이라도 김용범 실장의 출석을 요청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광재** 방금 유상범 위원께서 결산심사와 관련해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출석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정태호 간사랑 금방 의논을 하고 유상범 간사님하고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호 간사랑 저랑 의논하고 좀 이따 유상범 위원님께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따가 별도의 만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북 청주 청원의 더불어민주당의 송재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재봉 위원** 청주 청원 지역구의 송재봉 위원입니다.

국방부장관님이 안 계시지요? 차관님 계신가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차관이 대참했습니다.

○**송재봉 위원** 저는 오늘 군용비행장 주변 주민들의 소음 피해 문제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 군용비행장 주변에는 현재도 한 40만 정도가 군소음 피해보상을 받고 있지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그렇습니다.

○**송재봉 위원** 그런데 사실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들 인원으로 치면 이보다 훨씬 더 많은데 굉장히 제한적으로 지금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도 잘 듣고 계시지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그렇습니다.

○**송재봉 위원** 전국적으로 보니까 고시된 비행장만 41곳 정도가 되고요. 정말 면적도 굉장히 크기도 하고 또 새로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피해 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있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정말 ‘우리 동네 사람들은 비행기 소리를 오래 들어서 일찍 귀가 먹는다’, 저도 다니다 보면 그런 얘기를 참 많이 듣거든요.

혹시 차관님, 실제 소음 피해가 나는 지역에 좀 가 보신 적은 있으시지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저는 군 출신이어서 복무도 많이 했고 근처에 살아 보기도 하고, 많이 했습니다.

○**송재봉 위원** 그러면 현장에서 소음의 크기라든가 주민들이 느끼는 고통의 크기는 충분히 잘 알고 계시겠네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그렇습니다. 누구보다 우리 안보를 위해서 전국 비행장을 비롯해서 사격장 등 여러 곳에서 소음 피해를 겪고 계시는 주민분들의 불편함은 익히 잘 알고 있고 또 감사함을 갖고 있습니다.

○**송재봉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이 고통을 사실 그냥 감내하고 있는 수준이고 우리 국가가 이 피해에 대해서 적절하게 제대로 보상을 하고 있느냐라고 따져 보면 저는 굉장히 미흡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에 43만여 분이 이 소음 피해를 받고 계시는데 사실 개인이 받고 계시는 소음 피해보상 금액은 약 1인당 평균 월 2만 3000원 정도로, 보상이라고 말씀드리기도 좀 뭐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송재봉 위원** 그렇지요. 일상적인 생활 방해를 받고 있다. 옆 사람과 기본적인 대화도 어렵지 않습니까, 훈련 기간 동안에는?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그렇습니다.

○**송재봉 위원** 저도 있어 보면 대화가 아예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청력이라든가 이명이라든가 이런 증세를 호소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 또 수면장애, 불면증 이런 경우도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요. 또 스트레스성 질환도 더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서적 불안감까지 느끼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한 이 지역에 있는 학교의 경우는 사실 학생들의 수업권이, 학습권이 방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된 방음시설조차도 제대로 지원이 안 됩니다, 지금. 그것도 알

고 계시지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그렇습니다.

○송재봉 위원 그러니까 학생들이 수업에 실질적으로 지장을 받고 있는데 왜 국가가 이에 대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가, 저는 납득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더 크게 경제 재산권에 피해가 있습니다. 사실 이 지역은 부동산, 어디는 정말 너무 올라서 난리인데 여기는 부동산 가치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경제적 피해를 굉장히 크게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누구도 보상해 주지 않습니다. 누구도 관심 가져 주지도 않습니다. 축산농가도 마찬가지고요, 또 건축과 개발 제한, 고도 제한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어요.

제가 저희 지역 중에 오근장동인가 그 지역에, 내수 쪽인데 체육관을 지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전투비행기 이착륙과 연관된다고 해서 야간에 조명을 못 쓰게 하는 바람에 수백억을 들여 지은 그 건물이 무용지물이 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저런 것들이 그런데 제대로 사전에 협의되거나 군하고 원활하게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문제 이런 것이 있다.

제가 이것을 장황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차관님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여기 계신 국무위원님들도 정말 이 문제에 관심 가져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소음피해에 대한 보상금이 평균 2만 얼마라고 그러셨지요? 2만 2000원……

○국방부차관 이두희 2만 3000원.

○송재봉 위원 예. 명목상으로는 1종·2종·3종으로 나뉘어져 있어서 1종은 6만 원, 2종은 4만 5000원, 3종은 3만 원인데 사실상은 3종이 대부분이지요. 3만 원인 3종이 대부분인데 이 또한 각종 감액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많은 감액 기준을 적용하면 사실상은 월 2만 원대 정도밖에 보상을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보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정도 가지고?

○국방부차관 이두희 부족함이, 불편함을 겪고 계시는 데 비하면 참 부족함이 많이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송재봉 위원 그런데 이 보상금의 기준 시점이 있지요? 이 보상액이 책정된 기준 시점이 언제인지 알고 계시지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2010년 대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

○송재봉 위원 그러시지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그 이후에 물가상승률이나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현실을 반영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송재봉 위원 그러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보면 2010년의 보상 기준이 오늘까지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물가상승률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어요. 왜 이렇게 된 겁니까?

○국방부차관 이두희 이게 제도가 만들어지고 하면서 2023년도부터 실제로 보상은 시작되었지만 첫 출발을 하다 보니 현실성에 맞게 인상하는 부분은 못 했고 저희들이 예산당국과 협의하고 또 국회와 공감대를 형성해서 그걸 좀 인상시키려고 하는 시도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송재봉 위원 이번에는 그래도 최소한 물가상승률 정도는 반영할 수 있을 정도로 현

실화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저희 국방부 입장에서는 적극 동의를 하고 다만 지금 여러 가지 재정 여건상 여의치 않은 부분이 있는데 국회 예산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그걸 힘을 실어 주시면 도움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재봉 위원 그리고 이 보상도 현금보상만 되고 있지 그 주변에 여러 가지 규제로 인해서 피해를 받고 있는 지역에 대한 지원은 아예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그렇습니다.

○송재봉 위원 그 문제 또한 함께 고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민·군 복합공항인 지역이 꽤 많이 있지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그렇습니다.

○송재봉 위원 전국에 꽤, 여섯 곳인가? 여덟 곳 정도 되네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송재봉 위원 그런데 이 민·군 복합공항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소음대책과 관련된 지원이 일반 민항만 있는 공항은 별도의 지원이 되고 있지요? 이게 착륙료 수익의 75%를 재원으로 해서 소음대책과 주민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2025년 기준으로 보니까 448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군과 민이 같이 쓰는 공항의 경우에는 이 직접적인 보상을 하고 있다는, 정말 액수도 말도 안 되는 액수를 하면서 이것을 명분으로 해서 아예 이 보상에서 제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또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이중, 삼중의 손해를 보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문제 개선돼야 되겠다고 생각하시지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청주공항이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될 수 있는데 그 부분도 공감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송재봉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에 반드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주민들이 받는 고통의 크기에 비례해서 제대로 좀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노력하겠습니다.

○송재봉 위원 그리고 법원행정처장님께 좀 질의드리겠는데요.

가정법원 설치와 관련해서 앞서도 질의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전주에 얼마 전에 가정법원 설치가 동의가 됐지요? 행정처장님 어디 계신가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여기 있습니다.

○송재봉 위원 그런데 제가 통계 자료를 봤더니 청주지법의 경우에 가사·청소년보호 사건 접수 현황 최근 5년 치를 비교해 보면 청주지방법원의 사건 수라든가 이런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전주보다 작지가 않거든요. 오히려 사건 총수는 훨씬 더 많게 돼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지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송재봉 위원 그런데 왜 이게 전주지법이라든가 최근에 또 어디가 됐었지요? 전주……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창원.

○송재봉 위원 창원 여기는 설치가 결정이 났는데 청주·의정부 이런 데는 지금 아직 진

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맞습니다.

○**송재봉 위원**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위원님 말씀처럼 전문 법원으로서의 가정법원 설치의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송재봉 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것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의지를 가지고 노력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현재 입법안이 제출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봉 위원** 그 입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협조할 생각이 있으시지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송재봉 위원** 법과 관련된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것은 어느 지역에 있든지 동등하고 공평하게 받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 차원에서 청주가정법원의 설치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알겠습니다.

○**송재봉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재** 송재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산 동래의 서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지영 위원** 부산 동래구 서지영 위원입니다.

법무부장관님, 오늘 오전에 보도에서 신천지·통일교의 정교유착 합수본의 수사가 종료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이진수** 예, 오늘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서지영 위원** 한 32명 정도 기소하고 종료되었다고 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분명히 신천지의 민주당 전당대회 개입설을 김민석 당대표가 전당대회 기간에 제기했었습니다. 그때도 제가 이 질의 했었는데요. 본인이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이분 불러서 조사했습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법무부장관직무대행 이진수**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지 여부까지는 법무부에서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서지영 위원** 차관님, 증거를 가지고 있다면 즉각적으로 압수수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민석 총리와…… 김민석 당대표—당시에는 후보였지요—후보와 그다음에 민주당 사에 대해서 압수수색했습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 이진수** 신천지 등 종교단체의 정당 가입과 관련해서 여러 정보나 수사 관련된 제보에 대한 가치와 어떤 방법으로 수집할 것인지는 합수본에서 판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지영 위원 전직 총리를 지낸 분이 본인이 증거가 있다고 했는데 그 증거의 가치가 굉장히 높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저는 당연히 민주당사든 김민석 후보든 압수수색하고 증거를 확보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법무부장관직무대행 이진수 그런데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합수본에서 수사 과정에서 충분히 판단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서지영 위원 그 합수본의 판단에 대해서 국민적 의혹이 너무나 큼니다. 왜냐하면 이미 3월 달에 신천지 개입 의혹이 나왔었는데 합수본은 그것을 공개다가 김민석 후보가 본인의 SNS에 게시하고 나서 한 이틀 뒤인가요,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다라는 보도가 나왔다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총리를 지낸 사람이 민주당의, 여당의 전당대회에 신천지가 개입했다는 정황과 증거가 있다라고 대중들 앞에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합수본은 압수수색하지 않습니까? 증거 확보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증거를 일부러 확보하지 않았다면 그거야말로 합수본의 직무유기 아닙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 이진수 해당 단체의 정당 가입, 강요 등과 관련해서도 수사가 이루어졌고 책임자 등에 대해서 기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지영 위원 차관님, 증거가 있다고 얘기했는데 증거를 하나도 일부러 확보하지 않았습니다. 그 증거에 대해서 조사하려고 하는 의도도, 시도도 없었습니다. 저는 합수본의 수사 결과에 대해서 국민들이 신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합수본은 증거를 은폐하는 데 기여했다고 생각하고 사실상 공범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사실상 합수본이 의도적으로 전당대회에 개입한 게 되겠지요. 신천지가 아니라 합수본이 민주당 전당대회에 개입한 게 아닌가 그렇게 국민들은 생각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합수본의 활동에 대해서도, 앞으로 경찰의 수사에 대해서도 과연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을지 굉장히 의문스럽습니다.

예결위에서 그렇게 질의를 했는데 조사하는 시늉은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수사 결과를 어떤 국민이 믿겠습니까? 저는 굉장히 신뢰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재수 시장님이지요. 당시에 후보 시절에 허위사실 공표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미 여러 부처 장관님께 확인한 사항입니다. 해수부장관 시절 문체부장관님을 만나서는 사직야구장 재건축 예산을 본인이 증액시켰다고 하고 사실상 양립하기 어려운 북항 돔야구장에 대해서도 해수부와 관련 부처 그다음에 항만공사와도 협의를 했다고 지속적·반복적으로 후보 시절에 언론에 공언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은 어땠을까요? 문체부장관님께서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얘기했고 서면으로도 저에게 제출해 주셨습니다. 장관님, 그런데 전재수 시장은 나중에 또 언론에 나와서 장관님을 만날 때마다 국무회의에서 얘기했다고 했습니다. 지속적·반복적으로 부탁했다는 얘기인데요. 그래도 기억이 나지 않으신가 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예, 특별히 전재수 시장님 관련해서 기억이 나는 건 없습니다.

○서지영 위원 그렇게 서면으로도 답변 받았습니까.

그리고 전재수 장관은 북항 돛구장에 대해 해수부장관님은 전재수 전임 장관에게 관련 하여 보고한 사람도 없고 생성한 문서도 없으며 부 차원의 검토를 한 사실도 없다고 명확히 답변을 했습니다. 장관 시절에 양립하기 어려운 두 가지 사업에 본인이 기여했다고 얘기하는 것은 장관으로서 자격이 별로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가의 재정과 부산시의 재정과 공적 사업에 대한 책임의식이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또 추가적으로 확인한 게 있습니다. 특히 전재수 당시 후보는 북항 돛구장과 관련해서 상대 후보가 예산 확보와 부지 매입 등에 관한 검토를 해수부장관 시절 전부 했냐고 물었을 때 장관 시절에 검토를 끝냈다고 발언했고 또 부산항만공사가 공동 참여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텐데 의견 들어 봤냐라는 질문에 해수부장관을 하면서 해수부가 주무부처이고 그다음에 항만공사하고 협의를 진행했다라고 답했습니다.

여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무대행께서 나오셨지요? 사무총장직무대리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직무대리 강동완 예, 사무총장직무대리 나와 있습니다.

○서지영 위원 해수부와 항만공사와 다 함께 협의를 거쳤다고 했다면 협의를 한 누군가, 인격체, 대상자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직무대리 강동완 예.

○서지영 위원 누군가와 공직자분들께서 협의를 했다면 각각의 주체와 대상자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직무대리 강동완 그렇습니다.

○서지영 위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해수부는 이미 장관께서 그런 바 없다고 명확히 답하셨고 부산항만공사에도 저희가 질의를 했습니다. 해수부 전재수 당시 장관, 장관 비서실, 장관 보좌관 등 그 누구와도 북항 돛구장과 관련하여 협의한 바 없다고 저에게 명확하게 서류로 답변을 제출했습니다.

사무총장직무대리님, 명백히 자신이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한다면 이것 허위사실 아닙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직무대리 강동완 예, 지금 선거법 250조에는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발언을 하는 부분도 허위사실일 경우에는 처벌을 하고 있는데요.

○서지영 위원 직무대리님, 이번 지방선거의 허위사실 공표죄의 공소시효는 언제까지입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직무대리 강동완 6개월이기 때문에 12월 3일까지로 봐야 될 겁니다.

○서지영 위원 그렇습니다.

저는 통일교의 금품수수 의혹 사건이 무마되는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합수본의 수사 결과 국민들이 별로 신뢰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해서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고발조치가 일어날 때 선관위와 경찰이 어떠한 자세로 이것에 대해서 수사할지 조사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재수 시장은 시장 출마 선언 전부터 바다 돛야구장을 공약했습니다. 구도 부산, 부산 시민들의 야구에 대한 사랑을 겨냥한 것이지요. 그리고 선거 기한 내내 지속적으로 공개적으로 반복적으로 해수부장관 시절에 북항 돛야구장에 대해 완전히 검토를 끝냈다, 해

수부가 주부처이고 항만공사하고 협의를 진행했다라고 했습니다. 본인의 당선을 위해 국무위원인 해수부장관직을 이용했다고 노골적으로 홍보하고 부산시민을 현혹하려 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예결위에서 제가 두 국무위원과 문화체육관광부, 해수부, 부산항만공사 등 정부기관과 공기업에 확인한 결과 선거기간 내내 전재수 당시 후보가 말한, 전재수 당시 후보의 주장과는 달랐습니다. 사직구장 재건축과 관련해서는 특별히 기억이 없다는 문체부장관님 그리고 북항 돛구장과 관련해서는 검토도 협의도 생성 문서도 보고한 사람도 없다는 해수부의 입장 그리고 전재수 당시 장관과 협의를 한 적이 없다는 부산항만공사, 대한민국 장관과 정부부처, 공기업이 사실이 아니라고 명확히 밝힌 사항입니다. 이 명백한, 공직선거법 250조를 위반한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임을 국가기관이 입증했습니다. 이제 또 다른 국가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이 이 사안을 어떻게 다룰지를 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재수 시장은 자신의 당선을 위해 직을 이용한 것을 넘어서 대한민국 정부와 공기업 그리고 수많은 공무원들을 자신의 거짓에 이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부산시민을 완벽하게 속인 것입니다. 전재수 시장은 이미 특검과 합수본의 파주기 수사로 통일교 게이트 수사를 빠져나갔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당사자입니다.

곧 고발장이 제출될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중앙선관위와 경찰에 엄중히 당부하고 경고합니다. 또다시 전재수라는 사람의 이 진하게 풍기는 법 위반 혐의를 뭉개고 파주기로 일관하다가는 현재 국민적 비판의 대상인 두 기관의 명예회복의 기회는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엄정하고 공정한 조사와 수사를 부탁드립니다.

국무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이광재 서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남광주 동구남구을의 안도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도걸 위원 민주화의 성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을 국회의원 안도걸입니다.

먼저 국방부장관님…… 차관님 계십니까?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차관 나왔습니다.

○안도걸 위원 차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광주 군공항 기지 이전 문제 관련된 쟁점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6일 호남 반도체 산단을 광주 군공항 부지에 조성기로 결정이 됐지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안도걸 위원 그리고 8월 28일 군공항 이전 후보지로 전남 무안군 망운면 일대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호남권 반도체 산단이 이제 현실화되고 있는데 우선 정부 노력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이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는 데 필요한 사안들을 세 가지 좀 여쭙겠습니다.

먼저 선기부 후양여 이 조항이 있지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안도걸 위원 그래서 일단 새로운 군공항을 먼저 사업시행자가 건설해서 국가에 기부

채납하면 연후에 그 종전 부지를 지방에 양여할 수 있도록 되는 게 지금 현행법상이지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그렇습니다.

○안도결 위원 그런데 이렇게 해 가지고는 지금 우리가 원하는 시점에 산단 조성이 어렵지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그렇습니다.

○안도결 위원 그래서 선양여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법적 근거를 지금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그렇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무안으로 이전하면 2032년은 돼야 되는데 정부에서는 2028년 중반 정도에 군공항을 산단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받기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려면 신공항이 지어지기 전에 저희가 선양여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광주 군공항 이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게 개정이 되면 선양여가 가능하겠습니다.

○안도결 위원 그러한 관련 법 조치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협조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두 번째는 지금 미군이 광주 군공항을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안도결 위원 그런데 미군 기지 이용에 약간의 차질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게 발생치 않도록 임시 분산 배치를 하자는 거지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그렇습니다.

○안도결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보 공백이 없으니까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안도결 위원 이 점 관련해 가지고 미국 측하고 협의는 지금 잘되고 있습니까?

○국방부차관 이두희 말씀하신 것처럼 미군 공여지 관련해서는 분산 배치에 같이 포함될 수 있도록 다층적으로 미측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도결 위원 예, 진행하고 계시고. 또 당장 내년부터 있잖아요, 새로운 임시 이전된 기지에서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예산도 지금 반영이 되었지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금년도 정부안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안도결 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기부 대 양여 사업의 틀은 유지가 되는 거지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유지됩니다.

○안도결 위원 그런데 사업 재설계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맞지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안도결 위원 그래서 종전에는 군공항 기지를 주택이라든가 고급 업무단지로 이걸 개발한다 그래 가지고 상당한 개발 수입이 예상되었지요? 그래서 우리가 신공항을, 군공항을 짓는 데 필요되는 예산, 사업비를 초과하는 수입이 있을 거다 이렇게 예산을 좀 했거든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그렇습니다.

○**안도결 위원** 그런데 이제는 부지가 반대로 산단이 됐기 때문에 산단은 조성원가의 15% 이상으로 분양하기가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안도결 위원** 그런 조향도 있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양여자산의 가치는 많이 떨어진다.

○**국방부차관 이두희** 그렇습니다.

○**안도결 위원** 그리고 기부자산 있잖아요. 결국에는 신공항 건설, 이는 아마 저희가 당초에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더 오르지 않겠습니까, 요즘에 공사비도 많이 오르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이 차액, 기부자산과 양여자산의 차액이 꽤 발생할 거다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어느 정도로 예산을 하십니까?

○**국방부차관 이두희** 지금 단계에서 구체적인 수치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수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안도결 위원** 그 부분은 불가피, 반도체 산단 조성을 위한 비용으로서 국가가 재정에서 지원을 해야 되겠지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상당 부분 국가에서 지원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도결 위원** 그래서 다시 한번 양여자산과 기부자산에 대한 정확한, 그렇지요? 추계를 하시고 그에 대해서 그 차액이 되는 재정 보전 소요가 얼마가 되는지 정확히 면밀히 검토하시고 관련 재원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도결 위원** 다음은 전남광주통합 지원금에 관해서 행안부장관님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오늘 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가 열리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안도결 위원** 여기에서 5조 원에 대해 어떻게 지급할 것인지 방식이 결정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지금 구상을 하고 계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오늘 지원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세부 지원안이 확정되기 때문에 제가 그 위원회에, 아마 오후 5시 정도 돼서 열릴 것 같거든요. 사전에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하다는 점……

○**안도결 위원** 그렇지만 지금 어느 정도 보도가 되거나 논의가 되는 사항들을 보면 반도체 쪽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한 1.5 정도는 우선 할당이 되고 나머지 분야를 포괄적인 지원으로 갈 거다 저는 이렇게는 알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일반재원이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도결 위원** 그래서 이 재원이 당초 통합에 대한 지원금인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롯이 특별시에 교부가 되고 특별시가 자율적으로 또 책임성 있게 이걸 지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장치를 만드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그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만 5조 모두가 자율 결정에 의

해서 쓰여질 수는 없지 않을까 하는……

○**안도결 위원** 맞습니다. 그중에서 전남광주로 이양되는 사업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통합재정지원금 범위 내에서 쓸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아마 중앙정부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양되는 사업은 좋습니다. 그게 또 지방의 자치를 확대시키는 거고 또 지방에 더 잘 쓸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결단을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자치 권한의 확대로 연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도결 위원**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저는 크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통합지원금이 있기 때문에 일부 지방에서 부담할 수 있겠는데 통합재정지원금이라는 거는 우리 정부에서 지금 약속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이후의 상황 그리고 예를 들어 통합지원금이 계속되지 않는다고 하면 이에 대해서는 별도 재원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4년 이후에는 지방재정 이양, 분권을 통해서 그 재원을 마련해 드려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도결 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은 꼭 별도의 재원 조치가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포함되는 방향으로 저는 통합특별시법 있잖아요, 그게 개정이 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협조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알겠습니다.

○**안도결 위원** 다음에는 보훈부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장관님, 8월 13일 국회에서 5·18 민주화운동 재조명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거기에서 있잖아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그러한 내용의 이야기들이 오가고 주장이 오갔습니다. 거기에서 발표된 PPT 자료를 보니까 광주 정신을 권력·명예·금전에 대한 물질주의적 욕망이다, 역사의 퇴역물이다, 부정과 불임의 회오리바람이다라는 아주 입에 담을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표현들이 난무했거든요. 또 그리고 그 희생자에 대한 보상을 장사다, 그리고 또 대한민국을 숙주로 삼고 있다, 혜택받는 행위를 빨대를 쏘고 빨아먹는 것에 비유하는 등 정말 입에 담기 어려운 망언들이 난무했습니다.

장관님, 이러한 내용이 학술적 연구의 범위라고 보십니까?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 저도 그 내용을 다 봤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된 시각이 굉장히 심하게 이렇게 표현된 것을 보면서 학자의 양심으로 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현행법 범위 안에 있는 거는 범으로서 조치를 해야 될 것 같고 나머지는 일반적인 국민의 양식으로서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판단을 하고 심판을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안도결 위원** 장관님의 인식이 정확합니다. 이는 학술연구를 가장해서 광주정신과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고 역사를 왜곡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다, 저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일반 국민들 생각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5·18정신과 유공자 폄훼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보훈부가 단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 예, 알겠습니다.

○**안도결 위원** 그리고 법무부차관께 여쭙겠습니다.

법무부차관님, 5·18 민주화 특별법에 따르면 제8조 1항에 있지요.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내용 알고 계시지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이진수** 예, 그렇게 법에 되어 있습니다.

○**안도결 위원** 그래서 이번 토론회에서 드러난 이런 행태에 대해서는 분명히 저는 허위사실 유포행위에 해당된다고 생각되거든요.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 이진수** 이 부분 등에 대해서 고발장 등이 접수가 되면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안도결 위원** 그렇습니다. 관련해 가지고 5·18 관련 단체들이 법적 대응을 지금 예고하고 있고 일부 발표자들에 대한 고발 추진 중에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법무부에서는 이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엄중히 대응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리고 차관님께 더 여쭙겠습니다.

결국에는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는 이유가 뭘겠습니까? 그리고 재발 안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겠습니까? 저는 5·18정신을 헌법에 빨리 전문에 수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미래세대 자손만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반드시 지키고 계승해야 될 우리의 가치로 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전 세계인들이 서로 나눌 수 있는 보편적인 민주주의 가치로 우리가 못을 박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 이진수** 지금 쟁점이 없는 헌법전문 개정에 대해서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전문 개정의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도결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헌법전문 개정에 대해서 적극 정부 측에서도 소신을 가지고 뒷받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부장관직무대행 이진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재** 안도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성북을의 김남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남근 위원** 서울 성북을의 김남근 국회의원입니다.

법무부차관님, 이재명 정부 지금 경제형벌 합리화 및 민사책임 합리화 TF를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이진수** 예, 그렇습니다.

○**김남근 위원** 우리가 군사독재 정권을 거치면서 법을 만들 때마다 의례적으로 형벌 조항들을 만들었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는 없는 그런 경제법에도 형벌 조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정거래법도 전두환 정권 때 처음 만들게 됐는데 보통

은 공정거래법의 기본적인 프레임은 얻은 경제적 이익들을 과징금이나 이런 걸 통해서 환수하는 것인데 유독 형사처벌 조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다른 나라에는 불공정행위에 대해서 형사처벌 하는 경우는 없는데 우리는 형사처벌 조항들이 많이 있지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이진수 예, 그렇습니다.

○김남근 위원 그런 거에 비해서는 또 한편으로는 과징금이나 이런 것들은 실효성이 떨어질 정도로 굉장히 약하다, 또 민사책임을 묻기는 참 어렵다, 그래서 피해자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회적으로 형사고소를 해서 그 가해자를 감옥에다 갖다 놓고 그런 다음에 합의를 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이런 잘못된 문화들도 많이 만들어진 게 사실입니다.

○법무부장관직무대행 이진수 예, 그런 범문화가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김남근 위원 세계적으로 고소·고발이 그래서 굉장히 많은 나라인 거지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이진수 그렇습니다.

○김남근 위원 그래서 이것을 좀 개선을 해야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경제형벌 합리화 TF를 저희 국회 차원에서도 만들고 1차로 110개 경제형벌들 정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2차로 331개 정비하자고 그랬는데 그거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이진수 두 차례에 걸쳐서 TF에서 마련한 안들을 각 부처에서 검토해서 국회에서 입법이 이루어지도록 저희가 개정안을 마련을 했고요. 후속 작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남근 위원 다시 좀 전체적으로 점검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했던 배임죄 정리하는 문제도 지금 아직 다 정리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그렇게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직무대행 이진수 위원님, TF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측면이 있어서 지난 7월 30일에 경제형벌 합리화 추진단을 구성해서 더 집약적으로 성과를 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남근 위원 한편으로는 경제형벌들을 줄여 나가게 되면, 그렇다고 그래서 사회적으로 비난받는 행동들인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처벌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이진수 그렇습니다.

○김남근 위원 그리고 행정벌이나 이제 민사적인 손해배상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민사책임을 강화하는 것으로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집단소송법, 징벌적 손해배상 그다음에 한국형 디스커버리라고 얘기하는 증거가 한쪽에 쏠려 있는, 가해자 쪽에 쏠려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증거…… 디스커버리 제도라고 얘기하는 그런 것들을 도입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요? 법무부 차원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지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이진수 예, 이 세 가지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김남근 위원 그래서 먼저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29개 법률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라고 그래서 미국식의 트레블 대미지(treble damages), 3배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 실제로 3배 손해배상을 하고 있느냐?

○법무부장관직무대행 이진수 저희가 법원 판결 등을 좀 저희 나름대로 분석해 본 걸

과는……

○**김남근 위원** 일단 법원행정처장님 오셨으니까, 실무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징벌적 손해배상들이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법원행정처 차원에서 한번 조사해 보셨어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그걸 구체적으로, 재판에 관한 사항이어서…… 저희들이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근 위원** 법원행정처장님, 대법관 인사청문회 할 때도 제가 그 얘기를 했었고 대법관 되시면 한번 좀 잘 점검해 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법원행정처장이 되셔서도 그런 거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잘해 보겠습니다.

○**김남근 위원** 법원이 우리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이런 사법 행정도 잘 하셔야 됩니다.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알겠습니다.

○**김남근 위원** 저희가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기껏 해야 한 1.3배, 어떤 건 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그러면서 그냥 1배를 갖다가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물린 경우도 있고, 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하면서 0.5배를 물린 경우도 있어요. 제가 국회에 들어오기 전에 변호사를 하면서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을 해서 1.6배를 받아 봤는데 그게 사실상 거의 최고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받은 그런 셈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 가지고는 이게 징벌적 효과가 있겠습니까? 대기업들이나 이런 데에서는 꿈쩍도 안 하지요. 어차피 징벌적 손해배상 해봐야 1.6배 정도가 최고인데 1배하고 하나도, 실손해하고 하나도 다를 게 없잖아요. 그렇지요? 사실상 국회에서 만든 법을 법원에서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원행정처장님? 제가 인사청문회 할 때도 이거 열심히 강조해서 말씀드렸는데 별로 문제의식이 발전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죄송합니다. 제가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재판에 관한 사항이라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김남근 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전에는 법원에 있는 판사님들이, 손해배상 전담부에 있는 판사님들이 모여서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위자료의 상한을 6000만 원으로 정하고 그걸 체계적으로 한다든가 나름대로 기준을 만들 노력을 했는데 요즘 판사님들은 이런 노력도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법원행정처장님 한번 가셔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잘 보시고, 그게 안 되면 징벌적 손해배상 사건들을 다루고 있는 판사님들끼리 모여서라도 같이 협의를 해서 기준을 만들고 입법취지를 잘 살릴 수 있는 그런 걸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법원이 잘 안 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굉장히 불완전하게 도입됐거든요.

미국의 트레블 대미지는 원칙적으로 3배예요. 대공황 시절에 이런 갑질 행위 같은 것들을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랬더니 경제학자들이 최소한 3배의 손해배상을 물려야만 그래야지 위화적 효과가 생긴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 도입하면서 3배가 아니라 3배 이내로 했더니 판사님들이 전부 다 3배 이내라고 그러면서 1배도 하고 1.3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법을 29개나 만들었는데 전혀

법의 실효성들이 만들어지고 있지 못하지 않습니까?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원래 원칙대로 3배든 5배든 법이 정해진 대로 먼저 손해배상 액수를 징벌적으로 정하고, 그다음에 특별히 감경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특별히 감경 사유들을 별도로 입증하도록 해서 법원이 자의적으로 감액하는 게 아니라 감액 사유가 명확히 있는 경우에만 감액하도록 하는 그런 원래의 원칙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법원행정처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그때 우리 인사청문회 할 때 그러신다고 그랬는데……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남근 위원** 법무부차관님, 그래서 그런 것들에 좀 천착해서 가지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에 맞게 그런 법률을 개선하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좀 법무부 차원에서 준비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게 집단소송법이에요. 집단소송법에 대해서는 세계적으로 크게 두 가지가 있지요. 집단소송법을 안 하고 있는 나라는 거의 OECD 주요 국가 중에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미국식의 클래스 액션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소위 옵트아웃이라고 그래서 재판에 참가하지 않은 피해자에 대해서도 판결의 효력이 미치도록 하는 그런 방식이고 그다음에 유럽식의 방식은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들을 확인받은 다음에 피해자들이 피해신고를 하면서 참가하면 그때 판결의 효력들을 받으면서 피해배상을 받는 이런 방식들을 취하고 있는데, 우리는 두 가지 중에 어느 방식으로 하겠다고 지금 방향을 잡고 있습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 이진수** 지금 전자로 말씀하신 옵트아웃 방식을 법사위에서 심사 중에 있습니다.

○**김남근 위원** 예, 그런 방향을 명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공정거래위원회는 또 주요 방향들을 소비자집단소송법에서는 소위 옵트인 방식으로, 유럽식 방식으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혼란스럽지요, 같은 정부 내에서 공정거래위는 옵트인, 법무부는 옵트아웃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이것들을 행정부 내에서 잘 조정을 하셔서…… 둘 다도 가능하지요. 소비자집단소송법은 옵트인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옵트아웃으로 하겠다, 이게 원칙이면 이렇게 가도록……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자신이 없어요, 우리 정부의 방향이 뭔지를 잘 모르니까 어느 방향으로 해야 될지. 이것도 대통령께서도 빨리 입법을 하라고 한 건데 정부 방침이 명확지가 않으니깐 입법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중요한 게 디스커버리 제도지요. 그런데 우리가 미국식의 배심재판이 아니에요. 미국은 배심재판이니까 배심원들 앞에서 증거들을 한꺼번에 다 하기가 어려우니까 주요 증거가 아닌 부분들은 사전에 당사자들끼리 협의를 해 가지고 사전에 증인신문을 해서 그 영상 같은 것을 배심원들 앞에서 트는 그런 방식의 제도로 발전해 왔는데 이것을 그대로 하기가 어려우니까 우리 나름대로 특허청, 법원행정처, 법무부 다 협의를 해 가지고 22대 국회 들어오면서 소위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라고 그래서 독일이나 일본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법원이 임명한 사실조사를 전문으로 하는 전문가가 사실조사들을 하도록 하고 필요하면 대기업에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설게도가 중소기업 것

을 배긴 건지 이런 것들을 조사해서 법원에 보고하도록 하는 이런 제도를 도입하고 또 미국 디스커버리 제도의 일종일 수 있겠는데 법정 외에서 증인신문을 해 가지고 그 녹취록을 제출하도록 한다든가 증거를 보전하도록 하는 증거보전명령 같은 것을 내리도록 한다든가 이런 제도들을 지금 도입해서…… 상생협력법에 도입이 됐어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이진수** 예, 법이 통과되었고 28년 2월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김남근 위원** 그래서 모범법은 하나 만들었는데 그다음에 그것을 죽 진행하기로 했던 특허법, 실용신안법, 하도급법 이런 것들은 다 멈춰 있는 상황이고 또 가장 기본적인 민사소송법 속에서 이것들이 잘 정리가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법무부가 뭔가 리딩 역할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이진수** 민사소송법상 증거수집 절차의 불균형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일환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생협력법의 기술 탈취 분야에 대해서 처음으로 도입이 되었습니다.

일단은 필요한 분야에 있어서 개별적으로 이와 같은 제도가 도입되는 것이 해당 분야의 불균형성을 해소하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남근 위원** 법무부가 검찰개혁 이런 데에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이런 민생 부분들을 못 챙기고 있어요. 이게 가장 민생적인 부분입니다, 법무부에 있어서는.

그래서 집단소송제도,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이런 것들을 빨리 입법할 수 있도록 법무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의견들을 내고 입법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직무대행 이진수** 예, 민사소송 분야에 있어서 더욱더 신경 쓰고 개선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근 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재** 김남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남 공주·부여·청양의 윤용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용근 위원**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지난 28일 밤 충남 부여군 세도면 일대에 이른바 토네이도급 돌풍이 발생했습니다. 장관님 보고받으셨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다운버스트라고 토네이도하고는 약간 다른 형태의……

○**윤용근 위원** 어찌 됐든 돌풍 피해가 있다는 것은 보고를 받으셨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그렇습니다.

○**윤용근 위원** 그 일대의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 된다고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시설하우스 한 200동 정도의 피해가 있었다고 보고받고 있습니다. 부여는 한 90동이고요, 논산이 110동 정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윤용근 위원** 예, 그렇습니다.

제가 어제 현장에 직접 다녀왔는데요. 밤사이 몰아친 강한 비와 돌풍으로 인해서 스마

트팜 비닐하우스 콘크리트 고정된 기둥이 뽑혔고요, 비닐은 날아갔습니다. 철골은 엇가람처럼 휘어져 다시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고요.

현재 확인된 피해액뿐만 아니라 스마트팜과 비닐하우스의 철거·폐기·재설치 비용 등 복구비용까지 포함하면 실제 피해는 아마 행안부가 파악한 것보다 훨씬 더 클 것입니다.

시설 피해가 아직 모두 집계되지 않은 만큼 정부에서도 신속하게 현장을 확인해 보고 장관님께서도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는데 혹시 한 번 더 살펴보시겠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지방정부에서 지금 피해조사 중에 있기 때문에 복구계획은 피해조사가 마무리되고 나면 거기에 맞춰서 대책을 세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용근 위원** 장관님, 제가 어제 세도면 가회리의 한 피해농가 이야기를 좀 듣고 와서 전해 드리고 싶은데요.

돌풍 피해를 입은 한 농민은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하다가 고향으로 내려왔습니다. 아버지 땅에서 농사를 지어 보겠다고 희망을 갖고 농협에서 10억 원 융자를 받아서 작년 25년 12월에 스마트팜 연동 비닐하우스 9동을 설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 처음으로 방울토마토 농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첫 수확도 제대로 해 보지 못한 상태에서 이번 돌풍을 맞았습니다. 콘크리트 기둥이 뽑혀 갔고 비닐은 모두 날아갔습니다. 다시 설치해야 하는데 철거비, 폐기비, 재설치비를 합하면 약 15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10억 원의 빚을 내서 첫 농사를 시작했는데 한 순간의 돌풍으로 시설과 작물, 소득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대출원금과 이자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아들을 서울에서 농촌으로 불러 내린 아버지는 자신 때문에 아들 부부가 빚더미에 앉게 됐다며 한탄하면서 죽고 싶단 말만 계속 되뇌이셨습니다.

이 농민에게 정부가 규정상 어렵습니다라는 말만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장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정부 지원을 위해서는 피해 규모에 대한 국고지원 기준이 있습니다. 지방정부의 조사를 확인하고 거기에 따른 상응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용근 위원** 알고 있습니다. 한 군에 33억 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해야 되고 면 단위에서는 8억 얼마 이상의 피해가 발생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돌풍 피해는 부여군 세도면이라는 한 지역에서만 발생했고 거기에서도 2개 리에서만 발생했기 때문에 부여군 전체의 피해는 재난지역 선포 기준에 미달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러나 우리 지역에서 그동안 예를 살펴보면 통영의 산양읍·봉평동, 안동·의성의 4개면, 폭설·강풍·풍랑에 의해서 우리가 재난지역을 선포한 피해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 사례를 바탕으로 해서 이번에도 기준에 미달한다라는 이유만으로 농민의 심정을 외면하지 마시고 한 번 더 행안부가 직접 예산을 편성해 주시든가 아니면 이 농가에게 필요한 대출원금 상환 유예라든가 이자 감면 그리고 피해시설지원금을 먼저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앞으로도 기후현상 변경으로 인해 상황이 바뀌어서 스마트팜과 시설하우스가 파손되는 피해가 반복될 수 있고요. 무엇보다도 시설 재설치 지원 기준이나 대규모 대출농가에 대한 금융지원 이런 부분들을 국가에서 마련하지 않으면

우리 농업이 황폐해질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가능한 지원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농업재해보험이 우선 지급되도록 하는 조치부터 취해 볼까 합니다.

○**윤용근 위원** 농협재해보험은 제가 어제 농협 측에 우선 선지급 요청을 했는데 그것은 작물 피해 보상만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는 복구에 착수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있었습니다. 한 번 더 살펴 주시면 좋겠고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윤용근 위원** 기가 막힌 사연이 하나 더 있어서 장관님께 추가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상수도 연결이 안 돼서 수돗물을 먹어 보는 것이 소원이라는 한 마을이 있습니다. 혹시 장관님 들어 보셨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들어 보지 못했습니다.

○**윤용근 위원**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지역구인 충남 부여군 내산면 지티1리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 상수도관이 들어왔는데 그 윗동네에 살고 있는 18가구 35명의 주민들은 상수도조차 들어오지 않는 물 소외 지역에 살고 계십니다. 그분들은 지하수를 이용해 봤지만 석회가 나오고 철분이 나오고 석탄가루까지 섞여 나오는 바람에 먹을 수는 없고 빨래도 못 할 지경에, 그런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상수도도 없고 지하수도 마실 수 없고, 이분들은 도대체 무슨 물을 마시고 살아야 합니까? 21세기 대한민국 경제대국에서 이런 일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해 보니까 지티1리는 기존 상수도망에서 약 3km 정도의 관로만 연장하면 이 18가구 35명이 수돗물을 마시는 소원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너무 작은 시골 마을이다 보니까 한정된 예산과 지자체에서도 사업 우선순위에서 계속 밀려서 지난 35년간 수돗물을 마시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예산을 살펴보니 10억 원이면 충분합니다. 행안부에서 특별교부금 10억 원을 부여군으로 내려보내 주시면 그러면 이분들에게 상수도 연결을 바로 해 줄 수 있습니다. 장관님, 혹시 고려해 보실 생각 없으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부여군에서 관련 예산을 요청하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용근 위원**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원행정처 노경필 행정처장님께 한 번 더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여기 있습니다.

○**윤용근 위원** 헌법과 법원조직법에 대통령에게 제청된 대법관후보자를 배척하고 재제청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법률 규정은 없습니다.

○**윤용근 위원** 법원조직법 41조의2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규정 8항에 보면 ‘추천위원회가 제6항에 따라 대법관후보자를 추천하면 해당 추천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지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그렇습니다.

○**윤용근 위원** 그렇다면 이번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대법원장에게 후보자를 추천

했고 대법원장이 대법관후보자를 제청했으니까 해당 추천위원회는 해산 간주돼서 없어졌지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추천할 당시 이미 해산됐습니다.

○**윤용근 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청와대가 다시 재제청을 요청하고 민주당과 청와대에서는 기존 추천위원회에 추천후보자를 제청하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가능합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용근 위원** 법에 규정이 있습니까? 추천위원회는 해산됐는데 어떻게 추천위원회가 또 구성이 돼서, 지금 그러면 법원조직법 41조의2제2항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대법관후보자를 추천할 때는 추천할 때마다 추천위원회를 다시 구성해야 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지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그렇습니다.

○**윤용근 위원** 그러면 만약에 대통령이 재제청을 해 오더라도 대법원은 이 법원조직법 규정에 따라서 추천위원회를 재구성해야 되는 것이지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용근 위원** 법에 나와 있는데 뭘 검토합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견해가 다를 수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 중입니다.

○**윤용근 위원** 법률을 해석해야 될 문제입니까? 대법관후보자를 추천할 때마다 추천위원회를 재구성해야 한다, 할 때마다 구성해야 한다 법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해석의 여지가 있는 그런 문장입니까?

대법원에서는 법률과 헌법을 준수해 주시기를 강력하게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재** 윤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경기 안산갑의 김남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남국 위원** 경기 안산갑의 김남국 위원입니다.

교육부장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청년 주거 문제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왜 교육부장관님께 청년 주거 이야기를 하느냐? 저희가 청년정책 이야기를 하면 대개 청년월세지원이라든지 아니면 청년 전세자금대출 또는 공공청년임대주택 등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대학을 간 20대 청년들에게는 그보다 더 직접적인 청년 주거와 관련된 문제가 있습니다. 청년 주거와 관련된 정책으로 가장 와닿는 게 아마 대학생들에게는 기숙사일 겁니다. 대학 기숙사를 단순히 교육의 부대시설이나 부속시설로만 봐서는 안 된다. 대학생을 위한 청년주거정책의 핵심 축으로 봐야 된다. 그리고 하나의 중요한 정책으로 봐야 된다는 이런 견해에 교육부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교육부장관 최고진**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 그렇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남국 위원** 동의하고 계시는 거지요?

○**교육부장관 최고진** 예.

○**김남국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올해 7월 기준 서울 주요 10개 대학 인근 원룸 시세를 보니까요 보증금 1000만 원 기

준으로 평균 월세가 62만 5000원, 관리비가 또 있더라고요. 관리비가 8만 4000원으로 더해 보니까 약 71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1년 전보다 월세가 7.7%, 관리비가 10.9%나 뛰었습니다.

장관님께서 한 달에 70만 원에서 80만 원 정도 되는 월세를 부담한다라고 하면 장관님 월급 받으시는 데도 상당히 부담된다고 느끼실 겁니다. 그런데 20대에 고정적인 월급이 없는 청년들에게 그 부담은 어느 정도일까요? 아마 상상하기 어려울 겁니다.

반면에 사학진흥재단이 운영하는 행복기숙사는 월 26만 원 내외입니다. 대학생들 입장에서는 기숙사에 들어가느냐 아니면 학교 밖의 원룸에 사느냐에 따라서 주거비 부담 차이가 엄청나게 큼니다. 단순히 주거비 부담을 넘어서서 그 주거에 들어가는, 기숙사에 들어가는 커뮤니티 시설을 포함해서 통학에 들어가는 시간 등등을 고려하면 대학교 기숙사가 20대 대학생들에게는 정말 가장 직접적이고 중요한 주거정책일 겁니다.

그런데 정작 공급을 보니까요 굉장히 부족합니다. 전국 대학교 기숙사 수용률은 20.9%에 불과하고요 수도권은 14.8%, 서울 소재 대학은 오히려 더 적습니다. 더 필요성이, 더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13.3%에 머물러 있습니다. 저도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참 국민과 청년들에게 미안하고 송구스러운데요. 과거 역대 정부가 5년 전, 10년 전, 15년 전, 20년 전 기숙사 수용률을 높이겠다, 늘리겠다라고 했는데 여전합니다. 2023년 19.1%였고 2024년 18.9%, 2025년 18.4%.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늘어나질 않고 있습니다.

장관님, 왜 그런 걸까요?

○**교육부장관 최고진** 지속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다고 하는데 특히 수도권 같은 경우에 부지 확보 문제가 상당히 있고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국공유지나 폐교 같은 것을 활용해서 확대하려고 하고 있고 그런데 실제로 공사 시작부터 이게 들어가는 과정에서 또 예산이, 국비가 한 25% 지원하고 75%를 대학에서 담당해서 대개 기숙사를 짓게 되는데요, 단위학교 같은 경우에.

그런데 이게 시작했다가 여러 가지, 물가상승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그걸 감당하지 못해서 하다가 중단하는 경우도 생기고……

○**김남국 위원** 이게 국민들이 봤을 때는 장관님께서 하신 말씀이 약간 핑계처럼 들릴 것 같습니다.

○**교육부장관 최고진** 예,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남국 위원** 지난 20년간 모든 역대 정부가, 진보·보수 정권 할 것 없이 다 청년들에게 약속을 했는데 여전히 그대로인 겁니다. 그런데 이게 부지가 부족하다, 재원 마련이 부족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교육부장관님을 포함해서, 국토교통부장관 등등 필요한 관계부처 장관들을 포함해서 한국장학재단이든 재단들이 모두 머리를 맞대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적극 해야 됩니다.

○**교육부장관 최고진** 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남국 위원** 지난 20년간 집값 오르면 월세 오른다, 전월세가 따라 오른다 그리고 또 청년 주거비 부담된다고 하면서 항상 보도가 쏟아졌고 국회에서도 이 질문을 국회의원이 하고 교육부장관이 하고 똑같은 답변을 했는데 이 문제를 20년 동안 해결을 못 한 겁니다.

이재명 정부도 국정과제로, 공약으로 약속을 했습니다. 장관님께서 총대를 메시고 의지

를 가지고 반드시 해 주셔야 합니다. 약속하시겠습니까?

○**교육부장관 최고진** 예, 이재명 정부에서는 총리께서 중심이 되어 가지고 청년정책을 여러 부처가 함께 집중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교육부에서도 가장 열심히 그리고 관계부처인 국토부나 여러 부처와 협의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번에는말로 적극적인 획기적인 변화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국 위원** 최선의 노력만으로는 안 되고요 진짜 눈에 띄는 성과로 약속을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학생 주거 문제는 단순하게 잠잘 곳, 주거만의 문제를 넘어서 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거비 부담 때문에 대학생들이 공부할 시간에 아르바이트에, 정말 생계에,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아르바이트에 매달려 있으면 정작 공부해야 할 시간에 공부를 못 하고 또 경험과 경력을 쌓아야 될 시간에 경험과 경력을 쌓지 못해서 결국에는 주거비 부담 문제가 교육의 불평등 문제로 가기 때문에 교육부장관님께서 이 문제를 더 깊이 심각하게 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교육부장관 최고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남국 위원** 다음으로는 신혼부부·영유아가 많은 신도시에 어린이집이 없다고 호소를 합니다. 이게 검단신도시를 보니까요 출산과 동시에 신청을 해도 대기번호가 100번대였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동탄신도시도 1세반 입소를 위해서 0세부터 준비를 해서, 0세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맘카페를 보니까 출산하기도 전부터 만삭인 임산부가 어린이집부터 알아보고 있다라고 발을 동동 구르면서 걱정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 7월에 보니까 의왕에서도 2200가구 대단지에 국공립 어린이집 신규 모집인원이 68명밖에 안 돼 가지고 입소 경쟁이 심각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연히 정부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보니까요 2025년 어린이집 확충 사업 예산이 81억 100만 원이 불용이 됐고 실제 집행률이,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째 평균 집행률이 40%에 불과합니다.

한쪽에서는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신청해도 대기번호가 100번대인 국공립 어린이집을 찾기가 어렵다라고 이렇게 힘들어 하고 있는데 왜 필요한 예산은 집행률이 이렇게 낮은 것인지 이 문제의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교육부장관 최고진** 역시 지역에 따라서는 편차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어쨌든 실제로 국공립 어린이집이 필요해서 지자체에서 수요 요청이 될 경우에 최대한 확충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이번에 미래인재기금에서 영유아 부분을 아주 집중적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재정 당국하고 협력이 훨씬 더 쉬워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영유아반에서, 그러니까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와 어린이집을 다 같이 운영하게 돼 있었는데 어린이가 적더라도 영유아반만으로도 할 수 있도록 하게 해서 대기수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노력도 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국 위원** 국공립 어린이집 신청 사업을, 대개 수요나 이런 조사를 지자체에서 수요 파악을 하고 신청을 교육부에 하다 보니까 약간 교육부가 소극적인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신도시 같은 경우는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 뻔히 예측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수요에 대한 예측 조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순하게 지자체에게 일임해 가지고 신청하고 우리는 신청받은 대로 그냥 예산 배분해 주는 것에 그친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수요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들여다 봐야 될 부분은 교육부에서 적극 들여다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교육부장관 최고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국 위원** 그리고 보면 대개 국공립 어린이집이 커뮤니티시설 내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아파트 단지 내에.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서 대단위의 택지개발을 한다면 우리가 택지개발을 조성할 때부터 공원 부지, 상업 부지 이런 것들을 다 조성하잖아요. 그리고 동시에 학교 부지까지 마련돼서 들어가는데 대단위 택지개발을 할 때에는 대형 국공립 어린이집 부지 자체를 확보해 가지고 도시계획이 설계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대한 고민도 함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교육부장관 최고진** 예, 알겠습니다.

○**김남국 위원** 그다음은 교권 침해와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교권 침해 심의 건수가 2023년에 5050건, 2024년에는 4234건, 2025년에는 4034건으로 매년 4000건 이상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조치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요. 교사들에게 교권 보호를 위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특별휴가를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특별휴가가 임시, 대신할 수 있는 선생님을 구하지 못하거나 이런 측면이 있어서 특별휴가를 쓰지 못한다라는 선생님이 많고 실제 통계로도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문제가 있었던 가해 학생에 대한 어떤 조치들이 필요한, 교육과 조치들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에 대한 조치가 좀 미흡한 것 아닌가, 교권 보호와 관련된 교육부의 정책이라든지 대응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교육부장관 최고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기도 했고 실제로 전에 서이초 이후에 국회 전체에서 굉장히 깊은 관심을 가지고 많은 제도적 보완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교권 침해를 당한 선생님 혼자서 그것을 감당하지 않을 수 있게 기관 단위로 학교 또는 교육청 단위에서 대응 체계를 갖춰서 선생님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각 시도별로 교육활동보호센터 이것이 80개 넘게 84개 센터를 운영하고 있기도 하고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도 많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특히 선생님들이 그런 피해를 당했을 때 바로 분리해서 일정하게 특별휴가를 가질 수 있도록 대체교사 인력이 충분하게 확보돼 있지 못한다든가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점들을 지속해서 보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남국 위원** 장관님 말씀처럼 아직도 부족하다라는 말씀이 맞는데요. 저희가 서이초 사건이 터졌을 때 정말 많은 분들이 슬퍼하고 화를 내기도 하시면서 사회적 공분이 일었습니다. 그래서 법도 개정되고 여기에 대한 교권 보호를 위한 예산도 많이 편성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더 깊이 관심을 가지고 교육부장관님께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교육부장관 최고진**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남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재** 김남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육부장관님, 아까 조금 전에 김남국 위원님이 학생기숙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부산에 있는 부경대학교 가 보셨어요?

○**교육부장관 최고진** 부경대학교는……

○**위원장 이광재** 부경대학교 기숙사는 이것은 주택도시기금하고 사학연금 등에서 재원을 낸 거고 학교 땅이니까 땅값이 안 들어갔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연합기숙사를 만들어 가지고 15층짜리 아파트를 지어 가지고 기숙사를 제공했거든요. 그러면 학교용지는 기본적으로 땅값이 없으니까 우리 학생들이 기숙사 생활을 하면 훨씬 더 비용이 저렴해지지 않나요?

○**교육부장관 최고진** 그렇게 지어서 매우 모범적으로 하고 있는 연합기숙사가 서울에만 해도 예를 들면 한국체육대학 그 옆에 지은 이런 곳이 여러 대학 학생들이 같이 살면서 시설도 굉장히 좋고 여러 대학생들이 거기에서 서로 교류도 이루어지고 아주 모범적인 것들이 실제로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속도가 좀 늦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광재** 그러면 이게 대학교 내의 부지를 이용해서 연합기숙사를 전면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무엇인지 하나하고.

두 번째는 결국 학교 주변에 있는 하숙집이나 다른 원룸이나 이런 것 하시는 분들이 학교 기숙사가 많이 지어지게 되면 생계의 어려움 때문에 반대가 많기 때문에 못 짓는 측면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교육부장관 최고진** 예, 일부 있습니다.

○**위원장 이광재** 그러면 그분들의 소득이 감소하지 않는 공존의 방법을 찾아내서 학생들에게 주택 문제를 해결해 줘야만 되는 게 특단의 대책 아닐까요? 이것은 한번 교육부하고 국무조정실하고 해서, 이게 지금 말은 수없이 청년주택을 얘기하면서…… 대학생이 한 달에 60만 원을 어디서 내겠어요, 이것을?

○**교육부장관 최고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광재** 이 문제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을 한번 강구해서 다음 번 예결위 하기 전에 그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장관 최고진** 예,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재** 다음은 조국혁신당의 강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강경숙입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장관님, 대한민국 사회는 지금 다문화사회로 급격하게 진입하고 있지요?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예.

○**강경숙 위원** 26년에 이주배경학생이 21만 명을 넘어섰고요. 이것은 전체 학생 수의 4.3%에 이른다고 합니다. 중도입국 같이 통계에 잡히지 않는 학생들까지 포함하면 한 30만 명 정도 된다고 해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주목해야 될 것은 다문화가족 자녀의 연령 구조가 빠르게 변화되고 있다는 말

입니다. 그러니까 다문화가정 자녀의 연령 분포 변화가 연도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초창기에는 영유아 중심이었다가 지금은 청소년·성인으로 많이 이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학생들 중에서는 고등교육기관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요구들도 생겨나고 있는 상황인 거지요.

그렇게 보면 성평등가족부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일괄지원 사업보다는 생애주기별로 가령 이를테면 연령 분포에 맞춰서 어떤 학생들은, 초기 학생들은 한국어가 잘 안 될 것이고 어떤 경우에는 예를 들면 본인의 정체성이 고민인 경우에는 정서·사회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친구관계가 안 되면, 친구가 전부인 세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교우관계 형성에 관한 프로그램들 그런 게 다양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장관님, 제가 이것저것 잘 살펴보니 다문화정책에 관한 것들은 굉장히 여러 부처가 개입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성평등가족부도 그렇고 교육부 또 고용노동부 또 법무부, 다양하게 연관되어 있는데 이것이 정책이 분절되다 보니까 중복되는 사업도 있고 또 거기서 누락되면서 사각지대가 발생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되게 비효율적이기도 한 것이지요.

제가 말씀드리려는 요지는 그래서 이 문제를 정부 차원에서 협력하고 연계하고 통합하는 어떤 프로세스라든지, 그런 플랫폼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것은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2022년 대선 당시에 포용적 다문화정책을 강조하면서 이민자 컨트롤타워를 설치해야 되겠다라는 공약을 제시한 적이 있으십니다. 지금 물론 총리실 소속으로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가 있는 것은 알지만 그것으로는 굉장히 많이 부족하지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어떻게, 수용해 주시겠습니까?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예, 위원님 의견에 적극 동의하고요. 전국적으로 다문화가족과 다문화자녀에 대한 우리 사회의 통합정책과 사업을 오랫동안 펼쳐 온 성평등가족부에서 조금 더 이 부분을 섬세하게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고맙습니다.

다음으로 이진수 법무부차관님, 어디 계시지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이진수** 여기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차관님, 이게 법무부하고도 굉장히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차관님께 말씀드리려고 하는 포인트는 뭐냐 하면 지난 27일 날 헌법재판소가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외국인 아동의 출생 등록 권리가 법으로 보장되지 않는 것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리셨어요, 그렇지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이진수** 예, 입법부작위에 대해서 위헌결정이 선고되었습니다.

○**강경숙 위원** 입법부작위이기 때문에 입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은 이것을 이제 입법화해야 되는 의무가 생기게 된 셈인데요. 이렇게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가 부모의 국적이라든지 체류 자격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은 대체 불가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는 없겠지요? 동의하시지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이진수**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제가 마침 법을 발의했는데 그 법명이 뭐냐 하면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입니다. 이것이 제정법인데요. 여야 많은 의원들께서 이것을 발의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출생 직후부터 이런 아동이 법적 주체로 바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많은, 법무부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입법을 하면서 신경을 써야 할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제도로 작동하기 위해서 법무부가 조금 더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협조해 주십시오.

○법무부장관직무대행 이진수 예, 외국인아동 출생등록법을 법무부에서도 중점 추진 대상 법률로 삼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같이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법무부장관직무대행 이진수 하반기에 통과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고맙습니다.

최교진 교육부장관님, 지난 4월에 성장엔진 연계 지역인재 양성방안 발표하셨지요?

○교육부장관 최교진 예.

○강경숙 위원 이것이 서울대 10개 만들기 사업이고 국정과제에서 고등교육에서 굉장히 핵심되는 과제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지역인재 양성방안이 있는데 대통령께서도 취임 30일 기자회견 그리고 12월에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도 이 사업이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굉장히 대안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를테면 이 사업은 서울대의 80% 정도의 재정을 거점국립대학에 다 나눠 줘야 되겠다라는 말씀도 하셨고 인서울을 해소하고 장기적으로 지방소멸을 해소해야 된다고 하는 목표를 제시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5극 3특, 권역별 성장엔진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고 그리고 산학연의 허브를 구축한다는 목표도 있고, 그러나 원래 당초에는 이것을 어떤 병목현상을 막아 보고자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입시의 문제가 너무나 경쟁이 많으니까 입시경쟁을 완화할 목적으로 전국에 거점국립대학을 지원하면서 거기에 인재들을 양성하자는 것이 원래 목적이었는데……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서울대학교 법인하고 나머지 9개 거점국립대학의 올해 재정지원 사업 예산인데요. 작년에 비해서 올해 지방국립대 지원예산이 많이 늘기는 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화면을 보시면 서울대학교 법인의 출연지원금하고 거점국립대 지원금이 아직도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말씀드렸던 서울대 10개 만들기 패키지의 지원사업이 굉장히 중요하기는 한데요.

그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그런데 이 사업을 선정할 때 그 선정의 기준, 그러니까 절차하고 내용이 상당히 아쉽습니다.

자세히 보십시오.

저 빨간 글씨를 주로 보시면 되는데, 이제 9개가 아니라 3개의 대학만 선정할 것이잖아요? 원래 당초에는 9개로 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3개 대학으로 좁혀진 것이지요, 3개 대학으로.

○**교육부장관 최고진** 9개 대학에 대한, 그러니까 먼저 보여 주셨던 슬라이드에 따른 서울대의 80%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9개 전체 대학에 대한 지원은 지속적으로 늘려가고 거기에 이번에 3개 대학이 선정이 되게 되는 것이지요, 집중적으로.

○**강경숙 위원** 3개 대학을 아무튼 우선적으로 선정을 하고 이제 거의 마무리되어 가는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요. PPT를 보시면 선정대학이 자체적으로 노력해서는 이를 수 없는 기준들이 있습니다.

가령 초광역의 거점과 파급 가능성 그리고 산업기반과 인프라, 성장엔진, 인력, 주변에서 수요가 얼마나 있는지, 수요가 있는 것이라야 이 대학이 선정되는 것에 좋은 조건인데 인력이 수요가 있는지 없는지는 대학에서 노력한다고 될 일이 아니거든요.

투자계획도 그렇습니다. 투자계획도 예를 들면 주변에 기업이나 공공기관이 제대로 없는 지역은 결정적으로 불리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런 것들은 외생 변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용을 써도 되지 않는 요소들이 지금 이 선정 기준에 세부 기준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불균형 투자로 인해서 이미 소외되었던 지역들이 더 격차가 커질 가능성이 농후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지역의 산업기반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또다시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는 그런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지역격차를 오히려 심화시키는 그런 역설, 그런 모순이 발생하게 된다는 걸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지요.

여기 보시면 이것은 권역별 성장엔진 산업지도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수요일에 산업통상부에서 이걸 발표했는데요. 이게 권역별 성장엔진에 대해서 정부가 정책을 지원한다고 한 것이 뭐냐 하면 서울대 10개 만들기 패키지 지원대학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성장엔진 기업이 적기에 그리고 해당 권역에서 지산지소로 인재를 양성해 가지고 거기서 지원하겠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전북 같은 걸 한번 보십시오. 저기 전북을 꼭 꼬집어서 보시면 그린수소·첨단로봇 그리고 현대자동차 투자 내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학의 자율적 노력이 아니라 현대차 새만금 투자 성과에 따라서 대학을 지원하는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산업정책에 대학정책을 끼워 맞추기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불편한 진실이 이렇게 유발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반도체 클러스터 집중 투자로 서남권의 선정 여건이 굉장히 좋아졌지요. 그럴 경우에 전북은 오히려 초광역 거점성이라는 것이 지표에 있는데 그것이 서남권하고 중복되기 때문에 지원사업 선정 가능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제주도 같은 경우에도 보십시오. 거기 우주산업인데요 우주산업을 성장엔진으로 선정했는데 2차 산업인 제조업 비중이 상당히 낮지요. 그리고 3차 산업인 서비스업이라든지 관광 그런 의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배후산업 여건이라든지 소재지 입지를 기준으로 해서 대학을 차등 지원하게 될 경우에 권역마다 훌륭한 경쟁력을 갖춘 대학 인재를 양성하겠다고 하는 본래 취지가 되게 무색해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얼마 없는데요.

그리고 현재 사업의 법적 근거도 충분해 보이지가 않는데, 국립대학법 제정을 지금 준

비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좀 더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서울대 10개 만들기 특별법 추진이 어떤가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립대학의 우려도 적지가 않습니다. 이를테면 중단기적으로 지방 사립대학이 고사를 하게 되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방 학생들에 대한 충분한 대안도 필요하고 지역 위기를, 지역소멸 위기를 가속화할 위험이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월요일 날 아침에 기사를 봤는데 사립대에 대해서 선별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그것도 수도권에, 그야말로 잘 나가는 사립대학교, 그러니까 경쟁력 있는 사립대학을 자율혁신대학으로 지정하겠다는 말을 말씀이세요. 그러면 여기에서도 또 격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지방에 있는 사립대는 거기서도 또 누락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수도권 주요 사립대뿐만 아니라 지방 사립대학에도 좀 온기가 퍼져 나갈 수 있도록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장기적으로는 고등교육의 공평성을 높이는 방향, 그러니까 사립대학을 나름 어떻게 정리를 하거나 여러 생각이 있으시겠지만 중단기적으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고려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교육부장관 최교진** 위원님 감사합니다.

간략하게만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지방사립대 문제는 존경하는 이인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일정하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지원책을 말씀드렸고, 실제로 서울대 10개 만들기로 통칭됐던 정책이 단순히 그 대학만의 발전이 아니라 실제로 그 대학이 가기 위해서는 지역에 일자리가 있어야 되고 정주여건이 있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이게 교육부의 독자적인, 혼자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어서 실제로 이 대학 선정 기준에 말씀하신 것처럼 국토공간 대전환 프로젝트 추진전략과의 정합성이 제일 앞에 들어가 있고 또 지역 여건이나 준비도 무엇보다도 대학 혁신을 위한 노력, 대학 전반의 교육 연구나 체질 개선 노력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들어가 있기는 한데 우선은 5극 3특 체제에 맞춘 대학을 전체적으로 하는 가운데 3개 지역 대학을 우선 선정해서 집중적으로 지원해서 성과를 내도록 하고 그러면서 준비가 되어 있는 그다음 지역을 또 지속적으로 선정해서 해 나갈 것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광재**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북 김천의 송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언석 위원** PPT를 보시겠습니다. 대한민국 총지출 증가 상황에 대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1996년도에 처음으로 총지출이 100조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200조가 될 때까지 걸린

시간이 9년이었어요. 200조에서 300조가 되는 시간은 6년, 400조에서 500조 되는 기간은 3년, 500조에서 600조가 되는 기간은 2년입니다. 그런데 700조를 이번 정부 임기 초에 달성을 했는데 3년 가까이 걸린 거지요?

예산처는 안 나왔나요?

○기획예산처사회예산심의관 정향우 사회예산심의관 나와 있습니다.

○송언석 위원 사회예산심의관?

○기획예산처사회예산심의관 정향우 예.

○송언석 위원 총괄심의관이 답변을 해야 되는데……

기사에 의하면, 내년도 예산이 12%대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기사가 몇 군데 나온 걸 제가 봤습니다. 그렇게 계산을 해 보니까 내년도 예산은 820조 정도 됩니다. 800조는 무조건 넘는 것으로 보여요. 그러면 700조를 넘긴 지 1년 만에 800조를 넘긴다 이런 이야기고 내년, 만약에 후년도 예산을 이런 추세로 하게 된다면 총지출 규모가 바로 1000조를 육박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과다하게 빠른 속도로 재정 규모가 증가되고 있다는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처사회예산심의관 정향우 전체적으로 지금 반도체 호황을 통해 가지고 금년도 지출 규모가 많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고요.

○송언석 위원 금년도 지출 규모가 늘어난 것은 반도체 호황하고 관계없이 작년도에 편성된 예산에 따라 집행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금년도는 얘기가 아니고, 내년도에 늘어나는 것은 세수가 늘어나니까 그걸 가지고 미래대응기금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처사회예산심의관 정향우 예, 맞습니다.

○송언석 위원 어쨌든 내년도 예산이 지금 12%대로 증가한다는 기사가 사실입니까?

○기획예산처사회예산심의관 정향우 내년도 지출 증가분에 대해서 제가 명확하게 몇 %인지 기억하지는 못하는데……

○송언석 위원 청와대는 누가 나와 있나요, 정책실장 나온다고 했는데?

○대통령비서실홍보소통수석비서관 성기홍 홍보수석 나와 있습니다.

○송언석 위원 홍보수석, 내년도 총지출 증가율이 12%대라고 하는 언론 기사를 제가 몇 군데 봤는데 사실입니까?

○대통령비서실홍보소통수석비서관 성기홍 정확한 증가율은 모르겠지만 800조는 넘을 것이라는 전망은 크게 틀리지 않은 걸로……

○송언석 위원 800조는 이미 넘었고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820조를 얘기하는 겁니다. 820조가 넘어갈 것이라라고 다들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게 사실이냐를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

○대통령비서실홍보소통수석비서관 성기홍 정확한 수치는 아마 내일 국무회의 통과를 통해서 결정될 걸로 보입니다.

○송언석 위원 내일 국무회의 통과되어서 발표되는 총지출 숫자가 820조가 넘으면 정당하다고 주장하실 겁니까, 아니면 과다하다고 하는 본 위원 주장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통령비서실홍보소통수석비서관 성기홍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과 관련된 당국자

가 답변……

○송언석 위원 재정부차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정경제부제2차관 허장 그것은 수요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송언석 위원 수요가 있으면 예산을 다 줍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나요, 예산 당국에서?

○재정경제부제2차관 허장 제가 직접적인 예산 당국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송언석 위원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고 하겠습니다.

총지출 규모하고 국가채무 규모를 그래프로 그렸습니다. 2004년도에 노무현 정부 때 처음으로 국가채무가 한 해 총지출 규모보다 더 커지기 시작을 해서 2022년도 문재인 정부 때 처음으로 국가채무가 1000조를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1000조 국이 되었지요.

그런데 2026년, 금년입니다. 총지출 규모 727조 대비해서 국가채무가 1412조입니다. 2배입니다, 2배. 거의 열추 2배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년도에는 총지출을 어마어마하게 늘려서 820조 가까이 만약에 된다고 한다면 내년도 국가채무를 한 100조 가까이 또 늘릴 거예요.

재정부차관은 결산을 담당하는 차관이니까 금년도 국가채무가 어느 정도 늘어나도록 예산상 되어 있는지는 기억하고 계시지요?

○재정경제부제2차관 허장 예, 1412조 정도 말씀……

○송언석 위원 아니, 그게 작년에 비해서 한 110조 이상 더 늘어난 규모잖아요.

○재정경제부제2차관 허장 예, 그렇습니다.

○송언석 위원 내년도 예산도 100조 이상의 국가채무가 늘어날 것으로 지금 예산이 되는데 그러면 세수가 말이지요, 아까 어느 분이 말씀하셨나 내년도 세수가 금년의 반도체 상황에 따라 가지고 많이 늘어난다고 하면 국채를 갚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자기금을 가지고 지금까지 운용해 온 것이 일반회계 세수가 부족하니까 공자기금에서 국채를 발행해 가지고 돈을 모아서 그 재원을 가지고 공자기금에서 일반회계에다 쌓아 왔던 것 아니에요? 그러면 세수가 남아돌 때는 반대로 해 가지고 일반회계에서 세수가 많이 들어오는 것을 다시 공자기금에다가 상환을 해서 공자기금에서 국채를 갚아 나가는 것이 일반 상식 아닙니까?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미래대응기금을 만든다고 하면서 반도체 세수로 100조 이상 돈이 더 늘어날 것이다 하니까 그것을 그대로 미래대응기금을 만드는데 국채는 또 여전히 100조 이상을 발행한단 말이에요. 이것 완전히 앞뒤 안 맞는 얘기 아닙니까?

○재정경제부제2차관 허장 아마 국채 발행량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신발행량이 작년보다 좀 더……

○송언석 위원 이것도 내일 아침이면 발표가 날 테니까……

국가채무 늘어나는 규모가 100조 정도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잖아요.

○재정경제부제2차관 허장 예.

○송언석 위원 그것도 기사에 나왔더라고요. 제가 만든 것이 아니라 저도 기사를 보고 얘기하는데 그 기사에 대해서 정부 어느 부처에서도 반박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그 말은 뭐냐? 상당 부분 사실이다라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보세요.

지금 그래서 내년에 만들겠다고 하는 미래대응기금을 보니까 10년간의 추세치, 연평균 증가율을 고려한 세입예산하고…… 추세치하고 내년도 실제 세입예산 그 차액을 추가세 수라고 하던데 이것은 이미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2025년까지 10년간의 결산액, 연평균 증가율, 재정부는 지금 몇 %로 알고 있습니까? 이것은 숫자가 이미 나와 있는 겁니다. 얼마지요?

○재정경제부제2차관 허장 제가 숫자를 아직 기억을 못 해서요.

○송언석 위원 아니, 결산 담당 차관이 결산액 그것도 모릅니까, 지금?

2015년부터 2025년까지 10년간의 결산액 그 숫자를 가지고 연평균 증가율을 뺀 거예요. 그게 6.2%라고 숫자가 나옵니다. 이것은 이미 확정돼 있는 숫자예요.

○재정경제부제2차관 허장 예, 본 기억은 나는데 제가 기억을 아직……

○송언석 위원 그러면 그 숫자를 가지고 2025년도 현재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결산액에다가 두 번을 곱하면 그게 27년 저기에서 말하는 추세치입니다, 추세치. 그게 370조 쯤 돼요.

그런데 지금 밖에서 얘기하고 있는 세수를 보면 내년도에 세수가 500조는 훨씬 넘고 내국세가 530조~540조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 남는 돈이 무려 150조가 넘는 돈입니다. 그 150조가 넘는 돈을 지금 별도로 세입세출 외로 빼 가지고 정부에서 만지작만지작 할 수 있는, 통치자금으로 쓸 수 있는 기금을 만들겠다는 것 아니예요. 이게 정상적인 겁니까? 차관, 답변해 보세요.

○재정경제부제2차관 허장 미래대응기금은 원래 경기변동에 따라서 크게 돈이, 윈드폴 프로핏(windfall profit)같이 돈이 많이 들어올 경우에 과도하게 지출을……

○송언석 위원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어올 때 상환해야 될 것은 돈이 적게 들어올 때 국채를 이미 쌓아 놔던 공자기금에다가 돈을 갚아야 되는 겁니다. 내년도에도 100조 이상의 국채를 발행하고 있어요, 그것도 국고채를. 그렇게 발행하고 빚을 저 가지고 하면서 세수가 좀 남는다고 그것은 완전히 별도로 해서 따로 쓴다는 게 앞뒤가 맞는 얘기냐 이거지요.

○재정경제부제2차관 허장 그런데요, 위원님, 어느 정도의 국채 규모는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송언석 위원 어느 정도의 국채 규모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기존에 있던 것……

○재정경제부제2차관 허장 왜냐하면 국채도 융통해야 되기 때문에……

○송언석 위원 국채를 리볼빙을 한다든지 해서 국채시장도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해를 해요. 그런데 국고채를 계속 신규로 발행하겠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지요.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재정경제부제2차관 허장 매년 한 100조 정도는 신규로 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정도 수준……

○송언석 위원 그러니까 신규로 발행하는 추가적인 국가채무는 세수가 부족할 때 용인될 수 있는 방식이고 세수가 남아돌 때는 오히려 그것을 갚아야 되는 게 원칙적으로 맞다는 이야기지요. 거기다가 초과세수가 지금 내년도에 얼마나 될지 모르는데……

내년도에 발생할 저기서 말하는 초과세수 그것은 내년 9월 달에 가서 전망을 해 봐야 나오는 거지요?

○재정경제부제2차관 허장 예, 그렇습니다.

○송언석 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세수 재전망을 해 가지고 돈이 남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재정경제부제2차관 허장 금년도에 돈이 남는 부분은 아마 미래대응기금 지금 법이 이번에 같이 국회에 제출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제출이 되면, 아마 그게 이펙티브(effective)하게 되면 거기서 초과세수로 나중에 되면 그 일부가 적립되게……

○송언석 위원 재경부차관님은 법안을 읽어 보셨어요? 지금 이게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그 법안을 제가 읽어 봤어요.

○재정경제부제2차관 허장 예, 입법예고 돼 있습니다.

○송언석 위원 그런데 여기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부칙에 설명이 안 돼 있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내년도에 나오는 것도, 내년도에 초과세수가 나온다고 해서 이것을 국회 심사도 안 받고 그냥 일반회계에 들어온 돈을, 세수를 그대로 미래대응기금의 세입으로 그냥, 세입세출 외로 정부에서 마음대로 써먹을 수 있다.

○재정경제부제2차관 허장 그렇게는 하지 않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언석 위원 약속할 수 있지요?

○재정경제부제2차관 허장 ……

○송언석 위원 답변 안 해요?

○재정경제부제2차관 허장 예.

○송언석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데 교부세에서 말이지요 종전에는 목적세·종부세, 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 이런 것들은 내국세의 19.24% 할 때 제외하는 걸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돼 있습니다. 이 조항은 왜 삭제했습니까?

○재정경제부제2차관 허장 미래대응기금은 제가 직접적으로 다루지는 않아서요.

○송언석 위원 정부에서 누가 다릅니까? 청와대, 답변해 보세요. 청와대!

○재정경제부제2차관 허장 아마 기획예산……

○대통령비서실홍보소통수석비서관 성기홍 홍보수석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과 관련된 당국자가 나와서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언석 위원 청와대는요 오늘 정책실장이 나오기로 했다가 갑자기 회의를 핑계로 해 가지고 국회를 무시하고 나타나질 않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한 유감을 표시하고요.

이런 상황이라면 과거의 관례대로, 비서실장이나 정책실장 이외에 다른 분들이 대참하는 것을 우리가 용인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 수석들이 여기에 나오는 것을 우리가 용인할 수가 없어요. 자기 분야가 아니라고 알지도 못하고 그런 사람이 왜 여기에 나타납니까? 청와대 전체 업무를 잘 아는 사람이 나타나야 되지. 그렇기 때문에 비서실장이나 정책실장이 자리에 앉아야 되는 겁니다.

다음 예산 할 때는 수석비서관들 대참하는 것에 대해서—제가 간사가 아니니까—저는 개인적으로 강력히 반대합니다. 수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고.

위원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잡아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청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재 송언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은 제가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충남 논산·계룡·금산의 황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명선 위원 행안부장관님, 대통령께서 경찰 전면 개혁을 요청하는 긴급 특명을 내리시고 총리실에 경찰개혁기구 설치를 직접 지시하셨습니다.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경찰개혁 TF가 구성이 돼서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총리실, 행안부, 경찰청이 함께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황명선 위원 검찰개혁이 마무리된 상황에서 경찰 통제가 뒤이어 설계되는 것은 형사 사법체계 측면에서 아주 당연한 수순입니다. 이제라도 실효성 있는 경찰개혁안이 반드시 만들어지고 실행되어야 합니다.

PPT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문재인 정부 당시 경찰개혁안 주요 이행현황입니다.

10년 전 문재인 정부 당시에 경찰개혁위원회가 개혁권고안을 만들어 냈지만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와 시민에 의한 민주적 외부 통제기구 신설이라는 핵심적 내용은 그저 권고사항으로 끝났습니다. 결국 1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다시 논의하는 처지가 됐는데요.

장관님, 좋은 정책, 좋은 비즈니스 아이템을 구상하는 것과 그것을 실제로 실현하는 것은 저는 전혀 다른 문제라고 봐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정부의 경찰개혁이 지난 과거, 아쉽지만 문재인 정부의 그 전철을 밟지 않아야 된다고 봐집니다. 복안 있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유감스럽습니다만 문재인 정부 당시의 경찰개혁안은 특히 국가경찰위원회의 실질화라든가 또 시민통제기구, 그러니까 외부 통제기구를 설치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그것은 행정안전부는 행정안전부대로 나름의 경찰에 대한 통제력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관성이 있었고 경찰청은 경찰청대로 외부 통제, 국가경찰위원회도 결국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외부 통제를 두지 않고 독립하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검찰개혁과 함께 경찰 수사에 대한 다각면으로부터의 통제장치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하는 데 조금도 빈틈이 없도록 개혁안을 만들고 실행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황명선 위원 맞습니다. 결국 경찰개혁위원회가 잘못하다 보면 과거의 전철을 밟을 수가 있지요. 그런데 장관님께서 정확히 그 부분을 진단하고 계셔서 아주, 그렇게 그런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수사개혁위원회 또 민주당의 경찰개혁추진단 그리고 대통령 지시로 총리실에 설치된 경찰개혁기구 이 세 가지가 지금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게 협력력이 될까 그리고 통일성 있는 안들이 제대로 만들어질까 또 혼선 없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까 이런 우려들이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오로지 경찰개혁의 방향과 목표는 국민들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경찰 수사가 공정하고 정의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결국 그 혜택은 국민들께 돌아갈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니만큼 원칙에 충실해서 개혁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황명선 위원** 경찰개혁위원회 이후의 설치 문제와 관련해서 저는 대통령 직속과 총리실 직속 두 가지 정도가 있다고 봐집니다. 아주 힘 있게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저는 대통령 직속의 경찰개혁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고 봐지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경찰개혁위원회를 말씀하십니까, 국가경찰위원회를 말씀하십니까?

○**황명선 위원** 경찰개혁위원회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경찰개혁위원회는 지금 당정 간에 그리고 경찰청……

○**황명선 위원** 총리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총리실과 경찰청, 당에 모두 논의가 되고 있어서 당정청 간의 협의를 통해서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고요. 경찰개혁위원회는 현재 실제로는 행정안전부의 정책자문기구화된 면이 없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 행정권한을 갖는 기구로 자리매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황명선 위원** 경찰의 수사 권한이 커지다 보니까 많은 우려들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저는 경찰도 신뢰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검찰도 신뢰해 왔습니다마는 지난 검찰에서 보았듯 소수의 권력 지향적 검사가 형사사법 체계를 악용하고 헌정을 농단하는 그런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경찰이라고 그렇지 않은 법이 없겠지요.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실제로 경찰의 징계 현황을 한번 보시면 아주 매우 우려스럽게 확인이 됩니다. 강압수사, 뇌물수수, 권한남용 등 수사비위로 검찰 조사를 받은 인원이 지난해보다 또 늘었고 올 상반기만 해도 정말 271명이 징계를 받게 됐습니다. 연도별 20년에는 426명에서 지난해는…… 536명, 굉장히 꾸준히 늘어나요.

경찰청장대행님, 이 정도면 개인의 일탈이 아닌 저는 구조적인 문제로 봐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경찰에서는 경찰관의 업무에 대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업무이기 때문에 경찰관 개인의 그런 직무상 잘못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4년에 536명이었고 25년에는 조금 줄어든 수치로 나타납니다.

○**황명선 위원** 이 같은 수사비위가 증가하는 근본적인 원인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인력과 수사 환경도 있을 수 있겠고 앞서 장관님께서 말씀 주신 내부 견제와 외부 통제, 외부에 대한 통제시스템 또 감찰시스템 이런 여러 가지의 실패 사유들이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을 잘 보완해서 경찰이 책임지고 수사할 수 있는, 국민들이 우려하지 않는 그런 제대로 된 경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국민들의 우려를 알고 있기 때문에 경찰 자체적으로도 수사개혁위원회를 외부위원 중심으로 해서 가동을 하고 있고 또 국회 그리고 총리실 중심으로 경찰개혁에 대한 기구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경찰도 열린 자세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명선 위원** 장관님, 경찰개혁위원회 잘 마무리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명선 위원** 그다음에 국유지와 관련해서, 이걸 정부 부처의 각 부처가 땅을 다 국유지로 갖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오늘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전국의 모든 실태가 비슷합니다. 국가 땅, 부처가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땅은 각 부처의 땅이고 결국 국가로 보면 대한민국의 자산이지요. 그런데 그 부지 안에 학교가 설치됩니다. 기타 우리 공공시설이 설치됩니다. 이러한 사례들을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재정경제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을 텐데요.

특히 현행 법률상 보면 무상임대라든가 무상양여라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규정이 굉장히 제한적이어서 결국은 각 부처별로 변상금이 부과되지 않으면 가압류를 붙이거나 이런 경우가 발생되더라고요. 특히 인천교육청에서 교육청 차까지 가압류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우리 논산 같은…… 계룡에 엄사 초등학교·중학교, 논산 3군 본부가 과거에 들어섰습니다. 그러면서 군 가족과 군 가족의 학생들에게는 필요에 의해서 학교가 설치가 됐어요, 땅은 국방부 부지고, 그리고 그 위에 충남교육청에서 예산을 들여서 학교를 세웠는데 이게 지역의 가장 아주 잘못된 민원으로, 지금 국가가 잘못해서 우리 학생들의 학생권 침해나 학부형들이나 선생님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건 우리가 국가의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국유재산법이 지금 현재 기재위에 제출돼 있는데 각 부처가 공익적으로, 지방정부가 됐든 중앙정부가 됐든 이게 국가의 자산이거든요.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되고 학교처럼 교육 여건 이런 문제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쓰게 되면 무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면 변상금 조치라든가 가압류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

○**재정경제부제2차관 허장** 예.

○**황명선 위원** 결국은 우리 학생들이 피해를 입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사례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장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육부장관님.

○**교육부장관 최고진** 실제로 과거에는 학교를 설립할 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유지를 일부 상당수를 점유한 상태로 설립된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이 합리적으로 무상양여나 무상임대 방식으로 되는 경우도 있지만 법적으로

사실은 이것에 대해서 추정금을 내게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걸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갈등의 요소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여러 차례를 재정부하고 그 해당 교육청하고 이렇게 해서 교육부에서 중재를 서고 상당 부분 노력을 했는데 앞으로도 교육청, 재정부와 교육부가 같이 머리 맞대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꼭 건의하고 싶었습니다.

○**황명선 위원**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어서 제가 육성으로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교육부장관 최교진** 예.

○**황명선 위원** 국무조정실장님 나오셨어요?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김영수** 예, 국무1차장입니다.

○**황명선 위원** 어디 계세요?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김영수** 여기 있습니다.

○**황명선 위원** 제안을 드릴게요.

결국 우리가 국민을 위한 정부거든요. 그런데 이 자산이 부처별로 다르고 또 지방정부가 다르고 또 부처가 결국은 우리 국민들, 아니면 예를 들면 교육부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을 위해서 부지를 이렇게 쓰게 되는데 서로 이게 부처의 자산끼리 충돌되는 부분 때문에 결국은 그 피해가 국민과 학생들, 쓰는 시민들한테 피해가 오는 거거든요. 국무조정실에서……

충남 계룡에 용남 초중고가 있어요. 또 대한민국에도 굉장히 많은 사례가 있더라고요, 특히 학교시설과 관련해서. 그런데 용남 초중고는 우리 3군 본부를 국방부에서 군인 가족들, 아이들을 위해서 설치해 달라고 충남교육청에다가 요구해 가지고 이후에 토지 반환을 시켜 주겠다라고 했는데 약속을 안 지키고 결국은 캠프로 넘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있거든요. 이것은 국무조정실에서 국방부, 교육부 그다음에 재정경제부 함께 4자 협의체를 만들어서, 이게 계룡의 용남 초중고의 사례이지만 전국에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국민을 위한 정부로서의 역할을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꼭 4자 협의체를 만들어서 이런 문제를 신속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무실장님.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김영수** 국무1차장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런 사례가 굉장히, 전국적으로 한 1100개가 넘는 것으로 저희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공공기관끼리 이게 해결이 안 되고 그런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은 굉장히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적극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명선 위원** 꼭 개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광재** 황명선 위원님, 1분 동안 추가질의를 못 드려 죄송합니다.

재정경제부차관님, 우리가 지금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국유재산이 돈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 돼요, 가액이?

○**재정경제부제2차관 허장** 가액이 거의 1500조, 1600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광재 1500조, 1600조?

○재정경제부제2차관 허장 예.

○위원장 이광재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공유재산은 얼마쯤 돼요?

○재정경제부제2차관 허장 공유재산도 몇백 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위원장 이광재 1200조?

○재정경제부제2차관 허장 예.

○위원장 이광재 그다음에 공기업이 갖고 있는 재산은 얼마쯤 돼요?

○재정경제부제2차관 허장 공기업도 한 천이삼백 조 정도……

○위원장 이광재 천이삼백 조?

○재정경제부제2차관 허장 예.

○위원장 이광재 그러면 다 따지면 근 4000조 가까이 되는 거지요?

○재정경제부제2차관 허장 예.

○위원장 이광재 그런데 이게 서로 정보를 모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근본적인 법적·제도적 정비가 필요하고 이것을 활용, 일단 실태를 알고 활용하는 부분 이게 제도 정비가 필요해 보이는데 어떤가요?

○재정경제부제2차관 허장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번에 코리안 어셋법이라고 국가자산법을 새로 법 개정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중심에서 이제 전체 재산을 아우르고 보유해서 이것을 활용하려고 하는, 그래서 공유재산까지 포함하는 그런 데이터베이스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이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와 그 법적 시스템과 관리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완전히 이번에 새로운 혁신을 하기 위해서 새로운 법을 만들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올해 될 겁니다. 말씀……

○위원장 이광재 아마 국유재산 기본법이라는 거하고 좀 전에 김영수 차장이 말씀하신 충돌하는 부분이 천 군데가 넘어요. 그러니까 이용과 활용 부분에 대해서 국가 시스템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지요?

○재정경제부제2차관 허장 예, 그것은 100% 동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광재 황명선 위원님의 좋은 질의 감사합니다.

다음은 강원도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의 허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영 위원 강원도 춘천·철원·화천·양구갑 출신 허영입니다.

오늘은 윤호중 행안부장관님하고 그다음에 통일부장관님하고 시간이 되면 교육부장관님께 순서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안부장관님, 화면을 한번 봐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올해로 운영 5년 차입니다. 2022년부터 매년 1조 원 규모로 조성되어서 지난 4년간 3조 5379억 원이 배분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는 10월에 인구감소지역 재지정이 예정돼 있지요. 그런데 지난 4년간 배분됐지만 9507억이 아직 집행되지 못했습니다. 미집행액의 93%가 정작 인구감소지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인구감소지역 기초계정의 집행률은 66.9%에 그칩니다. 또 광역계정 집행률하고 기초계정 집행률을 보면 한 30% 정도 차이가 납니다.

다음 화면 한번 봐 주시지요.

또 지역활성화투자펀드라는 게 있습니다. 이 지역활성화투자펀드는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 1000억 원, 정부 재정에서 1000억 원, 산업은행에서 1000억 원 해서 도합 3000억 규모로 만들어진 지역경제 활성화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정책펀드입니다.

그런데 2025년 말 기준 8개 승인 사업의 모펀드 투자 약정액이 3228억 원이지만 실제 투자된 금액은 1915억 원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도 2000억 원을 출자재원으로 확보했지만 실제 모펀드에 납입된 금액은 212억 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지자체가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의 일부를 펀드로 돌려놓고 정작 그 펀드에서도 투자처를 찾지 못해 가지고 돈이 묶여 있는 게 지금 현실이지요.

또 다음 화면을 한번 봐 주시면, 지역활성화투자펀드 실출자·프로젝트 현황입니다.

여기서 약간 오렌지색으로 돼 있는 부분들을 보시면 여기가 인구감소지역 단양·장성·태안 세 곳을 표기한 겁니다. 전체 승인된 8개 프로젝트 중에서 인구감소지역은 세 곳뿐입니다. 그리고 모펀드 투자액 3228억 원 중에서 인구감소지역에 투자된 금액이 457억 원, 단 14.2%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85.8%가 인구감소지역이 아닌 곳에 투자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전체 규모의 3분의 2는 지역소멸대응기금에서 펀드 출자를 하고 있는데 정작 투자는 다른 곳에 쓰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사업성과 여러 가지 민간투자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은 이해는 하지만 이것은 집행 구조, 집행률,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문제가 있는 수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제고 그다음에 광역계정과 기초계정이 왜 이렇게 집행을 차이가 있는지 또 이렇게 펀드로 돌려놓고 정작 펀드를 쓰지 못하고 인구감소지역에 14%밖에 펀드 투자를 하지 않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전반적인 운용 방식 개선 방안에 대해서 행안부장관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전반적으로 집행 실적이 미흡하다라는 지적에 대해서는요 이것이 주로 지방기금법에 따라서 기반시설 조성에 그동안 투자가 되다 보니까 부지 확보라든가 설계, 인허가 이런 행정절차 등을 진행하느라고 초기 집행이 지연돼서 그렇습니다. 특히 인구감소지역에 주로 투자가 되다 보니까 그곳의 집행률이 낮게 됐는데요. 문제는 그래서 올해부터 기반시설 중심이 아니라 제도와 프로그램 운영에 쓸 수 있도록 지방기금법을 개정해서 올해 4월 9일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극복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역활성화투자펀드의 경우 지금까지 기금에서 연간 1000억을 투자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렇게 투자 실적이 저조함에 따라서 올해부터 투자 규모를 500억으로 줄였습니다. 다만 이미 출자되어 있는 것들은 계속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이 사업은 인구감소지역만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 아니라, 그러니까 비수도권에 민관 공동투자가 가능한 사업을 선정하다 보니까 인구감소지역 외로 투자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허영 위원 점점점…… 장관님, 그게 그렇게 되면 인구감소지역은 투자도 못 받고……

그다음에 인구감소지역이 필요한 것은, 평가기준을 또 인프라에서 소프트웨어 중심으

로 바꿔 버리면 단기집행률을 높일 수 있는 소프트웨어 중심 사업으로 집중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인구감소지역의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는 정주여건을 확보하기 위한 인프라 투자가 더 필요한 것입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인프라 투자도 필요하지만 생활인구를 끌어들이기 위한 프로그램 사업도 역시 동시에 필요해서 어느 한쪽만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허영 위원 저는 이 펀드를 줄이는 것보다는…… 지금 지역의 젊은 일꾼들은 사실상 투자를 받으려고 해도 받지 못하는 그런 한계로 인해 가지고 일자리를, 창업을 서울, 수도권으로 옮기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어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히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지금 한 3000억 이상 펀드가 쌓여 있기 때문에 우선지출하는 것으로 했다는 말씀 드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그래서 인구감소지역에……

○허영 위원 장관님, 좀 이따가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알겠습니다.

○허영 위원 시간이 없어 가지고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화면을 한번 봐 주시고.

인공지능데이터행정법이 8월 28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보시지요. 이 화면은 뭐냐 하면 미국의 한 경찰국이 도입한 AI 안면인식 시스템은 백인 위주로 학습이 되어서 유색인종 오류율이 최대 100배나 높았습니다. 그리고 네덜란드의 학자금 사례는 네덜란드 교육재정청이 학자금 부정수급을 잡겠다며 AI 알고리즘을 도입했는데 AI가 외국계 이주 배경을 가진 학생들을 잠재적 사기꾼으로 낙인찍기 시작했습니다.

인공지능데이터행정법 도입을 통해 가지고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되었는데 우리도 이제 AI를 통해 가지고 복지수급자들을 판정하게 되었고 과세나 인허가 검토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공공행정데이터들도 이런 잘못된 데이터를 학습한 AI가 부정수급자를 낙인찍어 가지고 선정할 가능성이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좀 드립니다.

첫 번째로는 학습용데이터의 품질관리 기준을 구체화하고 표준화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공공분야 AI 역량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고 이러한 새로운 편향 위험을, 길러 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고요. 세 번째로는 AI가 결정을 했더라도 사람이 직접 확인하고 다시 심사하는 절차를 도입하고 의무화해야 합니다. 또 공공기관 간의 데이터가 칸막이가 쳐져 있어 가지고 서로 교환이 되고 함께 통합된 데이터로 학습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칸막이 해소와 AI 특화 보안 체계를 더 강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범정부 사이버 보안 대응 체계도 정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데이터행정법이 통과가 됐지만 AI 서비스를 정말 국민들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게끔 이러한 안정적인 장치들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장관님의 말씀을 아까 부족한 답변과 더불어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아까 못 다 드린 말씀은 펀드 투자에 있어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투자를 지금까지는 3분의 1로 가이드를 해 왔는데 2분의 1로 넓히기로 했다는 말씀을 미처 다 못 드렸습니다.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법이 제정이 되고 또 시행이 되는 데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공공데이터의 인공지능 친화 관리 가이드라인을 시행하고 있는데 그것을 좀 더 고도화하고, 그래서 학습용데이터의 품질 향상을 위해서 더 노력할 뿐만 아니라 AI의 판단을 무조건 신뢰하지 않고 인간이, 사람이 결국은 중대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행정법이 될 수 있도록 개선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허영 위원 마지막으로 30초만……

10월 달에 인구감소지역 재지정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021년 지정 때 인제군이 인구감소지역이 아니라 인구관심지역이 되었어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관심지역입니다.

○허영 위원 왜 그런가 보니까 인구가 총 3만 1835명인데 군인이 2만 1488명이에요. 그러니까 정착하지 않는 장병이 인제군 인구로 유입이 된 거지요. 그런데 장병들은 군 복무하고 떠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소지역이 아니라 관심지역이 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교부금도 덜 받고 그다음에 다양한 인센티브 정책도 덜 받고 심지어는 한강수계기금 배분체계에서도 덜 받고 그래 가지고 인제군의 전체 예산의 6분의 1 정도의 손해를 지금 보고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들이 제대로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세심하게 살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영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광재 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환기를 위해 잠시 정회했다가 20분 뒤인 4시 2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회의중지)

(16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광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울산 남구갑의 김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태규 위원 반갑습니다.

법원행정처장님, 재제청 때문에 오늘도 도리 없이 또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청권에 대한 헌법상의 근거는 있는데 재제청과 관련해서 헌법이든 법률이든 관련 규정이 있습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명문의 규정은 없습니다.

○김태규 위원 없지요.

과거 선례가 있습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법원에 관련해서는 없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렇지요.

지금 대법관과 관련해서는 없고요. 대법원장 제청과 관련해서는 1958년도에 법원행정처에서 대법원장 제청을 했는데 법원에서는 법관회의에서 김동현을, 그런데 제청 거부를 대통령이 하면서 이우익을 원했고 이와 관련해서 법원 내의 많은…… 이승만 대통령 쪽에서 법을 통해서 그걸 바꾸려고 시도를 했고 그리고 법원뿐만 아니고 대한변협 그다음에 서울변협 등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면서 강하게 항의하는 바람에 그 법안 자체도 철회되고, 그러니까 법관회의의 제청권을 없애는 법을 만들려고 했다가 그 법 자체도 없애고 최종적으로 이우익 후보도 되지 않은 선례는 있더군요, 대법관은 아니지만 대법원장과 관련해서,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들은 바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계속 다시 한 번 더 확인드리지만 서면 제청이 원칙 맞습니다. 그렇지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최종적으로는 서면으로 압니다.

○**김태규 위원** 최종적으로는 서면 제청이 맞고.

그다음에 당시에도 협의가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렇지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김태규 위원** 그리고 제청과 관련해서 대법관추천위원회는 제청이 끝나면 해산되게 돼 있지요. 당연히 없어지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추천하면 바로……

○**김태규 위원** 그렇지요.

추천하면 자동적으로 해산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김태규 위원** 그런데 지금은 대법관추천위원회가 없어진 겁니다. 지금 현재는 없는 겁니다. 그렇지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김태규 위원** 그렇지요.

만약에 이게 가능하다고 그러면, 재제청을 계속 반복하면 결국 대통령이 원하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후보 4명을 처음에 올렸는데 그중에 1명 재제청 요구하고 안 되면 또 재제청 요구하고 이렇게 된다면, 세 번만 하면 결국 본인이 원하는 대로 가지 않겠습니까, 임명권자가 원하는 대로. 그렇지 않습니까? 단순한 상식이라서 그렇게 확인만 구하는 겁니다. 맞지요? 맞습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

○**김태규 위원** 어려운 질문이 아닌데 그걸 답변을 못 하십니까?

예전에 2012년도에 김병화 대법관후보자가 사퇴한 적이 있었나 봅니다. 사퇴입니다, 이때는, 제청을 거부한 게 아니고, 재제청을 요구한 게 아니고 사퇴입니다. 그래서 이때도 2주 만에 새로 추천위원회 꾸리고 천거 절차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맞습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그렇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상황에서 제청이 안 이루어지면…… 사실은 제청 자체도, 지금 재제청을 요구하는 것 자체도 저는 위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청권은 제가 앞서도 계속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청-동의-임명의 절차를 거치는데 대통령의 시간은 마지막에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청이 이루어지는 시간에 대통령이 들어와서 제청권을 가지고 문제를 삼는다는 거는 월권 아니겠습니까? 이거야말로 직권남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탄핵사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그리 보입니다. 지금 법 적용이 자꾸……

행정처장님, 대법원 정면에 들어가면 대법원 앞면에 3개의 단어가 있지요. 어떻게 돼 있습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자유·평등·정의입니다.

○김태규 위원 그렇지요.

평등·정의, 법 앞에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없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리고 법대로 하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원칙적으로 법 조항이 있으면 문언 해석이 제일 우선 아닙니까. 그렇지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원칙적으로는 문언 해석이 중요합니다.

○김태규 위원 그러면 이것도 문언대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평등·정의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법 규정대로 적용을 시키면 대통령 재판도 정상적으로 진행을 했었어야지요. 그거는 왜 안 했겠습니까?

지금 그와 관련해서도 행정처장님께서 답변 주신 걸 보면 굉장히 다양하게 변화를 보이거든요. 해당 재판부에서 해결할 문제라고 말씀하신 적도 있고, 답변을 안 한 경우도 있으시고 또 어떤 경우는 내 개인적이라면 재판을 했음직하더라고 얘기하신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일선 재판부에서 결정할 사안인 것 같습니다’, ‘대법원에서 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재판부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해당 재판부 문제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기일 지정 문제는 담당 재판부의 소송지휘권, 담당 재판부가 독자적으로 결정할 문제입니다’, ‘없습니다’, ‘재판받는 사람이 재판장을 고를 수 있냐, 없다’, 그다음에 ‘대통령으로서 국정수행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서 해당 재판부에서 결정할 것으로 안다’ 이렇게 답변이 일관되지 않고 여러 가지로 나뉘어서 나오거든요.

다시 한 번 더 여쭙볼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혼자의 의사 말고요 이 법 해석을 말씀하신 것처럼 진정으로 평등과 정의의 기준에 맞춰서 판단하신다면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지금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제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태규 위원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이 멈춰 서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그 부분은 원칙적으로 헌법 해석의 문제여서 최종적으로는 헌법재판소가 결정하실 것이고 또 재판에 관련해서는 각 재판부에서 소송지휘권에 따라서 판단할 문제라서 법원행정처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김태규 위원** 그렇지요.

지난번에도 소송지휘권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처음에는 소송지휘권이라고 하다가 나중에 제가 물으니깐 해당 재판부 문제라서 모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소송지휘권이 아닌 그 무언가가 있는 것처럼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소송지휘권이라고 보시는 게 그나마 조금 사리에 맞게 접근하신 것 같은데 만약 그러하다면, 재판부의 재판장이 바뀌면 그 사람이 소송 지휘를 한다면 그 재판은 진행해도 되겠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소송지휘권의 문제니까? 그렇지요? 판사에 따라 다른 거지 않습니까? 재판장의 의중에 달려 있다는 애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판장이 그 소송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다면 소송지휘권의 문제니까 소송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어느 것이 법률해석 또는 헌법해석에 옳은지는 정해져 있는 것이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법원행정처에서 재판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김태규 위원** 그러면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법원행정처에서는…… 제가 다음 질의는 어차피 시간이 많이 지나서 마지막으로 여기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행정처 입장은 그러면 해당 재판부의 소송지휘권의 문제라서 내가 이것이 옳다, 그르다고 얘기하기는 곤란하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그렇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러네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 말을 통해서 충분히 추론할 수 있는 것은 해당 재판장이 의지만 가진다면 충분히 소송을 진행해도 된다는 얘기네요. 그렇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그것이 헌법에 부합하는지는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김태규 위원** 그것은 해당 재판장이 결정할 문제고.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그렇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김태규 위원** 그러니까 해당 재판장이 그게 헌법에 부합한다고 생각하면 소송해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그렇습니다.

○**김태규 위원** 맞지 않습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김태규 위원** 그 말씀을 제가 여쭙고 싶었습니다.

제가 시간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법무부차관님, 간단히 빨리만 좀 얘기를 드릴게요.

기존에 수사하고 공판이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쉽게 접근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공소청은 기존의 공판검사가 하던 역할을, 15% 정도의 검사들이 그 역할을 담당했었지요. 그렇지요?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이진수** 예.

○**김태규 위원** 그다음에 중수청은 수사를 담당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걸 지금 분리를 시켰지 않습니까, 공소청하고 중수청으로. 그렇

지요?

그러면 분리되면, 일용 생각하면, 기존의 검찰청이 나누어지는 것 같으면 기존의 검찰청에서 상당한 인력들이 중수청으로 옮겨 가면 됩니다. 그런데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니까 강제로 옮기지는 못하겠지요. 그렇지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이진수 예.

○김태규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기소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 공판 유지와 관련해서 기존의 검찰청이, 공소청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공소 유지와 그다음에 아까 수사만 얘기했는데 하나 더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기소 여부 결정입니다. 그렇지요?

좀 짧게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소 여부 결정인데 그러면 기소 여부 결정과 관련해서 일정 정도 인력이 필요하겠지요. 공소 유지하는 데 15% 정도의 인력이 필요했다면 기소 유지와 관련해서도 일정 정도 인력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이진수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렇지만 그게 기존의 수사권을 다 가지고 있는 그 인력만큼은 필요하지 않을 거라고 보는 게 제 시각이거든요. 그런데 차관님께서서는 기존의 그 인력을, 지난번 질의 때 얘기를 들어 보니까 그 인력을 그대로 다 지켜야 된다는 취지로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렇게 돼 버리면 결국에는 기존 조직은 일이 충분치도 않은데 굉장히 많은 인력들이 남게 되고 이쪽은 새로 사람을 뽑아야 되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실제로 검경수사권 조정하고 나서, 보완수사권 없어진 것 아닙니다, 검경수사권 조정하고 나서 당장 드러난 현상이 뭐였냐면 검사들은 그리고 검찰청 수사관들은 ‘별로 할 일이 없다. 일거리가 없었다’ 그리고 일선의 경찰들은 ‘매일 과로다. 야근이다’ 그러면서 고통을 호소했거든요. 검경수사권 조정 때 이미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보완수사권까지 없어졌지요. 이런 상황이면 검찰청에서 기소 유지 그다음에 공소 유지 그리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인력을 뺀 나머지 인력들은 사실상은 잉여 인력이 되는 거지요, 잉여 자원이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 잉여 자원은 기존에 검경수사권 조정 때도 그랬듯이 지금 보완수사권이 없어지면 더 많이 늘어날 겁니다. 그러면 검찰청은 굉장히 많은 인력들이 쉬고 앉아 있고, 중수청 아직 만들기 전이니까, 경찰청은 당연히 인력 수사로 인한 고통을 더 많이 호소할 것이고 중수청은 또 새로 인력을 뽑아야 돼요. 그렇지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기존의 검찰청 인력은 그대로 있으면서 중수청 인력이 또 추가로 더해지는 꼴이 되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게 검찰의 큰 그림인가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법무부장관직무대행 이진수 답변드리고 되겠습니까?

○**김태규 위원** 예.

○**법무부장관직무대행 이진수** 검사들이 지금 송치된 사건과 불송치 사건에 대한 기록 검토로 미체가 300에서 500건에 이르는 등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과거에 직접 보완수사를 했던 부분들, 사건의 약 40%가량을 직접 보완수사를 했던 부분들을 앞으로는 경찰과 협력하에 보완수사 요구 등으로 경찰을 통해서 이뤄야 되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한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검토와 인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김태규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그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죄송합니다. 길어질 것 같아서 나중에 보충질의할 때 다시 말씀을 드리겠는데…… 다시 질문을 드릴게요, 다시 질문을 드리겠는데 그만한……

결국에는 제가 궁금한 것은 그래서 이 기소유지 판단을 하기 위해서 기존의 검찰 인력이 그대로 다 필요한지 그 부분이 알고 싶은 거예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이진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수사를 했던 인원을 제외하고서는 지금 형사부 검사실에 남아 있는 수사관들은 앞으로 수사협력과 사실관계 확인, 각종 자료의 검증을 위해서 인력 유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김태규 위원** 이전 답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제가 다시 나중에 묻겠습니다.

○**위원장 이광재** 김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남 당진의 어기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기구 위원** 충남 당진의 어기구 위원입니다.

법무부장관님 직무대리하십니까, 차관님?

○**법무부장관직무대행 이진수** 예, 차관이 대행하고 있습니다.

○**어기구 위원** 여기 앉아서 듣다 보니까 대법관 재제청 문제 말이에요, 이게 사법부 장악이다, 대법관 쇼핑이다, 직권남용이다, 탄핵 사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대법원장은 그냥 누구를 제청하더라도 대통령은 도장만 찍으면 되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 이진수** 헌법 규정상 대통령님의 임명권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어기구 위원** 그러니까 아무 판단 없이 그냥 대법원장께서 제청하면 대통령은 도장만 찍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 이진수** 예.

○**어기구 위원** 그러면 대법원장의 제청권만 헌법적 권한이고 대통령의 권한은 그냥 도장 찍는 권한입니까? 이런 사실관계를 누가 보더라도, 초등학교도 아는 이런 권한을 갖다가 놓고 계속 정의에 부합하지 않다, 평등과 정의에 어긋난다, 사법 장악이다, 대법관 쇼핑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억지 주장에 대해서 왜 단호하게 말을 못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법무부장관직무대행 이진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법원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규정되어 있다고 해석들 하고 계시고요. 또한 임명권은 대통령님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

다.

○**여기구 위원** 왜냐하면 대통령이 도장만 찍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 초등학생들도 이해가 다 될 텐데 그런 것들을 왜 명약관화하게 쉬운 말로 대답을 못 하느냐는 말이에요. 맨날 비비 꼬고 법이 어떻게 됐다는, 어떨 때는 듣고 있어 보니까 참 이상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앞으로는 정확하게 쉽게 시장에 있는 할머니도 알아듣게끔 얘기를 해 주십시오. 누구라도 편하게……

○**법무부장관직무대행 이진수**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주신다면 쉬운 용어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구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용어로 하시지 마시고 누구나 다 이해하게끔 설명을 해 주시면 간단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관련한 질의를 하려고 그러는데 저는 이것 대통령비서실장이나 정책실장한테 좀 질의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이 재정경제부 일이기도 하고 또 국무조정실의 일이 될 것 같기도 하고 또 오늘 대통령비서실에서 류덕현 재정기획보좌관님 나오셨지요?

○**대통령비서실재정기획보좌관 류덕현** 예, 나와 있습니다.

○**여기구 위원** 보좌관님도 일을 좀 합니까?

○**대통령비서실재정기획보좌관 류덕현** 관련된 부분 하고 있습니다.

○**여기구 위원** 그러면 대통령비서실 쪽에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관련돼서 국무조정실장이나 재경부차관님께서 아는 부분은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 곧 발표할 겁니까? 언제 발표하시지요?

○**대통령비서실재정기획보좌관 류덕현**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여기구 위원** 그런데 뭐 곧 발표한다고, 이 달 안에 발표할 거라고 하더니 미뤄졌다 그러는데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없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재정기획보좌관 류덕현**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구 위원** 준비를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언제 할지 모른다 이거지요?

○**대통령비서실재정기획보좌관 류덕현** 예, 그거는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여기구 위원** 그러면 1차 때는 충남이 제외됐었는데 2차 공공기관 때는 충남 포함되니까, 안 됩니까? 이것만 좀 묻겠습니다.

○**대통령비서실재정기획보좌관 류덕현** 구체적인 지역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지 못합니다.

○**여기구 위원** 그러면 알고 있는 게 뭐니까? 거기서 뭐하는 거예요, 그러면? 알고 있는 게 뭐니까?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목적이 뭐예요? 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대통령비서실재정기획보좌관 류덕현** 위원님께서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국토균형발전과 지방주도성장을 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구 위원** 그러면 2차 하기 전에 1차 공공기관 이전 때 했던 한계와 성과 이런 것들을 분석해 본 적 있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재정기획보좌관 류덕현** 아마 그 실무 하는 부서에서도 그렇고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구 위원** 그러면 대통령비서실은 전혀 모르는 겁니까? 그러면 국무조정실에서 하나요, 재정경제부에서 하나요? 2차 공공기관 관련해서 차관님, 전혀 몰라요? 전혀 모르니까?

○**재정경제부제2차관 허장**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준비되고 있는 거라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여기구 위원** 곤란할 게 뭐 있어요. 이런 판에서 얘기 좀 하고 국민들께 뭐 어려운 거 있으면 좀 말씀을 드리고 그래야지 다 숨겨 가지고 될 일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재정경제부제2차관 허장** 예, 말씀을 주시면 저희가……

○**여기구 위원** 재정부차관님이 말씀해 보실래요? 공공기관 1차 관련한 문제점이라든가 한계 이런 것들을 재정경제부에서 파악해 보신 적 있습니까?

○**재정경제부제2차관 허장** 저희 쪽은 공공기관 지방이전보다는 저희 쪽은 주로 공공기관 기능개혁 쪽을 하고 있기 때문예요. 지방이전은 아마 국토부나 그쪽 관련이 아닌가 하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구 위원** 재정경제부는 관심이 없어요?

○**재정경제부제2차관 허장** 관심은 있습니다만 저희 쪽에서 말씀을 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구 위원** 그러면 국무조정실에서는 관련 없습니까, 국무조정실장님?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김영수** 국무1차장입니다.

저희도 사실 논의 과정에 솔직히 참여를 못 해서요. 아직 저희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여기구 위원** 이게 잘 들어 보세요. 이게 2차 공공기관이 매우 중요한데 행안부장관님도 관여 없지요? 관여 있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아닙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국토부 소관 사항이라서요.

○**여기구 위원** 그래도 이게 청와대 대통령비서실하고는 얘기가 돼 있지요?

그래서 이전할 때 정말 분석을 정확히 해야 돼요. 이게 저희가 판단해 보니까 산업연구원과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분석을 한 게 있어요. 1차 종합발전계획에 대한 목표와 성과에 보면 상당히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이런 평가들이 있어요. 그래서 2차 평가할 때는 정확하게 해서 해야 된다 이런 말을 강조하고 싶고 청와대 정책실이나 나오면 여러 가지 얘기 좀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아무도 아시는 분이 없으니까 제가 여기서 끊겠습니다.

2차 공공 이전할 때는 그 지역의 산업,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관련 공공기관들이 내려갈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대통령비서실?

○**대통령비서실재정기획보좌관 류덕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구 위원** 그리고 윤호중 장관님 고생이 많으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아닙니다.

○**여기구 위원** 지방소멸대응기금 아까 어떤 위원님께서 질의도 하셨지만 매년 1조 원 규모로 운영을 하잖아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여기구 위원** 이게 보니까 인구감소지역 69개 지역 또 관심 지역 18개 시군구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10월에 이게 재지정, 재선정 작업 하시나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10월에, 이제 5년이 지났기 때문에 내년부터 5년간 지정할 지역을 정하게 됩니다.

○**여기구 위원** 이것도 그러면 지난 5년 해 본 결과를 토대로 다시 지정할 때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성과가 있는지 한계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정확히 판단하셨을 것 아니겠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지금까지 평가 용역을 다 해서요 선정 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여기구 위원** 보통 어떤 문제들이 좀 있나요? 큰 문제 중심으로 한 두 개만 짚는다면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우선 인구감소지역이라고 해 놓다 보니까 지난 5년간 지방정부가 열심히 일해서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데 그러면 다음 5년간 지정할 때는 인구가 증가했으므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렵게 인구 문제에서 활력을 찾아 가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인구활력지역으로 지정하자는 논의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정하는 여러 개의 기준들이 있는데 그 기준들 중에 중복된 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좀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인구감소지역 지정을 하고 5년간 정책 시행을 했는데 지정 이전에 약 6% 정도 인구가 연간 감소를 해 왔습니다.

○**여기구 위원** 그러니까 인구가 줄어드는 시군구에 지정을 해 주는 거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지금 5년간 투자를 해서 감소세가 4% 정도로 줄었습니다.

○**여기구 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우리 당진 같은 경우를 보면요 인구는 줄어들지 않아요. 그렇다고 늘지도 않거든요. 그냥 현상을 유지하는 정도인데 그런데 당진시 안으로 들어가 보면 합덕읍이라든지 순성과 면천 이런 데는 인구가 거의 30% 줄고 있어요.

그래서 시군구를 선정을 할 때 무조건 인구가 준다고 선정하지 말고 그 내용 안을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방 차원에서라도 이런 기금을 정할 때 조금 참고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구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요.

다음, 국방부장관님…… 차관이 계신가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국방부차관 나와 있습니다.

○**여기구 위원** 오늘 보니까 국방부 관련한 질의들이 좀 있는데, 군부대 이전 관련한 질의들을 받아 보셨지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여기구 위원** 우리 당진도 향토방위군 해 가지고 군부대가 시내 쪽에 있거든요. 옛날에는 이게 군부대가 시 외곽에 있었는데 시가 커지다 보니까 군부대가 당진2동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 군부대를 이전을 좀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거기서 사격 훈련이라든지 이런 군사활동을 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시도 마찬가지로 거기 개발을 좀 해야 되는데 군부대 때문에 걸림돌이 돼서 이 군부대를 이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국방부도 이전 사업에 승인을 해 줬어요.

그런데 이게 이전 작업이 더딘 게 뭐냐 하면 이게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알고 있습니다.

○여기구 위원 그래서 이 법을 지금 개정해야 돼요, 제도를. 그리고 지금 현재 국회에 법이 들어와 있잖아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발의돼 있습니다.

○여기구 위원 이 법이 들어와 있지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여기구 위원 이 법을 빨리 신속하게 재개정해서 이 군부대 이전 작업이 순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와 관련한 훈령도 있어요, 훈령. 훈령도 좀 개정해서 군부대 이전 작업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역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차관 이두희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현재 기부대양여 사업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역에 따라서, 사업성에 따라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 지역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법 개정안 발의돼 있는 부분하고 전반적인 상황과 연계해서 저희가 지역발전에 도움도 되면서 저희 군도 임무 수행 여건이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전반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구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여기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재 여기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남 창원 진해의 이종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욱 위원 재정부차관님!

○재정경제부제2차관 허장 예.

○이종욱 위원 작년 말 국방비 1.3조 원 미지급 사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방부장관님과 감사원장님도 같이 좀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작년에 결국 1조 3000억, 국방부 5000억 포함해서요 미지급 사태가 발생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요? 간단하게.

○재정경제부제2차관 허장 그것 자금 부족으로 1.3조 원 미집행이 됐고 저희가 13월 세입을 활용해서 그다음에 1월 9일 날 1.5조 원을 신속 처리해서 결국 다 집행은 했습니다. 그런데 세입 측면에서 보면 이게 전체적으로 세외수입 쪽에 넥슨 그게 제대로 물납, 팔려고 그러는 게 제대로 안 팔려 가지고 한 4조 원 정도 뺏꾸가 났는데 반면에 집행은 굉장히 좋아 가지고 집행 실적률이 98.5%가 됐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자금 여력이 조금 부족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욱 위원 그건 그렇게 설명하는 거지요. 핑계고요. 자금 집행은 그런 사정이나 핑계 이런 걸로 통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요? 그건 아시지요?

원인은 결국 현금 잔액이 부족했습니다. 국방부나 방사청 입장에서 할 거 다 했어요. 예산 배정, 지출원인행위, 자금 배정, 지출 결의까지 다 해 놓고 12월 31일 마지막에 버튼만 누르면 돈이 나와야 되는데 한국은행의 잔고 부족으로 돈이 안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국가 지급불능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걸 팩트입니다. 그렇지요? 세수가 안 들어왔고 이걸 그냥 사정 얘기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결했지요? 그다음 PPT 보여 주십시오.

1.3조 원, 다음 연도 세수로 했다는 거지요? 제가 봤더니 이월사업에 끼워 넣기 했어요. 전부 다 이월해 달라고 그랬는데 세계잉여금이 부족하니까 다는 못 해 주고 일부 해줬습니다. 일부는 이월사업에 끼워 넣기 했고, 이월 사유도 법적으로는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어쨌든 형식적으로 이월을 했고요.

그다음에는 어떻게 했냐? 26년 예산을 가지고 돌려막기 했습니다. 이·전용하고요 내역 변경해 가지고 돌려 막았고 이게 결국은 회계연도를 넘나들면서 지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25년도 지출원인행위 한 거를 26년도에 해야 되니까 25년 돈을 쓰려고 그러면 이월이고 26년 돈을 쓰려고 그러면 26년 예산을 활용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지난 연도 지출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지출원인행위는 25년도에 했는데 돈은 26년도 돈을 갖다 쓰는 지난 연도 지출이라는 제도를 활용해서 일단 메꾸기는 메꿨습니다. 그 과정에서 숫자를 정확하게 제출 안 하는데 일부는 강제 불용이 됐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차관님, 근본적으로 이런 일이 왜 발생했습니까, 근본적으로?

○재정경제부제2차관 허장 일단은 말씀하신 것 중에 저희가 그다음 해에, 잘 아시겠지만 2일까지는 13월의 세입으로 인해 가지고 그걸 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한 1.5조 원 한 거고요.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잘 아시겠지만 국방부·방사청은 이월이 좀 연례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월……

○이종욱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것은 다 그냥 사정이고 자금 집행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특히 12월 31일 경계선은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어쨌든 현금 부족으로 미지급 사태가 발생했어요. 이런 일이 국가에서 생기면 안 되겠지요. 이런 게 절대 발생하지 말라고 만든 조직이 재경부 국고국입니다. 맞지요?

국고자금 운용, 관리, 수급 조절 다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 페이지 보여 주세요, PPT. 다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강력한 자금 권한도 줬습니다. 재정증권 발행하고 한은 일시차입도 할 수 있어요. 돈 남으면 여유자금 운용도 합니다. 돈놀이합니다. 그리고 어떤 권한까지 있냐? 필요한 경우에는 자금계획을 임의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아까 국방부는 12월 31일까지 자금 배정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어요. 자기가 써도 된다고 재경부에서 허락을 해 준 겁니다. 그런데 그 돈이 안 나온 겁니다. 그런 권한도 가지고 있었는데 실패했습니다. 조직의 가장 중요한 존립 목적과 책임을 다하는 데 실패했어요.

국고국장·국고과장·국고계장 뭐 하는 사람인지 압니까? 1년 내내 국고자금 수급을 들

여다보는 사람입니다. 특히 12월 31일 학력고사 치듯이 1년 내내 준비해요, 이날을. 12월 31일 밤에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한국은행, 전 중앙부처, 전 지자체 회계공무원, 자금 담당자 다 대기시켜 놔요. 그리고 수입내역 다 맞춥니다. 지출내역 다 맞춰요. 그게 완전히 클리어될 때까지 퇴근도 안 시킵니다. 언제 퇴근하느냐? 저도 그랬어요. 1월 1일 새벽 4시, 5시쯤 되면 겨우 퇴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제명령 내립니다, 이제 집에 가라고. 그렇게 자금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어떻게 했습니까? 사실 1년, 2년 전에 세수결손 30조, 40조, 50조 났지요. 그때도 이런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작년에는 어떻게 했어요? 세입경정을 했습니다, 세입경정. 세수결손 잘해야 1조, 2조 났습니다. 그런데 이걸 못 막습니까? 자금 당국은 모든 시나리오에 대비해서 해야 됩니다.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고요. 미리 준비했으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어요.

차관님, 금년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까?

○재정경제부제2차관 허장 금년에는 반드시……

○이종욱 위원 금년에도 똑같이 1.3조, 2조 불용시킬 거예요?

○재정경제부제2차관 허장 하여간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지만 상당히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여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10년간 보면 국방 쪽의 이·불용률이 평균적으로 한 4.0%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12월 편중 완화, 필수자금 집행 중심으로 하는 규정·제도도 신설을 하고요. 그리고 대시보드를 만들어서 올해 실시간 자금 집행 현황을 모니터링할 예정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여간 위원님의 말씀을 굉장히 깊이 새기고 이거에 대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욱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요.

○재정경제부제2차관 허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욱 위원 작년에는 왜 못 하고 금년에 하겠다고 그러니까?

그다음 PPT 한번 보시지요.

그런데 이 정부 답변 제가 봤더니 1월 3일 날 언론보도 보고 처음 인지했습니다, 이 사태를. 그리고 1월 7일 날 공문을 보냈는데 공문 제목이 ‘국고잔액 부족으로 인한 일반회계 미지출 금액을 제출해 달라’,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사후에 인지하고 그때서야 부랴부랴 뒤늦게 수습에 나섭니다. 그 뒤가 더 문제인데요. 한번 보십시오. 뻔뻔하기까지 합니다. 1월 9일 날 보도자료 내고 통상적인 이월집행이라고 합니다. 이월에 끼워 넣고 다 이월시키지도 못해 놓고, 이게 통상적인 이월입니까?

1월 11일 날 보도자료 보면, 이월처리 되지 않은 예산을 26년 예산으로 지급하는 게 재정집행 원칙에 부합하는 거랍니다. 무슨 엉터리 말을 하고,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허위보고 하고 국민을 기만합니까? 말장난 하는 거예요, 국민을 상대로? 보도자료에 요리조리 빠져나가게 헛갈리게 수수께끼 하는 겁니까?

감사원장님, 감사결과 이런 국방비 미지급 사태를 확인했습니까?

○감사원장 김호철 예.

○이종욱 위원 국가가 연말에 지급해야 할 국방비가, 지급 못 했습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결산검사 사안이 있습니까, 감사원 입장에서?

○**감사원장 김호철** 저희도 그 부분을 인식하고, 이 사안은 월별 예산 배정 및 집행체제나 방식에 대한 부처 간 이해 부족이나 오인으로 인해서 생긴 것이어서 저희가 주의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이종욱 위원** 구멍가게에서도 이런 일 없다니깐요. 국가회계 회계연도 결산, 회계연도 독립, 12월 31일이 기준 아닙니까? 그걸 지켰냐, 안 지켰느냐가 회계제도 결산의 1번이 아닙니까요. 그걸 재경부가 실패했고 감사원이 집어내야지요. 그래서 제가 봤어요. 감사원장님이 국회 결산보고 한 것, 여기에 그런 내용은 한 자도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내용인데 언급도 없어요, 감사원에서. 그냥 봐주는 겁니까? 감사하실 생각 있으세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으니까?

○**감사원장 김호철** 저희가 그 부분 원인은 파악해서 주의를 촉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주의에 따라서 이 부분은 아마 시스템도 좀 보완하고 충분히 부처 간에 인식이 되어서 이번 연도에는 아마 발생하지 않을 오류겠다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이종욱 위원** 제가 국회예정처 보고서를 다 읽어 봤어요. 읽어 봤더니 국방부나 재정부에서 충분한 자료를 제출 안 해 가지고 정확한 숫자를 파악을 못 하겠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원장님, 1조 3000억 국방비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되지 않았는데 책임을 회피하고 보도자료로 국민을 호도하고 국회에다 확인도 못 하게 자료도 내지 않는 이런 조직 필요합니까? 이런 공무원 필요해요?

철두철미하게 감사해 주시기 바라고, 만약에 감사원이 이 문제를 제대로 감사하지 않는다면 이 사안은 감사원의 존재 이유와 감사 행태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원장 김호철** 저희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욱 위원** 예.

○**위원장 이광재** 이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남광주 서구갑의 조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철 위원** 안녕하십니까? 광주 서구갑 국회의원 조인철입니다.

법원행정처장님 나와 계시지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조인철 위원** 지난번 제가 질의할 때 사전협의는 대통령 임명권을 존중해서 하는 거 다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그런 취지에서 공문을 철회할 생각이 없느냐라는 것을 대법원장님과 같이 협의해 보실 의향이 없느냐라고 했을 때 하겠다고 하셨어요. 하셨나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그거는 대법원장님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조인철 위원** 아니, 그런 일이 있어서 협의하시겠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때도 똑같

이 이야기했어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저는 말씀을 드릴 수는 있지만 최종 결정은……

○**조인철 위원** 그러니까 말씀은 드리셨어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조인철 위원** 그랬더니……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위원님의 말씀을 전달해 드리기는 했습니다.

○**조인철 위원** 어떻게 됐습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아직까지 대법원장님께서 구체적으로 결정을 내리시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인철 위원** 그러니까 사법부가 지금 욕을 먹는 거 아닌가 싶어요. 사법부 독립이나 삼권분립이라고 하는 게 사법부가 마음대로 하라는 건 아니잖아요. 국회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무시하고 행정부하고도 협의를 제대로 안 하고 제 마음대로 하겠다고 하는 게 사법부의 독립 원칙은 아니지요? 그렇지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이제까지 마음대로 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조인철 위원** 지금까지 마음대로 하고 계시잖아요. 공문도 마음대로 보내셨고 제가 협의해 보시라고 그랬는데 말만 했지 아무것도 리스폰스(response)가 없고. 이런 경우 있어요? 물론 대법원장님께서 지금 다른, 시간이 없어서 그랬을 수도 있는데 제가 질의했을 때가 수요일 날인가 화요일인가 그랬으니까 상당한 시간이 있었는데 그 답을 못 가지고 오셨다는 게…… 기면 기다 아니면 아니다, 안 된다라는 이야기는 충분히 하실 수 있었잖아요. 그게 그렇게 오래 걸릴 일인가요? 아니지요?

오늘은 3대 메가프로젝트 인력 양성 관련해서 좀 여쭙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3대 메가프로젝트가 성공하려면 굉장히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인력 공급일 겁니다.

교육부장관님, 그렇지요?

○**교육부장관 최교진**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인철 위원** 그래서 제가 좀 파악을 해 봤어요. 뭘 하고 있나, 부처에서. 그래서 산업부에서 예전에 발표한 게 있어요, 얼마 전에. 11만 7000명이 더 추가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3대 메가프로젝트를 하려면. 그 인력이 필요한데 아마 이것도 25년도에 추계한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26년에서 30년까지 필요한 인력이 11만 7000명 정도 더 추가 필요한데, 25년도에 추계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3대 메가프로젝트는 26년도에 발표됐습니다. 벌써 시차가 있어서 그보다도 훨씬 더 늘었을 거라는 생각이예요.

그래서 이거를 위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느냐, 구체적인 일정이 있느냐, 답을 안 합니다. 그래서 교육부에 확인했습니다, 교육부는 뭘 하고 있는지. 아시는 게 있나요?

○**교육부장관 최교진** 그러니까 전남광주 특별시와 서남권의 반도체 클러스터 같은 메가프로젝트 가동을 대비해서 다양한 인력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직업계 고등학교 그다음에 대학 학부 그다음에 대학원별로 핵심 실무 인재 양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수요와……

○**조인철 위원** 장관님,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면서도 구체적이지 않다라는 생각 들지 않으세요? 도대체 뭘,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 그냥 하고 있습니다라는 소리로 들리거든요, 저는. 그런데 지금 보면 인력 공급은 쉬운 건가요? 아니지요? 최소 고등학교 졸업자, 마이스터고 졸업자를 양성하려고 해도 3년 걸립니다.

○**교육부장관 최고진** 그렇습니다.

○**조인철 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대학교 이상 나오려면 4년 이상 걸리고요. 이러면 적어도 지금쯤은 상당히 많은 계획이 수립돼 있어서 누군가와 협의를 해서 누군가 총괄 부서가 끌고 나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제가 굳이 산업부와 교육부를 확인한 이유는 누가 총괄해서 끌고 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지금 아무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부장관님 말씀하시는 게 제가 광주 출신이라는 것 때문에 서남권만 말씀하시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3대 메가프로젝트가 지금 서남권만 있습니까?

○**교육부장관 최고진** 아닙니다.

○**조인철 위원** 지금 3대 메가프로젝트 전체를 우리가 현 정부 내에서 완성을 시켜서 지방 주도 성장을 제대로 안착을 시키려면 인력이 어떻게 공급이 돼야 되고 어떻게 양성이 돼야 되는지를 총괄 부서인 교육부에서는 이미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어야 됩니다. 동의하시나요?

○**교육부장관 최고진** 구체적으로…… 예, 동의합니다.

인재 양성에 관해서는 교육부에서 총괄해서 하기로 하고 기본적인 계획에 따라서, 아까 잠깐 말씀드리려고 했던 마이스터고·특성화고 등을 통해서 기본적인 전문인력 양성하고 죽 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에 어느 정도의 인력이 필요한지에 관해서는 해당 지역의 교육청과 해당 지역에 투자를 하려고 하는 산업체와 같이 협의해서……

○**조인철 위원** 딱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서…… 교육부가 적극적으로 좀 나서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지방의, 광주로 예를 들으셨으니까 말씀을 드리면 광주통합시 출범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2개월도 안 됐지요?

○**교육부장관 최고진** 2개월 정도, 7월……

○**조인철 위원** 7월 1일 날 했으니까, 아직 9월이 안 됐잖아요. 2개월도 안 됐습니다. 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부장관 최고진** 예, 맞습니다.

○**조인철 위원** 거기에 당신들이 좀 준비해 봐라라고 하면 할 수 있을까요?

○**교육부장관 최고진** 출범하기 전부터도 실질적으로 같이 논의는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조인철 위원** 그런데 논의하고 있었던 게 구체적인 일정이 이렇습니까? 굉장히 디테일한 계획이 있어서 그 계획에 따라서 지금 추진되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적어도 민관합동점검회의 계속 해 왔잖아요. 두 번이나 했잖아요. 거기에 인력 양성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들이 올라가서 논의가 되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딱 한 줄 들어 있습니다, 인력 공급. 보셨나요?

○**교육부장관 최고진** 좀 더 보완해서 세밀하게 좀 더 체크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만 실제로 전략산업 분야에 관해서 부처 간, 특히 산자부에서 주관하는 TF에도 같이 적극 참여하고 있기도 하고요. 같이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인철 위원** 하여튼 장관님이 중심이 되셔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

니다.

○**교육부장관 최고진** 예.

○**조인철 위원** 아마 현 대통령인 이재명 대통령의 업무 스타일로 보면 아마 이런 내용을 아셨으면 굉장히 채근하셨을 것 같은데, 대통령께서는 보면 소극적으로 하시는 것 보다는 적극적으로 끌고 나아가시는 것을 좋아하시나요?

○**교육부장관 최고진** 예, 더 치밀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조인철 위원** 그러시지요. 좀 더 적극적으로 끌어 주시고요.

국방부차관님 나와 계신가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차관 나와 있습니다.

○**조인철 위원** 군공항 이전 후보지가 확정이 됐지요, 28일 날?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그렇습니다. 무안 망운면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조인철 위원** 앞으로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이제 주민투표를 거쳐서 올 연말까지 이전 후보지가 아니고 이전 부지로 확정을 지어야 됩니다. 그러면 기부대양여 틀을 유지하면서 무안공항으로 이전을 하고 지금 예상하는 시기는 2032년 정도에 무안에 신군공항을, 광주 군공항을 대체할 수 있는 시설을 완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인철 위원** 일전의 28년 7월까지 광주 군공항은 소산하겠다는 계획에는 변함이 없으신 거지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무안으로의 이전과는 약간 별개의 문제인데 정부의 메가프로젝트 지원을 위해서 현재 광주 군공항을 28년 중반 정도까지 분산·이전 배치함으로써 정부의 메가프로젝트를 지원하는 방안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인철 위원** 그걸 좀 당길 수는 없나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현재 상태는 이게 정부 차원에서 압축하고 압축하고 한 부분인데……

○**조인철 위원** 가장 걸림돌이 뭐 때문에 28년 7월까지 가는 겁니까?

○**국방부차관 이두희** 현재 광주 군공항에 있는 시설들을……

○**조인철 위원** 소산하는 것 보면……

○**국방부차관 이두희** 단순히 항공기만 옮기면 되는 게 아니라 교육훈련을 하기 위한 것, 전투기들을 보관하고 있는 시설, 그다음에 사람들이 거주할 수 있는, 군인들이 거주할 수 있는 거주시설 이런 부분들을, 임시시설을 건축, 지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조인철 위원** 조금 더 당길 수 있는지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정부가 적극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광재 위원장, 정태호 간사와 사회교대)

○**조인철 위원** 국회사무총장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가 질의 안 하려고 했는데 오셨으니까 좀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진숙 씨가, 이진숙 의원이 국회도서관에서 ‘5·18민주화운동 재조명’이라는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그때 보면 광주민주화운동이 민주화운동이 아니고 소요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거의 위법적인, 재조명이라기보다는 거의 위법적인, 반역사적인 행태의 토론회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확인 좀 해 봤습니다. 어떻게 국회도서관 강당이 빌려졌는지 확인을 했더니 의원들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자리만 있으면 특별하게 검토하지 않고 그냥 빌려줘서 그렇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이진숙 의원과 5·18 재조명이라고 하는 것을 매치시켜 보면 무슨 이야기할지는 뻔히 다 예상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을 별도의 취지도 깊이 검토를 안 하고 그냥 대관을 해 줬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국회사무총장 고용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회의 품위를 현저히 훼손한다든지 또는 특정 개인이나 단체의 명예를 훼손한다든지 하는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의원회관의 회의실과 로비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진숙 의원실의 그 포럼은 국회도서관 강당을 사용하는 행사였고, 국회도서관 강당은 과거에 이런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이를 위한 규정이 만들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전에 그 내용을 파악하는 절차도 없었고 그것을 알게 된 이후에도 그것을 제한하기는 어려웠던 사정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건을 계기로 국회도서관도 의원회관과 마찬가지로 이런 문제가 있을 때에는 사용을 제한하고, 더 나아가서 의원실들이 대관을 하는 데 굉장히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우선 잡고 보고 내용을 빨리 안 알려 주는 경우가 많아서 그 행사의 내용을 국회사무처나 도서관 등이 알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도서관 규정에는 구체적인 세부계획서를 요청하고 그것을 3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까지 만드는 등 사용에 대한 제한을 좀 강화했습니다.

○조인철 위원 예, 다시는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철저하게 좀 해 주십시오.

○국회사무총장 고용진 예, 알겠습니다.

○조인철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태호 조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산 남구 국민의힘 박수영 위원님 질의 있겠습니다.

○박수영 위원 부산 남구 출신 박수영 국회의원입니다.

보훈부장관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훈부장관님, 지금 6·25 참전용사들의 평균 연령이 얼마나 됩니까?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 95세 됩니다.

○박수영 위원 95세?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 예.

○박수영 위원 지금 참전명예수당 얼마를 받고 계신가요?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 중앙정부에서는 49만 원이 나가고요, 지방정부는 지방정부마다 차이가 많이 납니다.

○박수영 위원 예, 안 주는 데도 있고 저희 지역 같으면 2만 원, 3만 원 이렇게 주는 데

가 있더라고요.

95세, 돌아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 예.

○박수영 위원 49만 원은 너무 박하지 않습니까? 6·25 전쟁,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킨 전쟁이었는데 거기에 참전하신 분들한테 너무 박하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재정 당국과 굉장히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었고, 나름대로 최대한 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저희들이 원하는 만큼은 안 된 것 같습니다. 내일모레 정부에 제출되는 것을 봐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수영 위원 재경부차관님, 보훈부장관님 말씀 들으셨지요?

○재정경제부제2차관 허장 예.

○박수영 위원 예산 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부제2차관 허장 예, 위원님 관심 잘 알고 있습니다.

○박수영 위원 외교부장관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한 2주 전에 우리 의원님들 중에 김기현 의원님과 곽상언 의원님이 중국 출장을 가려고 했는데 중국에서 꼭 집어서 입국 거부를 했습니다. 이유가 뭔지 알고 계십니까, 혹시?

○외교부장관 조현 예, 그 문제 얘기를 들었습니다.

○박수영 위원 이유가 뭐로 알고 계세요?

○외교부장관 조현 대만 방문을 이유로 들었다고 들었습니다.

○박수영 위원 6월 달에 제가 여당 의원님, 야당 의원님 다들 모시고 대만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대만을 갔다 왔더니 곧바로 중국 정부와 주한 중국대사관에서 항의 서한을 보내 왔습니다. 지금 떠 있지요? 내용 한번 읽어 볼게요, 잠깐.

(영상자료를 보며)

‘대만 지역과 어떠한 형태의 공식 교류도 하지 말 것을 촉구합니다. 한국 국회의원의 대만 지역 방문에 강력히 항의합니다’, 즉 대만 가지 말라 이거거든요.

장관님 입장은 어떠십니까? 우리 국회의원들 활동하는 데 대해서 이렇게 보내는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외교부장관 조현 한국이 중국과 수교할 때 정부가 어떤 것을 한다, 안 한다 하는 것을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국회의원님들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박수영 위원 그렇지요? 저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외교부에서 낸 공식 입장을 보면 너무 황당하고 너무 답답하고 ‘이게 우리나라 외교부 맞나? 중국 외교부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외교부 성명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외교부의 입장.

‘국회의원의 개별 활동에 대해 언급할 사항은 없다. 정부의 하나의 중국 존중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이렇게 성명이 나왔습니다, 외교부 입장이라고. 이게 뭔 소리입니까? 국회의원 개별 활동 언급할 사항은 없지만 하나의 중국 존중한다. 그러면 국회의원들보고 대만 가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방금 장관님이 말씀하신 그런 입장을 정확하게 표현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대체 이게 중국 외교부인지 대한민국 외교부인지 그때 제가 정말 알 수가 없고, 이런 식의 답변이 나오는 것을 외교부장관님은 알고 계셨어요?

○외교부장관 조현 예.

○박수영 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런 답변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외교부장관 조현 저희들로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중국과 협의를 했습니다.

○박수영 위원 그런데 성명은 왜 이렇게 나오니까? 방금 장관님이 말씀하신 대로 ‘협약이 있었지만 국회의원의 활동에는 상관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외교부장관 조현 외교관계에 있어서 다른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그렇게 외교부 입장을 알렸던 것입니다.

○박수영 위원 답답하고 한심합니다.

오늘 청와대에서 누가 나오셨어요?

○대통령비서실재정기획보좌관 류덕현 재정기획보좌관이 나와 있습니다.

○박수영 위원 재정기획보좌관님, 오늘 원래 김용범 정책실장이 나오기로 했는데 왜 안 나왔지요?

○대통령비서실재정기획보좌관 류덕현 다른 현안이 있어서, 회의 일정이 있어서 대신, 못 나간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박수영 위원 그러니까 다른 회의 있으면 장관님들은 다 나오시는데 정책실장은 안 나와도 되는 겁니까, 국회에?

무슨 회의입니까?

○대통령비서실재정기획보좌관 류덕현 그것은 제가 잘 알고 있지 못합니다.

○박수영 위원 무슨 회의인지도 모르고, 회의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출석한다고 했다가 무단으로 빠지고, 나라는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질의 답변하는 것은 겁 나서 못 나온 건가요?

이재명 정권 지지율, 오늘 월요일이니까 리얼미터가 월요일 날 발표를 하지요? 지지율 그래프입니다. 지금 계속 떨어져서 오늘 리얼미터로는 처음으로 30%대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이 아니고 지금 이것까지 포함해서 지난주, 지지난주 걸쳐서 모두 7개의 여론조사에서 30%대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낮아진 원인, 그 원인이 정책의 실패에 있는데 부동산 그다음에 세제개편 그다음에 ETF 주식 문제 그다음에 공소 취소 그다음에 3군 사관학교 통합 이런 정책들이거든요. 정책의 실패라고 여론조사에도 충분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책실장이 와서 답변을 해야지 출석한다고 해 놓고 안 나오고 말이지요.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이게?

청와대 정책실을 세간에서 뭐라고 부르는지 혹시 보좌관님 알고 계십니까?

○대통령비서실재정기획보좌관 류덕현 잘 알고 있지 못합니다.

○박수영 위원 보시지요. 청와대 정책실을 청와대 실험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책을 막 던져 놓고 나중에는 모르겠다는 식으로 나가 자빠지고 말이지요. 보세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노란봉투법, 정책실장이 뭐라고 그랬느냐? ‘시행한 뒤에 문제 생기면 보완하고 개정하겠다’. ‘부동산 세제 당분간 건드리지 않을 것이다’ 해 놓고 세법 개정안에는 전부 부동산

세금만 다 내왔고요. 그다음에 ‘초과이익 과실을 전 국민에 환원하겠다. 국민배당금제 실시하겠다’. 이거 사회주의로의 변화라고도 볼 수 있는 큰 건인데 이것을 마구 던져 놓고 실험하고 있습니까, 지금? ‘삼전닉스 ETF 실시해 보고 필요하면 보완하겠다’ 그래 놓고 우리 주식시장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 시중에서 대통령 정책실을 실험실이라고 얘기하는 게 타당하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정책을 추진해 놓고 오늘 질의를 하려고 했더니 또 바꿔 가지고 나오지도 않고. 대신 나온 보좌관님은 최소한 무슨 회의를 하고 있는지는 알고 나오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안 나오면 이게 뭐 되는 겁니까? 국회를 이렇게 경시해도 되는 거예요?

단일종목 ETF 도입 건만 가지고도 한번 보지요.

김용범 정책실장이 1월 13일 날 자산운용사 CEO 소집해서 처음 시작을 했고 한겨레 신문, 동아일보 등에 본인이 ‘금융위에 과제를 떨어뜨려서 이것을 시작하라고 했다’ 이렇게 얘기했고, 금융위는 연말쯤에 하고 싶어 했는데 김용범 실장이 서울경제에 뭐라고 그랬어요? ‘시행령 개정 빨리하라고 했다’. 그래서 금융위가 발표하고 4월 달에 차관회의, 국무회의 거쳐서 4월 28일 날 시행이 된 것입니다. 4월 28일 날 공포가 됐고요. 실제로 레버리지 종목은 5월 27일, 지방선거 6월 3일 일주일 전에 출시를 해 가지고 주식시장이 지금 얼마나 변동성이 커졌습니까?

주식시장을 이렇게 실험실로 삼아서 되겠습니까? 부동산 실험실, 주식 실험실, 이거 뭐 온갖…… 국민 배당금 실험실, 세제 실험실 이렇게 실험실로 만드니까 얼마나 답답하면 국민들이 청와대 정책실을 청와대 실험실이라고 하겠어요? 본인이 나와서 답변을 해야 되는데 오늘 본인이 나오지도 않고 말이지요. 이거 참……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옵니다. 다음에는 보내 주실 겁니까?

○**대통령비서실재정기획보좌관 류덕현** 예,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영 위원** 예산 때에는 반드시 나오도록, 지금 결산회의 하고 있지만 예산 때는 반드시 본인이 나와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하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도 공직자 출신입니다. 이 정도로 본인이 낸 정책들이 망가졌으면 본인이 스스로 사의를 표명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나왔으면 내가 대통령께 사의 표명했는지 물어보고 싶었는데 요새는 숨어 지내는지 보이지도 않고 그 잘 올리던 SNS 글도 요새는 영 올리지도 않고 있더라고요.

하도 너무 많은데…… 지금 개각하셨지 않습니까? 개각에 제일 중요한 게 뭐니까? 부동산 그다음에 주식, 공소 취소 이런 건데 바꾼 장관님들 보면 주식시장에 문제가 됐던 ETF는, 김용범 실장이랑 금융위원장 바꾸질 않았어요. 그렇지요? 부동산 바꿨는데 더 세게 할 사람 바꿔 가지고…… 홍지선, 경기도에 제 부하직원으로 있었던 친구인데 그걸 장관으로 지명해서 부동산도 사회주의식으로 가겠다는 식의 선전포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개각 안 한 것만 못한 것입니다.

시간이 다 돼서 제가 길게 드릴 수는 없는데 다음번에는 무조건 김용범 실장이 나와서 직접 답변하라고 꼭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비서실재정기획보좌관 류덕현** 예, 알겠습니다.

○**박수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태호 박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안산을 더불어민주당 김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현 위원 제가 질의할 기관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하고요 그다음에 문화체육관광부 그리고 교육부, 마지막 공수처 이렇게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님, 2025년 개인정보 유출 신고 및 조사처분 사례 분석을 해 봤습니다. 2025년도 개인정보 유출 신고가 447건으로 전년 대비 45.6%가 증가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장 송경희 예, 그렇습니다.

○김현 위원 그리고 해킹이 276건으로 65%로 가장 높은 비중으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스템을 보면 개인정보 및 사이버보안 관련 신고 접수 처리체계 시스템이 분리돼 있다라는 지적이 국회예정처의 분석자료에 의하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정보통신망법에 따라서 사고가 발생해서 사실을 안 때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하고 KISA는 침해사고 24시간 이내로 신고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개인정보 보호법은 제34조에 따라서 72시간 이내에 하도록 돼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장 송경희 예, 맞습니다.

○김현 위원 이렇게 돼 있는 것에 변화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개인정보보호위원장 송경희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해킹 신고는 바로 해킹의 원인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거기에 대한 차단을 하기 위한 그런 조치이기 때문에 좀 신속하게 하는 거고요. 우리 72시간 경우는 실제로 그런 해킹 같은 게 일어나서 구체적으로 개인정보 유출까지 어떻게 됐느냐를 파악하는 데 시간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국제적으로 봐도 72시간이 대체적인 그런 규정들입니다.

○김현 위원 그런데요 보시다시피 SK텔레콤에서는 KISA 침해사고를 24시간 내에 했고 그다음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이틀 만에 바로 합니다. 48시간 이내에 하고요. 예스 24도 그렇게 했고 KT만 72시간 준용했고 쿠팡, 티빙 다 24시간 안에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해킹이 62%고, 해킹이라는 것은 웅당 따라가는 게 현재까지 보면 개인정보가 유출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정부부처 간에 협조와 대응을 신속하게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국민들의 신뢰와 조치가 안전한가에 대한 것과 연결됩니다. 그런데 부처 간에 이런 시간의 차이로 인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뒤처진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한 시정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개인정보보호위원장 송경희 예……

○김현 위원 분석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신고하는 데서는 어차피, 예를 들어서 쿠팡 같은 경우는 이미 이메일을 통해서 내가 이 정보를 유출한다, 그리고 대상자까지도 메일을 보내서 사실관계를 알려 주고 또 화이트해커나 아니면 그 보고서에 따르면 어느 정도, 기관에 의한 해킹이 실시될 거라는 것을 예고하기도 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장 송경희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타당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개인정보 유출이나 침해가 일어나는 경우는 이렇게 해킹으로 인한 경우도 있지만 다른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해킹이 됐을 때는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경우도 많

지만 동시에 기업 비밀이라든지 또 다른 중요한 사항들이 유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현 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피해의 정도가 심각한 개인 정보가 유출된 것은 KISA나 과기부가 알 수 있는 시점과 동일하게 개인정보위원회도 알고 대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시고 국정감사 전까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장 송경희** 예.

○**김현 위원** 또 하나는 침해사고조사심의위원회는 개인정보위원회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장 송경희** 실제로 과기정통부가 하는 민관합동조사단을 저희도 같이 그 일을 하고 있고요.

○**김현 위원** 기관으로는 들어가 있지 않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장 송경희** 예, 말씀하신 부분은……

○**김현 위원** 적극행정이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장 송경희** 예, 저희도 같이 파악하고 있지만 말씀하신 내용을 좀 더 상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도록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현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중재위 관련입니다.

문체부장관님, 지금 언론중재위가 문체부 소관 기관이고요. 그다음에 비용은 방발기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언중위에서 보면 145억의 98%가 집행이 됐는데 이 부분이 인건비와 경상비 그다음에 사업비가 지출이 되고 있어요. 사업하는 돈을 대는 부처와 그다음에 사업하는 부처가 이중적으로 되면 이것이 관리감독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수차례에 걸쳐서 지적했는데 왜 개선되지를 않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소관 기관이 달라서 위원님 말씀처럼 조금 부적절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의 필요성은 저희도 공감을 하고요. 다만 언론기금으로 지원을 하는 것은 지금 재정 여건들을 고려해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논의 진도가 안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 위원** 그게 아니고 문체부에서는 그게 좋은 제도이고요 방미통위로 볼 때는 안 좋은 제도인 거지요. 그러니까 사실 어쩌면 적극적으로 정부입법으로도 할 수 있는 거고 부처 간의 이견을 조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에도 동일하게 이 문제가 지적이 됐거든요. 그런데 예산은 똑같이 방발기금으로 편성을 했을 것 아닙니까, 2027년도 예산도요. 그러면 똑같은 문제가 계속적으로 반복된다라는 점을 지적드리는데, 이게 사실은 왜냐하면 방발기금은……

PPT 한 번 더 띄워 보시지요.

방발기금은 전반적으로 줄어드는 추세이고요. 언론진흥기금은 상대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론진흥기금을 통해서 언론중재위가 운영되는 것이 맞는 거지요. 모순이 해결되는 건데, 이게 지금 언론중재위 대부분이 인터넷신문과 뉴스통신, 지역일간지, 중앙일간지, 인터넷뉴스 이런 식으로 소위 말하는 문체부 소관 업무와 관련되어 있는 매체

들을 다루는 게 언론중재위고 방송은 관련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처 간의 이런 문제를 적어도 이재명 정부에서는 정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예, 재정 당국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 위원 협의를 좀 해 주시고요.

이게 방발기금이 없어지면 재정 당국은 또 그 예산 자체를 없애 버리는 모순이 발생해서, 이것은 본예산 때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예.

○김현 위원 교육부장관님, 청소년 SNS 과의존 방지를 위해서 폰 프리 스쿨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별로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의 상태가 계속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다른 나라의 경우는 굉장히 적극적인 방법으로 청소년들의 과의존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질문을 하고자 함인데 혹시 대안이 있습니까, 대책이나?

○교육부장관 최고진 어쨌든 몇몇 교육청에서는 자율로 해서 좀 더 강하게 하는 곳도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올해 9월부터 학교폭력 예방 선도학교를 운영할 예정인데요. 그 학교 중에서 희망한 학교를 대상으로 스마트폰 없는 학교를 시범운영 하려고 하고요. 이미 자율적으로 스마트폰 없는 학교를 운영해 봤던 선생님들이 중심이 돼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안내서도 9월 중에 발간해서 나눠 드려서 최대한 법령과 학교의 교칙에 따라서 이것들이 자율적으로 통제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시범운영을 거치고 나면 전국적으로 좀 더 확산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현 위원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장관 최고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의 경우는 굉장히 벌금도 세계 부과해서 청소년들의 SNS로 인한 피해, 알고리즘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습니다.

○교육부장관 최고진 예,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김현 위원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SNS가 될 수 있도록 좀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구요.

○교육부장관 최고진 예.

○김현 위원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해서 공수처장님, 지난번에 제가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말씀을 드렸는데 보시면 2025년 7월 15일 날 TBS 방치 및 빠띠·팩트체크넷 관련해서 직무유기·직권남용으로 저희가 고발을 했습니다. 적용 법령은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이고 담당 기관이 공수처입니다. 왜 공수처만 들어가면 함홍차사라는 국민들의 비난이 있을까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지금 제재부가금이 취소돼 있긴 하지만 절차상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검사가 심도 있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김현 위원 왜 고발인 조사를 안 합니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그런데 그보다도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서 자

료를 수집하고 법리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절차적으로 위법한 부분이 있는지 엄정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현 위원** 이전에도 공수처에서 혐의 없음으로 종결된 사건에 대한 얘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고발인 조사 없이 진행된 건이 많이 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그런 부분 저희 유념해서 고발인 조사가 절차적인 부분도 중요하니까 앞으로는 챙기겠습니다.

○**김현 위원** 고발인 조사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고발인입니다. 고발인 조사해 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태호** 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천 서구갑 더불어민주당 김교홍 위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김교홍 위원** 김교홍입니다.

제가 지난번 종합질의 때는 자살 문제를 얘기했는데 오늘은 마약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까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작년 조사를 보면 마약류 사범이 2만 3400여 명이 됐습니다. 그중에 30대 이하가 1만 4500명, 전체의 62%에 해당됩니다. 청년들이 이렇게 많이 마약에 접촉을 하고 있고 요즘은 백주대낮에도 마약을 복용하고 길가를 다니는 사람들이, 청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이제 마약청정국에서 많은 부분에 변화가 오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생명을 살리는 정부가 돼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법무부차관님이 나와 계신가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이진수** 예, 그렇습니다.

○**김교홍 위원** 마약 관련된 법이 적용된 수용자를 마약류 수용자로 이렇게 하지요. 그래서 파란색 명찰과 명패로 구분을 합니다. 그런데 한 번 호기심으로 손을 댄 청년들이 꽤 많다고 그래요, 마약에 대해서. 맞습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 이진수** 예.

○**김교홍 위원** 그런데 법무부는 이미 마약류 수용자가 나뉘져 있어요. 그게 보면 기본·집중·심화·회복이음 이렇게 해서 단계별로 해서 교육을 시키지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이진수** 예, 그렇게 교육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김교홍 위원**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 하면 프로그램은 위험도로 나누면서 생활공간은 왜 한군데로 몰아넣지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이진수** 그 부분에 대해서 순수 투약사범과 판매·유통 사범은 분리해서 최대한 수용하고자 기준을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김교홍 위원** 분리를 안 한다 그러던데,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이진수** 다만 위원님 아시다시피 지금 교정시설의 과밀수용이 124%까지 이르고 있는 상황이어서……

○**김교흥 위원** 그러니까 거의 분리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이야기 잠깐만……

○**법무부장관직무대행 이진수** 그 기준에 따라서 수용하기가 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김교흥 위원** 잠깐만 들어 보세요.

그래서 정부가 마약류 사범 재활 전담 교정시설은 네 곳에서 여섯 군데로 늘렸어요, 맞지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이진수** 예, 늘렸습니다.

○**김교흥 위원** 아마 정성호 장관께서 들어오셔서 이것 늘린 것 같은데, 그런데 2025년 작년도 기준 마약류 수용자는 4188명인데 교정기관은 쉰다섯 군데예요. 그런데 그중에서 여섯 곳을 빼면 마흔아홉 군데는 마약사범을 위한 전담 재활체계가 없어요, 맞지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이진수** 예, 그렇습니다.

○**김교흥 위원** 그런데 여섯 군데 가운데서도 수용동에서 집중관리하는 중독 재활 수용동은 네 곳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차관님께서 말씀하셨던 정원이 100% 이상, 130% 이상 막 이렇게 넘어가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래도 마약 초범과 수십억씩 유통하는 유통범들은 나눠 줘야 된다, 그것을 나눠 주지 않으면 오히려 감옥에 가서 수법을 배우게 되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 호기심에서 마약에 손댄 청년이 조직의 유통범들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그 방에서 마약 유통체계와 던지기 수법 같은 걸 배우는 거예요.

그게 실질적으로 보면, 작년 조사인데 1386명의 마약류 사범 중에 415명이 다시 감옥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30%가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교도소가 초과된 거로만 핑계를 대면 되겠어요?

말씀 한번 해 보세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이진수** 그 부분에 대해서 단순 투약사범이나 초범이 교도소에 수감되었다가 말 그대로 다른 전문적인 유통사범에게 마약범죄와 관련된 기법을 배워서 나오는 일은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교흥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이것을 빨리 배방을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방을 구분해 줘야지.

○**법무부장관직무대행 이진수** 저희가 최대한 이 기준에 따라서 수용하고 있습니다만……

○**김교흥 위원** 다른 무엇보다도 이것부터 먼저 해 줘야 돼요. 교육은 따로 시키는데 잠자리는 같이하게 하면 되겠어요, 이게?

○**법무부장관직무대행 이진수** 이 부분에 대해서 점검해 보고 개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교흥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마약류 출소자 가운데 치료보호기관으로 실제 연계된 인원이 있잖아요, 나와서? 그것을 법무부는 파악하고 있습니까? 치료보호기관 서른세 곳 중에서 지난해 보호를 받은 사람은 몇 명이나 돼요? 잘 모르지요?

이것 파악이 안 돼 있더라고, 법무부가. 이것도 파악이 돼야 돼요. 단순히 교도소에 있다가 나간 사람이니까 우리 일이 아니다 이렇게 보면 안 된다고. 마약도 법무부에서 교도소에 두고 또 치료도 하고 이렇게 연계된 프로그램 속에서 나가 줘야 마약사범에 대해서 근절시킬 수 있지 않겠어요?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이진수** 예, 그렇습니다.

○**김교흥 위원** 그래서 작년에 1649명이 치료를 받았는데 그중에 인천의 참사랑병원에서 758명, 은평병원에서 217명, 국립부곡병원에서 193명, 대구의 대동병원에서 138명. 네 곳에서 받은 게 전체의 79%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보호기관들은 전혀 실적이 없어요, 별로. 열네 군데는 아예 실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름표만 붙여 놓고 전혀 치료를 해 줄 수 있는 데가 아니다.

그리고 치료재활 전문인력을 80명 새롭게 양성하겠다고 발표까지 했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상위 실적을 가지고 있는 국립부곡병원이 중단을 했어요, 입원병동을 폐쇄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지금 1명밖에 남아 있지 않습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80명을 투입하겠다고 하는 것은 지금 어디로 갔는지도 잘 모르겠고 이런 부분들을……

여기 국무조정실장님 나와 계시지요?

이것은 차관님보다……

○**국무조정실장 임기근** 여기 있습니다.

○**김교흥 위원** 국무조정실장님, 이게 어떻게 보면 국무조정실에서—총리실 산하니까—법무부와 보건복지부, 식약처 이것을 총괄할 수 있는데, 이것을 보면 보통 치료를 할 때 복지부와 시도가 50%씩 나뉘어서 치료비를 대요. 맞지요?

○**국무조정실장 임기근** 예.

○**김교흥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가 요새 예산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교도소 안은 법무부고, 사회치료는 복지부고, 생활프로그램은 식약처에서 하는데 이제 군데를 연결해 줄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국무조정실에서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이걸 책임감 있게 좀 이어 주는, 연계를 시켜 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좀 깔아야 되겠다. 그리고 이런 치료·보호 비용은 국가가 부담해야지 병원에서 치료를 해 주고 외상값 받듯이 나중에 지자체에서 찢끔찢끔씩 조금씩 받는 이런 상황이 벌어져서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국무조정실장 임기근**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법무부, 복지부 그리고 식약처, 지자체가 협업을 해야 되는 건 맞고요. 혹시 재원 분담하고 관련해서도 개선할 여지가 있는지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교흥 위원** 이걸 반드시 국가가 책임져야 됩니다. 자살 문제도 국가가 책임지듯이 마약류 부분도, 청년들의 자살과 청년들의 마약은 연계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사회적 책임 속에서 국가가 책임져야 되겠다 이 말씀을 제가 분명히 드립니다.

그다음에 국방부차관님 나오셨지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국방부차관 나왔습니다.

○**김교흥 위원** 오늘 보니까 이 기부대양여 사업에 대해서 질문하는 위원님들이 많던데요. 이것 한 번쯤은 들여다보셔야 돼요, 국방부에서.

그러니까 군부대 이전은 군의 현대화에도 도움이 되고, 주거와 부족한 기반시설을 확대할 수도 있잖아요. 안보도 지키면서 지역의 균형발전을 꾀할 수 있는 게 이 군부대 기부대양여 사업인데 지금 전국에 29개의 군부대 이전 사업을 추진 중인데 이 중 절반도 안 돼요, 실제로 움직이는 게. 나머지는 그냥 담보 상태에 있다, 이 기부대양여 사업에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뭐냐 하면 이 사업시행자가 막대한 자금을 선투자를 해요. 그렇지요, 지자체나 민간에서?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김교흥 위원** 기부를 완료한 뒤에 그 대가로 토지를 양여받아요. 그리고 이것을 개발·분양하여 투입자금을 회수하는 구조잖아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맞습니다.

○**김교흥 위원** 이러다 보니까 또 하나는 기부하는 군사시설은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국방부가 양여하는 종전 부지는 미래 개발가치로 반영해서 사업성이 안 나오는 거예요. 맞지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김교흥 위원** 이것 개선해야 되지 않습니까?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이 여러 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김교흥 위원** 그것 개선해 주시고, 시간 때문에 그런데……

토양의 오염 정화에 대해서 개선은 해야 됩니다. 이것도 개발하는 주최 측에서 오염 정화 사업을 하잖아요. 그렇지요? 이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게 있는데, 지금 인천의 부평하고 서해구를 연결하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장고개가 있거든요. 그 장고개의 개통 때문에 50년이 지금 지나가고 있어요, 50년.

그래서 저는 이 장고개를…… 군부대 협약을 했어요, 인천시하고. 3년 전에 했는데 이게 지금 개발행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기부대양여 사업에 어려움이 있는데 그건 시간을 갖고 풀더라도 부평과 서해구의 장고개 개통을 좀 해야 된다, 도로를. 그러기 위해서 길을 좀 내줬으면 좋겠다 이런 거예요. 군부대가 길을 내주는 경우가 꽤 있더라고요.

연병장도 내줘서 축구장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는 거를 봤는데 이걸 군에서 긍정적으로 해서 길만 좀 내주면 나머지는 인천시에서 도로는 닦겠다는 거거든요. 도로가 이미 다 돼 있고 150m만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방부에서 그걸 적극적으로 좀 한번 검토를 해 주시겠습니까?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확인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김교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태호 김교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국민의힘 박상웅 위원님 질의 있겠습니다.

○박상웅 위원 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출신 국민의힘 국회의원 박상웅입니다.

장시간 우리 국무위원님들과 정부 측 관계자들 고생이 많습니다.

오늘 6명의 장관이 개각이 되고 관가는 술렁이고 우리 정가는 또 의혹의 눈빛을 가지고 이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엄중한 상황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 그것을 언급하고자 올라온 것은 아니니까 그것은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제주경찰청 산하에서 일어난 여성 실종·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피해자와 우리 국민들 모두에게 너무 부끄럽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경찰의 그간의 쇄신과 엄정 징계, 모두 말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경찰청장은 안 계시고 계속 직무대행을 하고 있는 유재성 대행님이 나와 계시지요? 그래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경찰에서 터진 사건들을 보면 도대체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모를 지경이라고 모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그때마다 ‘철저히 조사하겠다. 엄정하게 징계하겠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쇄신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확인해 보면 조사도 흐지부지, 징계도 흐지부지, 쇄신도 역시 흐지부지 됐습니다. 대책이 없어서 사고가 난 것도 아닙니다. 제도도 있고 매뉴얼도 있었고 감독 체계도 있었습니다. 문제는 아무것도 작동을 하고 있지 않다는 거지요.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PPT 한번 볼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먼저 경찰 내부의 사적접촉신고제에 관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퇴직 경찰관의 수사 개입과 전관예우를 막겠다며 만든 제도입니다. 지난 7년 간 신고가 149건이 접수이 되었는데 경찰이 별도로 조사하거나 징계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신고만 받아 서랍 속에 넣어 둡니다. 이게 내부통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문제는 이런 일이 사적접촉신고제에만 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미 마련된 매뉴얼조차 현장에서는 전혀 지켜지고 있지 않다.

제주 실종 사건을 한번 봅시다. 이 사건을 담당했던 부 경장은 실종자와 통화도 하지 않고 연락이 되었다고 허위 보고한 뒤 불과 2시간 30분 만에 사건을 종결 처리했습니다. 그러나 매뉴얼에는 실종자의 안전을 대면으로 확인하고 과장과 팀장이 사건종결 사유를 검토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매뉴얼은 있었지만 현장에서는 사실상 전혀 지켜지지 않고 형해화되었고 실종자를 찾을 골든타임도 허위 보고 하나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더 큰 문제는 매뉴얼을 지키지 않았는데도 이를 확인하고 바로잡아야 될 지휘·감독 체계가 전혀 작동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현장에서 매뉴얼을 지키지 않는데 누가 확인하고 누가 바로잡아야 합니까?

특히 매뉴얼은 실종 사건을 선불리 예단하지 말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초기 타살 가능성을 전혀, 완전히 배제해 버리고 각종 의혹을 스스로 키웠습니다. 경찰이 문제인 겁니다.

직무대행님, 경찰이 운영하는 각종 현장 대응 매뉴얼이 모두 몇 개나 됩니까? 잘 모르시지요?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제가 정확한 숫자는……

○**박상웅 위원** 제가 사실 답변을 못 할 걸 알고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매뉴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왜? 지키지도 않을 거니까 막 만들어서 막 남발하고……

매뉴얼이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전수점검하고 유명무실한 매뉴얼과 지휘·감독 체제를 전면 쇄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위원님 말씀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박상웅 위원** 담당 경찰관 개인의 책임으로 끝내서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허위 종결과 수색 중단, 종결 승인부터 이후 발표 과정까지 지휘라인 전체를 철저히 조사해야 합니다.

더욱 황당한 일은 그다음에 또 벌어졌어요. 부 경장은 실종자를 교통사고 사망자로 처리해 왔습니다. 그리고 두 달 뒤에 실종에 관한 재신고가 또 들어오니까 이 사람이 실종자 휴대전화 위치를 네 차례나 조회했습니다. 이것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요, 경찰청으로부터 자료를 하나하나 받은 겁니다. 이미 사망 처리한 사람의 위치를 다시 추적했다면 누구라도 이상하다고 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시 경찰 내부에서는 아무도 이 문제를 지적하지 않았어요. 그대로 방치한 겁니다. 결국 뭐가 됐든 부 경장의 잘못을 막고 걸러 내야 될 내부통제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것 아니겠습니까?

사건이 터진 후 발표한 재발방지대책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찰은 한 예를 보면 2024년도에 내부망에서 유명인의 주소를—유명 트로트 가수랍니다—조회해 가지고 그 주거지에 경찰이 침입한 사건이 있습니다. 개인정보 조회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이후에.

그런데 어떻게 됐냐? 그해 경찰에 의한 개인정보유출이 2024년도 그 사건 당시 7건이라는 사건이 있었는데 금년 8월까지 28건으로 4배나 늘어났어요, 해마다. 올해가 28건이라는 겁니다, 경찰에 의해서 내부정보를 해킹해 가지고 조사해서 사생활을 침해하고 유명인들을 찾아가고 하는 일들이.

쇄신안을 내놓고 감독을 강화했다는데 개인정보유출은 오히려 4배로 늘었다, 이게 도대체 경찰이 지금 어느 상황에 처해졌다는 건지 극명하게 대변해 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내용을 아십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경찰에서는 경찰관의 그런 개인적인 일탈, 비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상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엄정하게 수사하고 또 조치하겠지요.

민간기관이 만약에 이런 개인정보를 유출하면 분명히 엄정하게 수사를 합니다. 그러나 경찰 내부의 유출은 전혀 대책을 내놓지도 못했습니다. 민간에는 엄정하고 자기 식구는 감싸는 전형적인 내로남불 아닙니까? 원인을 제대로 짚지도 못하고 이 같은 대책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마음은 없으니까.

마지막 또 한 가지 지적 안 할 수 없는 게 경찰이 입버릇처럼 강조하는 엄정 징계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은 문제가 터질 때마다 엄정하게 징계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최근 5년간 경찰관 354명의 징계가 소청심사에서 감경되거나 취소되거나 무효 처리된 게 너무나 많습니다.

결국은 무슨 말이나? 왜 이렇게 솜방망이 처리하거나 다 봐주기를 했느냐? 처음부터 여론을 의식해서 징계 수위를 높였거나 소청심사조차 버티지 못할 만큼의 조사와 처분을 부실하게 한 거다. 사실은 이 내면을 들여다보면 제 식구 감싸기 한 겁니다. 그래서 봐주기 한 거예요. 장윤기 사건도 같은 일 아닙니까? 성격은 똑같은 거예요.

지금 경찰의 모습은 제도도 지휘·감독도 재발방지대책도 징계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이다. 이 정도면 사실상 경찰의 내부 감독체제가 붕괴된 것 아니냐. 경찰의 자정능력이 상실된 것 아니냐. 이제 경찰이 스스로 자기 죄를 고하고 스스로 다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기 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이런 경찰, 이런 경찰을 누가 믿습니까?

경찰에 대해서 할 이야기가 너무 많은데 제가 지금 짚고 넘어가는 것은 경찰청으로부터 저희가 직접 자료를 받아서 유감스럽지만 드리는 질문입니다.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제가 한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상웅 위원 예, 짧게 해 주십시오.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경찰의 제 식구 감싸기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경찰은 경찰관의……

○박상웅 위원 지금 제 황금 같은 시간이 지나가니까 나중에 마이크 꺼지면 그때 답변해 주도록, 듣겠습니다.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박상웅 위원 윤호중 장관님, 지금 중수청이 출범까지 32일 남았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우리 형사사법체계 대전환에 관한 78년 만의 대규모 수정입니다.

그런데 국민들은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내용을 몰라요. 중수청에는 검사 몇 명이 들어가는지 과학수사 인력과 장비는 얼마나 넘어오는지 전산은 어디까지 현재 준비돼 가는지 그래서 10월 2일 날 개청은 할 수 있는지, 하나를 물으면 선정 중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또는 협의 중이다 또는 단계적으로 구축하겠다 그랬어요.

며칠 있으면 개청을 해야 되는데 뭐가 준비됐는지 알 수가 없어요. 왜 국민이 궁금해 하냐고요? 일반 국민은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관심 있는 국민이 많습니다. 국민은 헌법상 알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도적으로 은폐를 하는 건지, 이 중요한 사법체계가 바뀌는데 중수청이 지금 어떻게 어떻게 준비가 되어 가고 있다는 몇 가지 핵심적인 이야기는 국민들한테 알려 드려야 하는 게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도 개청이 되면 사건 접수하고 배당만 가능해요. 이 기능만 개통되고 나머지 사건 처리 기능 이런 것은 개발 일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구축한다고 합니다. 개청할 준비가 안 됐다는 거지요, 사실

은.

그래서 문제는 7대 중대범죄도 어느 정도 규모로 검찰이나 경찰에서 손대고 있던 게 중수청으로 넘어가는 건지 과연 중수청이 그걸 감당할 수나 있는지. 국민은 몰라도 된다? 그것은 정부가 알아서 할 일이다? 그런 논리는 있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장관님이 긴급 경찰지휘부 회의를 개최해서 빈틈없는 제도 설계를 요구했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박상웅 위원 똑같이 제가 묻습니다. 장관이 책임지고 출범시키는 이 중수청, 똑같이 빈틈없는 제도 설계를 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박상웅 위원 대행님, 말씀하십시오.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찰관의 내부 비위에 대해서 경찰이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하고 있다는 위원님의 말씀에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경찰은 경찰관의 징계에 대해서 어느 조직보다도 엄정하게 처리를 하고 있고 소청심사 위원회에서 감경 처분이 어느 조직보다 많다는 것은 경찰관의 징계가 보다 더 엄격하게 처리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상웅 위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박상웅 위원 그리고 감사원장님, 마이크는 꺼졌지만 내려가기 전에 한말씀만.

지난번에 공무원연금기금에 대해서 제가 언급하면서 감사원에서 관심을 갖고 한번 들여다봐 달라고 부탁한 것 기억나십니까?

○감사원장 김호철 예.

○박상웅 위원 관심을 갖고 정말 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감사원장 김호철 예, 살펴보겠습니다.

○박상웅 위원 제가 국민연금공단에 똑같은 자료를 요청했더니 절대로 공개를 못 하겠다고 합니다. 다만 서류는 안 보고 듣는 말로는 거기도 똑같이 국민연금에 대한 투자 비중을 높였다고 합니다. 왜 높였는지는 모릅니다. 누가 시켰는지도 모릅니다. 자료도 공개하지 않습니다. 몇 %인지도 모릅니다. 공무원연금은 공개가 되고 국민연금은 안 된다? 금액의 차이가 워낙 압도적이니까 파장이 커서 그럴 겁니다. 그것도 한번 살펴봐 주실 것을 감사원장님께 직접 부탁드립니다.

○감사원장 김호철 감사원은 연기금 운용의 건전성에 대해서 늘 살피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웅 위원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말씀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감사 기능을 좀 발동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원장 김호철 살펴보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박상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정태호 박상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남 광주북구를 출신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위원님 질의 있겠습니다.

○전진숙 위원 전진숙입니다.

우리는 요즘을 AI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대한민국은 6월 말에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발빠르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 3대 메가프로젝트의 첫 번째 출발점이 되었던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구성에 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도 오늘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인 광주 군공항 이전에 관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계획대로라면 28년 중반까지 광주 군공항 주요 기능을 이전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방부차관님께서 답하시기 바랍니다.

2029년까지 반도체 팹 1단계를 준공해서 신속한 부지 공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광주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서도 속도를 내겠다고 하는데 계속 걱정과 우려의 목소리는 듣고 계시지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전진숙 위원 존경하는 안도걸 위원님께서 이 전 질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한미 공동운영기지 한미 합의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전진숙 위원 그러면 한미 합의가 마무리가 돼야 되는 시점은 언제여야 됩니까?

○국방부차관 이두희 지금 양국 간에……

○전진숙 위원 잠깐만요.

먼저 저희가 지금 현재 선 임시 배치를 하고 나서 그다음에 영구 이전을 하겠다고 계획이 되어 있잖아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전진숙 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은 선 임시 배치라고 하는 그 시점이 있는 건데 그 전까지 이미 한미 간에 합의가 마무리가 되어야만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그 이후에도 합의가 되면 영구 이전 하는 때까지 할 수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차관 이두희 그 이전에 합의가 완료가 돼야……

○전진숙 위원 그래야 되지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거기 있는 각종 지장물이나 수많은 물자들을 이전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완료가 돼야 됩니다.

○전진숙 위원 그러면 그 시점이 언제입니까?

○국방부차관 이두희 지금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양국 간의 협의에 관한 외교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전진숙 위원 그러면 지금 예단하기 어렵다는 말씀은 저희는 이미 계획상으로 되어 있는데 그 계획에 맞추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현재 단계에서 그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한미 간에 협의를 지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진숙 위원 많은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합의가 되어야만 그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알겠습니다.

○전진숙 위원 국방부는 또한 2027년 예산 지금 반영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선 배치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부대조건들을, 시설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 예산은 대략 어느 정도입니까?

○국방부차관 이두희 그건 내일 아마 정부안이 최종적으로 발표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진숙 위원 오늘 말씀하기는 어려우시네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2년 차 사업으로 해서 27년·28년 양개년도에 필요한 예산을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진숙 위원 2개 연도 안에서 충분히 반영되리라고 믿겠습니다.

전남광주시민들이 그동안 굉장히 소외됐고 외면당하고 이리면서 이 반도체 클러스터가 제대로 작동되게, 계획대로 되는 것에 대해서 많은 기대도 하지만, 물론 정부가 지금 현재 전격전을 통해서 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려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잘 알겠습니다.

○전진숙 위원 또 하나의 문제는 군공항이 토양오염 가능성이 큰 시설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토지정화사업에 대해서 평균 3.3년이 걸릴 건데 착공 시점과 맞물려서 이게 가능하겠느냐라고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책은 어떤 걸 가지고 계십니까?

○국방부차관 이두희 그 부분은 저희보다는 아마 사업 주체에서 정부 다른 유관 부처들과 같이 협의해서 협업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진숙 위원 유관 부서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통상 토양……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사업 주체는 국토부든 아니면 환경을 담당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든 관련 부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진숙 위원 차관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최소한의 그게 어떻게 진행이 될 거라는 건 알고 계셔야 되고 오늘 답변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조정실장님, 일단 28일 지난주 금요일 날 군공항 이전 부지 관련해서는 후보지가 선택이 됐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꾸러지고 나면 군공항 이전 특별법 관련해서 주민투표 법이라든가 이후 후속 조치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무조정실장 임기근 그렇습니다.

○전진숙 위원 이전사업 지원위원회가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여야 될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국무조정실장 임기근 지금 이전 부지는 일단 결정됐고요. 최종 이전 부지 결정까지 주민투표를 거쳐야 되고 저희도 그다음 단계에서 지원위원회를 구성해서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만 저희 지원위원회 활동이 군공항 이전을 조금이라도 당길 수 있는 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전진숙 위원 항상 어떤 일이든지 가장 큰 문제는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문제에 있어서 주민투표가 별 무리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과 설득의 작업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조정실장 임기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진숙 위원 다음은 성평등가족부하고 국무조정실장님께 다시 여쭙겠습니다. 사회서비스 일자리 관련한 내용입니다. 한번 PPT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기준에서 100% 달성을 2028년까지 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여가부장관 답하시기 바랍니다.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예, 맞습니다.

○전진숙 위원 사회서비스 일자리 중 국고 지원 사회복지시설에서 종사하는 종사자들은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임금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정 정도 목표를 달성하고 있지만 실제로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데 보면 지역균형특별회계에 의해서 지원을 받는 현장은 이 적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즉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어디에서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임금 차별이 굉장히 많이 난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그다음 PPT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주관 부처별 그리고 시설별·지자체별 예산 구조에 따라서 보수의 편차와 고용 안정성의 격차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동 공동생활, 그룹홈이지요. 아동 그룹홈 같은 경우에도 호봉제가 미적용되는 곳이 있고요. 특히 일반 사회복지시설하고 청소년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자들하고 임금 차별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청소년시설 종사자들 같은 경우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에 비하면 83.3% 정도의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성평등가족부는 여성 관련된 시설과 청소년 관련된 시설에 있는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개선에 노력을 하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지금 현재 실태 파악을 하고 있는 연구용역 하고 계시지요?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예, 맞습니다.

○전진숙 위원 복지부에서도 마찬가지로 사회복지시설 전반에 관련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무조정실장님,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지금 현재 저희들한테 굉장히 중요합니다. 초저출산·초고령 사회로 접어들면서 돌봄의 영역이 더욱더 확대가 되고 사회복지사의 역할들이 더욱 중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후에 임금이라든가 근무조건에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국무조정실장 임기근 예, 지금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사회서비스 분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자리 측면도 있고요 돌봄 확충 측면도 있고 또 돌봄을 받는 분들 가족들의 문제도 있고 세 가지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고용 형태가 똑같지 않으니 똑같이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단계적으로 격차를 줄여 가는 범정부적인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전진숙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인 대책과 이후에 예산에 어떻게 반영할 건지

계획에 대해서 저에게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조정실장 임기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진숙 위원 그리고 다음은 친밀관계 여성폭력 대책 관련해서, 소위 말하는 교제폭력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찰청, 성평등가족부, 국무조정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찰청장직무대리님, 군산 교제폭력 사건에 대해서 혹시 기억하십니까? 5년 동안 교제폭력을 당하고 있다가 결국은 31번, 서른한 번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 경찰에 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안전조치를 하지 못해서 피해자가 직접 가해자에게 화재를 일으켜서 사망하게 한 사건 있었던 것 기억하시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전진숙 위원 제가 최근의 자료를 보니까 112에다 신고했던 건수 중에 가장 많이 늘어난 게 교제폭력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실제로 교제폭력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다양한 형태로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7월에 이미 반복적 신고자와 고위험 피해자를 집중 관리하기 위해서 3단계 위험분리 제도를 도입하고 책임수사관제를 지정했습니다. 맞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전진숙 위원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고위험 사건의 보호조치 해제나 사건 종결에 대해서 담당 수사관과 여성폭력 전문 수사관이 이중 심사하도록 해서 별도 과제로 포함할 필요가 있는데 이 부분 대해서는 빠져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조금 이따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성폭력 그리고 교제폭력, 스토킹, 디지털 성범죄는 굉장히 중첩적으로 일어나기도 하고 복합적으로 일어납니다. 한 피해자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일어나고 또 가해자도 다양한 방식으로 여러 사람에게 하고, 이런 방식으로 일어나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위험 정보를 법무부, 성평등가족부, 경찰청이 따로따로 관리하고 있지요, 지금?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예.

○전진숙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통합 위험성 평가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예, 동의합니다.

○전진숙 위원 그러면 국무조정실장님, 정부가 이 친밀관계 폭력 방지를 위해서 대책을 계속 세워 왔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런데 문제는 부처별로 지금 현재 분절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의 국가시스템으로 만들어 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이런 예가 있었습니다. 2003년에 성매매 방지를 위해서 국무총리실 산하에다가 성매매방지기획단을 만들었고 성매매방지 종합대책을 세웠고 결국은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도 만들면서 일정 정도 성과를 가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후에 이 교제폭력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국무총리실 산하에다가 기

구를 만들고 관계성 폭력이라고 이것을 일컫는데 이 관계성 폭력에 대한 대책기획단을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조정실장 임기근 지금 방금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관계성 폭력의 문제 또한 성매매 방지처럼 여러 부처가 관련된 거 맞고요. 그리고 범정부 협업이 성과 있게 진행돼야 현장에서 성과가 날 수 있는 사안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관계 부처 간에 여러 TF하고 협의체가 돌아가고 있습니다만 협업을 좀 더 성과 있게 끌고 가기 위해서 국무조정실에 기획단이 필요한지 여부도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진숙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서 그것 또한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조정실장 임기근 예.

○전진숙 위원 저희가 예산을 마무리하기 전까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위원님, 저희……

○전진숙 위원 그리고 아까, 청장님 말씀, 직무대리님……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교제폭력이 최근 들어 계속 증가하고 있고 저희가 관계성 범죄라고 보면 교제폭력·가정폭력·스토킹 이렇게 같이 묶어서 관계성 범죄로 해서 엄정하게 대응을 하고 있는데 이 세 가지 모두 최근에 계속 증가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서는 이 관계성 범죄에 대해서는 가해자에 대한 우선 신속한 격리부터 그다음에 피해자에 대한 보호 이런 부분은 세심하게 신경을 쓰고 있고,

저희 경찰 입장에서 좀 시급하게 원하는 것은 가정폭력과 스토킹은 법안이 마련돼 있습니다. 그런데 교제폭력에 대해서는 법안이 마련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경찰이 바라볼 때는 교제폭력에 대한 부분은 관계성 범죄 중에 사각지대가 아닌가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교제폭력에 대한 시급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진숙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발의를 지금 하고 있고요.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여가부에서 협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관님, 말씀해 주십시오.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위원님, 지금 스토킹·교제폭력 관련해서는 사실 법무부, 경찰청, 성평등부가 과거 어느 때보다 더 협업을 잘 이루어 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성평등부가 갖고 있던 교제폭력 자가진단 도구와 수사기관의 위험성평가 도구를 저희가 결합해서 교제폭력·스토킹 고위험 징후와 피해자 보호 조치를 안내하는 레드플래그 10을 마련해서 지금 확산 중에 있어서 좀 알려 드리고 싶습니다.

피해자분들이 폭력 성향이나 갈등 심화 또 음주, 약물, 피해자 비난과 책임 전가 등 가해자들이 그런 행동 징후가 있을 때 피해자뿐 아니라 주변에서도 피해자에게 이런 위험을 인지시키고 경찰이나 성평등부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많이 국민들에게 확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태호 전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오후 회의는 만찬을 위해서 엄태영 위원님, 권향엽 위원님까지 하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충북 제천·단양 국민의힘 엄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엄태영 위원** 충북 제천·단양 출신 엄태영입니다.

국무위원님들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존경하는 권오을 국가보훈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가보훈병원이 지역 불균형으로 공공의료서비스 형평성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전국에 있는 국가보훈병원의 현황을 알고 계시지요?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 예, 알고 있습니다.

○**엄태영 위원** 아시다시피 서울, 인천, 대구, 대전, 부산, 광주 이렇게 광역시로 6개 도시에 집중돼 있습니다. 국가보훈병원이 이렇게 일부 주요 도시에 집중돼 있다 보니까 보훈가족의 의료 소외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고 봅니다.

장관님도 동의하시지요?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 예, 알고 있습니다.

○**엄태영 위원** 물론 권역별로 1053개 위탁병원이 지정돼 있다고 하고 올해 또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에 공공병원을 활용하는 준보훈병원 제도를 도입했다고는 하나 보훈 대상자 고령화가 급증되고 있습니다. 지금 6·25 참전용사들의 평균 연령도 거의 95세입니다. 따라서 의료 수요 문제와 또 소외지역에 대한 사각지대 해소가 매우 급한 실정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다시피 저희 제천·단양을 포함한 충북의 북부권 또 강원 남부권, 경북 북부권을 보면 의료서비스에 있어서 여전히 소외받고 있습니다. 저 도표를 보시면 중부내륙 쪽에 강원·충북·경북을 중심으로 저렇게 다 소외돼 있습니다. 그래서 1시간 거리에 22개 도시가 저희 지역을 중심으로 있는데 지금 수도권, 광역에 편중돼 있다 보니까 이런 형평성의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도표로 보시면 금방 이해하실 겁니다. 또한 충청북도 보훈대상자 수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2만 6000명대, 전체의 3.2%, 그런데 현재 보훈병원이 소재해 있는 대전·광주를 보면 저희보다 적습니다, 2만 4000대, 2만 3000대에 있습니다. 이만큼 보훈대상자 수가 타 광역시보다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충북을 중심으로 중부내륙이 역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1시간대에 저희 지역을 중심으로 22개 도시에 총 5만 3000여 명의 보훈가족들이 이렇게 보훈의료서비스의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장관님,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장관님께서 지난 5월에 바쁘신 중에도 저희 제천을 방문하셨지요. 그때 또 건의를 드렸습니다. 지금 부처에서 그 이후에 검토된 바가 있습니까?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 안 그래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엄태영 위원님을 비롯해서 지역의 시장님, 지역의 여러 지도급 인사들이 저한테도 한 두 번 정도 방문을 했었고 저도 현장에 한 번 갔었습니다.

보훈병원은 기본적으로 한 시도에 하나씩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6개의 기존 병원에서 올해에는 강원도와 제주도에 보훈병원이 아닌 대학교 부속병원을 준보훈병원으로 지정을 해서 12월부터 그 기능을 시작합니다. 내년도에는 또다시 한

2개 정도 시도에 보훈병원을 짓든지 아니면 준보훈병원을 지정해서 우리 보훈가족들의 편리를 봐주려고 합니다. 그때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영 위원** 세부적인 말씀은 이따 또 추가로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지난 후보 시절에 충북 북부권에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이 매우 중요하다 해서 공약도 하셨고 신임 신용한 충북도지사도 제천에 국가보훈병원 건립을 아주 공식적으로 공약하고 지금도 건의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장관님께서 특별히 관철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제천은 다녀가셨지만 의병의 발상지이고 구한말 을미의병의 창의지고 여러 가지로 보훈가족들의 수요와 인구가 많이 집중돼 있는 곳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여튼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의병사에 빼놓을 수 없는 지역, 역시 제천입니다. 제천 의병이 전국 11개 의병도시의 또 회장 도시를 맡고 있습니다. 제천의 자양영당도 다녀가셨지만 제천의 의병기념관이 벌써 준공된 지 25년이 넘었습니다. 장관님 보신 바와 같이 여러 가지로 보강이 필요하고 또 제2 신관도 필요한 그런 입장입니다. 국가보훈부에서 특별히 관심 가져 주시고, 2관 신축과 콘텐츠 고도화 사업에 120억의 예산 소요액이 있다고 아마 카드를 전달해 드렸지요?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 예, 알고 있습니다.

○**임태영 위원** 여기에 대해서도 예결위에서 저희도 적극 부탁드리겠습니다마는 꼭 관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 예,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저희들도 구체적으로 한번 추진하도록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임태영 위원** 그리고 그 사업을 마무리한 후에는 전국의 학생들이 직접 와서 배우는 의병 역사 현장 보훈교육의 거점으로 활용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기획을 가지고 제천 의병전시관의 2관 신축, 콘텐츠 보강 사업 각별히 관심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윤호중 행안부장관님!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임태영 위원** 충북 영동의 노근리 사건 알고 계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임태영 위원** 6·25 때 1950년 7월 300여 명이 집단, 비행기에서……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집단 희생되신……

○**임태영 위원** 미군에게 총살을 당한 그런 지역입니다. 그와 유사한 지역이 바로 그 6개월 후에, 1951년 1월 달에 단양 곡계굴 사건이 있습니다. 여기도 300여 명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미군 폭격으로 희생된 그 유가족들을 위해서 지금 위령탑만 세워 놓고 있는데 일단 충북 영동은 2008년도에서 2012년까지 노근리평화공원을 조성해서 인권과 평화 교육의 산실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진실화해위원회에서도 이번에 명예회복과 피해자 구제를 권고했고 또

지난 5월에 제가 단양 곡계굴 희생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법을 발의했습니다. 또한 법제처에서도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행안위에 죽 올라가 있습니다마는 장관님께서, 단양군 유족들의 원성을 풀어주기 위한 이 법의 조속한 통과를 행안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잘 검토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엄태영 위원** 75년을 기다려 온 희생자들의 유족과 또 명예회복을 위해서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관님, 정부도 주민등록인구만으로는 지방행정 수요 판단이 어렵다고 인정해서 생활인구 공식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엄태영 위원** 일부 학자는 관계인구로 연구도 하고 있는데 저희 지역은 단양만 보더라도 2만 7000 인구인데 체류인구가 30만이 넘습니다. 이는 충북에서 1위이고 전국에서도 9위 수준의 31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이 3만도 안 되는데 실제 30만이 넘는 사람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도로, 주차장, 상하수도, 쓰레기 처리, 소방, 의료까지 모두 지방의 행정 수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행히 올해부터 생활인구를 보통교부세에 일부 반영하기 시작했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그렇습니다.

○**엄태영 위원** 여기에 추가해서 지방소멸대응기금 또 생활SOC, 교통·주차 또 재난안전 등 정부의 지원을 확대 반영하는 그런 시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체류인구가 많은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 생활인구를 반영한 별도의 지원 기준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예산 수요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엄태영 위원** 문체부장관님께서도 하여튼 몇 명이 어디 왔다 갔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관광인구는 얼마나 오래 머물고 얼마나 소비했느냐 이런 기준을 가지고 체류형 관광인센티브 제도도 한번 시행해 볼지하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특별히 대책을 마련해서 지원책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태영 위원** 문체부장관님, 시간관계상…… 조만간에 제가 뭘 것 같으니까 그때 또 자세히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태호** 엄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향엽 위원님 질의 있으시겠습니다.

○**권향엽 위원** 순천·광양·곡성·구례을 국회의원 권향엽입니다.

오늘 질문은 비경제분야입니다만 재정경제부하고 교육부, 성평등가족부, 대통령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대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재경부 허장 차관님 나와 계시지요?

○재정경제부제2차관 허장 예, 여기 있습니다, 위원님.

○권향엽 위원 오늘 비경제부처의 질의입니다만 지난번 종합경제질의 이후에 확인할 내용이 있어서 잠깐 질문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어기구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총리님께 철강 분야에 대한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요청드렸습니다. 총리님께서는 해당 부처와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혹시 살펴보신 내용 있으신가요?

○재정경제부제2차관 허장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기구 위원님께서 사실 재경위에서도 수차례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철강산업에 대해서 생산세액공제를 말씀하시는데요, 기본적으로 이번에 새로 하는 생산세액공제는 국내 생산제품의 생산기반이 취약하고 생산비용이 높아서 투자지원보다 생산지원이 효과적인 분야에 한정하기 때문에 철강산업같이 국내 기반이 탄탄하고 대부분 수출하는 제품들은 사실상 크게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 가지고……

○권향엽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녹색전환이나 경제안보에 전략적으로 중요한 유망산업이나 국내 생산기반이 취약한 그런 산업군의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신설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지요, 차관님?

○재정경제부제2차관 허장 예, 그렇습니다.

○권향엽 위원 그러면 이차전지와 반도체가 국내 생산이 취약합니까? 아니지요?

○재정경제부제2차관 허장 예.

○권향엽 위원 철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정경제부제2차관 허장 그것은 취약한 특수품목에 한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향엽 위원 그러니까요. 국내 생산기반이 철강도 취약하지는 않습니다만 녹색전환과 경제안보 지원에는 매우 필요한 산업 맞지요?

○재정경제부제2차관 허장 예, 맞습니다.

○권향엽 위원 철강산업의 중요성이라든가 유망성, 필요성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신설되는 6대 분야의 핵심 소재에 있어서 존경하는 어기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소환원제철, 전기로, 탄소철강 같은 탄소중립 전환과 국내 생산기반 강화에 직접 기여한 분야로는 반영이 가능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정경제부제2차관 허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권향엽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전통 주력산업인 철강의 경쟁력이 뒷받침되어야 첨단전략산업도 3대 메가프로젝트에 대한 국가경쟁력도 생깁니다. 차관님께서 나와 계시니까 재정경제부에서도 철강 분야 생산세액공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부제2차관 허장 예, 종합투자세액공제까지 포함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향엽 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고진 교육부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국유재산 관리에 대한 새로운 기준이 있어야 하고 법을 개정해서라도 지방정부의 의견이 반영되는 절차가 마련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그런 관점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 광양시 백운산에 서울대 남부학술림이 있다는 말씀 아세요?

○**교육부장관 최고진** 예, 알고 있습니다.

○**권향엽 위원** 알고 계시지요.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 학술림이 말입니다 근거를 제가 여러 번 찾아봤는데 이 책자에, 이게 1996년 ‘서울대학교 연습림 50년사’라고 하는 책자입니다. 남부학술림의 근거를 보니까 이 책자의 근거밖에 없는데 1912년 일본 동경제국대학교가 당시 조선총독부 소관이었던 국유림을 80년 기한으로 대부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해방이 되고 난 1946년에 서울대학교가 미군정청으로부터 대학 연습림 목적으로 80년간 기한으로 대부한다고만 나와 있습니다. 다만 현재 서울대학교는 1912년과 1946년 당시의 원대부계약서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책자에서 보듯이 1958년부터 현재 교육부의 전신인 문교부에서 관리를 맡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2011년에 서울대학교가 법인화되고 국유재산이 무상양여가 될 당시에 남부학술림은 일부 논란의 여지가 있어서 TF를 구성해서 별도 논의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화 직후인 2012년에 여섯 차례 그리고 한참이 지난 2019년에 세 차례 외에는 지금까지 관련 내용과 관련해서 합의점이 도출되지 못하고 논의도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서울대학교 법인화 당시에 교육과학기술부와 체결한 공문에 근거해서 국유재산 무상허가를 받은 상태이고 남부학술림처럼 무상양여를 받은 보류된 재산은 양여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무기한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장관님, 이와 관련해서 서울대학교법을 보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교육부장관은 해당 재산이 서울대학교 운영에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 서울대학교 총장의 의견을 듣고, 재정경제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대학교 남부학술림에 대한 대부는 서울대학교가 발간한 이 책자 흔적 외에는 전혀 없습니다.

저는 남부학술림에 대한 국유재산 무상사용 허가가 그 시작부터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부장관 최고진** 어쨌든 말씀하신 자료에 나와 있긴 한데 실질적으로 그 사실관계를 확인할 등기부등본 자료가 없다고 돼 있습니다.

○**권향엽 위원** 국유재산이 이렇게 관리되는 것은 너무나 허술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교육부장관 최고진**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권향엽 위원** 일제강점 시대 동경제국대학교 시절에 사용했고 그 뒤에 대한민국정부도 아닌 미군정청이 관리했다, 그것도 자체적으로 서울대학교가 한 책자 이 하나를 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광양시에서는 이때 1958년을 기준으로 80년이 지나서 이번에 다시 돌려받아야 되니까 국립공원으로 전환하자 하는 시민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밀도 끝도 없는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국유재산에 대한 관리기준 제대로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나요?

○**교육부장관 최고진** 어쨌든 그 지역에서 그런 움직임이 있다는 것까지는 알고 있고요.

○**권향엽 위원** 전향적인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교육부장관 최고진**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지정 요청이 있으면 서울대학교와 재정경제부와……

○**권향엽 위원** 이게 지금 현재 교육부 소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장관님께서도 주무부처의 장관으로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장관 최고진** 예, 하여간 국립공원화하는 것은 기후에너지부에서 요청이 있을 때 검토하도록 하고 어쨌든 적극적으로 시민들의 요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향엽 위원** 소관이 지금 교육부라니까요.

○**교육부장관 최고진** 예, 알겠습니다.

○**권향엽 위원** 다음은 성평등가족부장관님, 지난 4월에 서울 강남의 한 초등학교 100m 인근에서 발생을 했던 엑셀방송 스튜디오에 대해서 아십니까?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예, 알고 있습니다.

○**권향엽 위원** 내용이 어떤 것인지 아시지요?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예, 알고 있습니다.

○**권향엽 위원** 논란 직후였던 4월 23일…… 지금 이 엑셀방송은 뭐냐 하면 선정적인 행위를 유도하고 후원금 액수에 따라서 순위를 매기는 콘텐츠로 사실은 국세청에서 세무조사해 가지고 유해성이 지적된 사이버 룸살롱이라고도 규정된 바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데 4월 23일 날 교육지원청과 지자체, 경찰이 합동점검에 나섰지만 당시에는 단속할 방법이 없다 그래 갖고 단속을 못 했고요. 스튜디오 대여업으로 등록돼 있고 그 이유가 스튜디오 내에 밀폐된 공간이 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거였습니다. 이 자체가 성평등가족부 고시에 따른 청소년 유해업소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단속을 안 하다가 강남구청이 다시 의뢰를 해 가지고 5월 7일 날 해당 업소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에 해당된다는 성평등가족부의 최종 유권해석에 따라서 판단이 뒤집혔습니다.

그런데 교육지원청이나 지자체, 경찰의 현장점검과 성평등가족부의 현장점검이 어떤 차이가 있길래 이렇게 판단이 뒤집히는 것입니까? 현행 고시기준이 지금 제대로 확신을 가질 수 없도록 애매하고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이 부분 개선이 필요하지요?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예, 이 부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언론을 통해서 사건을 확인한 뒤에 바로 저희가 점검을 나가서 유해환경업소로 판단을 했습니다.

○**권향엽 위원** 그래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살펴보시고요.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예.

○**권향엽 위원** 학생들이 공부하는 그 존에서 꿈수 영업을 해 왔고 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없다면 이건 대단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성인방송 영업소의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청소년 보호법 및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이 내용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명시해서 청소년 유해시설로 지정하고 해당 시설을 교육환경 보호 구역 내 금지시설에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청소년 보호의 주무부처인 만큼 적극적으로 이 법안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 신종 유해업소들을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그런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권향엽 위원 대통령실 지금 누가 나와 계시나요?

○대통령비서실재정기획보좌관 류덕현 재정기획보좌관 여기 나와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권향엽 위원 재정기획보좌관님이 나와 있는데 지금 이것은 사실 국가정보원에 대해서 질의를 해야 될 사안입니다만 예결위에는 국가정보원이 나오지를 않기 때문에 직속기관인 대통령실에서 전달해 주십사 하는 내용으로 질의를 준비했었는데 시간이 다 됐으므로 제가 서면질의를 통해서 하든지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비서실재정기획보좌관 류덕현 예, 알겠습니다.

○권향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태호 권향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만찬을 위해서 정회하였다가 8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39분 회의중지)

(20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정태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대구 동구군위를 국민의힘 강대식 위원님 질의 있겠습니다.

○강대식 위원 국무조정실장님께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8월 27일 이재명 대통령께서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이 대한민국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실장님, 지방에 수도권하고 경쟁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드는 것이 아마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하다는 그런 취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국무조정실국무2차장 김용수 예,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수도권 중심이 아니라 지방 우선적인 관점에서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해야 균형을 이룰 수 있다 이런 취지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강대식 위원 올 초에, 1월 16일인가 김민석 전 총리께서 이재명 정부는 행정통합은 대한민국 재도약으로 나아가기 위한 핵심 수단이다, 이렇게 규정한다라고 발표했는데 혹시 들어 본 적 계시지요?

○국무조정실국무2차장 김용수 예, 들어 봤습니다.

○강대식 위원 지금 정부의 정책방향 기조도 유효하니까, 이 말이?

○국무조정실국무2차장 김용수 저는……

○강대식 위원 편하게 말씀하세요. 괜찮습니다.

○국무조정실국무2차장 김용수 예. 저는 지금 국무조정실장 대신 2차장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하여간 행정통합 그것이 대한민국 재도약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고요. 그래서 광주·전남이 먼저 통합을 이렇게……

○강대식 위원 그것은 알고 있고 뒤에 제가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6월 8일인가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현실적으로 다음 지방선거까지 좀 불가능하겠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 발언은 결국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2030년도 지방선거까지는 사실상 추진하기 어렵다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리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국무조정실국무2차장 김용수 이 사안은 죄송합니다만 제 소관이 아니어 가지고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좀……

○강대식 위원 그러면 국무조정실장 어디 갔어요?

○국무조정실국무2차장 김용수 잠깐 다른 일 때문에 제가 잠깐 들어와 있습니다, 위원님.

○강대식 위원 그러면 그렇게 사전에 양해를 구하든지 아니면…… 내가 지금 국무조정실장을 상대로 질의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국무조정실국무2차장 김용수 무슨 말씀인지……

○강대식 위원 내가 모르겠다 이래 대답해 버리면 지금 이 앞에 선 사람은 뭐가 됩니까?

○국무조정실국무2차장 김용수 아니, 그래서 대단히…… 예.

○강대식 위원 언제 옵니까?

○국무조정실국무2차장 김용수 바로 연락해 가지고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강대식 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저는 국무조정실장 오면 제 순서에 다시 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정태호 다른 질의부터 하시면 안 돼요?

○강대식 위원 그러면 문체부…… 그럴 것 같으면 결국, 제가 건이 두 가지 건인데, 국무조정실장한테 이야기할 게.

○위원장대리 정태호 그러니까 다른 건부터 하시면 안 되느냐 이거지요.

○강대식 위원 다른 부분 하나는 꼭지가 아주 짧은 꼭지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태호 그래요?

○강대식 위원 예.

○위원장대리 정태호 그래도 시작했는데 어떻게 중단할 수가 있겠어요?

○강대식 위원 아니, 이 시간 해 가지고 다시 시작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정태호 잠깐만 중단하시고요.

국무조정실장님 오실 수 있어요?

○국무조정실국무2차장 김용수 예, 이 근처에 계시고 연락해서 바로 들어오실 수 있도

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태호 어떻게 하실래요?

○강대식 위원 그러면 멈춰 주세요.

○위원장대리 정태호 다시 한다고요?

○강대식 위원 예.

○위원장대리 정태호 이미 3분 15초 쓰셨는데?

○강대식 위원 아니, 안 와서 설왕설래했는데 7분 주세요, 그러면 다음에 할 때.

○위원장대리 정태호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강대식 위원 이것도 그래요. 지금 확실하게 자기는 모르는 대답을 여태까지, 꼭지 2개를 물었는데 저는 모른다 이런 답변만 했지 않습니까?

○위원장대리 정태호 예, 시간 계속 가니까 그러면……

허성무 위원님이 질의하실 수 있나요? 준비되어 계신가요?

○허성무 위원 예.

○위원장대리 정태호 그러시지요, 그러면.

○강대식 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대리 정태호 허성무 위원님 오시는 시간에 잠깐 말씀드리는데 대신 참석을 하실 때는 저한테, 간사한테 통보를 안 하고 하는 것은 삼가 주세요. 아니,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회의 진행을 못 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고 또 대신 참석하더라도 그렇게 무책임하게 답변하는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 적절하지 않습니다.

○국무조정실국무2차장 김용수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대리 정태호 그러니까 책임 있게…… 여기에 와 계신 분들은 장관님 또는 기관의 장을 대신해서 오신 분들은 그런 위치에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답변을 ‘내 일이 아니니까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는 것은 정말 무책임한 겁니다.

○국무조정실국무2차장 김용수 예, 무슨 말씀인지 그 지적 제가 충분히……

○위원장대리 정태호 그래서 국무조정실장님 찾아 주시고요.

허성무 위원님 그러면 먼저 질의해 주시지요.

○허성무 위원 행정안전부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 5일 인구감소지역을 인구활력지역으로 변경하고 수도권과의 거리와 지역별 소멸위험도에 따라 지역을 차등화하는 제도개편을 발표하셨습니다. 지역별 소멸위험도에 따라 지원을 차등화하는 방향에는 동의하고 좋은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명칭과 지원 방식에 그치지 않고 실제 인구가 빠르게 감소하는 지역이 누락되지 않도록 지정 기준을 보다 촘촘하게 설계해 주셨으면 합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잘 알겠습니다.

○허성무 위원 자료를 한번 보여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통합 창원시 출범 전후 지역별 인구 변동 추이입니다. 1990년에 구 마산시의 인구는 49만을 넘었고요. 2010년에 마산·창원·진해가 통합을 했는데 그때는 40만 700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통합하고 나서 지금 15년, 16년이 지나니까 구 마산시의 인구가 34만 8000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1990년에 비교하면 14만 5000이 줄었고 통합을 했던 2010년에

비교하면 5만 9000, 약 6만 명이 줄었습니다.

이렇게 인구가 엄청나게 줄었는데도, 빠르게 줄고 있음에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아 구 마산은 지방소멸 대응지역에서 소외되고 있습니다.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제도가 정작 인구가 줄고 소멸 위험이 큰 지역을 지원하지 못한다면 그 실효성을 다시 따져 봐야 합니다.

오늘은 인구감소지역 지정 기준과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문제점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장관님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보여 주세요.

이 자료 보면 현행법상 인구감소지역의 지정은 시군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저 자료에 보면 두 번째 줄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는 포함한다고 돼 있습니다. 저 행정시가 구 자치시였던 서귀포시와 제주시를 이야기합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그렇습니다.

○허성무 위원 그런데 통합 창원시는 과거의 구 자치시였던 마산시·창원시·진해시가 합쳐졌는데 통합이 되면서 구 마산시가 자치시에서 행정구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거기에 빠져 버렸지요, 이 법안을 만들 때. 그래서 지난 5년간도 혜택을 못 받았고 앞으로 곧 있을 제2차 지원 대상에서도 지금 안 된다는 게 행안부차관이나 담당 공무원들의 답변입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공식적으로 현행법으로는……

○허성무 위원 국회에서 법을 안 만들어 줘서 이렇다라고 말을 하는데.

장관님, 그러면 작년에 이 자리에서 제가 장관님께 이 질문을 드렸고 적극적으로 찾아보고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행안부는 그러면 1년간 이 제도개선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제가 한번 여쭙보고 싶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저희가 이런 경우가 전국적인 현상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0만이 무너졌다고는 하지만 98만, 100만에 거의 육박하는 비수도권의 유일한 특례시입니다.

○허성무 위원 장관님, 저희가 시간이 너무 짧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산은 과거 50만이 넘던 도시였고 전국 7대 도시였는데 지금은 어디 있는지도 모를 만큼 인구가 35만 명도 유지가 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실제로 줄어들었고 많이 줄어들었고 계속 줄어들고 있으면, 이런 인구소멸지역을 위해서 만든 제도라면 그것이 소외되지 않도록 해 주는 게 이 제도의 취지인데 계속 소외되고 있고 특례시가 됐지만 특례시 되고 약 10만 명이 줄지 않았습니까, 인구가? 그런 심각한 상황에 있는데 여러 도시를 합쳐서 100만 가까이 되니까 지방에서 제일 큰 도시인데 이런 도시가 그런 말을 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거는 논리적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지역민들도 정부의 태도에 동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실질적인 제도개선 의지를 다시 한번 밝혀 주시는 게 좋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을 행안부가 역으로 인구 많은데 이게 무슨 주장이냐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정말 저희들이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제가 말씀드리는데 인구가 단순히 많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창원시가 가지고 있는 재정력이라든가 시의 활력을 통해서 창원시 안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좀 더 노력을 해 주시면 저희가 거기에 호응하는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허성무 위원** 당연히 창원시도 노력해야 되고요 모든 주체들이 노력해야 되는데 사실은 당시에 통합도 이명박 정부에서 행안부를 중심으로 거의 강압적으로 통합을 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전 도시들의 보통교부세 늘어난 비율을 보면 세 도시는 통합을 해서 보통교부세 늘어난 비율이 오히려 축소돼서 상대적으로 큰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가장 큰 수입이 보통교부세인데 사실은 도시가 통합이 되면서 피폐해졌거든요.

그런데 또 통합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겠다 했는데 이후에 이런 새로운 제도가 들어설 때마다 통합 때문에 계속 불이익이 생긴다면 중앙정부가 이렇게 추진했던 그 통합의 성과가 자꾸 부정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후에 어떤 통합의 대상으로 거론되는 쪽에서 실패한 사례다 이러면서 이 사례를 들면서 저항이 더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부였든지 간에 국가의 변화나 개조, 혁신을 위해서 통합을 했다면 그것이 성공하는 사례로 보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도와주시기를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용처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러 자치단체에서 이 지원금을 받아서 쓴답니다. 쓴다는데 과연 이 지출이 인구소멸을 막는 데 합목적으로 쓰였는가 봤을 때 별로 그렇게 인구소멸 대응의 목적에 부응하지 않는 듯하다는 거지요.

그래서 돈이 제대로 목적에 맞게 쓰여야 한다는 지적들이 계속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행안부가 최근에, 4월 14일 날 지방소멸기금의 대대적인 개편 예고를 했습니다. 저렇게 했는데요. 사실은 저것도 보면 제목만 조금조금 바뀌었지 내용이 크게 바뀐 게 없습니다.

더군다나 사후에 평가를 통해서 개선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점수 자체가, 성과지표 점수가 거의 변한 게 없습니다. 약간의 변화는 됐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벌써 5년을 해 왔고 충분히 긴 기간을 보면서 평가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돈이 지출되도록 하는 합리적인 지표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런 것에 대한 개선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올해 지표를 가지고 내년 사업을 선정을 했는데요. 올해 집행한 사업들에 대한 평가를 또 기반으로 해서 내년에는 기준을 더 고도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허성무 위원** 그래서 지방의 도시들 중에서는 인구가 많다는, 사실은 차관님하고 대화도 해 보고 담당 공무원들하고도 대화해 보면 그 편견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합치지 않았더라면 마산 같은 경우에 50만이 넘었던 도시가 과거에 전국 7대 도시라고 했는데 지금은 순서가 어디인지도 모를 정도로 쇠락한 도시니까 각별한 관심을 중앙정부가 가져 주셔야 한다는 부탁 말씀 드리고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알겠습니다.

○**허성무 위원** 그다음에 경찰청장대행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너무나 많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렇지요? 제주서부경찰서 관련해서 성인 실종사건, 그렇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그렇습니다.

○허성무 위원 이분이 허위로 통화가 되었다, 사건 임의 종결해 버리고 이러는 바람에 한림읍에 있는 118대 CCTV 30일간 보존되는데 이 증거들 다 사라져 버렸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시간이 좀 지나서……

○허성무 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의 지탄이 어마어마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허성무 위원 경찰의 개인적인 일탈이든 아니면 경찰의 구조적인 문제든 어떤 경우든 경찰의 잘못이 현 정부에 대한 엄청난 불신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큰 책임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허성무 위원 그런데 실종 성인 수사체계 개편 촉구도 많이 있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그렇습니다.

○허성무 위원 저도 법안 발의를 했는데 왜 안 되고 있습니까? 하실 의사는 있으십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저희는 국회에서 논의하면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사가 있습니다.

○허성무 위원 아니, 청장님, 국회에서 논의는 여러 번 했지요. 이전 21대에도 했고 22대에도 하다가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관할 부서에서 더 책임을 가지고 오히려 논의를 촉발시켜 주시고.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성무 위원 이것 통과시켜 달라고 또 걱정되는 부분을 어떻게 사전에 방지할 건지를 가지고 더 노력을 직접 주체적으로 하셔야지 남의 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하듯이 국회에서 논의하면, 적극 참여해 보겠다 이렇게 되면 어느 국민이 신뢰를 또 하겠습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저희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허성무 위원 되도록 경찰청이 직접 책임지고 통과되도록 의원들을 더 설득하고 국회의 논의에 더 적극적으로, 오히려 경찰청이 논의를 더 만들어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성무 위원 청장님 초기 답변은 굉장히 실망스러운 태도입니다. 지금까지 경찰이 그런 태도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법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제가 수많은 PPT 자료를 가져왔는데요. 시간이 지나서 할 수는 없어서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만 보더라도 실종 성인이 7만 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실종 아동은 치매노인까지

포함해서 한 5만 4000명 되는데 훨씬 더 많은 실종 성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라는 매뉴얼 자체가 없어요. 맞지요?

실종사건 전체 매뉴얼이 있는데 그거를 아동, 치매노인 이렇게 분류는 해 놔는데 그 분류에, 실종 성인은 분류 자체가 되어 있지 않은 것 청장대행님,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아동에 준해서 저희가 시스템에 입력도 하고 수색도 하고 그렇습니다. 매뉴얼은 있습니다.

○허성무 위원 그래서 확실한 제도개선을 하지 않으면 반복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허성무 위원 또 그 가족들의 돌이킬 수 없는 상처들도 있는 건데 반드시 빠른 시간 내에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유념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성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태호 허성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대식 위원님 질의 이어 나가겠습니다.

○강대식 위원 임기근 실장님 나오셨습니까?

○국무조정실장 임기근 예, 여기 있습니다.

○강대식 위원 앞서 제가 이야기드린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에 대응,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하다 하는 것 한 꼭지하고 올 1월 16일 날 김민석 전 총리가 ‘행정통합은 대한민국이 재도약으로 나아가기 위한 핵심 수단이라고 규정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제가 물었던 게 뭐냐 하면 지금도 이러한 정부의 정책방향 기조가 유효하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유효합니까?

○국무조정실장 임기근 예, 지금 정부의 균형발전 전략은 기본적으로 5극 3특 전략이고요. 그리고 광역이 통합하면 지방주도성장을 앞당기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강대식 위원 그거는 알고 있는데 아직도 이 기조가 유효하지요?

○국무조정실장 임기근 유효합니다.

○강대식 위원 그런데 대통령께서 6월 8일인가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현실적으로 다음 지방선거까지는 불가능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고 그런 것 같으면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2030년 지방선거까지 사실상 추진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국무조정실장 임기근 26년 6월 8일 날 저때 얘기하신 특정 시점의 발언만 가지고 해석하는 것보다는 전체 맥락 차원에서 이해를 하시는 게 좀 더 정확한 이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강대식 위원 그리고 8일 뒤에 또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행정통합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국가과제다 그 포문을, 전남광주특별시의 성공적인 출범은 다른 지역의 본보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정부의 행정통합 정책은 전남이나 광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계속 추진되는 것 맞지요?

○국무조정실장 임기근 행정통합 논의하고 관련해서……

○강대식 위원 아니, 그냥 맞느냐, 안 맞느냐 그 말만 대답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맞지요?

○국무조정실장 임기근 예, 맞습니다.

○강대식 위원 전남하고 광주만 국한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맞잖아요?

○국무조정실장 임기근 예, 맞습니다. 지역민과 국회의 논의를 존중한다는 게 정부의 기본적인 방침입니다.

○강대식 위원 그러면 특별한 사유 없이 우리 대구·경북 사실상 2030년 이후로 미룬다고 하는 것은 정부 스스로가 세운 국가균형발전의 정책과 모순되지 않나.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조정실장 임기근 국가균형발전이 대한민국의 생존전략이라는 기본적인 원칙이 단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습니다.

○강대식 위원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는 그 내면에는 우리 대구·경북 510만 시도민을 무시하는 처사밖에 안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그리고 물론 대구·경북 통합을 하는데 일부 지역의 반대다, 지역 내의 협의가 부족이다 이런 거를 정부가 많이 제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사실상 전남광주 통합할 때도 반대의 목소리가 없었던 게 아닙니다.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 여당은 전남광주만 특별법을 처리하고 같은 행정통합인데도 불구하고 대구·경북은 안 했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주민 수용성의 기준은 뭐 다른 게 있습니까? 똑같지 않습니까? 같은 대한민국 땅인데 주민 수용성이 전남광주는 이렇고 대구·경북은 이렇고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실장님? 맞습니까?

○국무조정실장 임기근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광역 단위의 통합이 지방주도성장에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요. 광역 단위 통합하고 관련해서는 지역민 의사, 국회의 논의를 존중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방침입니다.

○강대식 위원 실장님, 그런 원론적인 이야기는 여기 서 있는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있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실장님한테 제가 물은 겁니다. 주민수용성의 기준이 뚜렷하게 있는 만큼 그 부분은 동일해야 된다, 이 말을 제가 실장님한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지난 지방선거에서 대구시장이나 경북도지사나 여야 할 것 없이 후보자들이 전부 다 2028년에 통합 단체장을 선출하자고 이렇게 공약을 내걸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2030년까지 미룬다, 이 말은 앞뒤가 맞는 말이 아니지요. 이렇게도 이야기, 단체장까지도 전부 다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통합 의지가 있는 지역부터 정부가 적극적으로 좀 행·재정적 이런 지원을 해 가지고 그러면 너희가 그렇다 하면 2028년까지 로드맵을 이렇게 뒤에서 또 뒷받침해 주는 게 그게 옳은 처사가 아닙니까? 이런 어떤 선언에 그쳐서는 저는 안 된다고 보고요. 실행을 해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들까지 짚 해 놓고는 앞뒤가 안 맞는 이런 행정부의 처사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세 가지를 건의하겠습니다. 행정통합에 지역별로 다른 잣대를 제발 좀 적용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 행정통합의 주민수용성에 대한 객관적이고 동일한 기준을 제시해 주시기

를 바랍니다. 세 번째, 통합 의지가 확인된 지역에 대해서는 2028년을 목표로 법률·재정·행정적 지원 로드맵을 좀 마련해 주십시오. 정부 차원에서 검토하고 총리하고 대통령께 보고하실 의향이 계십니까?

○국무조정실장 임기근 지역별로 다른 잣대를 적용한 적이 없고요. 그리고 광역 통합이 국가균형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기본방침에도 변함이 없고……

○강대식 위원 앞서서 대통령의 말씀이나 국무총리의 이야기가 서로 맞지 않다 하는데 대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무조정실장 임기근 그 부분하고 관련해 전체적인 맥락을 봐 주십사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지역민 의사와 국회의 논의를 존중한다는 게 정부의 기본입장입니다.

○강대식 위원 제가 세 가지에 대해 이야기한 부분에서 그렇게 할 용의는 계십니까?

○국무조정실장 임기근 예, 좌우간 국가균형발전을 일관되게 추진할 마음의 자세를 지금 정부는 가지고 있습니다.

○강대식 위원 대한민국의 재도약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가균형발전을 핵심과제로 선언한 정부의 원칙, 특정 지역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됩니다. 정부의 원칙과 추진 일정부터 명확하게 정리해 주시를 바라겠습니다.

○국무조정실장 임기근 예, 지역별로 다른 잣대를 적용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강대식 위원 분명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태호 강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화성을 개혁신당 이준석 위원님 질의 있겠습니다.

○이준석 위원 윤호중 장관님, 특례시 아까 허성무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특례시 우리가 지정돼서, 이제 수도권 특례시들이 다 지정된 다음에 뭔가 특례시 지정요건을 엄격하게 갖추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2년 동안 인구기준을 상회해야 되고 이런 기준에 따라 지정이 됐는데 특례시가 되면 그에 따른 뭐가 좋은 건지는 아직까지 확립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경기도에서 인구가 급격히 늘어난, 예를 들어 용인이나 아니면 화성 특례시 경우에는 행정관서에 대한 수요가 상당한 것은 알고 계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이준석 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 과거의 총액인건비제에 해당하는 인건비 제도의 영향하에 있고 결국 지자체는 최소한의 조정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있는데……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그래서 화성시에 대해서는 3개 구를 설치하는 것을 승인해서 출범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석 위원 4개 구가 됐습니다, 그런데.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4개 구인가요?

○이준석 위원 예, 도와주셔 가지고 4개 구가 됐고요.

그런데 여기서 여쭙고 싶은 거는요, 우리가 그 산식이 좀 궁금한 겁니다. 예를 들어 지

금 제가 만약에 행안부에 요청하면 화성시의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서 지방행정공무원 수는 어떻게 정해지는지가 명쾌한 수식으로 교부해 줄 수 있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그거는 제가 지금 외워서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요.

○**이준석 위원** 어떤 요소들이 들어간다는 건 알고 있는데 우리가 시험과목에 보면 변수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그리고 지난 인구의 증가 속도 이런 게 빠르게 증가하면 행정기구나 정원이 거기에 맞춰서 함께 증가하기가 좀 어려워서 기간이 좀 걸리는 문제는 있습니다.

○**이준석 위원** 제가 그래서 이게 참 답답한 것이, 제가 국회의원으로서 대정부질문도 하고 장관님께도 자주 질문드리고 또 이렇게 현안질의도 하는데 아주 개별적으로 제가 한 분 한 분한테 여쭙 봐야 됩니다. 오늘도 장관님한테 포괄적으로 여쭙보고 행정관서에 대한 수요를 말씀드리지만 이따가 소방청장님이나 경찰청장님한테도 물어볼 게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사실 화성시가 지금 본의 아니게 1등 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화성이 100만 도시가 107만 도시가 됐는데 지금 화성에서는 4만 명당 시의원 1명 뽑습니다. 다른 데 어디 호남 지역 이런 데 가면 4000명, 3000명이 1명 뽑는 경우도 허다해요. 그런데 저희는 지금 4만 명마다 이렇게 뽑는 상황, 이런 것들은 사실 주민을 대표할 만한 지방의원들이 부족하다 이런 결론이 나올 수 있고요.

소방청장님 한번 여쭙보겠습니다.

이번에 화성의 동부경찰서 동탄에 신설되는 거 알고 계십니까?

○**소방청장 최용철** 소방서 말씀하신 겁니까?

○**이준석 위원** 소방서 말씀입니다.

○**소방청장 최용철** 내년도 8월에 개설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위원** 참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관할 인구가 몇 명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소방청장 최용철** 화성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전체 100만 명이 넘고요. 현재 화성소방서가 다 커버하고 있는데 아마 동탄 지역에 새로 생기는 동부소방서에서 커버를 하게 될 겁니다.

○**이준석 위원** 그런데 아까 장관님 말씀해 주신 4개 일반 구가 저희가 생기게 됐는데 그중에 3개 구를 동탄에 생기는 동부소방서가 책임지게 되는데요. 관할 인구가 77만입니다. 107만 도시에 77만 인구를 하나의 소방서가 담당한다. 면적상으로는 서울이 600km²인데요. 지금 이게 한 240km² 정도를 담당해야 됩니다. 서울의 한 40% 정도 되는 면적을 동탄에 있는 작은 소방서 하나가 견뎌 내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게 가능할까요?

○**소방청장 최용철** 저희들이 소방서를 확정을 지을 때는 인구기준도 있지만 화성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울보다 굉장히 큰 지역이기 때문에 면적도 고려를 해서 저희들은 어떻게 주민들한테 화재 출동이나 이런 거리상 접근 거리 이런 것들을 다 판단해서 그 위치를 잡고……

○**이준석 위원** 청장님, 서울은 25개 자치구마다 1소방서가 다 확립이 되었지요, 금천소방서를 마지막으로?

○**소방청장 최용철** 예, 그렇게 알고 알고 있습니다.

○**이준석 위원** 서울은 25개 자치구마다 하나씩 이렇게 소방서가 확립되는 것이 원칙처럼 되어 있는데 왜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4개 구가 확립됐음에도 불구하고 77만 인구를 하나의 소방서가 감내하는 상황, 이거 저희가 경찰에서도 경험했던 겁니다.

2018년에 화성동탄경찰서가 생기면서 60만 인구를 사실상 하나의 경찰서가 470명의 인력으로 감당하는 상황이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언론에서 보면 사실 동탄경찰서에서도 수사인력이 좀 미진한 행동도 있었고 그런데 현장에 가서 경찰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인력 부족 얘기밖에 안 되고 저도 공감 가는 바가 있어요.

그런데 보통 이렇게 소방서, 지금 화성 동부에 소방서가 신설되면 몇 명 정도의 인력이 투입된다고 알고 계시지요? 제가 보고받은 건 158명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소방청장 최용철** 신설할 경우에 신규로 더 필요한 인력이 158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석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아까 말했듯이 서울의 40% 되는 면적을 커버해야 되는 것이 맞고요. 화성은 아시는 것처럼 화성 서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공장도 많았기 때문에 최근에 아리셀 화재라든지 이런 것들에 있어서 신속 대처하지 못해 가지고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소방관들은 열심히 하셨지만 물리적인 거리 한계 때문에 불안해하고 계시거든요.

저는 앞으로 이런 행안부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이 행정 수요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5극 3특 이런 얘기도 하지만 사실 수도권의 인구 고밀집 지역을 방치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특별히 행안부장관님 중심으로 해 가지고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장관님.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잘 알겠습니다.

○**이준석 위원** 그리고 소방청장님께 또 하나 질문드리고 싶은 게요. 우리나라에는 법으로 명문화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원래 구급대가 출동할 때 3인 1조로 출동하는 게 맞습니까?

○**소방청장 최용철** 예, 3인 탑승 기준입니다.

○**이준석 위원** 그게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응급 환자분들께서 한 분은 운전을 하셔야 되니까—3인 1조에서—그리고 한 분은 바이탈을 체크해야 되고 한 분은 실질적인 조치를 이동하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3인 1조를 권장하고 있는 게 맞지요?

○**소방청장 최용철** 그렇습니다.

○**이준석 위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거기에 영으로 그것을 규정하고 있어 가지고 강제성인데 우리는 지금 2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지요?

○**소방청장 최용철**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도 기준에는 명백하게 3인 탑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준석 위원** 어느 영에 그렇게 되어 있지요?

○**소방청장 최용철** 소방력 배치에 관한 규정에 있습니다.

○**이준석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그러면 참 다행인데, 지금 제가 걱정하는 것은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규정이 있는데 3인 출동이 거의 100%입니다, 소방청 보고자료에 따르면.

○**소방청장 최용철** 그렇습니다.

○**이준석 위원** 그런데 화성시는 제가 자료를 받았더니 놀라운 게 뭐냐 하면 30.8%가 2

인 출동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상황, 예를 들어 심정지 환자가 발생했을 때 서울에 살면 3명의 구급대원이 출동해 가지고 조치를 받으면서 이동할 수 있고 화성시에서는 30% 확률로 두 분만 나타나 가지고 한 분은 운전하고 한 분은 뒤에서 적절한 조치를, 예를 들어서 인공호흡하면서 다시 박동이 뛰게 하는 그런 어떤 조치를 한다든지, 같이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소방청장 최용철 지금 위원님께서 제시한 것은 경기도가 워낙 1420만 명을 커버하고 있기 때문에, 인구가 많기 때문에. 제가 경기도 전체는 80% 이상이 넘는 걸로, 3인 출동으로 알고 있는데 유독 화성만 저렇게 적은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준석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게 방금 오늘 저희한테 온 자료기 때문에 맞다는 가정하에…… 저는 걱정인 겁니다. 지금 서울에 40% 되는 면적을 화성소방서에서 떼어내서 동부소방서가 관장하게 되면 이것을 과연 할 수 있을까? 과연 저런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사실 화재 진압도 중요하고 구급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너무 충격적인 통계인 겁니다. 서울에서 심정지가 발생하면 100% 3명이 오고 화성에서 심정지가 발생하면 30%는 두 분만 나타난다? 이것만으로도 주민들은 불안해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장관님, 인력 배치나 이런 것이 있어 가지고 물론 저희가 2022년에 딱 정한 게 됩니까? 그때 5년 동안 이런 공무원 수 많이 안 늘리겠다, 그런데 그것은 전 정부의 발상 아니었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그렇습니다.

○이준석 위원 이번 정부 들어 가지고 많이 늘리겠다라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특히 이런 사람의 생명과 관련된 것들은 주민들이 특히 민감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경찰·소방 인력은 꼭 챙겨 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소방에서 요청을 하게 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준석 위원 장관님, 그리고 혹시 국가직으로 소방이 전환된 다음에 다만 예산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지방재정에 의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도 중앙정부가 좀 더 부담을 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기본적으로 부담을 더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위원 저는 상당히 걱정하는 게 지금 소방안전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담뱃세에 붙어 있어요. 담배개별소비세에서 45%를 떼 가지고 소방에 보태는 구조 맞지요, 소방청장님?

○소방청장 최용철 예, 맞습니다.

○이준석 위원 그런데 이게 좀 논리적으로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담배를 더 피워야지 어쨌든 화재에서도 안전해지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저는 이런 식의 기이한 재정구조라는 것, 이런 것들은 좀 탈피해서 저는 정부가 이번에 세금이 남으면 어떻게 할까 이런 고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때 기본적으로 국가가 해야 될 책무들을 먼저 챙기는 게 중요하다. 적어도, 우리 예전에 소방의 국가직 전환할 때 뭐가 있었습니까? 지방재정과 관계없이 소방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든지 균질하게 받을 수 있어야 된다, 저는 그 취지에 100% 공감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그 정부의 뜻을 계승하는 이번 정부라고 한다면 꼭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국가 부담이 좀 늘어났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

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사실 구급차 3인 탑승 같은 경우에는 소방청장님께서 체계적으로 한번 지역별로 불균이 있는지 살펴 주십시오.

○소방청장 최용철 위원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경기도에서 500명 이상 현장 부족 인력 채용을 전국에서 제일 많이 했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준석 위원 맞습니다.

○소방청장 최용철 내년도에도 현장 부족 인력 1000명을 추가로 이번 정부에서 보강할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부족 인력에 대해서 최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준석 위원 예, 제가 나중에 또 보고받고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정태호 이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금천의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위원님 질의 있겠습니다.

○최기상 위원 원민경 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잠깐 화면을 보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행복한 OO은 이 세상에서 이미 누리는 천국이다’.

‘미국 최고의 아동살인범은 OO이다’.

첫 번째 답은 가정입니다. ‘행복한 가정은 이 세상에서 이미 누리는 천국이다’.

두 번째 답은, 미국 최고의 아동살인범은…… 뭘까요, 장관님?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가정?

○최기상 위원 가난입니다, 가난.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가난, 예.

○최기상 위원 우리 헌법에 보면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논쟁하는 곳이 정치와 행정 영역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과 관련한,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에 반하는 3대 악이 저는 가난·빈곤, 첫 번째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가 범죄로부터 안전이지요. 세 번째가 차별과 배제라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인간 사회에서 물건을 만드는 일과 사람, 생명을 돌보는 일의 비중을 따지면 사람, 생명을 돌보는 일이 훨씬 더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물건을 만드는 일에는 벌써 4차 혁명 이런 얘기를 하는데 왜 사람, 생명을 돌보는 일은 그에 따라가지 못하는가라는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언론에 간병살인 얘기가 나왔고요. 가족을 살해한 후 자살한 가족들 얘기가 나옵니다. 질병, 치매, 장애, 저는 그 일들에서 여기 있는 저도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학교 밖, 가정 밖에서 학대받은 청소년들…… 얼마 전에 장관님과 같이 다녀왔

는데요. 10대 중후반의 여학생들, 여성 청소년을 보면 유튜브에 수많은 딸바보 영상이 있는데 이 친구들에게 이 영상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라는 걱정을 했었습니다, 장관님과 같이.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질문은 한부모가정의 양육에 관련한 겁니다. 우리 한부모가정이 지금 150만 가구나 됩니다.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양육비를 한 번도 못 받은 가구의 비율이 71%나 돼요. 이럴 수가 있나 싶지요. 아마 주로 아빠들일 가능성이 많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양육비이행관리원 지원 사업을 올해부터 시작하셨어요. 아주 좋은 제도인데, 문제는 집행률이 67% 정도이고 그중에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집행률이나 선지급 부분은 50%가 안 되는 것으로 나와서 혹시 이 부분 그 이유를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고 개선을 어떻게 할 계획이신가요?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양육비 선지급제도가 아무래도 작년 제도 시행 첫해여서 최초에 한부모가족 실태조사를 표본조사로 해서 잡다 보니까 좀 적극적으로 예산이 추산됐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25년도 기준이고 올해는 올해 7월 기준으로 40%고 연말에는 한 80% 정도까지 집행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기상 위원 앞으로 계속 쟁겨 주셔서 한부모가구, 한부모가족, 조손가정이 우리 아이들에게 이만큼의 아픔이 되지 않도록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예, 고맙습니다.

○최기상 위원 다음은 행안부장관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이런 기사가 났었습니다. 기본소득을 받아도 두부 살 곳이 없는 농촌과 지방 얘기입니다.

식품사막화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푸드 데저트(food desert)라는 유명한 표현이 있는데요. 그래서 연천군에서 행복배달 소통마차를 운영한다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 혹시 장관님 들어 보셨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연천에서도 들어 봤고요. 행안부에서도……

○최기상 위원 다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일본에서는 이미 식료품 접근곤란 인구추계 결과 이런 통계를 분석해서 고령인들을 이른바 배려하고 돌보고 있더라고요. 또 식료품 접근 지도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을 왜 하나 생각을 해 봤더니 특히 고령이신 분들은 영유아 못지않게 드시는 것이 영양과 건강, 행복 등에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거라는 생각들을 일본에서는 더 일찍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통계를 보니까요, 우리는 작년에 농식품부에서 찾아가는 이동장터를 했다고 나왔고요. 행안부에서는 올해 기아와 손잡고 먹거리 분야 관련한 배달 사업을 했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먹거리 배달……

○최기상 위원 저는 일단 농식품부와 행안부가 이렇게 따로 이런 사업을 하시는 게 약간 의문스러웠고 왜 국가에서 직접 하지 않고…… 기아라는 곳의 도움을 받아야 할 정도 인가요, 우리가? 장관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일률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라 기아자동차에서 차량을 기증

하겠다고 해서 지방정부와 연결을 시켜 준 그런 일입니다.

○**최기상 위원** 전국에 읍면동이 이삼천 개 되는데 그중에 식료품을 소매로 판매하지 않는 곳의 비율이나 이런 것이 지금 어마어마하더라고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먼 지역은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최기상 위원** 그분들은 그러면 냉동실과 냉장실에 가득가득 넣어 둔 음식을 유통기한과 상관없이 드셔야 한다는 얘기인지 걱정이 좀 되는데요.

그래서 관련한 이 사업에 대해서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비판을 좀 했습니다. ‘식품사막화 대응사업의 대부분이 시범·단년도 예산 구조로 전국 확산 기반이 부족하다. 부처 간의 연계도 미비하다’. 즉 통계를 봤더니 부처별로 고령인구가 많은 곳 통계도 있고요, 식료품 소매점이 없는 곳 통계도 있고.

그다음에 어른들 같은 경우는 접근성 문제도 중요하잖아요, 버스나 자전거 등을 타고 가실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온라인 배송하면 되는데. 또 온라인 배송이 전국적으로 지방까지 다 바로바로 되나요? 이런 부분에 관해서 종합적인 통계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까 일본의 지도를 보여 드렸습시다만, 오늘 농식품부장관님도 안 계시고 국가데이터처도 안 나왔습시다만 행안부장관님께서…… 우리나라 부모들이 아이들 먹거리에 이런 문제가 있었다면 가만히 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시골에 혼자 혹은 두 분이 계신 어른들이 이런 상황이라면 드시고는 계시겠지만 그 냉장고에 가득 들어 있는 그런 음식들을 그리고 드시고 싶은 것을 제때 못 드신다? 이것을 그대로 놔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의견 한마디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정태호 간사, 이광재 위원장과 사회교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그래서 정부에서는 지금 농식품부가 하고 있는 사업이긴 합니지만 농어촌기본소득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범사업 중인데 그것을 차차 넓혀 가면서 지역화폐 형태로 농어촌기본소득을 나눠 주고 그다음에 그 지역화폐를 통한 식품 배달서비스 이런 것들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최기상 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최기상 위원** 원민경 장관님께 다른 질문 좀 하겠습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 관련해서 인기가 아주 많았습니다. 시간제 돌봄이나 영아종일제 돌봄, 그것은 인기가 많다 보니까 대기 가구와 평균 대기일수가 많이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타개하시려고 돌봄하는 분들의 숫자를 많이 늘려야 되는데 약간 부족한 면이 있나 봅니다.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예, 맞습니다.

○**최기상 위원** 이번에 조사도 좀 했더니 그 부분에 관해서 아쉽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돌보는 분들이 급여가 너무 작다 그런 말씀도 많이 하시고요. 또 분들이 일하고자 하는 시간대와 부모들이 원하는 시간대, 즉 출퇴근 시간대나 이런 부분이 좀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획기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혁명적으로 좋은 대우를 하고 그 수요를 감당할 만한 공급 방안이 뭐가 있으십니까?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저희가 제가 취임한 직후부터 계속 고민해 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이돌봄사분들이 실제로 어떤 교육을 받고 아이들을 돌보게 되는지 많이 홍보하려고 했고 기존에 아이돌봄이라고 해서 하시는 일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을 아이돌봄사로 등록을 하고 활동하시도록 했는데 아무래도 더 많은 국민들께서 좋은 제안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시행하는 아이돌봄사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다는 것은 그만큼 좋은 분들이 활동하신다는 건데 이분들이 갖고 있는 역량만큼 활동하실 수 있도록 더 많은 좋은 제안을 부탁드립니다.

○최기상 위원 돌봄 국가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돌봄 민주주의라는 표현이 있을 정도로 돌봄이 앞으로 시대의 화두가 될 것입니다.

저는 개인의 태어남의 불평등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모 복인 거잖아요. 태어나게 해 주셨으니 감사하다고 생각하고요. 이 태어남의 불평등을 거듭남의 평등으로 바꾸는 게 공적인 일의 핵심이다. 결국은 우리 국민들께 국가 복이 무엇인지 보여 드리겠다라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핵심은 돌봄이고, 첫 번째 대상은 고령의 어르신들과 아이들이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장관님, 일 잘하시는 장관님에 대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쉬운 목소리가 많이 있습니다.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아닙니다.

○최기상 위원 잘 알고 계시지요?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고맙습니다.

○최기상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밖에서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광재 최기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구 달서구의 윤재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재옥 위원 대통령실에서 누가 나와 계십니까?

○대통령비서실재정기획보좌관 류덕현 재정기획보좌관이 나와 있습니다.

○윤재옥 위원 대통령실에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와 관련해서 최초 논의 시점과 호남의 후보지 검토 여부 또 관련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반도체 부지는 기업이 결정했다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대통령비서실재정기획보좌관 류덕현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마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재옥 위원** 정책실장께서 오늘 안 나오고 지금 보좌관이 나왔는데 이것도 사실 엄청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보좌관이 나왔으면 실장한테 보고해서…… 예상 질문에 대해서 자료 요구까지 했는데 모르고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지요?

○**대통령비서실재정기획보좌관 류덕현** 제가 원래 오후 시간은 아니고 저녁 시간에 나오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윤재옥 위원** 어쨌든 지금 기업이 결정했다고 자료를 안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7월 15일 날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정부는 호남이 가장 좋다고 판단하신 거고 저는 그렇게 되길 기대한다. 권한을 가지고 있는 곳에서 잘해 주시면 저희는 거기다 짓겠다’, 사실상 정부가 입지를 결정했다는 취지로 입장을 밝혔어요. 누가 거짓말을 하는 겁니까?

○**대통령비서실재정기획보좌관 류덕현** 제가 직접 그거는 처리한 업무는 아닌데 확인해 보고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윤재옥 위원** 그러니까 이런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 정책실장이 안 나오고 보좌관이 나와서 ‘확인하겠다’ 이런 답변만 하면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지요.

그리고 또 산업부 장관은 처음에는 정부가 기업에 여러 후보지를 제안했고 후보지에는 호남 외 지역도 있었다고 국회에서 답변을 내놓고 이게 또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나중에 보도자료를 배포해 가지고 입지 선정은 정부와 기업이 함께 검토했고 기업이 최종 결정했다고 입장을 번복했어요.

그리고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여권 내에서 호남 반도체 투자와 관련해서 배임죄 폐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어요. 기업이 결정했으면 배임죄 폐지를 검토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책임 있는 답변을 하려면 실장이 나와야 되는데 보좌관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것도 답변을 못 할 거예요. 그렇지요? 입장이 있나요?

○**대통령비서실재정기획보좌관 류덕현** 제가 알아보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재옥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투명하게 뭐든지, 입지 선정하는 데 자료도 제출하고…… 자료 하나도 안 나와요, 지금. 반도체 클러스터, 3대 메가프로젝트 관련해서 입지를 어떻게 선정했는지, 근거가 뭔지 모든 상임위에서 지금 야당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단 말입니다. 전격 전만 하고 날짜만 2030년까지 하겠다 그것만 발표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하나도 국회에 지금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나중에 생각대로 안 되거나 계획대로 안 될 때 어떻게 할 거예요?

법원행정처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청와대는 손봉기 후보자 제청이 절차적 완결성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고 하면서 재제청을 했습니다. 절차적 완결성을 갖추지 못하는 주장에 동의하십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제가 그 말씀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윤재옥 위원** 그러면 그 절차적 완결성을 동의…… 완결을 갖추지 못하고 재제청을 요구했는데 재제청 요구에 어떻게 대응하실 겁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그건 지금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재옥 위원** 그래서 사실상 대통령이 대통령실에서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형해화하고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데 이런 데 대해서 주장께서 지금 답변을, 절차적 완결성을 갖췄는지 못 갖췄는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입장을 국회에 나와서 말씀을 못 하시면 어떡하십니까?

앞으로 사실 12명 대법관이 증원이 돼서 계속 제청 요구가 있을 텐데 이 재제청 요구가 선례로 굳어지지 않도록 법원에서는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재옥 위원** 교육부장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직무정지 처분과 관련해서 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이 됐지요?

○**교육부장관 최고진** 예, 그렇습니다.

○**윤재옥 위원** 알고 계시지요?

○**교육부장관 최고진** 예.

○**윤재옥 위원** 법원의 입장을 존중할 생각은 없습니까?

○**교육부장관 최고진** 직무정지에 관한 한은 법원의 그 결정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윤재옥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그러면 그 취지를 존중하셔야지 법원 판결 나자마자 8월 27일, 28일 이틀 연달아 해임을 처리하기 위한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라고 압박을 하고 있잖아요.

○**교육부장관 최고진** 압박이라기보다는 정당한 절차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재옥 위원** 정당한 절차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육부장관 최고진** 예.

○**윤재옥 위원** 해임 요구의 사유도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부장관 최고진**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재옥 위원** 판결 이전에도 7월 달에 네 차례나 해임 요구를 위한 이사회 소집하라고 공문을 보냈어요. 아니, 지금 얼마 남았습니까? 임기 3개월 남짓 남은 사람을 여섯 번이나 공문으로 보내 가지고, 해임하라는 압박을 하는 공문을 이렇게 여섯 차례나 보내는 게 상식적입니까?

○**교육부장관 최고진** 위원님, 이게……

○**윤재옥 위원** 이 양반이,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이 학자잖아요. 무슨 정치적인 성향을 띤 분도 아니고 무슨 자리에 욕심을 내는 그런 분도 아니고 지금 현직 교수고 역사학자로서 어떻게 보면 국가기관에 봉사하겠다고 오셨다고 보는 게 상식적인데 이런 분을 국무회의에서 발언과 관련해서 그게 또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이렇게 압박하는 경우가 있었나요?

○**교육부장관 최고진** 위원님, 이것은 이사장님 개인에 관한 어떤……

○**윤재옥 위원** 개인에 관한 것인데 우선은……

○**교육부장관 최고진** 특정한 개인이 아니라 국회에서……

○**윤재옥 위원** 장관님, 들어 보세요.

예산 목적 외 사용금지 위반 이것도 독도 답사비 이런 건데 국회에서 국정감사 때 이사장 징계나 해임을 요구한 게 아니고 시정요구한 건이고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위반

과 비밀유지 의무 위반이라고 해임 사유로 적은 이것은 이미 6개월 전에 직장 내 괴롭힘이 있어서 분리조치를 다 한 사안을 가지고 12월 달에 대통령하고 답변 과정에서 문제가 되고 나니까 다시 가해자를 조사해 가지고, 이것을 또 기관을 통해서 안 하고 개인한테 조사한다고 확인하라 했더니 이게 비밀유지 의무 위반이고 또 사실관계 확인해서 회의 때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라니까 이것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다시 이렇게 몰아세우고 또 공무집행방해라는 게 참…… 교육부장관님, 공무집행방해가 어떤 죄인지 구성요건을 아시나요? 교육부에서 계속 이렇게 압박을 하니까 국회에 제출한 자료 등을 모아서 재단 내부에서 대응 자료로 문건을 만들었다고 공무집행방해라 합니다.

○**교육부장관 최고진** 그것은 이사장 측에서 하시는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재옥 위원** 그러니까요, 어쨌든.

장관님, 장관님도 교육 현장에 계셨던 분이고 너무 이렇게 용렬하게 해서 되겠습니까? 대통령께 이게 충성하는 겁니까? 오히려 대통령께……

청와대나 대통령비서실 쪽에서 해임시키라고 연락을 받았어요?

○**교육부장관 최고진** 전혀 그런 일 없습니다.

○**윤재옥 위원** 그렇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교육부장관 최고진** 예, 전혀 그런 일 없습니다.

○**윤재옥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이렇게 과하게 하면 무슨 대통령 국정 운영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장관님께서 다시 한번 살펴봐 주세요.

○**교육부장관 최고진** 예, 어쨌든……

○**윤재옥 위원** 임기가 1년이 남았습니까, 2년이 남았습니까? 12월 되면 그만둘 분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개인적으로 돈을 착복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압박할 법 위반사항도 아니잖아요.

○**교육부장관 최고진** 그런데 실제로 국회에서 명확하게 지적을 하고 조사를 하라고 한 것은 위반사항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이고.

○**윤재옥 위원** 그러면 하필 국무회의 끝나자마자부터 이렇게 하십니까, 그전부터 하시든지?

○**교육부장관 최고진** 그전부터 했던 거고 그 시점은 전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윤재옥 위원** 장관님, 한번 살펴보세요, 이게 정상인지.

○**교육부장관 최고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광재** 윤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천 계양율의 김남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남준 위원** 법원행정처장님께 질문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확정 기준으로 올해 대법원 예산이 2조 959억 원입니다. 그런데 법원이 또 이와 별도로 가지고 있는 11조 원의 막대한 국민의 돈이 있습니다. 바로 공탁금 얘기를 오늘 해 보고자 합니다.

공탁법에 의해서 공탁금은 은행에 보관하고 또 은행은 공탁금의 운용 수익 일부를 공탁금관리위원회, 즉 대법원에 출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제출받은 자료를 좀 살펴봤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을 한번 봐 주시면 2025년 결산 기준으로 은행의 출연금이 2519억 원, 전체 은행 보관 공탁금 잔액 11조 원대의 2.26% 수준이었습니다. 그 이전 연도를 보면 1%에도 못 미치는 출연율을 보일 때도 있었습니다.

이런 출연금의 비율이 시중의 일반 정기예금 이자율에 비해서 과연 적절한 것이냐 이런 지적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2022년 감사원이 공탁금 보관 은행 출연금이 1% 수준에 불과하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법원행정처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김남준 위원 그보다 조금 나아진 수준이기는 하지만 2.3% 과연 적절한 수준이냐, 그렇지 않는다고 봅니다. 같은 기간 민간은행의 정기예금 이자율이 2.7~3.7%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기준금리는 4년간 0.5%에서 3.5%까지 올랐고요. 공탁금을 운용하고 있는 은행들 살펴보니가 가계와 기업에 대출해 주는 금리는 3.0~4.8% 수준을 보였습니다.

또 공탁금 수령자에게 지급하는 이자도 살펴보니가 법원행정처 규칙에 따라서 0.35% 적용을 하더라고요. 과거 0.5%에서 이마저도 낮아진 이자율이기도 합니다. 물론 예금 이자율과 공탁금의 출연율 이것을 바로 연관 지어서 비교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비교함으로 인해서 지적을 할 지점은 있어 보입니다.

한번 이렇게도 살펴보겠습니다.

권익위원회가 2023년 지방정부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리·운용 합리성 제고 이런 목적으로 실태조사를 했고요. 권고 조치를 내린 바가 있습니다. 당시 한 지방정부가 400억 원을 금리 2.63%의 공공예금에 방치했었습니다. 그래서 8000만 원 가까이 손실을 입었다 이렇게 지적을 받기도 했었고. 그래서 이자율 조치 권고를 지방정부 244곳이 받았고 현재 176개 기관이 이행을 완료했습니다.

지난해 8월 지방회계법 시행령 개정으로 공개된 지방정부 정기예금 평균이 2.61%로 나타났습니다. 당시 국민의 혈세에 이자가 제대로 매겨지지 않고 있다 이런 국민들의 여론이 거셌던 것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대통령께서도 1조 원의 1%만 해도 100억 원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각 지방정부의 금고 이자율을 비교해 보라 이런 지적을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공탁금과 예금을 곧바로 비교하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엄밀히 다를 것입니다. 다만 공탁금이 납입되고 또 다시 출금이 되거나 아니면 회수권자에게 반환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급준비라는 게 항상 되어 있어야 한다 그게 아마 대법원의 입장일 겁니다.

그래서 대법원 산하 연구원이 보고한 자료를 근거로 대법원의 감사 결과 한번 따져 보려고 자료를 요구했는데 대외비 보고서라고 하면서 제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특별한 비공개 사유가 있습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알아보겠습니다.

○김남준 위원 대법원 제출 자료가 일부 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 아래 부분인데 2025년도 8조 5000억 원이 납입이 되고 또 8조 6000억 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대체로 비슷한 규모가 납입이 되고 또 지급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일정한 수준으로, 잔액이 변화가 없는, 약 10조 원가량의 잔액이 변화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 얘기는 어느 정도 자금이 남아 있고 이걸 어떻게 운용하면 될지 예상 가능하다, 예측 가능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대법원이 막대한 국민의 돈을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보관하는 문제도 있고 여기에 더해서 하나 더 감사 결과 처분에 요구하는 대응 태도까지 오늘 이 자리에서는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법원이 감사원의 공탁금·출연금 산정 부적정 통보에 대해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법원 조치 결과가 2025년 7월에 조치 완료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 자료를 보면 다릅니다. 현재 8월 기준인데 명확하게 '이행 중'이라고 표시가 돼 있습니다. 한쪽은 조치 완료, 한쪽은 이행 중. 누구 말이 맞습니까?

법원행정처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일단 공탁금에 대해서는 기존에 상·하한제가 있어서 출연금이 작았는데 2025년에 그 상·하한제를 폐지함으로 해서 아까 보신 표에 있는 것처럼 2500억으로 늘어났던 겁니다.

○**김남준 위원** 그러니까 보시면 공탁금·출연금 산정 부적정과 관련한 동일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대법원은 조치 완료했다고 나오고 감사원은 이행 중이라고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둘 중의 하나는 다른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대법원이 감사 처분 통보를 자신의 임의대로 종료한 겁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살펴보겠습니다.

○**김남준 위원**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김남준 위원** 독립기관인 사법부라고 할지라도, 국민의 재산을 관리하는 어느 국가기관이라도 이러한 비효율적인 구조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공탁금 관리 실태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보고 법원행정처장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알겠습니다.

○**김남준 위원** 다음은 국무조정실장님께 한번 여쭙보겠습니다.

청년이 노동시장에 안정적으로 진입해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일 테고요. 청년 개인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차원을 넘어서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동력이라는 측면에서도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 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최근 청년 고용지표를 보면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은 않은 것 같습니다.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올해 7월 기준 청년 고용률은 44.2%입니다. 2022년 46.6% 기록한 이후에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5세 이상 전체 인구 고용률 비교해 보니까 63.3%보다 19.1%p 낮은 수준입니다. 30대, 40대, 50대 이런 연령층과 비교하면 더욱더 크게 낮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과도 비교해 봤습니다.

OECD 평균보다도 8.6%가 낮고 38개 나라 쪽 나래비를 세워 봤더니 30위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그냥 손을 놓고 있었냐?

청년정책 예산을 보면 보시는 바와 같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1년 23조 8000억 원이던 청년정책 예산이 2026년에는 30조 원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사업 수도, 작게 나와 있어 가지고 잘 안 보일 텐데 308개에서 389개로 늘었습니다. 그런데 청년들의 삶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니다.

막대한 재정 대비 효과가 미흡했다면 정부나 아니면 저를 비롯한 정치권 모두 무거운 책임감을 가져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의 정책이 현실을 개선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 진솔하게 성찰을 하고 또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정책 이용자인 청년의 입장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조정실장 임기근 위원님이 지금 방금 보여 주신 숫자 몇 가지가 저희 대한민국 정부 입장에서도 대단히 가슴 아픈 숫자라고 생각하고요. 지금까지 정부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근본적으로 역전되지 않은 데 대해서 국민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김남준 위원 일단 청년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자료 한번 보시면 2025년 기준으로 2023년 대비 6.6%에서 많게는 15%까지 감소했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올해 다소 개선됐다는 조사도 있기는 하지만 과거 수준까지 회복됐다고 평가하기에는 좀 이른 것 같습니다.

물론 기업에서 신입보다 경력직 선호하고 있고 또 민간에서 첫 경력을 쌓을 기회가 구조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다면 그럴수록 정부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보완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고용 성과 높이기 위해서 단기적인 일자리 많이 만들자 이런 얘기를 하자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 공공기관 업무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면서도 민간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직무 역량, 경험 쌓는 기회 이런 걸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함께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자료도 한번 보겠습니다.

OECD 자료 보면 일반정부 비율이 한국은 8.6%, 고용비율 말씀드립니다. OECD 평균인 18.4%의 절반도 안 되고 38개 중 36위 최하위권입니다. 그래서 K-뉴딜 아카데미 뭐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민관협력 프로그램도 장기적으로 확대를 해야 할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청년 정책이 아무리 많아도 청년이 찾지 못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시간이 없는데, 자료 하나 보시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알지 못해서 청년일자리 찾기가 어렵다 이런 답변들이 가장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세심하게 청년 중심으로 청년들의 입장에서, 청년들의 시각에서 정책을 집행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 드리는데요.

실장님, 추가적으로 한 말씀해 주시지요.

○국무조정실장 임기근 위원님이 주신 것처럼 청년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 섬세하고 공세적인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 섬세하고 공세적인 정책 설계의 첫 번째는 일자리라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 순서로 주거나 자산 형성 이

런 분야가 될 수 있겠고.

두 번째로 청년들이 모르는 정책은 없는 정책이라고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오프라인을 막론하고 청년들이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예산사업, 공공부문 일자리, 민간부문 일자리가 어디에 있는지 조금 더 청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준 위원** 다시 한번 당부드리지만 정부의 시각 말고 청년의 시각에서, 청년의 입장에서 바라봐 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무조정실장 임기근** 예, 청년의 눈높이를 정부정책의 1순위로 하겠습니다.

○**김남준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광재** 김남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법원행정처장님, 좀 전에 존경하는 김남준 위원이 공탁금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감사원 지적사항에 의하면 보관은행 지정 및 출연금 산정 기준이 부적정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보관은행 지정 절차하고 현재 실패하고 그것까지 나중에 한번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광재** 다음은 존경하는 경기 여주·양평의 김선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선교 위원** 김용범 정책실장 대신 대통령비서실의 누가 나오셨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재정기획보좌관 류덕현** 재정기획보좌관입니다.

○**김선교 위원** 농지 전수조사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요?

○**대통령비서실재정기획보좌관 류덕현** 예, 들은 적 있습니다.

○**김선교 위원** 좀 구체적으로 질의해도 되겠지요?

○**대통령비서실재정기획보좌관 류덕현** 제 소관사항은 사실 아닙니다마는 알 수 있는 데까지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김선교 위원** 우리 김용범 정책실장께서 지난 5월 농지도 전수조사해서 자본이득을 기대하는 투기적 요소는 매각명령이 가능하도록 법적 조치를 마련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대통령비서실재정기획보좌관 류덕현** 예, 저런 말씀 하셨던 걸로 기억은 합니다마는.

○**김선교 위원** 농지가 투기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경자유전 원칙도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투기꾼을 잡겠다는 정책이 실제 농사를 짓는 농민부터 농지에서 내쫓는 결과가 돼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공감하시지요?

○**대통령비서실재정기획보좌관 류덕현**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선교 위원** 이게 시정하라 이 얘기입니다.

정부가 136만ha를 기본조사했는데 무려 27%, 284만 필지가 농지법 위반 의심 농지로 분류됐습니다. 그중 가장 많은 비율 21.1%가 불법 임대차 의심입니다. 문제는 우리 농촌 현실입니다. 2025년 기준 전체 농지의 45%가 임대 농지입니다. 많은 임대농들이 이번 조사 때문에 지주들이 농지를 돌려달라고 할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전체 농지의 절반 가까이 이를 빌려서 농사짓는 현실에서 임대차만 대대적으로 적발하면 그 피해가 누구에게 감니

까? 한번 답변해 보시지요.

○**대통령비서실재정기획보좌관 류덕현** 농지 조사에 대한 구체적인 이후 조치에 대해서는 농림부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선교 위원** 아니, 누구한테 피해가 가냐고요. 제가 지금 짚 설명했잖아요. 그것을 이해를 하시고 그런 부분 청와대에서 조치를 내려야지요.

○**대통령비서실재정기획보좌관 류덕현**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선교 위원** 농지를 빌려준 사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땅에서 실제 농사를 짓고 있는 임차농이 영농 기반을 잃게 됩니다. 이해가 가지지요?

○**대통령비서실재정기획보좌관 류덕현** 예.

○**김선교 위원** 더구나 정부는 불법 임대차 신고에 건당 50만 원의 포상금을 신설하고 1인당 연간 포상금 상한도 15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10배 올렸습니다.

그런데 정작 실경작자인 임차농의 경작권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제도적 안전장치는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대통령비서실재정기획보좌관 류덕현** 실제 조사 결과에 의해서 아마 적절한 조치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선교 위원** 최종 처분 전까지 임차농의 영농을 보장하고 불가피하게 농지를 회수할 경우에는 농지은행을 통한 대체 농지 우선 공급과 영농 손실 방지 대책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보좌관님, 지금 농지를 팔려고 한다, 농어촌공사에 맡깁니다. 한 몇 년 걸리는지 압니까, 신청을 하면?

○**대통령비서실재정기획보좌관 류덕현** 구체적인 기간을 제가 알지 못합니다.

○**김선교 위원** 청와대에 얼마나 근무하셨습니까? 정책실장님 대신 나와 있으면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통령비서실재정기획보좌관 류덕현** 예.

○**김선교 위원** 또 문제는 고령농이 문제예요. 고령농을 하시는 분들이 평생 직접 농사를 짓다가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경작을 하지 못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웃 농민에게 기계를 가지고, 농기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맡겨요. 그런 것까지, 그런 것까지 했는데 그걸 농지를 사 놓은 투기 목적 소유자로 그런 것을 조사하면 그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런 배려는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이제 알았다,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잘못됐다, 바로 시정이 됩니까?

○**대통령비서실재정기획보좌관 류덕현**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농림부 쪽에서 그 결과에 대한 조치……

○**김선교 위원** 농림부는 제가 농해수위 국민의힘 간사라 수차례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김용범 정책실장이, 앞면에 봤잖아요, 본인이 다 하는 것처럼…… 그리고 대통령 지시 아닙니까, 이게? 다른 사항이 아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것 별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안을 세울 것인지 그렇게 해서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비서실재정기획보좌관 류덕현** 예, 알겠습니다.

○**김선교 위원** 왜냐하면 보좌관님이 아시는 게 없기 때문에.

보건부장관님, 국가보훈부는 올해 대통령 업무보고 당시 수원 요양원 증축 100병상과 충북권 요양원 건립 100병상을 통해 총 200병상을 확보하여 고령화 대응 복지 안전망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지요?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 예.

○김선교 위원 하지만 지난해 기준 전국 보훈요양원 입소 대기자가 무려 1828명에 달합니다. PPT 자료 보시면 됩니다. 특히 지난해 전체 국가보훈대상자 83만여 명 중 60세 이상이 68만 명을 넘어 전체의 8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즉 시간이 갈수록 보훈요양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 불 보듯 뻔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200병상 늘린다고 대책이 되겠습니까?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 실제로 인구의 수도권 집중화에 따라서 우리 보훈 가족들도 전부 다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시설은 거기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입니다.

○김선교 위원 이것을, 현장의 실태를 장관님 제대로 파악하고 업무보고 당시 보고한 겁니까?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 수도권의 요양원이, 보훈요양원이 부족하다는 사실은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원에 증축 중이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굉장히 고심 중입니다.

○김선교 위원 장관님, 시야를 대도시권에만 두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진정으로 요양의 손길이 절실한 곳은 의료복지 인프라가 붕괴 직전에 놓인 농어촌 지역입니다. 공감하시지요?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 예, 알고 있습니다.

○김선교 위원 거동이 불편한 고령의 농어촌 보훈 대상자들은 대도시에서 있는 먼 보훈요양원까지 찾아가거나 빈약한 지역 인프라 속에서 제대로 된 돌봄을 받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농어촌 지역의 고령화율은 대도시보다 훨씬 가파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지 않는다면 이분들은 과연 어디에다 호소해야 합니까. 그렇지요?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 예.

○김선교 위원 따라서 농어촌과 수도권 외곽지역의 보훈요양원 수준의 양질의 서비스 품질을 갖춘 요양원 현황을 잘 파악하시고 보훈대상자 수용 의사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용역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내부에서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선교 위원 과거 민간 의료기관을 활용하던 준보훈병원 제도처럼 민간 인프라를 활용하는 과감한 보훈 대책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선교 위원 장관님, 정부는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이라는 기조 아래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분들에 대한 예우 개선과 지원 확대를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그렇지요?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 예.

○김선교 위원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이 병상 하나 구하지 못해 가지고 발을 동동 구르는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본 위원님이 제안한 내용을 토대로 전향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본 의원실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광재 김선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북 청주 흥덕의 이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연희 위원 국가 유일의 바이오산단이 있는 오송과 세계 최대·최신 HBM 반도체 생산기지가 있는 청주시 흥덕구의 이연희 위원입니다.

이번 질의는 감사원장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망가뜨린 권력기관이 검찰만이 아니었습니다. 헌법기관인 감사원도 윤석열 정권하에서 권력의 시녀, 권력의 사냥개로 전락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원장님, 8월 27일 감사원 국조특위 후속조치 TF에서 조사보고서를 발표했지요?

○감사원장 김호철 예.

○이연희 위원 저는 그 조사보고서를 보면서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엄청난 내용들이 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민께서도 윤석열 정부하에서 감사원이 어떤 정치감사, 표적감사를 했는지 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시 발표한 보고서에 있는 감사원의 감사 내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소위 말하는 부동산 통계조작 사건 관련해서 조사관들이 공무원들인 피감사자들에게 ‘이번 건은 직권남용이다’, ‘윗선에 대해서 진술을 하지 않으면 과장님이 다 뒤집어쓴다’ 이런 얘기를 2시간 동안 계속 강요를 합니다. ‘통계조작이나 하는 당신 같은 사람 단죄하려고 제가 감사관을 한다’ 이렇게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노골적인 폭언과 강압을 일삼았습니다. 그리고 실제 진술하지도 않은 윗선 지시를 문답서에 허위로 기재해 놓고 피감사자가 수정을 요구하자 이를 철저히 묵살했습니다. 오히려 ‘숨기지 마라, 발뺌하지 마라’ 하면서 고함을 치고 압박을 하는가 하면 심지어 과거 피감사자가 자살했던 사건까지 언급하면서 극도의 공포감을 조성했습니다. 또 현장을 관리해야 될 관리자가 문답서를 집어던지면서 ‘이렇게 문답하면 안 된다. 답변을 써 줄 수가 없다’ 이렇게 겁박을 했습니다.

또한 피조사자에 대한 가혹행위도 정말 도를 넘었습니다. 보고서를 보면 생후 6개월 된 아이를 제주도에서 키우고 있는데 그걸 알면서도 세종으로 조사를 불렀습니다. 그래 놓고 나서 심야 조사까지 해서 새벽 4시 22분에 종결이 됐고 그 보고서를 최종적으로 검토하고 나서 새벽 6시 9분에 귀가를 하게 됩니다.

과연 헌법기관인 감사원이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공무원에게 감사라는 미명하에 이렇게 할 수 있는지 정말로 저는 그 보고서를 보고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감사원장님, 그 TF에서 보고한 내용이 정말로 사실이 맞습니까?

○감사원장 김호철 제가 발표한 내용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연희 위원 보면 원래 검찰에서도 심야 조사, 밤샘 조사 잘 안 하지 않습니까? 다 법으로 규정돼 있고. 그런데 감사원에서는 밤 12시 이후에 심야 조사도 수시로 합니다. 그리고 새벽 3시 이후 밤샘 조사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포렌식 과정의 불법성도 매우 심각하다는 것이 이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피감사자 35명의 87개 정보 저장매체를 대상으로 64회에 걸쳐서 포렌식을 실시했는데 이 중에 절반 가까운 32개의 매체가 개인 소유의 사적인 매체였습니다. 요건에, 법에 맞지도

않았는데 개인 휴대폰을 긴급 포렌식을 강요하면서 진료비 내역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사생활 정보까지 무단으로 수집을 했고 또 이것을 당사자 동의 없이 검찰에 임의 제출했습니다.

이게 바로 윤석열 정부하에서의 정치감사, 표적감사의 실체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소된 공무원들 재판 과정에서 검찰조차도 핵심 범죄사실을 통계 조작해서 수정으로 공소장을 뜯어고쳤습니다.

원장님, 이렇게 정치감사, 표적감사를 자행한 해당 행위자들에 대해서, 해당 관계자들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감사원장 김호철** 범죄 혐의가 인정이 되는 분들에 대해서 고발 조치를 하고…… 아, 수사 요청을 하였고 또 범죄 혐의를 좀 더 밝혀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 참고자료를 송부하였고 그리고 그 행위에 합당한 문책을 위한 징계 절차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연희 위원** 당시의 감사원장과 사무총장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하셨습니까? 지금 수사받고 있지요?

○**감사원장 김호철** 예.

○**이연희 위원** 그래서 이 자체 조사 보고서를 수사기관에 이첩을 했습니까?

○**감사원장 김호철** 예, 수사 참고자료로 송부를 하였습니다.

○**이연희 위원** 그러면 이 감사를 직접 단행한 국장과 관련 감사팀원들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감사원장 김호철** 수사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연희 위원** 수사 요청을 하고 있습니까?

○**감사원장 김호철** 예.

○**이연희 위원** 징계도 했습니까?

○**감사원장 김호철** 징계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이연희 위원** 현재 밟고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감사원에서는 그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그리고 직원들의 인식 제고를 위해서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구체적인 제도 정비 대안을 갖고 계십니까?

○**감사원장 김호철** 내부 규정을 상당 정도 정비를 하였는데 좀 더 수준을 높여서 법제화를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포렌식 절차와 관련해서도 일부 법제화할 필요가 있고 또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법제화를 하고 기타 몇 가지 중요한 사항들을 또 법제화해서 보다 더 분명하게 유사한 사안의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연희 위원** 원장님, 이재명 정부하에서는 다시는 감사원에 의한 표적감사, 정치감사가 근절되도록 의지를 가지고, 철학을 가지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원장 김호철** 제도와 더불어서 문화적으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연희 위원** 다음은 성평등가족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2019년부터 양성평등정책담당관제가 시행되고 있지요?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예.

○**이연희 위원** 지금은 성평등정책담당관인데 지금 19개 부처 중에서 8개 부처에서 성평등정책담당관제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게 왜 다른 부처에는 아직 실시가 되지 않고 있

습니까?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저희가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 전체 정부 전반에 성평등정책담당관을 확산하기 위해서 노력했고 지금 행안부하고는 협의를 마치고 기획처와 최종 협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15개 부처에 담당관이 신설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연희 위원** 이게 왜 중요하나 하면 각 부처별로 정책과 예산에서 성인지적 관점이나 성평등적인 관점들이 반영되고 추진되기 위해서 이 성평등정책관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성폭력 신고를 상담하는 1366의 상담 실태를 보면 성폭력 상담자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서 피난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피난처가 시설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실제 피해자들이 거기를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련한 예산들, 인력들을 증원해 달라고 하면 기획예산처에서 그것을 실링을 이유로 막고 있습니다. 예산을 주지 않습니다. 기획예산처에도 이런 성평등정책관이 지금 현재 운영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기획예산처에 그런 성평등정책관이 있다면 실제로 그런 성차별과 폭력이 이루어지는 현장에 대한 이해도를 가지고 예산에 대한 그런 성인지적 관점에서 예산이 집행될 텐데 이런 부분들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현재 기획예산처나 재정경제부나 산업통상부나 이런 주요 경제부처, 힘 있는 부처에는 그런 성평등정책관이 아직 도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국무위원님들이 많이 계신데 앞으로 성평등가족부가 추진하는 성평등정책관이 조속한 시일 내에 각 부처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함께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들 당부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작년 성평등가족위 위원으로서 저희 정부 정책 전반에 성평등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많이 애써 주셨습니다.

저는 대체 불가 대한민국은 ‘성평등한’이라고 하는 수식어가 붙어야 정말 대체 불가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 안에서도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고 계시고 특히 기획처의 담당자분께서도 이에 대한 이해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아마 곧 좋은 결과로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연희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재** 이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위원장님, 저는 공직자가 소신껏 일을 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감사원의 정책감사 기능 자체를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정부 때는 원전을 하는 사람을 감사를 하고 어떤 정권이 들어서면 신재생에너지를 했다고 감사를 하고, 이렇게 되면 공직자가 소신껏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감사원의 정책감사 제도 자체를 저는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원장 김호철** 위원장님의 말씀 취지에 공감하고요. 문책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감

사는 저희가 실시하지 않기로 내부 규정을 정비했고 조만간 또 그 부분은 법제화해서 문책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에 대한, 정부의 주요 정책에 대한 감찰은 저희가 최대한 하지 아니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재** 본 의원은 아예 감사원의 정책감사 제도를 없애는 걸 법안을 발의했는데 그렇게 해야만 우리 대한민국 공직사회가, 공무원이 저는 소신껏 일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그 제도 만든 것도 한번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원장 김호철** 살펴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재** 다음은 허종식 위원님께서 사보임하셨는데 대신 박홍배 위원님이 함께하시기로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홍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배 위원** 별도 인사말씀 없이 그냥 바로 시작합니까?

○**위원장 이광재** 인사말씀, 뭐 하셔도 되고요.

○**박홍배 위원** 인사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위원입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됐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님들과 함께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내년도 나라 살림이 80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예결위가 해야 할 역할도 책임도 큼니다. 정부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또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예산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도권과 지역의 격차를 줄이는 일도 매우 중요합니다. 지역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부분은 확실히 뒷받침해야 합니다. 제가 당의 부산시당위원장을 맡게 된 만큼 부산의 미래성장 동력을 키우고 주요 현안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예산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기근 국무조정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균형발전은 생존 필수 전략이다, 대통령께서 매주 강조하고 계신 말씀입니다. 정부도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서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그리고 지방소멸대응기금입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자율계정,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스스로 선정해서 예산을 편성하자 이런 취지인데요. 그중에 포괄보조사업을 보면 2022년도에 그 유형이 18개였습니다. 그런데 2026년도 보니까 126개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들이 중앙정부의 편성지침 그리고 각 부처의 가이드라인 맞추느라고 진땀을 흘리고 있는데요. 사실 지역마다 사정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지역의 사정은 지역이 가장 잘 알고 있지요. 사업 유형을 지나치게 세분화해 놔서 지역의 사업 선택권을 축소했다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좀 개선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무조정실장 임기근** 지금 당장은 지역에 자율성을 주는 방편이 메뉴 숫자를 일단 확대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그 메뉴 안에서 메뉴 메뉴마다 조금 더 자율성을 주

는 방향으로 그런 식으로 운영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박홍배 위원 각도를 다시 돌려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2025년도 504개의 세부사업에 대한 평가, 이 결과를 봤더니 개별 사업별로 그냥 우수·보통·미흡 이렇게만 결과가 공개되어 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 역시도 이 평가 체계가 불충분하다 이런 지적을 한 적이 있어요. 저는 중앙정부의 사전적인 간섭은 좀 줄이고 또 지역의 자율성은 좀 높이고 그 돈이 실질적으로 지역을 어떻게 바꿨는지를 더 엄격하게 평가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마찬가지로인데요. 2025년도 총사업비 1조 8652억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인구감소지역 89개 시군구에 1조 3904억 원이 투입됐는데요. 문제는 지역마다 산업구조 그리고 소비기반 등 여건이 크게 다르다는 겁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1인당 지역 내 소비액 표를 보고 계신데요. 제천시가 1463만 원인데 신안군이 197만 원에 불과합니다. 8배 이상 차이가 나는 거지요. 다시 말해서 정주민 1명이 늘었을 때 그 지역의 경제와 재정에 미치는 효과가 전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투자계획을 수립할 때 이 지역별 산업구조나 재정자립도 그리고 소비기반 등의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사업이 가져올 재정·경제적 효과 보다 면밀히 따져서 투자비용과 비교하고 이를 사업 선정과 평가에 반영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국무조정실장 임기근 예, 지금 방금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도 마찬가지로 지방소멸대응기금도 마찬가지로 국민의 세금인 만큼 한 톨이라도 더 성과에 타깃되어서 쓰여야 된다는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박홍배 위원 이 균형발전은 재정사업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무리 돈을 투입을 하고 정주여건을 개선을 해도 지역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기업이 사라지면 그 지역에 사람이 머물 수가 없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균형발전 얘기를 하려면 재정뿐만 아니라 지역의 산업, 일자리, 교통 등 각 부처의 정책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지도 함께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부산의 구체적인 사례 하나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에어부산을 포함한 LCC 3사의 통합 문제입니다.

단순한 민간기업들 간의 M&A가 아닌 것은 알고 계시잖아요?

○국무조정실장 임기근 예.

○박홍배 위원 2020년 코로나로 인해서 항공사들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리고 산업은행이 항공산업 재편을 위해서 한진칼에 8000억 원을 투입하는 의사결정을 합니다. 대한항공, 아시아나 그리고 에어부산, 에어서울, 진에어를 통합하는 것이었지요. 물론 저는 당시의 의사결정이, 외국 국적사에 팔지 않고 국내사가 인수하도록 한 그 당시의 결정이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려가 좀 됐었겠지요. 아무래도 민간기업에 정책자금을 투입하는 사안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명분이 좀 저는 필요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산업은행이 2020년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LCC 3사 통합 효과는 지역 기반의 세컨드 허브공항 육성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다, 구체적으

로 지방발 해외 노선을 증편해서 지방공항을 제2의 허브공항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제가 재차 산업은행에 질의서를 보내서 같은 입장이나…… 같은 입장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통합 LCC 출범이 불과 수개월 앞으로 다가왔는데 지금 보이고 있는 산업은행의 입장을 제가 솔직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한마디로 말해서 화장실 갈 때와 올 때 입장이 완전히 다른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요. 이 통합 LCC의 본사 소재지 그리고 조직·인력 배치, 주요 기능, 노선 운영, 산업은행이 한진칼에 어떤 의견을 제시했느냐라고 물었더니 ‘대한항공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면서 특정 의견을 제시한 적이 없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또 ‘김해공항, 가덕도신공항의 거점 기능에 대해서도 대한항공이 지자체와 별도로 협의해서 결정할 사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정책금융을 투입하면서는 세컨드 허브공항 얘기를 하고 통합을 하려고 하니까 ‘칼과 지자체가 결정할 사안이다’ 이렇게 답을 하면 당시에 정부가 제시했던 정책적인 목표 이것은 누가 책임을 져야 할까요?

○국무조정실장 임기근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고 계시지만 이 문제하고 관련된 정부의 기본적인 방침은 국적 항공사의 통합으로 인해서 국적 항공물류의 경쟁력 강화가 일차적인 목표이기는 하지만 아울러 지역 허브공항 육성 이것 또한 무시할 수 없는 부차적인 목표라는 걸 분명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박홍배 위원 분명히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산업은행이 여전히 자금을 투입할 때하고 똑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단순한 소액주주가 아니에요. 지금 한진칼의 대주주입니다. 10.58%를 보유하고 있는 3대 주주로 알고 있고요. 당연히 의결권뿐만 아니라 임시주총 소집 청구권, 주주제안권 가지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잘 아시겠지만 투자 합의서가 있습니다. 산은이 추천한 사외이사 선임뿐만 아니라 주요 경영 사항에 대한 사전 협의, 동의 그리고 경영평가, 포스트 머저 인터그레이션(Post-merger integration) 계획 수립, 이행 책임, 만약에 이 중요한 조항들을 위반할 경우에는 5000억 원의 위약벌을 물 수 있게 되어 있고 계열사의 경영진을 퇴진할 수 있는 조항, 다시 말해서 이 통합 항공사에 대한 전권을 사실 산업은행이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권한은 정책금융기관으로서 국민을 대신해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산업은행의 지금까지의 태도는 그 권한을 포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본사, 조직, 인력, 노선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특정한 의견을 제시한 적이 없다, 어떤 이런 답변이 나오는지 도저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산업은행의 현재 태도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국무조정실장 임기근 본사 문제하고 관련해서는 그것은 기업의 자율적인 결정권의 범위에 있는 게 맞는 얘기고요. 하지만 이 일이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산업은행……

○박홍배 위원 8000억 원의 정책자금을 투입했던 명분으로 내세웠던 이 명분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국무조정실장 임기근 그렇습니다. 산업은행……

○박홍배 위원 제가 부산시민이 됐습니다. 제가 부산시민의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20년 전에—2007년입니다—부산시와 지역기업들이 거점 항공사 하나 만들자고 함께 설립을 한 게 바로 에어부산입니다. 이 항공사, 지상조업체, 협력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2000명이 넘습니다. 부산시는 어느 당이 정권을 가지고 있든 간에 나름의 노력을 해 왔습니다. 대한항공, 산업은행 계속해서 접촉하고 의견들을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산업은행의 공식 입장은 여전히 대한항공이 결정할 사항이다.

지금 부산시민의 입장에서는 부산이라는 명칭이 들어간 지역항공사가 없어질 상황입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지요, 아시아나가 망하게 생겼으니까. 그런데 본사도 없애고 일자리도 없애고 그러면서 과연 정부가 국토균형발전을 얘기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조정실장 임기근 통합 진에어에서는 부산을 제2 허브로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이미 표명한 바 있고요. 그리고 국토부도 그렇고 그리고 이 일의 초기 단계부터 관련한 국책은행도 그렇고 적절한 시점에 약속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필요한 역할을 할 겁니다.

○박홍배 위원 제가 금융위원장님께 여쭙보지 않고 국무조정실장님께 말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드리는 이유가 바로 항공산업과 가덕도신공항, 국토교통부 소관이지요. 그리고 정책금융은 국책은행 그리고 금융위 소관입니다. 여러 부처가 관계되어 있는 국토균형발전과 관련한 매우 중요하고 매우 뜨거운 이슈라는 점입니다. 국무조정실에서 산은 그리고 국토교통부 관계기관과 함께 LCC 통합 본사 문제, 저는 반드시 개입하시고 조정하셔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가덕도신공항, 엄청난 재원이 들어가는 국책사업 아니겠습니까? 신공항 성공을 위해서도 국무조정실장님께서 책임지시고 이 문제 조정 그리고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무조정실장 임기근 예, 항공물류산업의 경쟁력뿐만 아니라 지역균형발전에도 불리하게 작동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재 다음은 강원도 원주갑의 박정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하 위원 원주갑의 박정하입니다.

법원행정처장님 계속 고생이 많으신데, 앞서 윤재옥 위원님 질문하시는 데 답변을 보니까 제가 앞서서 듣기로는 주로 답변하기 곤란하다라는 취지로 말씀 주시더라고요. 소신껏 말씀하시기도 불편할 거고 상대가 청와대라 사실에 반해서 말씀하시기도 어려워서 그러리라고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요?

지난 8월 19일 법사위에서 처장님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화면 띄워 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주요한 답변 중에 발췌한 건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만남의 기회가 없었다. 요구를 했는데 안 됐다’ 이렇게 답변하셨지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박정하 위원 앞서 답변 중에 제가 회의록을 읽어 보니까 보임 전에도 여러 번 요청이 있었고 처장님 보임하신 이후에도 요청이 있었는데 청와대가 응답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답변을 주셨어요.

그때 보니까 쪽 질의가 연속돼서 충분히 답 못 하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저는 이해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해되는 부분도 있고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여쭙니다만 혹시 처장님 이 두 줄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추가설명을 저한테 주실 게 있으신지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그때 드린 말씀이 전부입니다.

○박정하 위원 그게 전부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박정하 위원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해석을 할게요. 요청을 수차례 했지만 청와대에서 특정 후보를 가져오지 않으면 만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만나지를 못했다, 제가 이렇게 해석하면 무리인가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면담을 요청했다는 뜻이 아니라 협의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박정하 위원 어쨌든 협의 요청에 대해서. 그렇지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수시로…… 수시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4명의 후보자에 대해서 어느 분이 더 최적임자인지에 대해서 협의를 거쳤다는 말씀입니다.

○박정하 위원 협의를 요청했고 협의를 해 오셨다는 거라는 거지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협의를 해 왔다는 말씀입니다.

○박정하 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도장을 찍는 걸 못 했다 그런 취지인가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최종적으로 합의에 이르지를……

○박정하 위원 그랬던 걸로 이해하면 되지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한 분에 대해서는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졌는데 한 분에 대해서는 합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박정하 위원 제가 법률용어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합의와 협의에 있어서 협의의 과정은 거치신 거네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그렇습니다.

○박정하 위원 그렇지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협의를 위한 사전절차로서의 협의는 거쳤습니다.

○박정하 위원 그렇지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박정하 위원 그러면 최근에 청와대가 대법관 제청과 관련해서 절차적 하자 내지는 완결성이 부족하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 중의 하나로 사전협의를 없었다 내지는 충분치 않았다고 얘기한 것은 잘못된 거지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그건 시각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정하 위원 처장님이 말씀 그렇게 주실 수밖에 없다고 이해는 합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되면 사전협의를 하지 않은 주체는 대법원이 아니라 청와대다 이렇게 이해되는데 맞습니까? 무리한 해석입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서로 협의는 하였습니다.

○박정하 위원 사전협의는 했지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박정하 위원 청와대에서 나오신 기획재정보좌관님.

○대통령비서실재정기획보좌관 류덕현 재정기획보좌관입니다.

○박정하 위원 이 건 잘 모르시지요?

○대통령비서실재정기획보좌관 류덕현 이 건은 제가 관여하지 않은……

○박정하 위원 좀 아세요?

○대통령비서실재정기획보좌관 류덕현 잘 모릅니다.

○박정하 위원 오시기 전에 사전독회 같은 거 없었어요?

○대통령비서실재정기획보좌관 류덕현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정하 위원 지금 대법관 제청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민감한 사항인데 전혀 준비 안 하고 오셨어요?

○대통령비서실재정기획보좌관 류덕현 그런데……

○박정하 위원 정책실장님이나 오전이나 오후에 계셨던 홍보수석한테도 들으신 거 없어요?

○대통령비서실재정기획보좌관 류덕현 정책실 소관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박정하 위원 정책실 소관 아니라서?

○대통령비서실재정기획보좌관 류덕현 예.

○박정하 위원 그래도 여기 나와 계시면 이런저런 질의가 있을 것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사전에 그래도 독회라도 하고 오잖아요? 전혀 그런 과정 없었어요?

○대통령비서실재정기획보좌관 류덕현 예, 그렇지 않습니다.

○박정하 위원 너무 무성의하시네. 그렇지요? 저는 그렇게 보여요.

옛날 경험으로 보면 여러분들 사전독회하고 청와대에서 대표로 여기 나와 계시면, 그리고 특히나 나와 있기로 한 정책실장이 안 왔으면 보좌관님이 충분히 그것에 대한 준비를 하시고 청와대에 남아 있는 분들도 보좌관님 여기 보내실 때 이러이러한 거 질문 나올 수 있으니까 준비해라라고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시간 없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너무 무성의하다. 유감입니다.

선관위에서 나와 계시지요? 어디 계세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직무대리 강동완 예, 사무총장직무대리입니다.

○박정하 위원 최근에 선관위 논란이 되고 있는 거 말고, 그것은 특검 받으세요, 결산 관련해서 좀 여쭙게요.

PPT 좀 띄워 주세요.

선관위가 우리 공직선거 말고 농·수협이나 새마을금고 이런 데 선거위탁 관리하시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직무대리 강동완 예, 그렇습니다.

○박정하 위원 제가 보니까 최근 2023년부터 무려 한 2600건의 선거를 위탁받아서 하셨더라고요. 이 중에는 후보자가 1명밖에 없어서 투표를 진짜 진행 안 한 건도 무려 870건이나 돼요.

여기서 선관위가 통상 보면 선거인 수에 비례해서 그 비용을 먼저 선납을 받아요. 그렇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직무대리 강동완 예, 그렇습니다.

○박정하 위원 그리고 내부 규칙에 의해서 선거 이후 30일 이내에 관련 내용을 다 정산해서, 그러니까 가령 성질별·세목별·항목별 집행내역을 통지하고 남은 비용을 돌려주게 돼 있어요. 맞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직무대리 강동완 예.

○박정하 위원 그 관련 자료 다 갖고 계신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직무대리 강동완 예, 그렇습니다.

○박정하 위원 그렇게 갖고 계시겠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직무대리 강동완 예.

○박정하 위원 그러면 보면 위탁선거비용 총액이 3년 반 동안 760억이고 돌려준 비용이 200억이면 한 960억, 1000억 정도가 선관위 어딘가 잠겨져 있었어요. 그게 언제 들어왔다가 30일 내에 나갔는지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만 무려 1000억이에요. 그렇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직무대리 강동완 연도별 합계로 봐서……

○박정하 위원 합계로, 어쨌든. 3년 동안 1000억이에요. 엄청난 돈이에요. 뭐 500억이라도 상관없어요. 엄청난 돈이에요. 그런데 이 돈이 어디로 납입을 받고 어디서 내줍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직무대리 강동완 각 구시군선관위에서 납입을 받습니다.

○박정하 위원 그게 맞아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직무대리 강동완 지금 현재 위탁선거법……

○박정하 위원 내가 만약에 이 통장을 관리하고 있으면 잠깐 어디 가서 막 폭등하는 주식 사고 돈 남기고 다시 잔고에 넣으면 누가 확인할 수 있나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직무대리 강동완 저희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박정하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직무대리 강동완 사전에 산정된 비용을……

○박정하 위원 그러면 제가 한 8월 초부터 자료를 내놓으라고 하는데 자료를 왜 안 줘요? 이걸 거래내역서만 줘도 되잖아요. 가령 내가 원주의 A 새마을금고에서 비용 정산해서 1억을 선납받았어요. 그리고 선거가 끝났어요. 여기에 뭐뭐 뭐 썼다 정리가 돼서 남은 금액을 돌려줘요. 거래내역서만 제출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안 줘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직무대리 강동완 자료 확인하겠습니다.

○박정하 위원 안 준다는 것 몰랐어요? 모르고 여기 오셨어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직무대리 강동완 그 부분은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박정하 위원 아이참, 나…… 너무하시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직무대리 강동완 확인해서……

○박정하 위원 어디 구멍가게도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안 해요. 상식적으로 하면 무려 1000억이나 되는 돈이라면 국고로 들어갔다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각 시도선관위에서 누가 관리하는지도 모르고 맡겨 놓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직무대리 강동완 구시군선관위 명의로 된 계좌로……

○박정하 위원 그 계좌에 대한 내역을 왜 못 줘요? 확인해서 금주 중으로 제출해 주세

요. 8월 초부터 요구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직무대리 강동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하 위원 또 하나 볼게요.

그 밑에 보면 선거가 있는데 직원을 파견하지 않은 선거가 151건이나 돼요. 여기에 들어간 비용이 32억이래요. 이게 뭐에 들어가는 돈이에요? 이 안에 들어가면 어디 현수막은 10만 원짜리도 있고 20만 원 청구해서 내놓았다고 해도 원주의 어떤 새마을금고는 ‘이게 정상적으로 집행됐습니까?’라고 물어보지도 못해요, 읍이니까. 그런데 이 내역도 제출 안 해요. 이것 다 갖고 있어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직무대리 강동완 저희들이 위탁선거할 때 선관위 직원이 파견되는 경우는 없거든요.

○박정하 위원 전혀? 그러면 윗엿것은 뭐지? 이걸 제가 선관위에서 받은 자료예요, 2600건 중에서 151건만 파견 안 됐다. 그러면 이 자료 허위예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직무대리 강동완 파견이 안 됐다는 취지가 정확히 이해가 안 됩니다.

○박정하 위원 아니, 선거가 있으면 현장에 가서 관리 감독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선관위는 뭐 해요, 위탁관리 받으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직무대리 강동완 파견이라는 게……

○박정하 위원 파견 안 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직무대리 강동완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은……

○박정하 위원 서류상으로만 어떻게 저렇다 이렇게……
시간이 없어서 끝내요.

자, 관련서류 다 제출해 주세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직무대리 강동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하 위원 이것 국회예산정책처에서도 결산받아야 된다고 그러는데 지금 버티고 있는 거예요. 금주 중으로 두 건에 대해서 자료 다 제출해 주세요, 한 건도 빠짐없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직무대리 강동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하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재 박정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선관위에서 나오신 분은, 지난번 우리가 선거 과정에서 선관위에 많은 국민적인 문제 제기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직무대리 강동완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광재 그러니까 더 책임감 있게 자료를 확실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직무대리 강동완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광재 다음에는 마지막 백선회 위원까지 질의하시고 그다음에 휴식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의 백선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선회 위원 조국혁신당의 백선회입니다.

오늘 저는 천안 아동학대 사망사건과 제주 실종사건을 통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국가시스템이 왜 반복해서 위험신호를 놓쳤는지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

습니다.

먼저 최고진 교육부장관님에게 여쭙겠습니다.

지난 8월에 발생한 천안 아동학대 사망사건에 대해서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국민 거의 대부분은 학교에 다니지요. 아동의 위험신호를 최일선에서 감지할 수 있는 곳이 학교라고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교육부장관 최고진** 예.

○**백선희 위원** 지난 전체종합질의에서도 제가 한성숙 총리님에게 관련된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저는 국가가 충분히 아동에 대한 위기를 감지할 수 있는 여러 기회가 있었고 그런데 이때 우리가 적절하게 대응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우리 아이를 놓치는 국가행정의 총체적 과실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학교를 전학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학교에서 아동학대와 관련해서 학교 선생님이 신고를 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전학을 했습니다. 전학을 하게 되면 이 아이의 학대받은 정황·정보가 전학을 간 학교에 전달되어야 한단다고 생각을 하는데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교육부장관 최고진** 정보가 당연히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백선희 위원** 그런데 지금 그것이 되고 있습니까, 되지 않고 있습니까?

○**교육부장관 최고진** 잘 안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백선희 위원**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한 아이를 잃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천안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경우를 보면 2024년에 다니던 학교에서 선생님이 아동학대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가해자는 할머니였습니다. 외할머니였습니다. 이 아이가 전학을 했습니다. 전학을 했는데 바로 이 외할머니의 손에 이끌려서 전학을 하게 됐지요. 그런데 전학 간 학교에서 이 아동의 학대와 관련된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장애아동이지 않았습니까? 학교 유예를 했었는데 이 아이가 학교에 다니지 않으니까 아동이 안전한지 안전하지 않은지 학교 선생님이 또 전화를 하신 모양입니다. 그런데 전화를 한 그 대상이 누구냐면 바로 가해 외할머니였습니다. 이 아이는 이렇게 교육부와 관련해 가지고 학교에서 그리고 교육부 당국에서 당연히 학대 정보를 알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행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동학대의 신고 그리고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와 관련해서 이것이 학교 간 정보가 공유되어야 한단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는지 교육부장관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교육부장관 최고진** 학교 간 정보도 중요하고 실제로 아동을 담당하고 있는 보건복지부나 이쪽과의 소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경찰과도. 그런데 사실은 그동안 그것이 약간 원활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이번의 이 일을 계기로 정말 한 아이의 죽음에 대해서 다 같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면서 보건복지부가 중심이 돼서 그 체제를 새롭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백선희 위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학교 또 말씀하신 대로 경찰청 그리고 보건복지하고 관련된 기관, 지

자체 모두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제도적으로 각각의 제도, 시스템은 갖추고 있었습니다마는 각 기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지 못했고 바로 그 사이에서 우리는 한 아이를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경찰청의 책임도 자유롭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유재성 경찰청차장님에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이가 8월 2일 날 살고 있었던 교회에서 벗어나 가지고 경찰에 신고한 사실 알고 계시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백선희 위원 그런데 경찰청에서 이 아이를 돌려보냈습니다. 그 사실도 알고 계시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백선희 위원 바로 이튿날 다시 두 번째 신고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신고가 있고 그때야 비로소 경찰은 이 아이가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교회를 갔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가해자인 외할머니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가해자인 외할머니가 교회에 있었는데 이 아이를 교회로 다시 돌려보내야 했을까요? 경찰이 어떻게 조치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저희가 조사에 착수했고 또 외조모에 대해서는……

○백선희 위원 외할머니가 교회에 있었는데……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접근금지 조치를……

○백선희 위원 접근금지 신청을 했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아이를 교회에 그대로 뒀다라고 하는 사실이 문제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지방정부에도 저희가 분리 요구를 했는데……

○백선희 위원 그렇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아이가 외할머니에게 맞았다고 하는데 그 아이를 그 외할머니가 있는 교회의 현장에다가 두고 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천안시의 자료를 봤습니다. 왜 이 아이를 분리 조치하지 않았느냐라고 물었더니 이 목사가 아이를 직접 학대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목사에게 두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을 해서 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판단이 잘못됐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경찰에서 비가해한 보호자로 생각을 했습니다만 사실은 이후에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아동학대치사와 관련해서 구속된 사례입니다. 당시 경찰이 교회에 갔었다라고 하면 그런 징후를 찾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아이에게 외할머니가 접근을 하지 못하도록 한 것까지는 경찰이 잘했다고 볼 수 있으나 그러나 그 아이를 교회에 뒀서는 안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외할머니가 거기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방치하는 동안 어떻게 됐습니까? 이 아이는 119에 신고가 됐는데 고열과 그리고 의식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였고 병원에 가서 3시간 만에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전에 30시간 동안 결박당한 흔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아이가 위험신호를 보냈을 때 학교에서 그리고 경찰에서 도울 수 있었는데 마지막 과정에서, 특히 경찰이 보호해야 하는 그 시기에 우리가 보호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아이를 우리는 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찰의 책임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

이 듭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떤 조치를 갖고 계시는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현재 이 사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사를 해서 그 목사와 그리고 외할머니……

○**백선희 위원** 수사는 당연히 진행을 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저는 경찰이 세 번의 판단 미스가 있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교회에 보냈을 때 누구와 함께 살고 있는지, 안전한 환경인지 보지 못했고, 두 번째 거기에 외조모가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와 함께 이 아이를 뒀다라고 하는 사실이고, 세 번째 말씀드린 대로 접근금지신청을 한 뒤에 법원 결정이 나오기까지 그 이틀 동안 이 아이가 안전한지 확인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국민적 실망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습니다.

제주 실종사건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보여지는데요.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자세하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일단 국민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실종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한 사람이 이것을 종결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행안위에서도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바 있으시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그렇습니다.

○**백선희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국민들의 공분을 사는 것은 소위 허위종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허위종결을 할 수 있는지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장 씨 실종 접수 이후에 2시간 만에 교통사고로 종결했다라고 하는 사실 알고 계실 겁니다. 일정 부분은 개인의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한 사람이 종결할 수밖에 없었던 구조는 시스템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이후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사망을 했는지 묻는 그 질문에서 경찰 쪽은 목을 매서 숨진 것으로 추정이 되고 그리고 타살 가능성이 낮다라고 발표를 하였고, 그리고 행안위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바 있으시지요?

그런데 바로 오늘 국수본에서 이야기를 한 것은 부패로 인해서 사인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다시 말해서 자살일 수도 있지만 타살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열어 두고서 수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하는 거는 왜 이렇게 성급하게 정확한 근거 없이 이런 것을 공식 발표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사건을 보고 국민들이 굉장히 실망을 할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첫 번째 혼자 종결했고, 두 번째 허위종결했고, 그리고 세 번째 국민들이 그 사인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거 없이 먼저 공식 발표를 했기 때문에 국민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검 감식 결과 전에 현장의 추정이 공식 발표로 굳어지지 않도록, 특히 발표 내용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통제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안전한 대한민국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조사에서 10명 중 6명이 과거보다 대한민국이 안전하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경찰이 어떤 조직입니까? 우리 국민에게는 생명과 안전을 일선에서 지키는 그런 곳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건, 천안의 아이도 제주의 실종자 가족도 이 부분에 대해서 위험신호를 보냈고 구조해 달라고 이야

기를 했으나 경찰은 거기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경찰이 노력해 주셔야 된다고 보고요. 이와 관련해서 경찰청을 대표해 가지고 한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위원님 말씀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개인의 그런 일탈 행위를 시스템적으로 찾아내는 문제 그리고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전반적으로 개선택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세심하게 살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한 치의 착오도 없이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백선희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광재** 백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환기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10시 반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2시15분 회의중지)

(22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광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인천 중구·강화·옹진의 배……

○**유상범 위원** 잠시만요, 국무위원들 참석에 대한 심각한 문제가 자꾸 발생하는데요. 시간 좀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이광재** 예, 말씀하십시오.

○**유상범 위원** 국방부차관 나와 있어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국방부차관입니다.

○**유상범 위원** 오늘 국방부 상임위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오전 중에 상임위가 있어 가지고 국방부장관이 국방위 산회 시까지만 불출석하고 산회 후에 출석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오늘 국방위 몇 시에 끝났어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제가 시간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오후 아마 저녁 식사 무렵 정도는 끝나……

○**유상범 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3시 20분에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 국방부장관 분명히 참석하겠다는 약속을 했는데 그 이후에 방위 출신이라 그런지는 몰라도 바로 집으로 가 버리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국무위원들이 도대체 국회를 어떻게 보고 있는 겁니까? 본인들이 국회 예결위에 국방위 산회 시까지만 불출석하고 그 이후에 출석하겠다는 약속을 했으면 최소한의 공식적인 약속이 있든가 정말로 몸이 안 좋든가 불가피한 사유가 있든가 명분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정 설명을 하고 불출석을 동의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통일부장관 어디 갔어요? 퇴근하셨어요?

○**통일부차관 김남중** 지금 바로 앞에 로비에 계십니다.

○**유상범 위원** 아니, 이게 지금 국무위원들이 국회를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겁니까? 한 두 번도 아니고 4일째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위원장님, 이게 현 정부 국무위원들이 지금 우리 국회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김용범 정책실장부터 시작해서 국방부장관 또 누가 이런 식으로 하는지, 이게 이렇게 반복이 되면 이것 저희가 결산 심사 어떻게 진행하겠습니까?

이 부분은 국회 자체가 위기감을 느껴야 됩니다. 여야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이것 반복되고 있는 것 아시지요, 지금?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이고 이 부분은 위원장님 그리고 정태호 간사님 다 같이 심각하게 문제의식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광재** 유상범 위원님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에 병무청장님은 나와 계시나요?

○**병무청장 홍소영** 예,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이광재** 그러면 방위사업청장님은 계세요?

○**방위사업청장 이용철** 예,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이광재** 그러면 당초 국방부 약속 부분에서는 지금 국방부장관이 안 계시는 거네요. 그렇지요? 차관님이 대참하고 있지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차관이 대참했습니다.

○**위원장 이광재** 이것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적어도 약속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좀 확실히 지키는 것을 분명하게 하겠습니다. 사전에 정태호 간사님하고 유상범 간사님하고 저한테 양해가 되지 않은 부분은 원천적으로 없도록 하겠습니다.

불출석하더라도 사유가 분명할 때 또 공직사회에 바쁜 일이 있는 것도 현실이니까 그것은 양당 간사님이 잘 타협을 해 주시고 적어도 합의된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분명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상범 위원님 문제 제기 잘 해 주셨습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인천 중구·강화·옹진의 배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준영 위원**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배준영 국회의원입니다.

청와대에서 나오셨지요?

○**대통령비서실재정기획보좌관 류덕현** 예, 나와 있습니다.

○**배준영 위원** 유상범 간사님이 말씀하셨지만 김용범 실장님 무슨 회의 때문에 못 나오셨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재정기획보좌관 류덕현** 제가 국정 현안에 있어 다른 여러 가지 회의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알지 못합니다.

○배준영 위원 아까 무슨 회의냐고 물어봤을 때 안 알아보았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재정기획보좌관 류덕현 원래 저는 저녁에 나오기로 돼 있었고요. 오후에 갑자기 나오라고 대신 좀 부탁을……

○배준영 위원 아니, 아까 다른 위원이 물어봤잖아요. 무슨 회의인지 물어봤는데 그때 모른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몇 시간 지난 다음에 또 물어보잖아요. 지금도 모른다는 겁니까?

(「지금까지 회의하고 있어요? 정책실장 뭐 해 지금!」 하는 위원 있음)

정책실장이 국회를 이렇게 우습게 보니까 장관들이 국회를 우습게 보는 겁니다. 뼈꾸기라고 들어 보셨어요? 자기 책임은 누리고……

○위원장 이광재 배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배준영 위원 제가 그냥 계속하겠습니다.

교육부장관님!

○교육부장관 최고진 예.

○배준영 위원 교육감 세 번 하셨지요?

○교육부장관 최고진 예, 그렇습니다.

○배준영 위원 그리고 교육감협의회 전국회장도 하시고.

이번에 20.79% 내려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해서 교육감들 간에 합의가 있으십니까? 첫 번째가 그거고요.

두 번째가 미래대응기금이라는 게 있어서 그것을 선취해서 나중에 영유아라든지 평생교육에 활용한다고 하는데 제가 재경위 야당 간사라서 거기서 완전히 합의가 됐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교육부장관 최고진 교육감님들하고 사전에 20.79%를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 합의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실제로 기획예산처하고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산식을 하게 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1차 보고를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교육감님들의 동의를 완전히 구하지는 못했습니다.

두 번째는 미래대응기금을 적어도 초과세수분에 관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육감님들이 집행해야 되는 예산이 줄어들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갑자기 늘어난 초과세수에 관해서는 교육 뚝으로 하되 영유아교육이나 새로운 고등교육, 평생교육을 포함한 쪽에 쓰도록 하는 것에 관해서 보고는 드렸습니다. 완전히 합의를 했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배준영 위원 그러면 교육부나 교육감들이 합의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재경위에서는 논의하기가 좀 어렵겠습니다. 그 말씀을 제가 먼저 드리겠습니다.

행안부장관님, 제가 마찬가지로 묻겠습니다.

지방교부세가 있는데 그것은 마찬가지로 미래대응기금에서 선취를 해서 나중에 지방에 관련된 계정을 따로 만들어서 내려보낸다고 그런 방침을 정부에서 세운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17개 시도지사님들한테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동의는 구했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저희는 19.24%의 지방교부세는……

○배준영 위원 그대로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그 산식은 그대로 있고요.

○배준영 위원 그러니까 저는 미래대응기금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미래대응기금에 대해서는 중앙지방협의회에서……

○배준영 위원 합의가 됐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합의를 한 것은 아니고요.

○배준영 위원 합의가 안 됐군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합의가 전제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배준영 위원 그러면 그냥 밀어붙이시는데 큰 문제가 없을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아니, 그런 것이 아니고요. 부단체장들을 통해서 충분히 내용을 사전에 설명을 드렸고 또 그 회의를 통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도 들었고 또 그런 부분을 잘 취합해서 진행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배준영 위원 두 분 장관님 말씀을 들어 보니까 미래대응기금이라든지 지방재정교부금 산식을 바꾸는 거라든지 저희가 재경위에서 논의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거기서 정리가 돼 갖고 오지를 않는데, 정리를 다 해 갖고 오세요. 그러면 그때부터 제가 논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그렇게 선취를 한 다음에 나중에 줄지 말지 그때 가서 보자 이런 식으로 하면 17개 시도지사 그리고 교육감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저는 정말 걱정돼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좀 정리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 관련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윤호중 장관님, 교통복지라는 말씀 들어 보셨잖아요. 그렇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배준영 위원 교통이 편리해야지 민생이 편하고……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특히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에서는 많이 사용하는 개념입니다.

○배준영 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화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 지난번에 기획예산처장관하고 재경부장관 그리고 청와대에서도 나오시고 그때 국토부장관님도 나오셨는데 서해 평화도로 아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배준영 위원 예전에 행안부에서 접경지역 종합발전계획으로 올렸었는데 기재부에서 불수용했는데 이게 보니까 대통령 공약이었던 말입니다. 그런데 부처별로, 국토부·행안부·기재부 다 따로 놀아서 제가 청와대에서 이런 거는 대통령의 공약을 실천하는 과제로 삼고 다시 보고를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확인드리고 싶은 게 행안부에서 서해 평화도로, 국정과제지요. 그러니까 강화를 지나서 중국에는 개성·해주까지 연결하는 거를 국정기획위원회에 계셨을 때도 다뤘을 텐데 그 기조에는 변함이 없는지 제가 여쭙고 싶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변함이 없고요. 저희 행안부는 접경지역 특별법을 가지고 있고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을 새로 세우면서 남북 평화도로에 대해서 자세히 검토해서 계획에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준영 위원 감사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또 하나가 있는데요. 강화-계양 간, 강화-서울 간 고속도로가 착공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강화까지 여의도에서 한 15분, 20분이면 가게 되는데 화면을 보시면 장관님, 이게 남구리IC인데 장관님 지역구입니다. 길이 잘 닦여 있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배준영 위원 고속도로랑 연결되는 부분인데 다른 사진 하나 보여 드리겠습니다. 강화-계양 고속도로 간 종점부인데 저런 도로거든요. 그래서 지금 착공을 했는데 완공되고 나면 저런 도로랑 연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좀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저기가 서울시 시계입니까?

○배준영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저기가 강화입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강화.

○배준영 위원 그러니까 강화의 종점부, 그러니까 서울에서 강화로 가는데……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강화 쪽 종점부……

○배준영 위원 예, 강화 쪽 종점부가 저 도로랑 만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 계획은 진행되고 그러는데 저기를 한 왕복 4차로로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십사 하는데 또 새롭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 지도 왼쪽에 보면 파란 부분으로 이미 접경지역 종합계획으로 돼 있는 거를 오른쪽으로 빨간 데 표시된 것 있지요, 동서 평화도로 사업 구간?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배준영 위원 그러니까 파란 것, 빨간 것 두 쪽 다 해 주시면 감사하기는 한데 그런데 파란 것보다 오른쪽 빨간 게 우선순위가 있으니까 그걸 좀 먼저 해 달라는 저희 요청이거든요. 고속도로가 생기면, 아까 같은 도로랑 만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우선 인천시와 강화군에서 계획을 좀 세워서 저희들한테 제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준영 위원 어떻게 보십니까, 제 주장이?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제가 저 지도만 보고는 말씀드리기가……

○배준영 위원 저런 도로랑 만나면 안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하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앞으로 단계적으로 연장돼 나갈 지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배준영 위원 장관님, 마지막으로, 강화가 한 바퀴 돌면 전부 해안도로로 돼 있는데 황청리에서 창후리로 연결하는 6.7km 부분만 해안도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강화 전체를 해안도로로 다 도는데 저 6.7km만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으로 하게 되면 완전히 한 바퀴가 되거든요. 그래서 기왕 검토해 주시는 김에 저것도 검토를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그러니까 저 계획을 좀 세워서서 제안을 해 주시면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배준영 위원 계획은 다 있는데, 하여튼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알겠습니다.

○배준영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광재 배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고양갑의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 국무조정실장님은……

○국무조정실장 임기근 예, 여기 있습니다.

○김성희 위원 재정부2차관님은 보고 계시지요?

○재정경제부제2차관 허장 예.

○김성희 위원 질의를 따로 드릴 건 아닌데 잘 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기도 고양시 김성희입니다.

지난번 제가 예결위 질의 때 국토부장관을 상대로 해서 휴게소 문제와 관련된 질의를 했었고 한겨레21에도 세 차례에 걸쳐서 커버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국무조정실, 휴게소 문제를 국가 정상화 프로젝트 1차 과제로 선정하고 휴게소를 직영으로 전환하고 도로공사 전관 문제, 불공정행위 근절하겠다고 대국민 발표했는데 그렇게 추진하고 계시지요?

○국무조정실장 임기근 예.

○김성희 위원 그런 것 같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업계 관계자들하고 피해자들 얘기를 또 만나서 얘기를 듣고 있는데요. 휴게소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표적인 불공정행위인 납품대금 미지급 문제, 점검하고 계십니까?

○국무조정실장 임기근 국토부에서 점검하고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희 위원 이게 대통령께서 관심 가지고 계신 국정과제라서 국무조정실도 같이 보고 계실 텐데, 제가 직접 점검을 하시라는 말씀은 아니지만 보여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보면요, 문제가 됐던 기흥·망향휴게소 납품대금 보시면요 3월에 37억 4000만 원까지 늘었다가, 그러니까 미납금액.

이거 혹시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우리가 휴게소에 가서 카드 내잖아요. 그러면 앞에 보는 사람한테 주머니로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운영사로 돈이 들어간 다음에 운영사에서 판매대금을 다시 이 사람한테 줍니다. 보통 가게는 그렇게 하지 않지요. 그런데 운영사에서 돈이 오지 않는 걸 미납대금이라고 하는데 이게 무려 37억이다가 저희가 문제 제기하고 나서 장관님께서 지적을 받아들이시고 현장 가서 보신 다음에 5억 3000만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6월에 보시지요. 다시 16억, 14억,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조사가 끝나자마자 보란듯이 대금을 다시 체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점주들은 임금이 밀려서 직원들이 퇴사를 하고 가게 운영을 위해서 대출까지 끌어 쓰고 있다고 그러는데요. 자기 앞에서 카드매출이 발생하는데 그 돈이 운영사 가서 돌아오지 않으니까 대출을 일으켜야 되는 상

황, 이거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국무조정실까지 나서서 불공정행위 근절을 약속하고 필요한 조치를 즉각 취하겠다고 했는데 닉달이 지난 도로공사의 대책, 뭔지 아십니까, 실장님 혹시?

가압류를 무료로 법률상담 해 주겠다, 가압류가 걸리면 저희가 무료로 법률상담 해 드릴게요. 그런데 이 가압류를 걸었더니 어떻게 됐는지 현장을 한번 보실까요? 저희가 제보자 증언을 들었는데요, 돈 들어오지 않아서 가압류를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할까요? 가압류를 어떻게 하면 해제하지요? 돈을 주면 해제가 되지요. 그러니까 미납금액을 다시 돌려줍니다. 그러면 가압류가 해제가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 달에 다시 가압류를 하는 겁니다.

왜 가능하나, 손님이 와서 카드로 긁으면 운영사로 돈이 들어가니까. 운영사로 끊임없이 화수분처럼 돈이 들어가니까 미납금을 체납해 놓고 가압류가 걸리면 도로공사에서 무료로 법률상담을 해 주지만 가압류가 걸리면 그 돈을 다시 돌려주고, 그때 카드에서 들어온 돈을 다시 체불하는 형태로 하고 있는데 도로공사는 '저희가 가압류를 무료로 법률상담을 계속해 주겠습니다' 지금 이따위 걸 대책으로 내놓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중점 과제라고 지적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책이 없는 거지요. 명도소송이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현재 휴게소 운영사가 언제 나갈지 모르지만 입점 업체들은 대금이 체불될 때마다 가압류를 걸고 또 여기서 대금을 지급을 하면 또 다 가압류를 걸고 이걸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도로공사는 지금 눈만 껌뻑거리고 있는 겁니다.

허장 차관님, 지금 이게 경영실적 평가 대상에 도로공사 들어가지요?

○재정경제부제2차관 허장 예.

○김성희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휴게소 매출의 20%,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지금 라면 한 그릇 사 드시고 5000원 내시면요 그중에서 1000원이 도로공사로 들어갑니다, 임대료 명목으로. 운영사가 또 20%, 라면 한 그릇 5000원 내고 사 먹으시면요 무려 2000원이 도로공사하고 운영사에 들어가고 3000원이 그 점주가 얼마 남기고 그러니까 우리가 도로공사 그 돈까지 주느라 지금 비싸게 라면을 먹고 있는데요.

그렇게 먹고 있는데 이게 경영실적에서 어떻게 평가될까요, 차관님? 아주 좋은 평가를 받습니다. 도로공사가 1억 4000만 명, 연인원 1억 4000만 명 국민이 오가는 휴게소를 탈탈 털어서 주민들, 시민들의 주머니를 터는 것으로 경영실적 평가를 잘 받고, 방금 들으셨지요? 운영사가 체납을 하고 횡포를 부려도 점수가 안 깎이니까, 도로공사가 내놓는 대책이 무료 법률 상담을 해 드리겠다.

제가 알기로는 상생 협력이 경영실적 평가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거 좀 평가에 포함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로공사가 봉이 김선달도 아니고 이렇게 20% 가까운 돈을 받아 가면서 협력업체들, 운영업체들은 하나도 보호를 못 해 주고 운영사와 째짜미해 있는 이런 과정들 지금 국토부 자체 감사를 통해서 드러날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이거 차관님, 좀 들여다봐 주십시오.

○재정경제부제2차관 허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희 위원 경영평가에 반영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정경제부제2차관 허장** 예, 경영평가는 모두가 공통으로 갖고 있는 지표를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지금 지적하신 거를 완전히 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도 있는데 하여간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동일한 문제점은……

○**김성희 위원** 기흥·망향휴게소 일부 매장은 문제 운영사의 친인척이 운영 중인데 이 매장들에 식자재를 납품하는 유통사의 대금도 미지급되고 있다는 제보까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여기서 얘기하고 국토부장관이 직접 가서 들여다보고 심지어 국무조정실에서 TF까지 구성해서 1번 과제로 삼고 있는데 현장에서는요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도로공사는 평가 잘 받고 그리고 월급 잘 나오고 성과급도 잘 나오고요. 그리고 대책이라는 건 없습니다.

하나 더 지적하겠습니다.

도로공사가 직영 시범사업 휴게소를 여덟 곳을 선정했는데요. 일곱 곳이 유통량이 적은 지방의 고속도로에 위치해 있어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매출이 안 좋아서 네 군데 같은 경우에는 대형 휴게소에 끼워서 입찰을 하던 곳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다 왜 직영을 할까요, 실장님? 지금 이거 혁신 TF 맡으셨으니까 아셔야 됩니다. 도로공사가 하고 싶은 건 ‘직영을 해 봤는데 잘 안 되는데요. 돈 벌이가 쉽지 않습니다. 이거 안 해야 될 것 같은데요’라고 하려고 안 되는 데, 여덟 군데 중에 일곱 군데를 안 되는 데를 골라 갖고 지금 직영점을 해 본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지금 대통령께서 관심 갖고 계신 주제인데 실장님, 어떻게 좀 우리 국토부장관이 물론 이번에 새로 되시고 나면 같이 좀 들여다봐 주시겠습니까?

○**국무조정실장 임기근** 예, 지금 방금 지적해 주신 문제가 제도개선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불가피한 현상이라면 모르겠지만 구조적인 현상이라면 상당히 납득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꼼꼼하게 잘 챙겨 보겠습니다.

○**김성희 위원** 운영사가 번 돈으로 도로공사 전관들하고 짬짜미를 하고 있으니까 걱정이 없는 거예요. 평가하는 사람이나 평가받는 사람이나 그런 겁니다. 제가 더 자세한 얘기 드리지 않고 감사 결과가 나오면 다시 얘기를 한번 해 보도록 할 것이고요. 이거 본회의 때도 계속 따질 겁니다. 꼭 좀 들여다봐 주십시오.

○**국무조정실장 임기근** 예.

○**김성희 위원** 국방부차관님, 지금 민간 급식하고 있잖아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김성희 위원** 그런데 민간 위탁업체 중에 절반이, 원산지 표시를 지난 5년 동안 업체의 절반이 위반하고 있다는 사실 보고받으셨습니까?

○**국방부차관 이두희** 작년에 해군사관학교에서……

○**김성희 위원** 그랬었지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납품에 문제가 있어서 고발 조치되고 계약 해지를 통보해서 지금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성희 위원** 거기만 그런 게 아닙니다. 전체 10개 업체 중의 절반인 5개 업체가 지난 5년 동안 쇠고기, 돼지고기, 배추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적발돼서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지금 단속 현황은 죽 보시면 되고요. 과태료 처분을 받고 형사 입건이 됐는데 풀무원 푸드앤컬처의 경우에는 2024년 2월에 원산지 거짓 표시로 벌금 300만 원 받았는데 석 달 뒤에 67억 원짜리 육군부사관학교 급식 사업에 낙찰이 됩니다. 뭐 위반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걸린 것은 머리 한번 긁고 다음번에 또 다시 입찰을 집어넣으면 됩니다. 이걸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국방부차관 이두희 그 부분이 소송이 진행되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김성희 위원 아니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규정을 개정해서……

○김성희 위원 아니, 그건 이미, 푸디스트는 지나갔고요. 풀무원의 경우에는 벌금 300만 원 받았는데 석 달 있다가 67억짜리 공사 들어와서 따내요. 그러니까 이것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교육부장관님 더 잘 알고 계실 겁니다만 교육부에서는 원산지를 어기면 여기에 입찰자격을 몇 달이라도 제한하는 방식 그래서 뭔가 징계를 한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것은 국방부가 지금 처음 해 보시는 일이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민간업체 제한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법을 찾아서 보고해 주시고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김성희 위원 드론 얘기 좀 이어서 여쭙보겠는데요. 드론 1만 1000대 올해도 계약하고 있는데 보험 잘 안 들고 있지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보험 작년부터 해서 아주 잘 들고 있습니다.

○김성희 위원 일괄검사해 보니까 670대가 안 들었다고 파악됐다는 것은 부대마다 지급 선정기준이 다르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선정기준을 좀 맞춰야 될 것 같은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여기와 관련된 훈령을 어떻게 정리할 건지 정리해서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희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재 김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관악율의 정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호 위원 감사합니다.

밤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9월 2일이 안중근 의사 탄신 147주년이 됩니다. 올해 3월 26일이 순국 116주기였고요. 이를 후인테 사실 이 질의를 준비하면서 참 부끄러운 마음도 들고 그러나 한편으로는 또 다급하고 간절한 마음도 들고 그런 마음으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부끄러운 것은 그래도 대한민국이 세계 10대 경제강국이 됐는데 아직까지 민족의 영웅이 어디에 묻혀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우리의 상황이 부끄럽고요. 한편으로는 뒤통수에 공동묘지가 있는데 거기에 묻혀 있을 거라고 예측은 합니다마는 그 주변이 지금 아파트단지로 바뀌고 있고 개발이 진행되고 있어 가지고 조금이라도 늦으면 이제 영영 민족의 영웅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 올까 싶어서 마음이 참 간절합니다.

대통령께서도 시진핑 중국 주석을 만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말씀도 하셨고 우원식 국회의장도 또 중국 그쪽하고 이런 협의도 하셨고 그랬었습니다.

외교부장관님, 어떻게 좀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중국하고?

○**외교부장관 조현** 중국 측에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또 부탁도 하고 그래 왔습니다. 그런데 중국 측의 반응은 현실적으로 이게 쉽지 않은 문제다, 그다음에 심지어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일대가 이렇게 변모하고 있기 때문에 어렵다, 그러나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정도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정태호 위원** 제가 3월 26일 날 중국 대련에 가 가지고 뤼순감옥 공동묘지를 가 보려고 입구까지 갔는데 경비원들한테 막혀 가지고 못 들어갔어요. 공식적으로는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밑의 흐름은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고요. 그래서 외교당국의 노력이 더 필요한 그런 시점인 것 같고요.

보훈부장관님, 결국 중국이 우리한테 요구하고 있는 것은 구체적인 지점을 특정해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 두 가지, 일단 북한의 동의를 가장 우선 먼저 받고 두 번째로는 구체적인 지점을 특정해 달라 두 가지 요구입니다.

○**정태호 위원** 일단은 구체적인 지점을 특정하는 게 제일 우선일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서 보훈부는 지금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 거지요?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 현재 두 번 발굴 실패를 했고 나머지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두 가지 방법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같이 사망한 일본인 무덤을 찾는 작업, 또 하나는 그 당시에 있었던 모든 문헌을 해서 좌표를 복수로 찍어서 하나의 좌표가 잡히는 작업, 두 가지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병행하고 있는데, 일본인 사망자 3명에 대해서는 그 소재를 일본에 있는 우리 대사관에도 부탁을 했고 민간 사학자한테도 부탁을 했는데 아직 구체적인 좌표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정태호 위원** 지금 시점에서는 여하튼 구체적인 지점을 특정하는 데 온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 예.

○**정태호 위원** 거기에 돈도 많이 들어가지 않아요? 기획예산처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차관님.

○**기획예산처사회예산심의관 정향우** 예, 알겠습니다.

○**정태호 위원** 안중근 의사의 유해를 발굴하는 것도 중요한데 더불어서 지금 국외에 안장되어 있는 우리 독립유공자가 칠백열 분입니다. 그런데 소재가 미확인된 분들이 사백육십아홉 분이고요. 빨리 찾아야 되겠지요? 그리고 소재가 확인된 분들이 이백사십한 분인데 현지에 유족이 전혀 없습니다.

결국 우리 정부가 확인된 유해라도 잘 관리·보존해야 될 국가적 의무가 있지 않을까?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 예, 있습니다.

○**정태호 위원** 그런데 보니까 보훈부에 이것을 전담하는 인력이 1명밖에 없어요. 사실입니까?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 현재 우리 주재관은 1명도 없습니다. 미국에 직무파견으로 1명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사적지가 많은 중국도 2년, 2년 직무파견을 연장하다가 2년 전에 더 이상 연장이 되지 않아서 중국에는 1명도 없습니다. 그런 상태입니다.

○정태호 위원 외교부장관님, 행안부장관님.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 이것은 외교부 산하입니다.

○정태호 위원 조직을 늘리려면 행안부 동의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 일단 외교부에서……

○정태호 위원 외교부에서 동의하면 되나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외교부에서 신청을 하고요, 요청을 하고, 행안부 심사를 거쳐서 기획처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정태호 위원 지금 현지의 전담인력이 아예 없는 상황이지 않아요?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 미국에 1명 있습니다.

○정태호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중국에는 없는 거고.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 예.

○정태호 위원 이 부분을 빨리 해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외교부장관님.

○외교부장관 조현 관계 부처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정태호 위원 예.

그리고 특히 중국하고는,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주로 중국에 많이 매장되어 있는데 중국하고 MOU를 체결하기로 지난번 국가보훈부에서 한중 양해각서 체결을 추진한다고 그렇게 보고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 실제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중국 측의 반응이 실제로는 미온적입니다. 굉장히 미온적입니다.

미온적인 가장 큰 이유의 전제가 북한의 사전 동의를 받아 오라는 게 늘 전제로 깔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하는 데 늘 한계를 느끼는 실정입니다.

○정태호 위원 하여튼 유해발굴 전담인력과 조직을 확충하는 것 그리고 실질적인 한중간의 MOU를 조속히 체결하는 것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 예, 잘 알겠습니다.

○정태호 위원 그다음에 더불어서 독립운동 사적지가 또 있습니다. 보훈부 보고에 의하면 24개국에 1032개소가 있는데 향후 3년 동안 이것을 전수조사할 예정이지 않아요?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 예.

○정태호 위원 마찬가지로 이것은 지금 해외에 누군가 있어야 그게 가능할 것 아니에요, 보훈부 직원이?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 현재 보훈부에서 4명이 있고요, 독립기념관에서 한 10명 정도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유산청하고도 협조 체제를 마련해서 국가유산청의 인원도 같이 하게 되면 조금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정태호 위원 우리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연구해서 제안한 게 보훈 책임지는 주재관을 현장에 둘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 예, 알겠습니다.

○**정태호 위원** 그다음에 아까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대통령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느냐면 보훈 예우에 대한 큰 틀의 원칙을 제시하셨어요. ‘국가를 위해서 특별한 희생과 헌신에는 그에 상응하는 특별한 보상과 마땅한 예우가 뒤따라야 한다’라는 것이 우리 국민주권정부의 확고한 원칙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명예수당이 49만 원이잖아요. 이게 국가에 희생과 헌신한 분들에 대한 특별한 예우인가요?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 보훈부장관으로서 실제로 상당히 적다고 판단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재정 당국하고 오랫동안 협의를 해 왔었고, 일단 내일모레 국회에 예산이 제출되면 구체적으로 얼마 인상됐는지 파악을 하고 난 다음에 부족한 부분은 국회에 또 협조 요청할 예정입니다.

○**정태호 위원** 기획예산처 없지요? 있나요?

○**기획예산처사회예산심의관 정향우** 사회예산심의관 있습니다.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리면 이번에 참전수당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많이 했고요. 방금 전에 보훈부장관이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 예산이 공개가 되면, 예년보다는 좀 높은 수준으로 반영됐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독립유공자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요, 결과가 나오면 보시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태호 위원** 그야말로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에 대한 특별한 예우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이 절의를 준비하면서 그 말이 생각났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라는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대한민국의 독립운동가와 그리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헌신한 분들에 대해서 정부가 국가의 의무로서 모든 일을 다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또 국민주권정부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명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 제가 한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태호 위원** 예.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 우리 보훈 업무 중에 독립유공자에 대해서는 재정 당국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셔서 어느 정도까지는 그래도 독립유공자들이 느끼는 게 있을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민주유공자는 법이 본회의에서 통과되게 되면 후속조치가 준비가 됩니다.

가장 비중이 큰 호국유공자, 참전유공자에 대해서는 실제로 많이 미흡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내일모레 일단 예산이 제출되고 난 다음에, 파악하고 난 다음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유산청장 허민** 위원님, 국가유산청장입니다. 조금 전에 보훈부장관님이 말씀하시어 한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국가유산청에서는 내년에 처음으로 해외에 있는 사적지를 관리하는 일을 보훈부와 같이 하고자 합니다. 아직 예산이 확정 안 됐습니다마는 이거는 왜냐 하면 해외에 있는 많은 사적지들 아니면 항일 유적지들을 기본적으로 관리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연로하고 또

그다음에 끌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산청 입장에서는 그곳에 있어서 일단 건물은 있으니까 거기에서 홍보하고 그리고 역사성을 일으키는 일을 같이 하고요. 그분들에게 교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함께하면서 민족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태호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재 정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홍천·횡성·영월·평창의 유상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상범 위원 유상범 위원입니다.

법원행정처장께 먼저 질문을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3공화국 헌법 제99조 2항에,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대법원 판사의—즉 대법관이 지요?—임명 제청이 있으면 대통령은 반드시 임명해야 한다라고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 내용 아시는가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알고 있습니다.

○유상범 위원 그만큼 이미 우리 선배들은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을 반증하지요. 유신헌법에서 임명해야 한다는 규정이 삭제됐습니다.

대법관 제청·임명과 관련된 갈등이 노무현 대통령 이후에 계속된 것 아시고 계시지요? 잘 모르시겠으면 한번 보시지요.

2003년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최종영 대법원장이 3명의 대법관후보를 추천하려고 했는데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세 분 다 본인의 뜻과 맞지 않다고 거부권 행사할 뜻을 표명하면서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종영 후보가, 그중에 한 명이 김용담 대법관을 제청을 했고 결국 노무현 대통령이 수용을 했습니다.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뜻이 다른 경우지요.

2011년에 이명박 대통령 때는 이용훈 당시 대법원장이 별도의 만남도 없이 서면으로 제청 요청을 해서 결국은 당시에 이상훈 대법관은 제청이 됐고 그 대통령이 임명동의안을 제출했고 결국은 임명이 됐습니다.

이 두 가지 사례를 보면, 저는 이렇게 봅니다. 당시에 두 대통령들께서 본인이 원하지 않는 대법관이라고 할지라도 사법부의 독립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분들이 이렇게 본인들의 내심과 다른 부분이 있어도 결국은 국정의 안정성을 위해서 국가원수의 지위에서 임명을 했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법원행정처장은 제 의견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특별히 답할 부분은 아니겠지만 2023년에도 유사한, 지금과 같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2명의 대법관후보를 추천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를 하겠다는 의견을 표명하면서 갈등이 발생을 했었지요.

이때 박지원 의원은 ‘누구를 해 달라, 대통령이 임명 안 한다라고 하는 것은 반헌법적이고 반삼권분립적 작태다’라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비난을 했었습니다. 박주민 의원도 대

통령에 대해서 ‘월권적 태도로 삼권분립에 위배된다’ 이렇게 강하게 비난을 했습니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립니까? 이 대법관 제청과 임명은 대한민국 사법권의 삼권분립, 사법부의 독립 이 부분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지금 대한민국은 그 시험대에 서 있습니다.

제청의 절차적 완결성이 미흡하다라는 이유로 재제청 요구를 했어요. 그렇지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유상범 위원** 그러면 한번 볼까요? 김성수 후보는 동의를 해 가지고 임명동의안이 제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유상범 위원** 김성수 후보를 제청하는 과정과 손봉기 후보를 제청하는 과정, 두 과정에 무슨 차이가 있었습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최종적으로 합의에 이르렀는지에……

○**유상범 위원** 그거 말고, 합의하는 과정은 빼고요. 대법원 내부의 제청절차에서의 문제점에 차이가 있었냐고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저희 내부에는 없었습니다.

○**유상범 위원** 내부에 없었지요? 손봉기 후보가 특히 그러면 지금 법적으로 정한 부적격 사유가 있었습니까? 소위 말해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당연히 재제청 요구를 할 수 있는 거지요, 부적격 사유가 있으면. 없었지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개인의 신상에 대한 문제라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유상범 위원** 아니, 법률적으로 부적격 사유가 있냐고 물어본 거 아닙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법률적으로는 부적격 사유가 없습니다.

○**유상범 위원** 그러면 뭘니까? 결국은 합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임명동의안을 낼 수 없다는 결론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행정처장께서 지난번에도 증언했듯이 손봉기 후보를 추천받아서 청와대와 지속적으로 민정을 통해서 협의 과정을 진행해 왔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협의가 잘 안 이루어져서 면담 요청까지 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게 행정처장의 답변이지요. 맞지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최종적으로 합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면담도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유상범 위원** 요청한 건 맞잖아요, 성사는 안 됐지만. 요청을 한 건 맞지요? 무슨 답변을 이렇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생각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상범 위원** 아니, 본인이 요청을 한 건 맞습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저희는 했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쪽에서는 또 달리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유상범 위원** 재제청 요구를 하면서 이제 대변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법무부차관, 답변을 좀 해 줬으면 좋겠네요. 대변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대통령의 실질적 권한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행사되어야 한다’. ‘국민주권의 원리에 비추어 볼 때 제청권은 임명권이 올바르게 행사되도록 뒷받침하는 권한이다’.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헌법상의 권한입니까, 아닙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 이진수** 제청권은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권한입니다만……

○**유상범 위원** 대법원장의 헌법상의 권한이지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이진수** 예, 함께 임명권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유상범 위원** 아니, 제가 질문하는 내용은 제청권이 헌법상의 권한이면 임명권과 제청권에 우열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각 기관에, 사법권의 독립을 위해서 대법원장에 제청권, 국회에 동의권 그리고 대통령에 임명권을 부여한 것 아닙니까? 지금 이와 같은 말을 들으면서 이것은 적어도 삼권분립이나 사법권의 독립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는 무지한 발언이라는 생각 안 듭니까? 이거야말로 반헌법적인 독재적 발상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이진수**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기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유상범 위원** 답변하기 어려워요?

행정처장님, 지금 청와대에서는 남은 후보 3명 중에서 재제청하라는 취지지요, 요구가?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대변인의 말씀은 그렇게 읽혀졌습니다.

○**유상범 위원** 그렇게 읽혀졌지요.

그런데 지금 법원조직법상에서는 제청을 하고 나면 추천위원회는 반드시 해산하게 돼 있지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해산이 바로 간주됩니다.

○**유상범 위원** 간주되지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유상범 위원** 그렇다면 지금 3명의 후보 중 재제청 하라는 것은 그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면밀하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유상범 위원** 아니, 이미 제청이 끝나고 나머지 후보가 탈락이 된 상태인데 추천위원회는 해산이 됐어요. 그러면 법률적으로는 새로운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제청하는 경우만 가능하지 않겠어요? 그것을 해석의 여지로 본다는 것은 30년 가까이 법원 판사 생활을 하면서 그 법률 규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법원행정처장이 답변할 내용은 아니지 않겠어요? 어려운 점은 인정하지만 그렇게까지 답변을 해셔야 되겠습니까?

지금 이것은 대한민국 사법권의, 사법부의 독립, 삼권분립이 정말로 지켜질 것이냐 말 것이냐라는 정말 중차대한 시금석에 있는 사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을 대표하는 법원행정처장이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리고 법률적으로 법률 판단을 우선시하고 사실 확정에 따른 법률을 판단하는 대법원의 입장에서는 명확한 입장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촉구를 합니다.

문체부장관 계신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예, 여기 있습니다.

○**유상범 위원** 대통령실 관저 이전이 말이지요 2026년 9월 준공 예정으로 나와 있어요. 대통령실은 작년 12월에 다 해 가지고 이전을 완료했잖아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예.

○**유상범 위원** 그런데 관저 이전이 2026년 9월로 가는데 문체부에서 2023년부터 25년

까지 시설관리를 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예, 맞습니다.

○유상범 위원 그래서 시설관리비용으로 115억 원을 쓰지 않았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예.

○유상범 위원 맞지요? 사용한 비용이 115억 원으로 확인되는데 아마 맞을 겁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액수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상범 위원 그런데 지금 관저 이전이 늦어지는 이유로 벽체와 기와의 균열을 들고 있는데 시설관리비 115억 원을 썼는데 벽체와 기와 균열을 바로잡지 않았어요? 있는 것은 맞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대통령실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유상범 위원 문체부에서 관리 안 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예, 저희가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유상범 위원 혹시 시중에는 엘리베이터 설치 때문에 공사가 늦어진다는 얘기도 들리는데 그것 문체부에서 들은 바 없어요?

예산은 문체부에서 집행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아닙니다.

○유상범 위원 전혀 관계 없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저희가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상범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재 유상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제가 잠시 하나만 질의를 해도 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문광부장관님, 이창동 감독이자 문광부장관께서 영화를 제작하셨는데 한국에서 왜 넷플릭스에 제작을 하게 됐을까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투자 총액을 원했던 금액을 다 받지 못해서 하는 수 없이 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광재 우리나라에서는 투자를 못 받았나요? 우리도 정부 영화기금이나 이런 게 있지 않나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기금에서 일부 지원을 받기는 했습니다. 중예산 영화 지원을 받기는 했는데 충분치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광재 얼마를 받았던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10억대를 받았습니다.

○위원장 이광재 얼마가 필요했던 건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제가 알기로는 중예산 영화여서요 100억 미만 순제작비 보통 들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광재 그러면 결국은 넷플릭스로부터 투자를 받아 가지고 제작을 했다 이런 얘기네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넷플릭스로부터 전 제작비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한테 지원받았던 중예산 예산은 반납하고 넷플릭스로 가서서 예산을 받으셨습니다.

○위원장 이광재 정리하면 이창동 유명한 감독이자 문광부장관이 영화를 만들려고 했는데 국가에서는 10억을 받았고 더 추가 투자를 받아야 되는데 돈이 없어 가지고 결국은 넷플릭스에서 투자를 받고 한국에서 10억 받은 것은 반납했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광재 문화국가를 지향하는데 우리는 문화기금에 대해서, 영상·영화기금에 대해서 뭔가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나요? 어떤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영화기금은 잘 아시다시피 원래 극장 입장권에서부터 비롯되는데요. 영화발전기금은 예전에 2007년에 시장 개방과 스크린쿼터 축소에 대응하기 위해서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국고 2000억을 투입해서 조성한 기금입니다. 그리고 그 기금을 통해서 지금까지 한국 영화가 아주 잘 성장하는 데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하지만 코로나와 OTT 때문에 극장 관람객이 줄면서 영화발전기금의 주 재원인 입장권 부담 금액이 급감했습니다, 수입이. 그래서 지금은 기금이 거의 고갈 위기 상태고요. 그래서 지원을 하는 데 한계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이광재 지금 영화기금이 없어서 체육기금에서 1000억씩 빌려다가 쓰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문화국가를 우리가…… 넷플릭스 드라마의 약 8%~10%가 한국어 드라마인데 뭔가 근본적인 대책이 이번 국회에서 마련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금 영화 영상을 비롯한 K-컬처는 전 세계에서 절호의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고 세계로 빨리 나갈 수 있도록 보다 안정적인 기금 확충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에서 이런 논의들이 전향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의 깊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이광재 우리 위원님들도 각별히 문화예산에 대해서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주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5분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조배숙 위원님 나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배숙 위원 유상범 위원이 키가 크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조배숙 위원입니다.

오전 질의에 이어서 시간이 좀 부족해서 조금 더 질의를 연관해서 하겠습니다.

청와대가 손봉기 판사에 대해서 반대하고 재제청 요구하고 국회로 임명동의안을 보내

지 않았습니니다. 저는 이 부분은 국회의 인사청문 권한 그리고 또 임명동의 권한을 침해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당 국회의원들은 여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하려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법원행정처장님, 이것과는 별도로 대법원 역시…… 이 제청권 헌법이 부여한 권한 아닙니까? 그런데 재제청 요구를 했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침해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대통령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에서는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해야 되지 않습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면밀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배숙 위원 저는 분명히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합니다. 저는 굉장히, 이게 지금 사법권의 독립과 관련된 시험대에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유야무야 이상하게 넘어가면, 타협한다고 하면 저는 돌이킬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는 제가 볼 때 운동경기를 할 때 선수가 좀 불리하니까 심판 판정에 불만을 품고 내가 앞으로 땀 경기 심판은 내가 직접 고르겠다, 내 마음에 드는 심판이 올 때까지 경기 안 하겠다 이런 것하고 똑같습니다. 국정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PPT를 한번 띄워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법원행정처장님, 잘 아십니다. 작년 6월 9일 날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공판기일을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해서 6월 18일 날 재판을 해야 되는데 추후 지정했습니다. 그 후로 대장동·백현동 사건 등 비롯해서 5개 재판이 멈췄습니다.

그때 이 결정은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했는데요, 소추를 어떻게 해석했냐면 진행 중인 형사사건 재판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해석에 대해서 법조인들 사이에서도 고개를 갸우뚱했고 그리고 또 민주당이 너무 대법원장 탄핵하겠다 또 사법개혁 압박을 하니까 재판 연기를 위한 교육지책으로 나온 아주 무리한 법 해석이었다 이런 견해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지난 7월 9일 날 대법원 판결이 하나 나왔지요. 거기 보니까 소추를 사전적 의미로 해석했습니다. 형사사건에 대해서 공소를 제기하는 것 그리고 불소추특권은 법 앞에 평등에, 거기에 대한 예외이기 때문에 적용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헌법 제84조를 이유로 재판을 멈췄는데 이것 다시 계속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우리 당의 김태규 위원님도 이 비슷한 질의를 하셨는데요. 다시 판단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저 판결은 수사 여부에 대한 판결이었습니다.

○조배숙 위원 그러나 소추에 대해서 상당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판도 마찬가지로 아닌가요?

그리고 법무부차관님, 이런 판결이 나왔으면 검찰에서는 기일 지정 신청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 이진수** 당시 재판부에서 재판을 정지하면서 헌법 84조와 함께 대통령의 국정 수행 등을 사유로 설명을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조배숙 위원** 대통령의?

○**법무부장관직무대행 이진수** 대통령께서 국정의 책임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점도 재판부에서 함께 설명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조배숙 위원** 그 이유 때문에 정지를 한다는 겁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 이진수** 재판부에서 판단해서 결정한 사안입니다.

○**조배숙 위원** 재판부의 판단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이런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데, 소추라는 것이 아주 엄격하게 지금 해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형사재판도 할 수가 있어야지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이진수** 저 판결의 의미에 대해서는 방금 전 법원행정처장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조배숙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재** 조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서울 동작을의 나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경원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통일부장관님, 리호남 아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재명 대통령 대북송금 사건에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쌍방울 방용철 부회장은 리호남을 마닐라에서 만나서 방북 대가 비용 70만 불 지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그 리호남이 또 나타났습니다. 언제 나타났느냐? 올해 2월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함께 만나서 제주도가 북한에, 대북 지원하는 것을 도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이 계약서가 2장입니다. 하나는 제주도가 표시되어 있고, 남북교류협회 뭐 이런 것 같이 남북경제인연합회 이런 것이 당사자로 들어가 있는 계약서가 있고 또 하나는 북한과 중국 업체만 들어가 있는 계약서가 있습니다. 이중계약서를 쓴 건데요.

통일부장관님,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주도해서 한 제주도 대북지원 사업, 승인해 주셨습니까?

○**통일부장관 정동영** 접촉 승인했습니다.

○**나경원 위원** 물건 반출하려면 승인받아야 되지요?

○**통일부장관 정동영** 예.

○**나경원 위원** 계약서 2장인 것 아셨습니까, 모르셨습니까?

○**통일부장관 정동영** 그것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나경원 위원** 아니, 아셨습니까, 모르셨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물어봅시다.

계약서가 2장이고 이렇게 이중계약으로 계약서가 2개가 있었다, 그러면 이것은 남북교류협력법 13조에 해당하는, 27조에 해당하는, 13조·27조에 나오지요.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반출 승인한 것에 해당하는 거겠지요?

○**통일부장관 정동영**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나경원 위원**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반출한 것으로 봐야 되겠지요?

○**통일부장관 정동영** 정부로서는 민간의 교류협력을 전면 개방하면서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의 교류협력 역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에 맡기는 방식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나경원 위원** 아니, 자유에 맡기는 것으로……

○**통일부장관 정동영** 자율.

○**나경원 위원** 그냥 두시는 게 아니라 통일부장관이 승인해야 나가는 거지 마음대로 하면 뭐 하러 승인합니까? 이거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반출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반출한 것은 승인 취소하게 되어 있지요?

○**통일부장관 정동영** 글썽요, 이중계약서 문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경원 위원** 아니, 그렇게 자유롭게 하려면 통일부장관 승인권을 아예 없애 버리세요. 그렇게 마음대로 북한 당국하고 접촉하고 할 거면 그리고 반출할 거면 뭐 하러 승인권 가지고 있습니까? 자유롭게 하게 했다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남북교류협력기금, 지방정부 거든 중앙정부 거든 국민의 혈세로 마련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냈는지도 모르는 이런 것을 승인해 주고 그리고 이제 와서 이거 승인 취소하라니까 자율에 맡겼다? 통일부장관 그 자리에 계시면 안 되지요, 그러면. 승인은 요건에 맞아야지 승인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통일부장관 정동영** 전후 사정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경원 위원** 승인 취소하시고요. 이렇게 된 경우에는 벌칙조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마음대로 거짓으로 승인, 거짓으로 반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국민 혈세로 나간 것을, 북한에서 우리가 보냈지도 모르는 그런 접촉을 왜 합니까?

법원행정처장님!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나경원 위원** 대통령 재판 왜 안 합니까? 재판 지연하니까 방북 대가 70만 불, 이 대북 송금한 사건 지연하니까 리호남이 또 나타나서 이런 이중계약서나 만들어 갖고 지금 또 보내기 시작하잖아요. 빨리 재판 재개하십시오.

그리고 아까 조배숙 위원님이 질의하시던데 이번에 7월 초에 윤 전 대통령 사건의 대법원 판결을 보면 결국은 불소추특권은 협의로 해석하는 것이 맞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수사가 가능하면 재판도 가능한 거지요. 기소만 가능하다고 분명히 쓰여 있지 않았습니까, 대법원 판결에? 재판 재개하십시오.

재정부2차관님,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SNS에 올린 글 보셨지요?

대출 연체와 경매 폭증으로 집값이 폭락하면 공공매입용 주택을 대량 매입하는 시스템을 준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경매에 이를 정도로 지금 나오는 주택, 왜 경매에 이르겠습니까? 지금 대출 조이고, 세금 올리고, 금리 올리고 그러니까 못 버티는 집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사들여라? 국가가 헐값에 사들여라?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깜짝 놀랐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것 국가가 집값 올려 놓고 그다음에 금리 올려 가지고 대출 조이니까 못 버티는 사람 집 파는데, 다 사연이 있는 집인데 결국은 국가가 경매에 나오게 해 놓고 사실상 수용하는 것하고 다르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재정경제부제2차관 허장 제 생각에 맥락을 봐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아마 경기가 좋으면서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기 힘들지 않겠나 하는 그런 향후의 전망에 대한 말씀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경원 위원 향후 전망이 아니라 지금 많이 나올 테니 이제 공공매입용으로, 주택으로 쓰라고 그러는데.....

○재정경제부제2차관 허장 예, 공공매입도 하고 있습니다.

○나경원 위원 그런데 이렇게 경매에 나오게 되는 게 결국은 지금 잘못된 부동산정책 때문이 아닙니까? 그런데 정부가 이제 와서 그것을 사겠다? 예산은 있나요? 저는 이것 보면서 완전히 국가가 부동산 약탈하겠다 이런 것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어요.

그리고 일정 기준 이하의 공공매입, 공공임대주택으로 쓰겠다 이런 취지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내년 예산 편성하실 겁니까, 이것?

○재정경제부제2차관 허장 그 점은 구체적으로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경원 위원 저는 이런 식의 잘못된 부동산정책으로 서민들 피눈물 나게 하고 그것을 경매 나오는 걸 사게 하겠다는 그 발상 자체가 정말 참 경이롭고요.

○재정경제부제2차관 허장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 경고를 하신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경원 위원 부동산 투기한 건물들이 나오는 게 아니라요, 그런 주택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서민들 주택이 나오게 돼 있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헌법 35조 3항의 국가가 해야 될 주거안정의 의무에도 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정말 잘못된 발상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지적합니다.

.....
○위원장 이광재 나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산 북구갑의 한동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훈 위원 위원장님, 안규백 장관은 혹시 안 계실까요? 국방위가 지금 열리고.....

○위원장 이광재 예, 아까 충분히 다 얘기했던 겁니다. 지금 안 계십니다.

○한동훈 위원 지금 없습니까?

○위원장 이광재 예, 차관이 나와 있습니다.

○한동훈 위원 저는 안규백 장관께 여쭙볼 게 있었는데 차관께 물어볼 문제는 아닌 것 같으니 다음번으로 미루지요.

청와대에서 오신 분 계신가요?

○**대통령비서실재정기획보좌관 류덕현** 청와대에서 재정기획보좌관이 와 있습니다.

○**한동훈 위원** 반갑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의 비위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재정기획보좌관 류덕현** 저는 알고 있지 못합니다.

○**한동훈 위원** 청와대는 알고 있지 못합니까? 청와대를 대표해서 오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대통령비서실재정기획보좌관 류덕현** 예, 그런데 제가 그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한동훈 위원** 지난 6월 19일 날 충남 부여 롯데리조트에서 공정거래위원회하고 한국 경쟁법학회가 주최한 하계 공동학술대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음주 관련한 어떤 비위가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청와대에서 조사하거나 아니면 관계기관에 조사를 지시한 사실이 있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재정기획보좌관 류덕현** 저는 알고 있지 못합니다.

○**한동훈 위원** 확인해서 알려 주십시오.

○**대통령비서실재정기획보좌관 류덕현** 예, 일단 저는 알고 있지 못합니다.

○**한동훈 위원** 본인에게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본인이 지금 청와대를 대표해서, 대통령실을 대표해서 나온 것이니까요. 아까부터 계속 청와대에서 오신 분들은 본인 얘기하는데 본인이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법무부차관님 계시지요?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제가 질문했던 서부지검 수사팀에서 김승원 법무부장관후보자의 부정청탁 혐의에 대해서 수사해서 기소유예 처분 내린 것 확인하셨지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이진수** 24년 말에 기소유예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한동훈 위원** 그 당시에 서부지검 수사팀에서—제가 확인한 바로는—김승원 의원에 대해서 기소 의견을 냈는데 대검과 협의 과정에서 바뀌었다고 확인했는데 맞습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 이진수** 그런 내용은 알지 못합니다.

○**한동훈 위원** 알지 못하는 내용이니까 확인해 주십시오.

(자료를 들어 보이며)

2023년 6월 10일자 언론보도인데요. 조선일보입니다. ‘오빠가 식약처장과 문자, 하루 만에 해결. 야 의원 지칭 녹취 확보’ 이게 바로 그 사건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이진수** 그 기사와의 관련성도 알지 못합니다.

○**한동훈 위원** 그러면 어떤 내용입니까? 어떤 혐의, 그러니까 혐의 내용이 뭐지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이진수** 불기소처분된 사건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위원** 그러면 이 말이 맞습니까? 김승원 의원이 예전에 과거 술집 등을 운영하던 양 모 씨라는 분으로부터 식약처에 코로나 신약 허가를 빨리 해 달라는 청탁을 전달, 식약처장에게 전달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전달한 것 맞습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 이진수** 불기소처분된 사건에 대해서 저희가 사안의 내용이나 이유를 설명드릴 수 없습니다.

○**한동훈 위원** 제가 그것 몰라서 물어보는 것은 아니고요. 확인해서 말씀드립니다. 이

게 틀리면 틀리다고 얘기했겠고, 김승원 의원이 어제 남욱 씨 변호했냐라는 것에 대해서 바로 반박 자료를 냈습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 이 얘기를 하니까 아직까지 김승원 의원은 반박 자료를 못 냅니다. 이 내용은 제가 확인한 내용이니까 맞는 내용입니다.

이것 하나 물어보지요.

법무부장관은 공정의 상징이고 부정청탁을 막아야 될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검찰에 의해서 이렇게 부정청탁을 한 혐의사실이 확인돼서 무혐의가 아니라 기소유예 처분받은 사람, 법무부를 이끄는 것 가능합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 이진수** 24년 말에 사건 처분이 이루어졌고요.

○**한동훈 위원** 가능합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 이진수** 사안에 맞는 결정을 검찰에서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위원** 사안에 맞는 결정을 했다면, 그러니까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것이라면……

봅시다. 그러면 일반론적으로 물어보지요.

그러면 법무부장관이 되려는 사람이 신약 관련해서 브로커 청탁받고 그 청탁을 식약처 장에게 전달한 사실이 있다면 그 사람은 법무부장관 하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이진수** 사건에 대해서……

○**한동훈 위원** 일반론을 말씀드린 거예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이진수** 판단해 가지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사안에 맞는 검찰의 결정이 있었을 것이고 불기소결정 처분 사건이 1건이 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결격사유가 될지 여부는 앞으로 판단받아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위원** 너무 관대하신데요.

저는 안규백 장관이 탈영으로 처벌받은 것을 다시 처벌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탈영이든 아니면 영창을 갔던 것으로 처벌받았던 것을 다시 처벌받으라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이 적어도 국방부장관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부정청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람, 그것도 얼마 전에, 그 사람이 적어도 법무부장관을 하면 안 된다는 상식을 말씀드린 것이라는 말씀 드립니다.

법원에서 나오신 분께 여쭙보겠습니다.

제청 전에 누구를 원하는지 협의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제청하실 겁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대법원장님이 결정하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위원** 저는 사람 바뀌서 제청하면 이것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위헌적인 비토권을 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헌법정신을 지키라는 말씀 드립니다. 공개적인 굴복은 사법부의 자살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전달해 드립니다. 헌법정신을 지켜 줄 것을 대한민국 국민을 대신해서 강력히 요구하고 그런 의지를 지지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청와대가 절차적 완결성이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뜻이 뭔지 아시겠어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어떤 취지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한동훈 위원** 그러니까 절차적 완결성이라는 게 절차만 지켜 주면 된다는 그런 취지

로 이해해도 되나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글썄, 그것은 청와대 측에서 말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동훈 위원** 청와대, 여기 오신 분께 여쭙보겠습니다.

절차적 완결성이라는 게, 그러니까 대법원이 지켜야 될 절차적 완결성이라는 게 뭐니까? ‘저는 모른다’ 이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

○**대통령비서실재정기획보좌관 류덕현** 제가 대답드리기가 적절하지 않은 질문 같습니다.

○**한동훈 위원** 왜 적절하지 않은 질문이지요? 지금 이렇게 나라를 뒤집어 놓고 왜 적절하지 않은 질문이지요?

○**대통령비서실재정기획보좌관 류덕현** 제가 대답드리기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위원** 그러면 대답 못 할 사람이면 왜 여기 나와 있는 겁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이것 때문에 흔들리고 있어요. 입장이 뭐니까? 절차적 완결성, 지금 대법원이 뭘 해 주기를 바라는 겁니까? 그냥 ‘김민기’ 이렇게 써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대통령비서실재정기획보좌관 류덕현** ……

○**한동훈 위원** 답변을 하십시오. 그냥 앉아서, 그냥 여기서 무슨 별서러 나온 것 아니지 않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대통령비서실재정기획보좌관 류덕현** 제가 맡은 소임, 맡은 부분이 아니어서……

○**한동훈 위원** 아니, 여기서 맡은 소임을 대변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고 청와대 입장을 대변하는, 대표해서 나오신 것 아니에요?

○**대통령비서실재정기획보좌관 류덕현** 그 말씀을 전해서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위원** 아니, 이렇게 밖에다가는 마치 대법원을, 한 일국의 대법원을 잡도리하듯이, 쥐 잡듯이 하면서 여기 와서는 이런 태도 보입니까?

○**위원장 이광재** 위원님, 이제 마쳐 주세요.

○**한동훈 위원** 저는 그냥 정신 차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면 좀 더 용기 있게 하든가요.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광재** 한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북 김천의 송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언석 위원** 청와대 정책실장 어디 갔어요? 지금까지도 긴급회의 중입니까? 아까 2시부터 7시까지 있기로 했는데 긴급회의 때문에 안 나온다 했어요. 그러면 긴급회의 끝나면 와야 될 것 아닙니까? 아직도 긴급회의 중이에요?

○**대통령비서실재정기획보좌관 류덕현**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송언석 위원** 오늘은 제가 여러 가지 할 말이 많지만 그 부분은 다음에 하기로 하고, PPT 좀 틀어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한 20년 전 영화입니다. 괴물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지요. 한강에서 갑자기 괴물이 튀어나왔습니다. 저 괴물을 만든 원인이 무엇이나?

식약처 누가 와 있습니까, 식약처? 오늘 대상이 아니에요? 참 답답하네.

○위원장 이광재 식약처는 경제부처네. 오늘 대상자에 없는 날입니다.

○송언석 위원 예, 제가 그냥 벽을 향해서 얘기하겠습니다.

괴물을 탄생시킨 것이 그때 미군부대에서 나온 포름알데히드라고 하는 거라고 저 영화 속에서 나왔습니다.

그다음 한번 보세요. 그런데 최근에 중국 허베이성에서 배추를 수매하는 현장에 포름알데히드 용액에 배추를 담그는 모습이 기사에 나왔습니다. 지금 이렇게 해 가지고, 1군 발암물질인데 이 포름알데히드에 배추를 담갔는데 저 배추가 대한민국에 버젓이 수입이 되고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국무위원들 앉아 계시지만 여러분들이 식당에서 먹는 김치에도 저 포름알데히드에 담근 배추가 올라와 있을 개연성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감사원장님, 포름알데히드에 담근 김치를 먹는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적절하지 않겠지요? 교육부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외교부장관님,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님은 저 김치 맛있게 드시겠습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검사는 두 단계입니다. 세관에 들어올 때 세관에서 검사하는 게 있고 들어오고 난 뒤에 시중에 유통됐을 때 유통 검사를 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세관에서는 당연히 관세청에서 하겠지요. 시중에 유통되는 것은 식약처에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식약처에서 검사하는 것 중의 단 하나도 수거해서 직접적으로 검사한 사례가 없습니다. 오늘 2025년도 예산에 대한 결산인데 2025년도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 가지고 25년도에 단 한 건도 수거해서 검사한 적이 없습니다.

논란이 발생하니까 뒤늦게 수거해서 검사를 하겠다고 식약처에서 방방 뒀습니다. 8월 24일부터 26일까지 사흘 동안 중국산 김치 50근, 배추 25개, 절임배추 3건 다 했는데 ‘없었다’ 이걸로 끝입니다. 정말 이것이 대한민국 국민을 위하는 것이고……

과거에 일본의 후쿠시마 방류수가 나왔을 때 한 방울만 먹으면, 그때 방방 뒀던 것을 생각하면 지금 우리가 너무나 쉽게 이걸 넘어가고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제가 결산이니 할 말이 없네요. 재정부하고 감사원장께서 이 부분은 적절하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안부장관께 하나 묻겠습니다.

동학농민혁명 유족수당을 지금 전라북도에서 지급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행안부에서는 동의하신 겁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없었습니다.

○송언석 위원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없었다? 그런데요 행안부에서 교부세를 주잖아요. 그런데 지방에서 그런 것 시행을 하게 되면, 보조금을 주게 되면 재정 소요가 있잖아요. 그 재정 소요만큼은 교부세에서 줘야 됩니다. 그런데 교부세를 줄 권한은 행안부에 있어요. 그런데 행안부에서 그것에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 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막무가내로 어떻게 보면 과다하게 현금성 복지 지출을 하는 것에 대해서 컨트롤해야 될 책무가 행안부에 있는 것 아닙니까? 없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사후에 관리를……

○송언석 위원 사후가 아니지요. 행안부가 25년 12월 30일—그때 윤호중 장관님 계셨지

요—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현금성 복지경비 지출운영 항목을 삭제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이런 것에 보조금 지급하는 걸 지방에서 아무리 많이 만든다 하더라도 거기에 따르는 제약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생색을 내는 거지요. 그리고 중앙부처에 대해서 ‘우리는 재정 소요가 이만큼 되니까 교부세 달라, 우리 수입은 이것밖에 안 된다’, 그게 지금 현재 교부세 체계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행안부에서 컨트롤해야 되는데 컨트롤할 생각이 없이 이런 규정 자체를, 현금성 복지경비 지출 이걸 없애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행안부장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잘못이지요.

장관님, 책임 안 느끼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그거 평가해 보겠습니다.

○**송언석 위원** 평가를 해 본다고요?

윤 장관님도 이제 장관님 충분히 했고 다시 또 정치인으로 돌아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과연 정당하다고 생각하세요? 한번 냉정하게 잘 생각해 보시고요.

이번 개각이 왜 문제의 핵심이 되는 사람들은 손대지 않고 결가지만 잘랐는지 제가 이해가 잘 안 가요.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비롯해 가지고 자산시장하고 부동산인데 그것에 책임 있는 사람이 김용범 정책실장하고 금융위원장하고 그다음에 금감원장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손도 안 대고. 이해가 안 갑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재** 송언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울산 남구갑의 김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 위원** 법무장관대행께 다시 한번 더 여쭙보겠습니다. 앞서 질문이 좀 있었기 때문에 이어서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검찰청 검사가 2000, 일반 직원은 한 8000에서 1만 명 정도 되는 것 맞지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이진수** 그렇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렇지요? 그다음에 중수청은 2874명을 정원으로 예상하고 있는 것 맞습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 이진수** 대략 그 규모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한 3000 정도 보면 이 중에서, 중수청수사관 중에서 검사 상당의 직급을 가지는 수사관 수는 현재 얼마쯤 됩니까, 예상컨대 계획하기를?

○**법무부장관직무대행 이진수** 4급 이상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합산하면 대략 한 350여 명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태규 위원** 생각보다는 적네요. 지금 3000명인데, 검사는 5분의 1인데 이걸 300여 명밖에 안 됩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 이진수** 이건 그냥 제가 기억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드려서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김태규 위원 350명 정도? 좋습니다.

종전에는 그러면 수사와 공소, 기소 여부 결정 그다음에 공소유지까지 총 2000명 정도의 검사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지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이진수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 위원 만약에 기존 검사 제도를, 검찰청의 인력을, 검사 숫자를 줄이지 않고 이 350명을 늘리면 그러면 2350명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이진수 예.

○김태규 위원 그렇게 되면 오히려 인원은 더 늘어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렇게 인원은 늘어나는데 국민들 보호막은 하나 걷어지지요. 기존에는 경찰과 검찰 이중 보호막인데 지금은 검찰 보호막이 없어지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이진수 그렇게 단순하게 말씀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김태규 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대행하고 저하고 이렇게 죽 얘기를 하면서 느낀 생각이 뭐냐 하면 애초에 지금 검찰청은 인원 줄일 생각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서 그렇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계속 앞서도, 다른 질문 할 때도 계속 기소 여부 결정한다 그다음에 보완수사요구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해서는 오는 내용들을 전부 다 살펴봐야 된다, 가는 걸 결정해야 된다, 이런저런 업무 등등을 다 감안하면 기존의 인력은 그대로 거의 유지돼야 된다는 식의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법무부장관직무대행 이진수 검찰의 직접수사 개시 기능이 중수청 분리로 없어졌고요.

○김태규 위원 그러면 인원이 더 유지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줄어드는 게 맞습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 이진수 거기에 따라서 일정 규모의 수사관 정원 등은 이체가 될 예정입니다.

○김태규 위원 쉽게 제가 좀 이해할 수 있게 얘기를 해 주시지요. 줄어드는 게 맞습니까? 상식적으로 저는 줄어드는 게 맞다 싶은데……

○법무부장관직무대행 이진수 예, 줄어드는 게 맞습니다.

○김태규 위원 줄어드는 게 맞습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 이진수 예.

○김태규 위원 그러면 그 숫자가 어느 정도 되는 게 맞습니까? 저 역시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역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2000명이면, 350명이 늘어났으면 350명 상당은 줄어드는 게 맞겠네요. 그렇지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이진수 그런데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 행안부와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가 직제 관리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러면 얼추 그 정도로 예상해도 되겠습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 이진수 지금 그 수치를 책임 있게 답변드릴 수 있는 단계가 아닙니다.

○김태규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계속 드리느냐면요 어쨌거나 인원이 늘어나면, 검사 상당입니다. 검사 1명 유지하는 데 드는 1년 예산은 어마어마하지요. 급여만 해도 1억이 넘지 않습니까, 검사 1명의 급여만 해도.

○**법무부장관직무대행 이진수** 예, 검사가 증원되면 예산 소요도 수반됩니다.

○**김태규 위원** 그렇지요? 그다음에 사무실 유지나 기타 부대되는 직원들 모든 경비 다 합치면 어마어마하지요, 그 금액이. 350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돈이 더 듭니다. 그렇지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이진수** 그런데 그분들께서는 검사가 아니고요 4급 이상의 인원을 제가 추산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김태규 위원** 제가 그러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4급 이상의 숫자를 늘리는 만큼 이쪽에서는 확 줄어들어야 되는데 줄어드는 것에 대한 얘기가 없어서 제가 그걸 확인하고자 계속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더 얘기를 드리면 이렇습니다. 제가 대행하고 이렇게 쪽 얘기를 하면서, 수사권 없어지는 데 대해서는 그렇게 흥분을 안 하시더라고. 큰 관심이 없으세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이진수** 저에 대해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태규 위원** 예. 그런데 기관의, 조직의 숫자가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열심히 방어를 하신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법무부장관직무대행 이진수** 위원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수사권과 관련된 여러 가지 우려에 대해서 법사위에서 정말 많은 말씀을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러면 지금 그 수치가 350명이 늘어나면 그만한, 딱히 그 숫자는 아니지만 어쨌거나 줄어들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이진수** 예, 수사 개시 기능이 없어졌기 때문에 줄어들 예정입니다.

○**김태규 위원** 그리고 줄어드는 것과 관련해서는 전직을 권유하거나 아니면 신규 선발 제한하는 등의 조치들도 있기는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이진수**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중수청 지망을 신청받아서 중수청에서 지금 선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태규 위원** 그러면 분명히 그 숫자는 적어도 중수청 인원이 늘어나는 것만큼 수사관도 포함돼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검사 350에 지금 중수청이 한 3000명 정도 예상하면, 그것도 한 이천몇백 명 되겠습니까. 한 이천육칠백 명 정도 될 것 같은데 그 숫자만큼도 역시 검찰청에서 줄어드는 게 상식에 부합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지금 하나의 기관이 둘로 나뉘었으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 이진수** 지금 하나의 기관이 둘로 나뉘었지만 중수청에서 담당하는 것이 기존의 검찰의 업무만 떼어 내 가는 것이 아니라 중대범죄수사와 관련해서 과거 검찰이 담당했던 것보다 더 많은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를 무자르듯이 나뉘어 가지고 산술적으로만 판단할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김태규 위원** 수사권이 없어지는 기관인데 업무나 권한은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권한은 줄어들었는데 오히려 인원은 늘어난다고 그러면 그게 사리에 맞겠습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 이진수** 1차 수사기관이 송치한 사건들을 검토하고 기소하는 데

있어서 절차가 훨씬 더 많아졌고요.

○김태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법무부장관직무대행 이진수 그로 인해서 공소청 검사들이 해야 될 일들이 더 늘어났다는 측면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 위원 그러니까 절차는 오히려, 보호막은 줄어들었는데 일만 늘어난 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만드는데 왜 그러면 더 적극적으로 방어 안 했습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 이진수 법사위에서 우려되는 점을 충실히 설명드렸다고 생각합니다.

○김태규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것을 막을 능력이 없었던 거네요. 그렇지요? 막는 게 맞지 않습니까, 지금?

○법무부장관직무대행 이진수 거기에 대한 평가 문제는 제가 말씀드릴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김태규 위원 보호막은 걷어지고 수사권은 없어졌는데 인원은 더 늘어나고 국가 경비도 더 많이 드는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하는데 그것을 막을 능력이 없었다는 얘기네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이진수 앞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은 검찰에서 수사했던 사건 외에도 경찰에서 수사했던 사건들 중에 중요 사건들도 일부 담당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태규 위원 예, 이만하지요.

○위원장 이광재 김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자정이 되려면 1분이 남았는데요. 12시가 넘어야 원래 차수 변경을 하게 되어 있는데 1분 있다가 차수 변경하고 하실까요, 그냥 하실까요?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원칙대로, 회의가 진행 중입니다만 자정이 아직 조금 안 됐습니다. 간사 간 합의를 통해 차수를 변경해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 일단 산회하였다가 다시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59분 산회)

○출석 위원(48인)

강경숙 강대식 권향엽 김교홍 김남국 김남근 김남준 김선교 김성희 김태규
김 현 나경원 박상웅 박수영 박용갑 박정하 박芝源 박홍배 배준영 백선희
서지영 송언석 송재봉 안도걸 어기구 엄태영 유상범 윤용근 윤재옥 이견태
이광재 이기현 이연희 이인선 이종욱 이준석 임이자 임호선 전진숙 정준호
정태호 조배숙 조인철 최기상 한동훈 허성무 허 영 황명선

○청가 위원(2인)

문대림 정혜경

○출석 전문위원 및 입법심의원

수석전문위원 송수환

전문위원 주성훈

입법심의관 이재운

입법심의관 이윤국

○국회측 참석자

국회사무처

사무총장 고용진

사무차장 김상수

기획조정실장 임종수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대통령비서실

홍보소통수석비서관 성기홍

경청통합수석비서관 전성환

재정기획보좌관 류덕현

대통령경호처

운영관리본부장직무대리 윤기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사무처장 방용승

사무차장 박학민

감사원

원장 김호철

기획조정실장 이윤재

국무조정실

실장 임기근

국무1차장 김영수

국무2차장 김용수

재정경제부

제2차관 허장

교육부

장관 최교진

기획조정실장 설세훈

정책기획관 김홍순

외교부

장관 조현

기획조정실장 김정한

통일부

장관 정동영

기획조정실장 구병삼

법무부

장관직무대행 이진수

기획조정실장 차범준

국방부

장관 안규백

차관 이두희

기획조정실장 김은성

기획예산관 양성태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정책기획관 이지성

국가보훈부

장관 권오을

기획조정실장 오경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최휘영

기획조정실장 김정훈

성평등가족부

장관 원민경

정책기획관 김권영

기획예산처

행정국방예산심의관 이제훈

사회예산심의관 정향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 오동운

기획조정관 이형석

인사혁신처

처장 최동석

기획조정관 유승주

법제처

처장 조원철

기획조정관 안상현

재외동포청

청장 김경협

병무청

청장 홍소영

차장 김용무

기획조정관 김인환

방위사업청

청장 이용철

차장 김일동

기획조정관 김경호
경찰청
청장직무대행 유재성
기획조정관직무대리 이영철

소방청
청장 최용철
기획조정관 김재홍

국가유산청
청장 허민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안창호
기획조정관 조영호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정일연
기획조정실장 임진홍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송경희

사무처장 양청삼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차정인
사무처장 최수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 송상교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송두환
사무처장 박진

○법원측 참석자

법원행정처
처장 노경필
차장 기우중
기획총괄심의관 강지웅

○헌법재판소측 참석자

헌법재판소사무처
사무처장 손인혁
기획조정실장 하정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측 참석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직무대리 강동완
기획국장 김인수

【보고사항】

○위원 개선

사임위원	보임위원	교섭단체	연월일
허종식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2026. 8. 28.

○예비심사보고서 송부

2025회계연도 결산

(2026. 5. 29.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9079)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26. 5. 29.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9080)

이상 2건 8월 28일 소관 상임위원회(정무)의 예비심사보고서가 송부됨

○통지

2025회계연도 결산

(2026. 5. 29.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9079)

8월 28일 의장으로부터 예비심사기간 내에 심사를 완료하지 못한 소관 상임위원회(국회운영·법제사법·재정경제기획·교육·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외교통일·국방·행정안전·문화체육관광·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기후에너지환경노동·성평등가족)는 예비심사가 완료되는 대로 예비심사보고서를 송부하겠다는 통지가 있었음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26. 5. 29.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9080)

8월 25일 의장으로부터 예비심사기간 내에 심사를 완료하지 못한 소관 상임위원회(국회운영·법제사법·재정경제기획·교육·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행정안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기후에너지환경노동)는 예비심사가 완료되는 대로 예비심사보고서를 송부하겠다는 통지가 있었음